202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III)

외 교 통 일 위 원 회
국 방 위 원 회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외 교 통 일 위 원 회

❖ 외 교 부 ····· 3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7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8

Ⅱ. 사업별 검토 ····· 9

【총 괄】

1. 수의계약: 물품 구매 계약 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 ····· 9

【일반회계】

<지 출> ····· 13

2.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13
3.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연내 신협력비전 제시를 위한 집행 관리 강화 필요 ····· 17

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 사업관리 부적정 ····· 20
5.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법령에 따른 계약절차 준수 필요 등 ····· 26
6.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분할수의계약 부적정 ····· 30
7.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 법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준수 필요 ····· 33
8. 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사업(수입대체경비): 연례적 사고이월 해소를 위한 계약기간 개선 필요 등 ····· 36
9. 국가별 협력사업(ODA):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 배정하는 방식 개선 필요 등 ····· 40
10. 국제기구협력(ODA):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집행 필요 ····· 52

【국제교류기금】

<수 입> ····· 5

11. 법정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지출 구조 조정 등 방안 마련 필요 ····· 55

【기 타】

12.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61

❖ 통 일 부 ····· 62

Ⅰ. 개 관 ····· 62

1. 결산 개요 ····· 6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66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67

Ⅱ. 사업별 검토 ····· 68

【총 괄】

1. 장애인고용률: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68

【일반회계】

<세 입> ····· 71

2. 과태료·가산금: 지속적인 수납률 감소에 대한 개선 필요 ····· 71

<세 출> ····· 74

3.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예산규모 재검토 및 설문조사 불가 국가에 대한 문헌조사 등 보완 방안 모색 필요 ····· 74
4.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상 개최횟수 달성 필요 ····· 78
5.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보조금 교부방법 준수를 통해 이월·재이월 최소화 필요 ····· 82
6.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근거 규정 없는 피복비 집행 부적정 ····· 87
7.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념행사를 위한 전용 부적정 ····· 90
8.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북한정보포털 시각화 콘텐츠 홍보방안 마련 필요 ····· 94

9.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의무 이행 지연 부적정 ····· 97

【남북협력기금】

<수 입> ····· 100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기타민간이자수입: 다각적인 회수 노력 필요 ····· 100

【기 타】

11.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0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06

Ⅰ. 개 관 ····· 106

1. 결산 개요 ····· 106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0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9

Ⅱ. 사업별 검토 ····· 110

【총 괄】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회의: 개의정족수 미충족 회의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등 ····· 110
2. 수의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절차 준수 필요 ····· 118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23

❖ 재외동포청 ····· 124

Ⅰ. 개 관 ····· 124

1. 결산 개요 ····· 124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27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7

Ⅱ. 사업별 검토 ····· 128

【총 괄】

1. 수의계약: 물품 구매계약 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 ····· 128

【일반회계】

<세 출> ····· 132

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상담실적 제고 필요 ····· 132
3.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임차료 집행 시 예산집행지침 준수 및 소요 예산 재산정 필요 등 ····· 136
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141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45

국 방 위 원 회

❖ 국 방 부 ····· 149

Ⅰ. 개 관 ····· 149

1. 결산 개요 ····· 14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54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55

Ⅱ. 사업별 검토 ····· 156

<세 입> ····· 156

1. 징계부과금: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필요 ····· 156
2. 기타경상이전수입: 체계적인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 마련 필요 ····· 159

<세 출> ····· 162

3.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 민간조리원 운용률 제고 및 관리 규정 마련 필요 ····· 162
4. 공공요금 사업: 공공요금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및 적정한 예산 편성 필요 ····· 166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필요 ····· 169
6. 기본급식 사업: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급식 만족도 제고 필요 ····· 172
7. 특수식량 사업: 특전식량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국방규격 설정 필요 ····· 175
8. 기본피복 사업: 면밀한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에 의한 집행 효율화 필요 등 ····· 178

9. 통신요금 사업: 임대회선 계약주체 단일화 검토 필요 ····· 183
10. 의무물자확보 사업: 면밀한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필요 ····· 186
11. 의무시설개선 사업: 면밀한 사전 분석을 통한 사업지연 방지 필요 ····· 190
12. 재해보상금 사업: 지급인원 감소 추이와 집행률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194
13.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상근예비역 가입률 제고 필요 ····· 197
14.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 과도한 이·전용 지양 필요 ····· 200
15.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 계약 체결 확대 필요 ····· 203
16. 비군사화 사업: 탄약 비군사화 적체물량 해소 필요 ····· 206

【기 타】

1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209

❖ 병 무 청 ····· 211

Ⅰ. 개 관 ····· 211

1. 결산 개요 ····· 211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215

4.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15

Ⅱ. 사업별 검토 ····· 215

【일반회계】

<세 입> ····· 215

1. 징계부과금: 징계부과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및 점검 필요 ····· 215

<세 출> ····· 219

2.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 복무규정 위반자 전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실시 필요 ····· 219

3. 잠복결핵검사: 잠복결핵 양성률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등 ····· 223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27

❖ 방위사업청 ····· 228
(비공개 p. 228 - p. 284)

(비공개 p. 228 - p. 284)

행 정 안 전 위 원 회

❖ 행정안전부 ····· 285

Ⅰ. 개 관 ····· 285

1. 결산 개요 ····· 28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28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90

Ⅱ. 사업별 검토 ····· 292

【총 괄】

1. 지방교부세: 세수결손 시 교부세 미교부 부적절 ····· 292
2. 수입대체경비 사업: 지출규모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초과지출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등 ····· 297

【일반회계】

<세 출> ····· 303

3. 재난대책비(보조): 이연집행에 따른 이·전용 과다 ····· 303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 307
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추진 전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등 ····· 311
6. 편의시설 정비: 무분별한 낙찰차액의 사용 지양 필요 ····· 314
7.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검증된 대안의 마련이 필요 ····· 317

8.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 학습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319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 적정한 출연금의 비목으로 변경 필요 ····· 324
10.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 ····· 327
11.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 ····· 330
12. 범정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 보다 면밀한 계획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 ····· 3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336
13.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실집행관리 조치의 철저 이행 등 ····· 336
14.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시한 준수 필요 ····· 347
1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는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등 ····· 352
16. 마을기업 육성사업: 고용성과 제고 노력 필요 ····· 360
17.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연구과제의 적기 추진 필요 등 ····· 363
18.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 실집행부진 개선을 위한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등 ····· 367
19. 작은 섬 공도 방지: 보조사업 사전준비 철저 ····· 374

【기 타】

20.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377

❖ 경 찰 청 ·····379

Ⅰ. 개 관 ····· 379

1. 결산 개요 ····· 37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383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84

Ⅱ. 사업별 검토 ····· 385

【총 괄】

1. 인건비: 경찰직·일반직 공무원 간 과도한 비대칭 문제 및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필요 ····· 385

【일반회계】

<세 입> ····· 391

2.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391

<세 출> ····· 395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교통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 필요 ····· 395

4.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대국민 서비스 공개의 추가적 지연 방지 필요 ····· 399

5. 부대운영 사업: 토지 사용계약으로 인한 배상금 등 발생 부적정 ····· 403

6.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 사업: 사전계획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이월 부적정 ····· 406

7. 공공요금및제세: 보험료 단가 추이를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410

【경찰병원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입> ····· 412

8.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사업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전입금 의존도 개선 필요 ····· 412

<세 출> ····· 415

9. 임상연구비 지원 사업: 임상연구비 지급 평가기준 강화 및 실소요액 지원 필요 ····· 415

【기 타】

1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교통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 필요 ····· 421

❖ 소 방 청 ····· 423

Ⅰ. 개 관 ····· 423

1. 결산 개요 ····· 42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26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26

Ⅱ. 사업별 검토 ····· 427

【일반회계】

<세 출> ····· 427

1.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현장 업무 근무자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 427
2. 국립소방병원 건립: 일부 공사 누락을 통한 타당성 재조사 우회 부적정 ·· 430
3.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사업: 철저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필요 ····· 434
4.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 위탁사업자 관리 노력 필요 ····· 439
5. 119항공정비실 건립: 단계별 예산편성 노력 및 추가적인 사업지연 예방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등 ····· 443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449

❖ 인사혁신처 ····· 450

Ⅰ. 개 관 ····· 450

1. 결산 개요 ····· 45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55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56

Ⅱ. 사업별 검토 ····· 457

【총 괄】 ····· 457

1.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적정 수립 필요 ····· 457

【일반회계】

<세 입> ····· 462

2. 공무원인재개발기관운영수입: 세입예산의 편성내역과 수납내역을 일치시킬 필요 ····· 462

【공무원연금기금】

<수 입> ····· 465

3. 은퇴설계지원교육수입: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465

4. 토지매각대: 수안보 상록호텔 매각 결정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 468

<지 출> ····· 471

5.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등: 수탁금 잉여금 및 이자수입의 반환 필요 ····· 471

6. 재해보상급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 477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48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83

Ⅰ. 개 관 ····· 483

1. 결산 개요 ····· 48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86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86

Ⅱ. 사업별 검토 ····· 487

【총 괄】

1.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수당 집행 등 개선 필요 ····· 487

【일반회계】

<세 출> ····· 494

2. 인건비: 연도 중 반복적인 이·전용을 통한 예산집행 부적절 ····· 494

3.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 「국고금 관리법」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 위반 주의 필요 등 ····· 497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0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06

Ⅰ. 개 관 ····· 506

1. 결산 개요 ····· 506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510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10

Ⅱ. 사업별 검토 ····· 511

【일반회계】

<세 출> ····· 511

1. 진실규명 조사 :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사업의 지연 방지 필요 ····· 511

【기 타】

2.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14

❖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515

Ⅰ. 개 관 ····· 515

1. 결산 개요 ····· 51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518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18

외교통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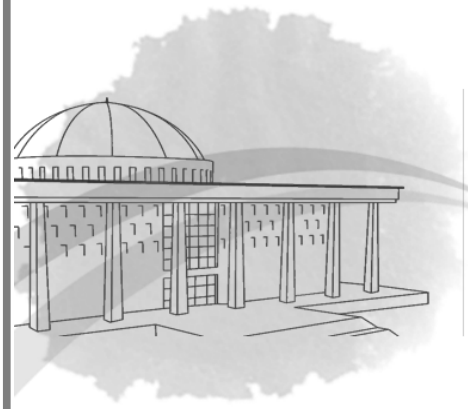

외교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690억 2,100만원(31.5%)이 많은 7,051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 5,400만원(10.7%)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67,335	267,335	396,153	128,818	277,323	277,323	368,412	91,089	△27,741
기 금	199,812	199,812	240,940	41,128	258,803	258,803	336,735	77,932	95,795
총수입	467,147	467,147	637,093	169,946	536,126	536,126	705,147	169,021	68,054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406억 400만원(△1.6%)이 적은 4조 2,479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41억 200만원(24.8%)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249,526	3,249,526	3,162,910	△86,616	4,029,753	4,029,753	3,911,217	△118,536	748,307
기 금	199,812	199,812	240,940	41,128	258,803	258,803	336,735	77,932	95,795
총지출	3,449,338	3,449,338	3,403,850	△45,488	4,288,556	4,288,556	4,247,952	△40,604	844,102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73억 2,300만원으로, 3,687억 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684억 1,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2억 9,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77,323	277,323	-	277,323	368,707	368,412	295	-
합 계	277,323	277,323	-	277,323	368,707	368,412	295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569억 5,700만원으로, 3조 9,112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4%)되고 19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38억 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029,753	4,029,753	9,004	18,200	-	4,056,957	3,911,217	1,934	143,805
합 계	4,029,753	4,029,753	9,004	18,200	-	4,056,957	3,911,217	1,934	143,805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2,874억 8,000만원으로, 3,370억 2,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367억 3,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2억 8,6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156,567	185,244	240,193	240,193	-	-
국제질병퇴치기금	102,236	102,236	96,828	96,542	286	-
합 계	258,803	287,480	337,021	336,735	286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874억 8,000만원으로, 3,367억 3,500만원이 지출(집행률 117.1%)되고, 746억 8,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제교류기금	156,567	185,244	-	185,244	240,193	-	71,739
국제질병퇴치기금	102,236	102,236	-	102,236	96,542	-	2,941
합 계	258,803	287,480	-	287,480	336,735	-	74,680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외교부 자산은 전년 대비 1,118억 7,700만원이 증가한 5조 4,559억 7,1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560억 740만원 감소한 데 비해 일반유형자산 1,150억 1,4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35억 9,300만원 증가한 1,688억 5,3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516억 8,7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82억 8,400만원이 증가한 5조 2,871억 1,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외교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조 7,857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49억 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조 6,541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97억 4,6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외교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455,971	5,344,094	111,877	2.1
		유동자산	359,782	297,907	61,875	20.8
		투자자산	1,115	57,189	(56,074)	△98.1
		일반유형자산	5,011,345	4,896,331	115,014	2.3
		무형자산	72,243	83,469	(11,226)	△13.4
		기타비유동자산	11,486	9,198	2,288	24.9
	부 채		168,853	115,260	53,593	46.5
		유동부채	1,540	1,755	(215)	△12.3
		장기차입부채	110,740	59,053	51,687	87.5
		장기충당부채	56,573	54,452	2,121	3.9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5,287,118	5,228,834	58,284	1.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785,709	2,940,799	844,910	28.7
	재정운영순원가		3,791,300	2,903,525	887,775	30.6
	재정운영결과		3,654,178	2,794,432	859,746	30.8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외교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의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리금에서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520억원을 예수받았고 예수금이자 16억원을 상환하였음.

[2024회계연도 외교부 재정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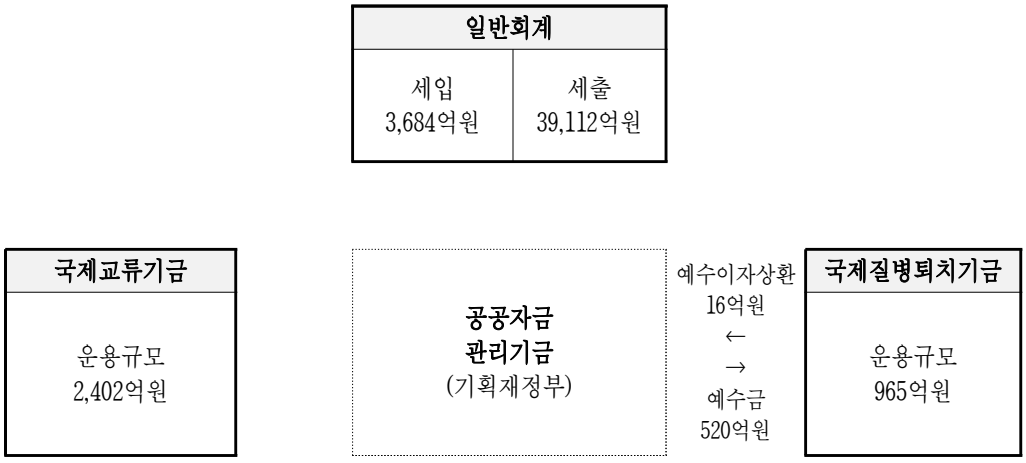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일반회계 43개 단위사업, 143개 세부사업에서 '미·일과의 협력수준 심화 및 중·러와의 관계 전략적 관리',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 및 북한인권 문제 국제 공론화', '경제안보·과학기술 외교 인프라 구축 및 국제연대 확대', '다자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적극 전개', '능동적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통한 협력지평 확대'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 추진 시 사업 수행 대학교를 모집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사업의 경우 매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 개선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지 않아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별 협력사업(ODA)' 추진 시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연도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제기구협력(ODA)' 사업은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국제기구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적립된 사례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제교류기금'은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등에 따라 기금 수입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 이후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지출 구조 조정 등 기금 고갈 대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수의계약: 물품 구매 계약 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

가. 개　요

2024년도에 외교부는 총 1,594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1,270억 647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물품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은 483건, 42억 498만원이었음.

[2024년도 외교부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건)

구분	일반경쟁	제한경쟁	나라장터	수의계약	기타	합계
공사	262,684,000 (4)	518,334,570 (1)	-	1,133,818,380 (67)	-	1,914,836,950 (72)
물품	1,425,142,800 (8)	332,523,870 (2)	503,498,800 (16)	**4,204,976,650 (483)**	6,101,604,660 (175)	12,567,746,780 (684)
용역	56,352,263,860 (128)	10,418,012,250 (45)	-	42,509,826,770 (574)	-	109,280,102,880 (747)
임차	869,113,350 (14)	-	-	2,374,667,880 (77)	-	3,243,781,230 (91)
합계	58,909,204,010 (154)	11,268,870,690 (48)	503,498,800 (16)	50,223,289,680 (1,201)	6,101,604,660 (175)	127,006,467,840 (1,594)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외교부 물품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

(단위: 원, 건)

구분		본부	여권과	국립외교원	합계
수의계약	금액	3,998,929,610	26,083,200	179,963,840	**4,204,976,650**
	체결건	398	5	80	**483**

주) 계약명에 기재된 품목이 여럿인 경우 임의의 구분으로 분류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외교부는 조달청이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품목 중 일부를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외교부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요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3)]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 등록하고 있음. 특히 프린터·모니터 및 냉장고 등 수요기관에서 자주 구매하는 물품은 여러 제조사의 물품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수요기관은 사양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음.

외교부는 2024년에 총 483건, 42억 498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프린터 37건, 3,940만원, 모니터 78건, 6,284만원, 냉장고 12건, 1,116만원, 의자 66건, 7,899만원, 카메라 7건 3,419만원 등의 수의계약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대한 구매였음.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2024년도 외교부 물품 수의계약 중 계약명에 따른 건수 및 금액]

(단위: 원, 건)

구분	본부		여권과		국립외교원		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냉장고	9,468,000	10	-	-	1,694,000	2	11,162,000	12
노트북	103,740,000	27	-	-	4,083,000	3	107,823,000	30
모니터	57,682,000	68	-	-	5,164,500	10	62,846,500	78
무정전전원장치	5,280,000	1	19,800,000	1	-	-	25,080,000	2
의자	72,920,900	59	-	-	6,075,300	7	78,996,200	66
책상	30,085,300	29	-	-	2,857,000	4	32,942,300	33
카메라	34,191,500	7	-	-	-	-	34,191,500	7
프린터	32,033,000	31	-	-	7,370,000	6	39,403,000	37
기타	3,653,528,910	166	6,283,200	4	152,720,040	48	3,812,532,150	218
합계	**3,998,929,610**	**398**	**26,083,200**	**5**	**179,963,840**	**80**	**4,204,976,650**	**483**

주) 계약명에 기재된 품목이 여럿인 경우 임의의 구분으로 분류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4]에는 세부품명 ‘냉장고’로 조달청이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49건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노트북’ 340건, ‘액정모니터’ 292건, ‘무정전전원장치’ 4,318건 등 다수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어, 외교부가 2024년도에 수의계약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물품을 구매한 것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디지털카메라(ILME-FX3), 카메라용렌즈(SEL2470GM2), 레이저프린터(HP6700dn) 등 일부 물품은 외교부가 구매한 제품과 동일제품이 등록되어 있어 구매 절차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카메라용렌즈의 경우 외교부의 구매단가는 290만원이었으나 나라장터 단가는 39만원 낮은 251만원이었고, 텔레비전 등의 품목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동일제원물품의 단가가 30만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2025년 6월 나라장터 쇼핑몰 검색 기준

[외교부 구매품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비교]

(단위: 원)

품명 및 규격	구매단가 (A)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B)	B-A	비고
디지털카메라 (ILME-FX3)	5,400,000	5,090,000	△310,000	
카메라용렌즈 (SEL2470GM2)	2,900,000	2,510,000	△390,000	
레어저프린터 (HP Color LaserJet Enterprise 6700dn)	1,485,000	1,485,000	-	
레이저프린터 (HP Color LaserJet Enterprise M554dn)	693,000	693,000	-	
레이저프린터 (HP Color LaserJet Enterprise M455dn)	627,000	627,000	-	
레이저프린터 (HP LaserJet Enterprise M406dn)	379,500	379,500	-	
잉크젯프린터 [(TH)TR150 with Battery]	369,000	369,000	-	
텔레비전 (KQ65QD63AFXKR)	1,815,000	1,490,000	△325,000	나라장터 동일제원물품 KQ65QD66AFXKR
데스크톱컴퓨터 (JASS-12425-M8)	1,056,000	942,701	△113,299	나라장터 동일제원물품 JA-124R2S
액정모니터 (S34C650TAK)	979,000	669,000	△310,000	나라장터 동일제원물품 (CN)CU34G3S
책상 (1600×1200×718mm)	290,000	201,500	△88,500	나라장터 동일제원물품 SDR-1600-01
사무실칸막이 (800×45×1555mm)	193,600	124,200	△69,400	나라장터 동일제원물품 GSP0122
3단서랍 (400×560×600mm)	190,000	87,000	△103,000	나라장터 동일제원물품 SW-850009G
사무실칸막이 (1200×45×1555mm)	184,800	133,100	△51,700	나라장터 동일제원물품 GSP0086
사무실칸막이 (45×45×1555mm)	35,200	30,200	△5,000	나라장터 동일제원물품 GSP6006
사무실칸막이 (45×15×1555mm)	13,200	10,600	△2,600	나라장터 동일제원물품 GSP7006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물품의 구매 계약 검토 시 품목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지 출>

2.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가. 개 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은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 추진, 임시보호 기간 중 적절한 체류 여건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5억 7,200만원 중 12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6%)되고, 3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4년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572	1,572	-	-	1,572	1,267	-	305	1,609
일반수용비	615	615	-	△39	576	399	-	177	596
시설장비유지비	-	-	-	39	39	39	-	-	-
국외업무여비	749	749	-	-	749	630	-	119	749
사업추진비	80	80	-	-	80	77	-	3	80
구호및교정비	128	128	-	-	128	122	-	6	18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의 예산 편성근거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 운영, 구료비, 의료지원, 공관보호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 진료상담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국내이송 등 북한이탈주민을 국내로 이송하기 전까지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5) 일반회계-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1132-403)(한반도정책국)

[2024년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 편성근거]

세부사업명	편성 근거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o 탈북민 보호시설 운영 : 342백만원 o 탈북민 구료비 : 128백만원 o 탈북민 의료지원 : 64백만원 o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 진료상담 프로그램 : 55백만원 o 탈북민 국내이송 : 540백만원 o 해외긴급지원보호비 : 145백만원 o 탈북민 담당관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 31백만원 o 주재국과 협력관계 구축 : 50백만원 o 주재국 유관기관과 국내이송 협력 : 20백만원 o 주재국 유관기관과 정기협의체 운영 : 47백만원 o 민족공동체해외협력 강화사업 : 150백만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송환 전까지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내용이 상이한 재외공관 시설정비를 위해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사업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재외공관 건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 및 자산가치 유지 등을 위해 2024년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4031-401)’ 사업에 재외공관 시설정비 예산 275억 1,700만원(본예산 기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4년도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28,180	28,180	-	40	28,220	24,706	324	3,190	5,926
재외공관 시설정비	27,517	27,517	-	-	27,517	24,348	-	3,169	5,871
공사비	27,198	27,198	-	-	27,198	24,040	-	3,159	5,861
시설부대비	319	319	-	-	319	308	-	10	10

자료: 외교부

이에 따라 재외공관은 노후에 따른 시설정비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본부에 시설정비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을 교부받아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한 후 정산 및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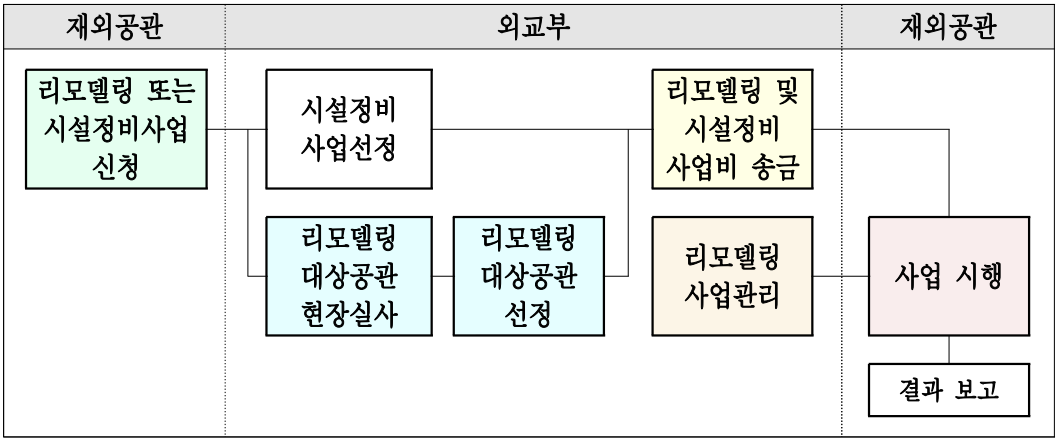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

한편 외교부는 2024년 7월 15일에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의 일반수용비 3,900만원을 재외공관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로 조정하였고, 이를 7월 24일에 재외공관 1개소에 교부하여, 침수 및 누수로 노후된 천장재·장판·타일·전기시설 및 난방배관 등을 교체하였음.

[2024년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7.15.)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132-403)	일반수용비 (210-01)	39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132-40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재외공관 탈북민 보호시설 개보수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의 편성근거 및 목적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재외공관 시설정비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의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6)]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시설 개보수 시기 예측이 어렵고, 북한이탈주민 업무의 민감·특수성으로 인해 보안이 요구되며, 대규모 시설정비 공사가 아닌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타 사업 예산으로 집행이 곤란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시설정비 사업 예산으로 개보수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계약 및 공사진행은 동일하게 재외공관이 담당하므로 추가적인 보안상 위험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정비 사업 선정 기준에는 공사규모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규모 시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정비 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못함.

[외교부 시설정비 사업 선정 기준]

ㅇ **[공통 고려사항] 시설 정비 예산 배정 전 확인 사항** - 최근 2년 이내 국유화·리모델링 사업 공관은 후순위 검토 ⇒ 하자 보수로 1차 대응 - 국유화(재건축)·리모델링(매입 후 공사 포함) 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확정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최소한의 시설정비 예산 지원 - 최근 시설정비 예산 지원 내용·실적 등 고려 • 회계행정시스템을 이용한 건물 개보수 이력을 확인하여 예산 중복지원 방지 • 작년 집행률 80% 미만 및 본부 승인 없이 사업 변경한 공관은 예산 배정 시 패널티 적용 검토 가능 ㅇ **[지원 목적 분류] 본부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배정 시 집행률 제고, 필수적 지원 공관 분리(누락방지), 불용액 감소 등 효과 발생** - 시설안전보완(1) : 누전, 누수, 외벽 탈락, 지진, 민원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 ※ 긴급수요(화재 등 사고 발생)는 가용 범위 내에서 복구경비 우선 지원 - 기능 제고(2) : 에너지 효율, 사무공간 확보 등 - 환경 개선(3) : 공용공간(접견실 등) 환경 개선 등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외교부가 재외공관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 개보수를 위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재외공관 시설정비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국가재정법」제45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연내 신협력비전 제시를 위한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은 한일 관계를 개선 ·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협력 및 인적교류 · 경제 등 분야별 협력 증진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9,500만원 중 5억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5%)되고, 2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4년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688	2,688	21	△62	2,647	1,975	73	600	4,420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812	812	17	△34	795	537	-	258	2,143
한일 新협력비전	200	200	17	-	217	152	-	65	150
한일 정책대화 개최	38	38	-	-	38	19	-	19	3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포럼 개최 실적과 예산 집행 등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므로, 외교부는 연내에 신협력비전 제시 및 국내 의견 수렴 등 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내역사업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에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대비하여 2022~2025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한일 新협력비전'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2~2023년도의 경우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2024년도에 들어서 76.0%의 집행률을 보임.

7) 일반회계-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1135-401)(아시아태평양국)

[2022~2024년 한·일 신협력비전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4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일반용역비 (210-14목)	100	-	100	51	10	70	50	-	50	-	50	-
국외업무여비 (220-02목)	40	40	40	40	-	40	41	-	40	-	40	-
정책연구비 (260-02목)	120	-	120	26	7	90	61	-	60	-	60	41
합계	260	40	260	129	17	200	152	-	150	-	150	41
(집행률)	(15.4%)		(49.6%)			(76.0%)			(27.3%)			

자료: 외교부

당초 2022년 한·일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 아래 개최하기로 계획했던 1차 포럼도 순연되어 2024년 5월에 개최되는 등 2025년 신협력비전 제시를 위한 의견수렴 및 협력 방안 논의 과정이 계획 대비 지연·축소된 면이 있음.

또한 추진계획이 지연·축소됨에 따라 2025년 추진계획도 당초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新협력비전 제시'에서 '연내 추진 검토' 및 '향후 한일관계발전 방향 제시'로 수정되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의 결과물이 목표한 시점에 도출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일 신협력비전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당초	2025년 4월말 기준
2022	- 국내연구 런칭 - 연말 1차 포럼 개최 (연구성과 공유 및 의견교환)	- 고위급 교류 및 인적교류 재개 -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적 토대 마련 (현안 해결 모색 등)
2023	- 국내연구 계속(분야별 실질협력부문 발굴 구체화 작업) - 연말 2차 포럼 개최	- 대일외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국내연구 착수
2024	- 대정부 제언서 작성(한일 공동작업 타진) - 연말 3차 포럼 개최	- 2024.5. 한일 신협력비전 포럼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국내연구 , 의견수렴 등) 계속
2025	- 대정부 제언서 최종보완 ★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新협력비전" 으로 제시	★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 "新협력비전" 연내 추진 검토 ★ 향후 한일관계 발전 방향 제시 추진

자료: 외교부

한편 같은 내역사업 안의 양국간 다각적 협력방안 모색과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한일 정책대화 개최’ 사업 역시 집행률이 50% 수준으로 부진한 실정임.

[한일 정책대화 개최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		2023		2024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배정액	집행액
한일 정책대화 개최	48	24	48	26	38	19
집행률		50.0		54.2		50.0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신협력비전 제시를 위해 2024년 12월 「한일 차세대협력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동 성과를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2025년에도 한일 청년·시민외교 포럼(가칭) 개최 준비 및 정책 제안 보고서 마련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8)]

그러나 2022년에 시작된 사업이 2025년 6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일까지 사업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7월 현재까지 향후 일정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월활하지 못함에 따라 신협력비전 제시도 적시에 이루어질지 불확실함.

따라서 외교부는 연내에 신협력비전 제시 및 국내 의견수렴 등 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2025년 한일 신협력비전 사업계획
가. 상반기: 한일관계 관련 정책연구용역 실시, 한일 신협력비전 포럼 개최 검토,
대일외교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가 실시 등 검토
나. 하반기: 국내연구 계속, 국내 의견수렴 방안 모색

4.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 사업 관리 부적정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는 정상회의 의제·성과·결과문서 구체화 및 아프리카측 참석 독려를 위한 대내외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4억 2,400만원 중 14억 1,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9)]

[2024년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34,739	34,739	947	△380	35,306	33,910	-	1,396	-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	1,479	1,479	30	△85	1,424	1,413	-	11	-
일반연구비	-	-	-	25	25	24	-	1	-
정책연구비	100	100	30	△25	105	100	-	5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외교부는 정상회의 대외 홍보전략 자문을 위해 '의제 및 성과사업 협의'의 정책연구비 1억원 중 2,5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세목조정하였고, 2024년 3월 12일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을 진행함.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 계약내역]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방법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	24,500,000	2024.4.22. ~ 2024.7.19.	제한경쟁 → 수의[1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일반회계-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1432-403)(아프리카중동국)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2024년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4.15.)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132-403)	정책연구비 (260-02)	25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1132-403)	일반연구비 (260-01)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 관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목으로 조정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 입찰공고문에 첨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주요 과업내용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국민 맞춤형 정상회의 홍보 전략,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향성 제시, ▲아프리카 관련 연구 경력자 및 홍보전문가 의견 청취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는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라 과업목표를 설정하고, 과업목표 달성을 위해 5가지 홍보전략을 실행하고, 6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음.[11)]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1)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 홍보전략 및 정책적 제언

홍보전략	정책적 제언
1. 주한 아프리카 대사와의 대화 - 2024.5.30. 14:00~16:00, 연세대 새천년관 - 주한아프리카대사, 연세대 아프리카연구원, 교내 학생 및 유학생 등 150여 명 **2. 아프리카 전문가 포럼** - 2024.5.27. 16:00~18:00, 연세대 연희관 - 연세대 교수, 한·아프리카재단부장, 학내 구성원 40여 명 등 **3. 아프리카 광장** - 2024.5.31. 15:00~22:00, 연세대 본관 앞 - 주한대사관 연계 문화체험 등 홍보부스 운영 **4-1. 시에라리온 대통령 특별 강연** - 2024.6.3. 10:30~11:20, 경영관 용재홀 **4-2. 르완다 대통령 명예 행정학박사 수여식** - 2024.6.5. 12:30, 경영관 용재홀 **5. 한-아프리카 정상화의 관련 KBS 다큐 제작 기획** - 6.1. 젊은 아프리카가 온다: 1부 희망의 땅 - 6.2. 젊은 아프리카가 온다: 2부 미래의 동반자	**1. 향후 아프리카 국가 유학생 조직화 지원이 필요하다.** **2. 아프리카 정책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보여 논의할 수 있는 학술의 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아프리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늘릴 필요가 있다.** **4. 아프리카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아프리카 정상이 정부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늘릴 필요가 있다.** **6. 향후 유사한 행사 개최시 행사 관련자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 전략1: 주한아프리카외교관 - 전략2: 아프리카 전문가 - 전략3: 국내 대학생·유학생 - 전략4: 아프리카 국민 - 전략5: 우리나라 국민

나. 검토의견

외교부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관리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업 관리에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호는 외교부의 정책개발 및 현안해결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규정에 따르면, 통상의 정책연구용역은 주제의 선정에서부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을 거치고, 착수 이후에는 각 실국에 지정된 과제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게 되며, 제출된 결과물은 과제담당관 및 외부평가전문위원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가 결과물 및 평가결과를 보고받게 됨.

이는 정책연구용역이 심의위원회를 거침으로써 추진필요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고, 과제담당관을 통해 추진과정을 점검하며, 최종적으로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및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효과적 사용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취지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은 정상회의의 대외 홍보방안 모색이라는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용역이므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외교부는 이 연구용역을 일반연구비로 세목조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인 부분에서 사업 관리에 미흡하였음.

먼저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제2항제2호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정책연구과제를 심의하면서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의 중복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외교부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2023년에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연구 및 대국민 인식 강화방안’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12)]

2023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연구 및 대국민 인식 강화방안’의 경우 제안요청서에서 과업내용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12)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연구 및 대국민 인식 강화방안’ 계약내역(2023년 수행)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방법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연구 및 대국민 인식 강화방안	50,000,000원	2023.4. ~ 2023.8.	제한경쟁

연구 및 성과 브랜딩 방향과 대(對)아프리카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제고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동 연구용역의 과업내용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연구과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상 과업내용 비교]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연구 및 대국민 인식 강화방안(2023년 시행)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2024년 시행)
❑ 과업내용(안) ○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및 對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현황 ○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전략 분석(한국, 제3국 등)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연구 및 성과 브랜딩 방향 제시 ○ 對아프리카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제고 강화 방안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슬로건 및 카피라이팅(안) 발굴 및 컨셉 기획 ○ 정상회의 계기 국민·공공외교 행사기획 및 온·오프라인 채널 홍보전략 발굴 ○ 아프리카 지역 관련 국민외교 강화 정책 방안 발굴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 프로그램(1track, 1.5track) 발굴 및 기획	❑ 과업내용(안) ○ 아프리카 국가들을 홍보 대상으로 하여, 대국민 맞춤형 정상회의 홍보 전략 발굴 지원·자문 실시 ○ 아프리카 주요 국제기구 및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에 대한 기존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향성 제시 ○ 아프리카 관련 연구 경력자, 제3국 연구소(프랑스, 영국, EU, 미국 등) 내 정상회의 연구 경력자, 홍보 전문가 섭외 및 의견 청취 실시 ○ 필요시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 및 홍보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통한 추가적 대국민 홍보 방안 제시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각 입찰공고의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결과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홍보전략에서 행사 및 프로그램 제안으로 주한대사관을 통한 아프리카 바로 알기 캠페인, 아프리카를 주제로 하는 포럼·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아프리카 관련 단체와 함께하는 문화 축제, 언론보도 촉진을 위한 시상식, 아프리카 관련 방송 프로그램(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제시하였음.

2024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주한 아프리카 대사와의 대화 등 5가지 홍보전략이 제시되어 있으나, 내용은 대사관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인식 제고, 아프리카를 주제로 하는 포럼 개최, 대사관과 연계한 문화체험 홍보부스 운영,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기존 연구용역과 내용상 차별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2023·2024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 중 홍보전략 비교]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연구 및 대국민 인식 강화방안(2023년 시행)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외 홍보방안 자문 연구용역(2024년 시행)
Ⅳ.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홍보전략 3.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2) 행사 및 프로그램 제안 □ 아프리카 바로 알기 캠페인 ◦ 아프리카 54개국에 대한 소개를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국민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높임 ◦ 54개 학교를 아프리카 국가와 매칭하고, 주한 대사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해당 국가 소개 활동을 추진 □ 포럼·세미나 ◦ 심포지엄에서 다뤄지지 못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기업, 학술/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자유롭게 포럼과 세미나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개최를 지원 □ 학술대회 ◦ 학회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정상회의 기간에 대규모 아프리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내 아프리카 학술 활동의 발전 계기 마련 □ 문화 축제 ◦ 아프리카 관련 문화 축제 개최 경험이 있는 한아프리카재단 등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문화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 개최 □ 시상식 ◦ 한-아프리카 간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가 큰 개인과 조직을 격려하는 시상식을 개최하여 국내의 아프리카 협력 활성화 및 관련 언론 보도를 촉진 - 분야: 경제, 문화예술, 학술(교육), 외교 등 □ 방송 프로그램 ◦ 연령대별 인기 방송 프로그램과 협업하거나 특별방송을 기획 제작하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아프리카 관련 내용을 송출함 ◦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예시 및 구성(안) □ 국민 참여 공모전, 비즈니스 박람회, 심포지엄, 한-아프리카 청년(Youth) 서밋, 기타 국민 참여형 행사	[홍보전략] 1. 주한 아프리카 대사와의 대화 - 2024.5.30. 14:00~16:00, 연세대 새천년관 101호 - 주한아프리카대사, 연세대 아프리카연구원, 교내 학생 및 유학생 등 150여 명 - 주한 아프리카국 대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 2. 아프리카 전문가 포럼 - 2024.5.27. 16:00~18:00, 연세대 연희관 201호 - 연세대 교수, 한·아프리카재단부장, 학내 구성원 40여 명 등 - 아프리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아프리카와 관련된 이슈를 소개하고, 논의함으로써 협력방안을 모색 3. 아프리카 광장 - 2024.5.31. 15:00~22:00, 연세대 본관 앞 - 주한대사관 연계 문화체험 등 홍보부스 운영 - 국내 체류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이 직접 기획 및 참여하여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소개, 아프리카 국가 소개, 문화 체험 등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 4-1. 시에라리온 대통령 특별 강연 - 2024.6.3. 10:30~11:20, 경영관 용재홀 -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시에라리온 대통령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 4-2. 르완다 대통령 명예 행정학박사 수여식 - 2024.6.5. 12:30, 경영관 용재홀 - 앞으로의 관계 발전을 염두에 두고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여 명예박사 학위를 전략적으로 활용 5. 한-아프리카 정상화의 관련 KBS 다큐 제작 기획 - 6.1. 젊은 아프리카가 온다: 1부 희망의 땅 - 6.2. 젊은 아프리카가 온다: 2부 미래의 동반자 - 정상회의 홍보를 위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아프리카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을 기획하여 제안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2024년도 연구용역은 일반연구비로 세목조정하여 추진되었다는 이유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관리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2023년도 정책연구용역과 제안요청서상 과업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였고, 그 결과도 후행 연구용역이 선행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되었던 홍보전략과 차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연구용역 추진 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을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연구용역이 추진되거나 선행 연구용역과 차별화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법령에 따른 계약절차 준수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국가안보에 부합하는 수출통제·제재정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억 2,600만원 중 19억 6,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4%)되고, 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3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4년도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127	2,127	-	△1	2,126	1,965	18	143	3,005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399	399	-	57	456	455	-	1	2,361
일반수용비	188	188	-	△66	122	122	-	-	154
유류비	-	-	-	19	19	19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말 전남 여수 인근 해상을 통과 중이던 무국적 선박 더 이(De Yi) 호를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부산항으로 이동시켜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원들의 생활 지원 등을 위해 선내 발전기가 계속 가동되었고, 5월 초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가 대부분 소진되어, 선박 억류 상태에서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 유류 공급이 필요해졌음.

이에 따라 외교부는 5월 9일 유류공급업체로부터 경유 11,645리터 공급에 대한 견적을 받아 5월 10일에 무국적 선박에 대한 유류 공급을 완료하는 한편, 대금지급을 위해 5월 9일과 7월 19일에 각각 일반수용비 1,782만원, 110만원을 유류비로 세목조정하여 7월 23일에 지출하였음.

13) 일반회계-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2331-401)(국제기구·원자력국)

[유류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5.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일반수용비 (210-01)	18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유류비 (210-08)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유류비로 세목 조정
세목조정 (2024.7.1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일반수용비 (210-01)	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2331-401)	유류비 (210-08)	

자료: 외교부

[유류비 집행내역]

(단위: 원)

지출일자	건명	지출금액	세목	지출방법
2024.7.23.	유류비 대금 송금 의뢰	18,916,850	유류비(210-08)	계좌이체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외교부는 억류한 무국적 선박에 대한 유류공급 시 유류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는 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외교부는 억류한 무국적 선박에 대한 유류공급을 위해 유류공급업체와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나, 외교부는 이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업무의 긴급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유류를 공급받고 계약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집행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출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천재지변·작전상의 병력 이동·긴급한 행사·비상재해 및 긴급한 안전진단 등을 예시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국적 선박의 유류 소진이 일견 긴급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천재지변·비상재해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교부는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유류비를 지출하였어야 할 것임.[14]

따라서 외교부가 유류비를 집행하면서 법률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둘째, 외교부는 예산조정 전에 유류공급을 완료하는 등 예산이 마련되기 전에 지출의무를 발생시킴으로써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을 하였으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예산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15] 이는 지출원인행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낭비 및 무분별한 지출을 방지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외교부는 유류비가 확보되기 전인 5월 10일에 이미 선박에 유류를 공급받고

---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 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5)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 · 계속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지출원인행위의 제한) ① 법 제21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43조의2에 따라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거래명세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지출의무가 발생하였고, 7월 19일에 세목조정을 완료하여 7월 23일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 취지를 존중하여 예산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분할수의계약 부적정

가. 개 요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하고 차세대 민간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억 6,2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4%)되고, 1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16)]

[2024년도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공외교 역량강화	16,103	16,103	-	-	16,103	14,429	-	1,660	15,754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1,229	1,229	-	-	1,229	1,117	-	112	2,335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1,162	1,162	-	-	1,162	1,050	-	112	1,93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외교부는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두 개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일반경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추진 시 현장실습원 모집 대행 용역과 현장실습원 파견준비 대행 용역을 각각 발주하면서 동일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16) 일반회계-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공공문화외교국)

[2022년 이후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계약내역]

(단위: 원)

연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2022	2022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채용 대행	2022.4.1. ~2022.6.30.	19,940,000	A업체	수의
	2022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준비 대행	2022.7.1. ~2022.9.30.	6,000,000	A업체	수의
2023	2023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채용 대행	2023.1.17. ~2023.3.15.	19,500,000	A업체	수의
	2023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준비 및 홈커밍데이 개최 대행	2023.3.16 ~2023.9.16.	12,000,000	A업체	수의
2024	2024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대행	2024.1.3. ~2024.3.15.	22,000,000	A업체	수의
	2024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준비 대행	2024.5.1. ~2024.10.31.	18,865,440	A업체	수의

자료: 외교부

2024년 체결된 현장실습원 모집 대행 계약과 현장실습원 파견 준비 대행 계약을 살펴보면, 두 계약은 목적이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으로 동일하고, 과업내용을 현장실습원 파견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 모집대행과 파견 준비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채용 시 구축한 홈페이지와 서버를 파견과정에서 파견자 서류접수 페이지만 추가하여 운용하며, 문의 응대를 위한 전용 메일과 콜센터 운영이 공유됨으로써 두 계약의 과업이 선후의 절차로서 이어지고 있음.

[산출내역서 상 과업(서비스)내역]

구분	과업내용	구분	과업내용
모집 대행	▷ 대외홍보 - 언론사 홍보 / 온라인 배너 및 포스팅 - 네이버 광고 및 구글 노출 - 4년제 대학 취업정보 송부 ▷ 운영/구축 - 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서버이용 - 채용 홈페이지 운영비 (현장실습원 문의 전용 메일 및 콜센터 운영) ▷ 서류전형 - 정량평가 - 정량평가 추가 인원 ▷ 면접전형	파견 관리	▷ 서류접수 페이지 추가개설 및 서버이용 ▷ 2024 출범식·오리엔테이션 영상제작 ▷ 출범식·홈커밍데이 참여자 교통비지원 ▷ 기파견자 현직조사 및 만족도 조사 - 2013~2023년 파견자 대상 ▷ 현장실습원 문의응대 - 현장실습원 문의 및 서류제출 전용 메일개설 - 콜센터 운영 ▷ 외교노트 요청 건 접수 및 배포 ▷ 파견관리 운영비 - 파견 전 제출서류 검수 및 관리 - 실비정산 자료 검수 및 관리

구분	과업내용	구분	과업내용
	- 심사위원 사례비 - 면접 바인더 제작 - 면접대상자 왕복교통비 지원 - 면접전형 운영비(3일간)		- 전체공지 배포(SMS, Mail)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서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나의 과업을 진행과정에 따라 금액을 분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일반경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상 편의로 경쟁입찰 절차를 우회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7]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7.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 법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준수 필요

가. 개 요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은 대학교에 국제관계·법학 및 행정학 등 여러 분야를 융합하여 영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영사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억 8,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18]

[2024년도 재외국민 보호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국민 보호	15,510	15,510	28	△655	14,883	12,117	137	2,629	13,959
재외공관 영사조력 역량 강화	4,516	4,516	-	-	4,516	3,884	-	631	4,216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180	180	-	-	180	180	-	-	18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외교부는 2024년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할 대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심사를 거쳐 6개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19]

나. 검토의견

외교부는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할 대학교를 모집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외교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국가를 당사

18) 일반회계-재외국민 보호(2731-401)(영사안전국)

19) 체결대학: 가톨릭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가나다순)
계약금액: 학교당 3,000만원
계약기간: 2024.3.11. ~ 2024.12.31.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물품의 제조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문 등을 비치하여 열람 또는 교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함.[20] 이는 입찰공고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경쟁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음.

이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공사 및 용역 등의 입찰 시 입찰공고문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있으나, 외교부는 사업의 수행 대학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여 입찰공고를 대신하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고 있음.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 수행 대학교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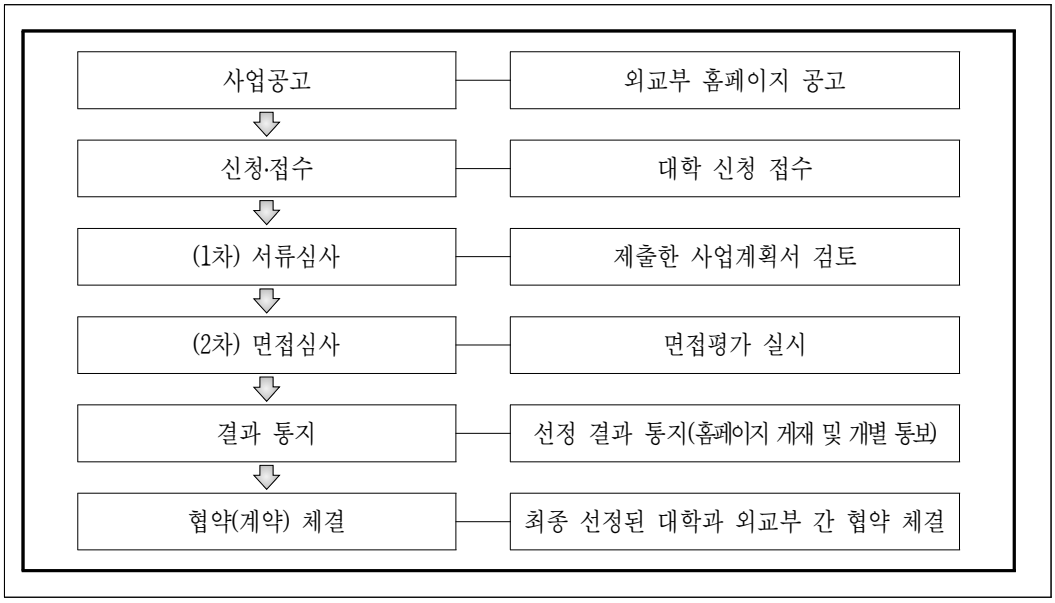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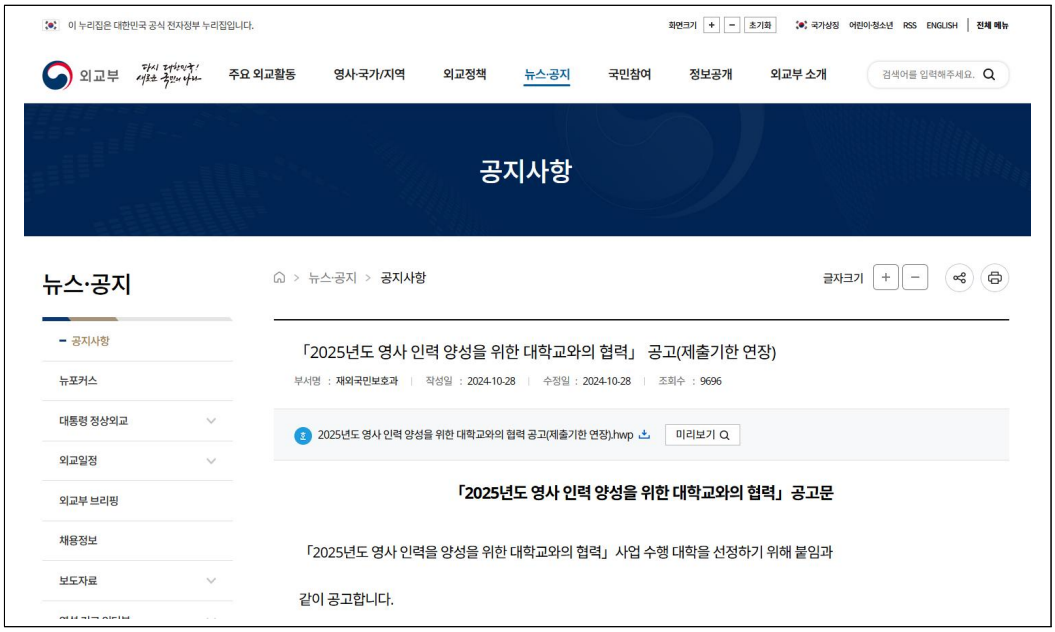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에 따르면, 최초 사업 계획 검토 시 타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였고, 나라장터가 아닌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사례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입찰절차 진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 체결 절차가 아니고, 특히 통상 국가기관 입찰공고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외교부가 이러한 공고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학교들의 입찰참여기회 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여지도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올리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 대학교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법령의 입찰 및 계약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8. 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사업(수입대체경비): 연례적 사고이월 해소를 위한 계약기간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수입대체경비)' 사업은 대국민 여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및 여권 품질·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592억 9,400만원 중 1,588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6,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21)]

[2024년도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수입대체경비)	141,030	141,030	64	18,200	159,294	158,899	63	331	123,893
여권 제조 및 발급	132,606	132,606	-	18,200	150,806	150,630	-	167	115,549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7,642	7,642	-	-	7,642	7,478	-	164	7,612
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782	782	64	-	846	846	63	-	73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외교부는 매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시키지 않아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기간을 조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전자여권의 품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매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이후 매년 계약기간이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설정되어 있어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되고 있음.

21) 일반회계-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2931-651)(영사안전국)

[2019년 이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계약 현황]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방법주)
2019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2019.4.3. ~2020.4.2.	125,000,0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KTC)	일반경쟁 → 수의*
2020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2020.4.3. ~2021.4.2.	118,750,0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KTC)	일반경쟁 → 수의*
2021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2021.4.5. ~2022.4.5.	124,300,0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KTC)	일반경쟁 → 수의*
2022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2022.4.6. ~2023.4.6.	124,300,0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KTC)	일반경쟁 → 수의*
2023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2023.4.7. ~2024.4.6.	127,600,0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KTC)	일반경쟁 → 수의*
2024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2024.4.8. ~2025.4.8.	126,632,000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KTC)	일반경쟁 → 수의*

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른 수의계약
자료: 외교부

[2022년 이후 내역사업 여권품질 및 서비스개선 이월액]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주)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여권품질 및 서비스 개선	2022년	543	543	62	-	605	418	62	125
	2023년	578	578	62	-	640	399	64	178
	2024년	782	782	64	-	846	846	63	-

주) 다음연도 이월액 = 매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계약금액의 50%
= 선금 50%를 제외한 완수금으로 계약완수 시 지급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 4월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기에 현재까지 매년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계약기간이 설정되었고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22]

22)「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연례적 사고이월을 해소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동 사업은 2024년에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입예산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수입대체경비를 인정하고 있고,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1항은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특정 수입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해당 수입을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음.[23][24]

동 사업의 2018~2023년 본예산 기준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2024년 및 2025년의 경우 지출예산이 수입예산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24년의 경우 결산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48억 7,700만원 초과하여 예산 및 결산의 지출규모가 모두 수입규모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는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음.

---

23)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24) 「국고금 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면허료 및 수수료(여권세입),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수입				지출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본예산 (B)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2018	114,099	114,099	131,303	131,303	100,285	300	13,248	113,833	113,640	△13,814
2019	111,138	111,138	126,315	126,315	101,719	63	7,983	109,765	107,467	△9,419
2020	111,597	111,597	29,618	29,618	99,894	1,939	-	101,833	57,975	△11,703
2021	78,039	78,039	20,859	20,859	77,498	62	-	77,560	76,558	△541
2022	131,859	131,859	76,355	76,355	101,762	62	-	101,824	97,851	△30,097
2023	130,810	130,810	155,536	155,536	85,620	2,109	22,300	110,029	109,482	△45,190
2024	132,361	132,361	154,022	154,022	141,030	64	18,200	159,294	158,899	8,669
2025	104,205	104,205	-	-	123,893	63	-	123,956	-	19,688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외교부는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수입예산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국가별 협력사업(ODA):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 배정하는 방식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별 협력사업' 은 수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자간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 출연하여 수행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은 2024년도 출연금 예산현액 5,531억원(간접비 등 제외) 중 5,372억원을 집행(집행률 97.1%)하였고,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1억원(△0.02%)이 감액된 6,020억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국가별 협력사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업수 (건)	예산액 (A)	예산현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액 (C)	실집행률	
							예산액 대비(C/A)	예산현액 대비(C/B)
2018년	267	3,278	3,378	228	30	3,120	95.2	92.4
2019년	264	3,466	3,412	85	68	3,259	94.0	95.5
2020년	290	3,746	2,866	39	166	2,661	71.0	92.8
2021년	361	4,052	3,651	47	239	3,365	83.0	92.2
2022년	377	4,283	3,923	14	194	3,715	85.8	94.7
2023년	394	5,190	4,769	26	188	4,555	87.8	95.5
2024년	423	6,021	5,531	29	130	5,372	89.2	97.1
2025년	445	6,020						

주 1)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원조 사업시행계획 기준에 명시된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 기준
2) 소규모·분쟁취약·사업효과성·사업행정비 제외,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 및 실집행액 기준
3)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별 협력사업 추진 시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외교부는 향후 각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도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가별 협력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1%로 양호한 것으로 보임.

국가별 협력사업 423건 중 현액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은 24건(5.7%)이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은 147건(34.8%)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여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배정함으로써 집행률이 제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4년 국가별 협력사업 추진현황]

(단위: 건)

구 분	총사업수	본예산 대비 60% 미만 집행사업	예산현액 대비 60% 미만 집행사업	예산 미배정
국가별 협력사업	**423**	**147**	**24**	1
계속사업 (종료 예정사업 포함)	352	96	12	1
2024년 신규사업	71	51	12	-

주 1) 예산 미배정: 본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 사업
2)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자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이러한 사업 간 예산 조정을 통한 집행률 제고는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 이후 매년 30% 이상의 사업이 본예산 대비 60% 미만의 집행률을 보임.

[국가별 협력사업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건)

구분	총사업수	60% 미만 집행사업(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본예산 대비	예산현액 대비	예산 미배정
2021	361	122 (33.8%)	44 (12.2%)	20 (5.5%)
2022	377	126 (33.4%)	40 (10.6%)	6 (1.6%)
2023	394	123 (31.2%)	40 (10.2%)	17 (4.3%)
2024	423	147 (34.8%)	24 (5.7%)	17 (4.0%)

주 1) 예산 미배정: 본예산 및 전년도 이월액이 없는 사업
2)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점협력국 중 가장 많은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이 배정된 '베트남' 사업을 보면, 2024년 수행된 30건의 사업 중 24건의 사업에서 예산 조정이 있었음. 이 중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가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아래와 같이 9건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집행이 원활한 사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 집행실적을 제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4년 베트남(ODA)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가 큰 사업 현황(한국국제협력단 단계)]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전용 조정액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집행액 - 본예산 (C-A)	본예산 대비 집행률 (C/A)
①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 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20-'25/1,050만불)	2,983	49	△1,563	1,469	1,384	94.2	△1,599	46.4
② 베트남 후에시 문화관광 스마트 시티 조성 지원사업('21-'25/1,398만불)	2,398	-	△1,018	1,380	1,371	99.3	△1,027	57.2
③ 베트남 축산 고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농업대학교 역량강화 사업 ('21-'30/1,270만불)	1,818	-	1,104	2,922	2,921	100	1,103	160.7
④ 베트남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1-'25/950만불)	3,064	-	△1,789	1,275	1,275	100	△1,789	41.6
⑤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지역 평화마을 조성 사업(UNDP) ('22-'26/2,500만불)	3,407	-	2,984	6,391	6,364	99.6	2,957	186.8
⑥ 베트남 꽝찌성 장애인 종합재활 센터 설립사업('22-'26/1,200만불)	3,765	-	△1,000	2,765	2,763	99.9	△1,002	73.4
⑦ 베트남 한베 ICT 대학교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22-'27/770만불)	3,286	-	△1,486	1,800	1,717	95.4	△1,569	52.3
⑧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 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	1,500	-	△1,459	41	-	-	△1,500	-
⑨ 베트남 북부지역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지원사업 ('24-'29/2,000만불)	2,400	-	△1,004	1,396	1,396	100	△1,004	58.2

주 1) 전용조정액 등 = 전용조정액 + 미교부액
2)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재와 같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초과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집행률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그 취지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외교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도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여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초과배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별 협력사업은 2014년부터 도입된 '사업 2년 전 예비검토제'에 따라 사업을 발굴 및 형성하는 장기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외교부는 예비조사 및 기획조사 시 수원국의 제도 및 정치적 환경 등 여러 요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71건 중 집행액이 없는 사업이 35건(49.3%)이고, 이 중 26건(36.6%)은 본예산액 전액이 미교부(3건)되거나 조정(23건)되어 예산현액이 없는 건이었음.

사업 집행부진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액이 없는 사업 총 35건 중 수원국(또는 수원기관)의 분담사항 미이행이 3건(8.6%),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이 16건(45.7%), 사업관리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이 9건(25.7%), 기타(현지 정세 불안정 등) 사유가 5건(14.3%)으로 나타남.

[2023~2024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중 집행액 없는 사업의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총 신규사업 수	집행액 없는 사업	집행부진 사유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협의의사록 지연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전문가 파견 지연	기타
2023	48	15 (31.3)	2 (13.3)	7 (46.7)	5 (33.3)	-	1 (6.7)
2024	71	35 (49.3)	3 (8.6)	16 (45.7)	9 (25.7)	2 (5.7)	5 (14.3)

주 1)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2) 2024년도 집행액 없는 사업(35건): 46쪽 참고자료1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별 협력사업은 2014년부터 도입된 '사업 2년전(n-2년) 예비검토제[25]'에 따라

25) ① n-2년 하반기: 예비사업 정보를 ODA 통합정책포털에 입력하여 ODA 시행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도모(n-2년 예비검토제)
② n-1년 상반기: 무상사업 간 심사 · 조정(외교부) 및 유상사업 간 심사(기재부) → 유 · 무상 종합조정(국조실) → 종합시행계획 의결(요구액 기준, 6월말)
③ n-1년 하반기: ODA 예산안 편성*(8월말) →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12월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제6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n년: 사업 집행

시행 2년 전 사업을 발굴 및 형성하는 장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신규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비조사 및 기획조사 시 수원국의 제도 및 정치적 환경 등 여러 요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연된 사업들의 2025년 집행현황을 검토하여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외 계속사업 중에도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으므로, 동 사업들의 지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지연 요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신규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 352건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은 12건(3.4%)이었으나, 본예산 대비로 보면 60% 미만 집행사업이 95건(27.1%)이고, 이 중 9건의 사업은 집행액이 전무하여 계속사업 중에서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4년 계속사업 중 집행액 없는 사업의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총 계속사업 수	집행액 없는 사업	집행부진 사유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협의의사록 지연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전문가 파견 지연	기타
352	9 (2.6)	1 (11.1)	2 (22.2)	1 (11.1)	-	5 (55.6)

주 1)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2) 집행액 없는 사업(9건): 50쪽 참고자료2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를 들어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수원국 자체 시스템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제기에 따른 협의의사록 체결 연기 요청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24년도 본예산액 15억원 중 14억 5,900만원(△97.3%)이 조정(감)되었으나, 예산현액 4,100만원도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집행률은 0%로 나타났음.

또한 ‘라오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수원기관과의 과업조정 요청에 따른 추가 기획조사로 집행계획 수립 및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어 2024년도 본예산액 14억 8,600만원 중 14억 8,400만원(△99.9%)이 조정(감)되었고, 2024년 12월에 협의의사록 체결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수행기관(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미선정으로 연말까지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계속사업 중 본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인 지연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지연 요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1] 2024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C)	2025 예산	집행부진	
					유형	사유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24-'28/550만불)	347	-	-	3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유무상 협력사업으로 유상사업의 사업 지연
볼리비아 쌀 생산성 증대 및 사회적 경제 체계 강화를 통한 중소농민 포용적 지원사업 ('24-'28/963만불)	387	-	-	200		사업대상지 부지문제 등으로 인해 수원국과 사업 내용 조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 발생
아제르바이잔 숨가이트시 및 해방지역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 ('24-'28/1,000만불)	346	-	-	-		수원국 과업범위 변경 요청(해당사업 주요 시스템 지원 요청)에 따른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본예산 전액 감액
베트남 6개 지역 이주여성과 아동을 위한 효과적 재정착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사업 (IOM)('24-'29/350만불)	989	-	-	713	협의 의사록 지연	수원기관 약정 체결 지연
베트남 법원 아카데미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역량강화사업 ('24-'28/1,470만불)	347	9	-	700		베트남 정부의 사업 검토 및 승인 지연으로 아직 협의의사록(R/D) 체결 전
인도네시아 보건인력 관리 체계 개선사업('24-'27/500만불)	347	-	-	200		수원환경 변화로 사업내용 변경 협의함에 따라 집행 부진
필리핀 팔라완 지역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자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24-'28/1,000만불)	347	1	-	1,020		수원기관과의 사업 분담사항 협의 및 RD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순연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 ('24-'28/431만불)	350	31	-	750		수원기관과의 RD 협의 장기화로 집행계획 수립 및 GA 체결 지연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4-'28/850만불)	346	-	-	525		스리랑카 정부와의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른 사업수행자 선정 지연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UNICEF) ('24-'27/600만불)	1,417	34	-	1,388		수원부처와 R/D 체결 지연에 따른 국제기구 약정체결 지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C)	2025 예산	집행부진	
					유형	사유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 ('24-'28/1250만불)	800	3	-	250	협의 의사록 지연	2024년 수원국 대선에 따른 정부 교체로 사업 착수 논의 지연되었으며 2025.2월 기획조사가 완료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 ('24-'27/600만불)	500	-	-	250		수원국 정세불안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기획조사 추진 및 R/D 체결이 지연
케냐 청년 생산적 고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국가산업훈련청 아띠리버 센터 역량강화사업 ('24-'28/700만불)	346	-	-	50		케냐 정부와 정부간 무상원조 기본약정 체결 행정절차 지연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24-'28/610만불)	383	-	-	566		수원국과의 R/D 체결 지연(2024년 11월 체결완료)으로 인한 사업 수행자 선정 및 사업착수 지체
페루 전역 조세제도 개편 및 전자세정 구현 사업 ('24-'27/1,076만불)	200	-	-	350		수원국과의 R/D 체결 지연(과업 범위 논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착수 지체
페루 아마존 지역 원헬스 기반 매개체 감염병 대응역량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24-'30/1,280만불)	225	-	-	823		수원국과의 R/D 체결 지연(2024년 11월 체결 완료)로 인한 사업 수행자 선정 및 사업착수 지체
과테말라 경찰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고등교육원 개선 사업 ('24-'29/800만불)	200	-	-	1,000		수원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인한 사업 수행자 선정 및 사업착수 순연
우크라이나 정부 효율성 및 책무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사업(UNDP) ('24-'28/533만불)	50	-	-	50		사업수행기관(UNDP)과의 사업추진 관련 협의 및 해당 국제기구 상임이사회 안건 상정 등으로 연내 집행계획 수립 및 약정금 지급이 불가하였음.
우크라이나 키이우-국경구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 ('24-'27/800만불)	50	-	-	50		수원국 내 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절차(전략투자위원회) 도입에 따라 동 사업을 위원회에 상정, 심의 및 결과 확정까지 소요기간 다대하였으며, 이후 사업범위 조정 후속협의 등으로 인해 '24년 12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연내 수행자 선정 불가하였는바, 사업착수 지연 불가피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C)	2025 예산	집행부진	
					유형	사유
필리핀 중부 루손지역 한계농가의 생계 및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개발 사업('24-'29/600만불)	346	1	-	1,04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PMC 용역입찰 지연
라오스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24-'29/500만불)	346	2	-	1,300		기획조사 결과 및 수원국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로 인한 사업범위 최종 확정 지연되었으나 총 사업비 조정 및 RD 체결 완료
이집트 직업훈련원 친환경 자동차 정비기술 고도화 사업 ('24-'30/1000만불)	773	203	-	3,654		수원국 협의지연으로 인한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되었으나 24년 10월 체결 완료
볼리비아 감자생산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팜 적용 시범사업 ('24-'28/1,200만불)	178	-	-	500		공공협력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의 조사보고서 보완에 시간 소요되어 기획조사 추가 실시하는 등 사업 순연 발생
파라과이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진단 및 감시 역량강화 사업 ('24-'29/1,450만불)	100	-	-	1,100		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수원국 자체 사업과 유사한 활동을 삭제하는 등 사업내용 조정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 사업 ('24-'28/849만불)	346	4	-	1,549		기획조사 결과 수원국 요청에 따른 과업범위 증가로 인해 사업계획변경 수요 발생(99만불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절차 추진 불가피하였음('24.11월). 이로 인해 연내 사업수행자 선정 등 관련 입찰절차 착수 불가하였는바, 사업착수 순연 불가피
키르기스스탄 농산물 수확후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가치사슬 강화사업 ('24-'27/600만불)	346	-	-	668		기획조사 이후 수원국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획조사(2차) 실시가 불가피하였는 바, 연내 사업수행자 선정 불가하여 사업 착수 지연
타지키스탄 정부기능 디지털 전환 이행 지원사업 ('24-'27/650만불)	346	-	-	790		기획조사 결과 사업범위 축소 및 사업비 감액 발생. 이에 2024년도 3차('24.12.)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연내 사업수행자 선정 및 사업착수 순연 불가피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C)	2025 예산	집행부진	
					유형	사유
타지키스탄 시설원예농업 현대화 기반 구축 사업 ('24-'29/800만불)	346	-	-	1,266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기획조사를 통해 수원기관이 당초 제안한 사업후보대상지의 적합성(부지 접근성, 기반시설 유무, 토지 소유권 등) 재검토하였고 사업대상지 변경이 불가피하였는 바, 이에 2024년도 3차('24.12.) 사업계획변경 절차 진행하여 연내 사업수행자 선정 및 사업착수 불가하였음.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주 전력계통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효율성 개선 사업 ('24-'28/1,450만불)	50	-	-	50	전문가 파견 지연	사업대상지역(미콜라이우 지역)이 격전지 인근으로 민간전문가 파견 등이 불가하여 현장파견 기획조사 및 사업 집행계획 수립 지연 불가피
우크라이나 오데사-이즈마일-레니 구간 철도용량 증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 ('24-'26/600만불)	50	-	-	50		사업대상지역(오데사 지역)이 격전지 인근으로 민간전문가 파견 등이 불가하여 현장파견 기획조사 및 사업 집행계획 수립 지연 불가피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맹그로브 숲 복원 모델 수립사업('24-'28/850만불)	347	-	-	1,275	기타	신정부 내각 수립 이후 수원기관 조직 정비 미비로 사업 착수 지연
방글라데시 선진시장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차토그램 한방직업훈련원 직업훈련체계 현대화 ('24-'27/1,000만불)	346	-	-	323		방글라데시 현지 시위 발생 및 정국 불안정으로 주재국 내 사업 공식승인절차(TAPP, RD) 지연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24-'30/1,120만불)	346	-	-	-		사업취소예정에 따른 예산 미집행
수단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학습 기회 보장 사업(UNICEF) ('24-'27/650만불) : 사업취소	1,009	-	-	-		2023년 4월 수단 무력분쟁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취소 승인
엘살바도르 원격협진을 통한 소아보건 개선사업 ('24-'27/760만불)	400	-	-	450		수원국 측 중복사업 관찰 및 협조 부진 등 에 따른 계획된 사업계획 추진 불가

주)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자료2] 2024년 계속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C)	2025 예산	집행부진	
					유형	사유
베트남 타이응웬성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지원사업 ('22-'25/810만불) : 사업취소	50	-	-	-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취소 사업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 ('21-'25/200만불)	670	-	-	250	협의 의사록 지연	사업 교환각서 검토 및 협의 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사업 착수 지연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 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23-'26/930만불)	1,500	41	-	1,247		사업비 적정성 검토 조치 및 시스템 기능점수 재산정, 수원국 자제 시스템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제기에 따른 RD 체결 연기 요청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라오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23-'26/880만불)	1,486	2	-	150	PMC 미선정 또는 선정 후 지연	수원기관의 과업범위 조정 요청에 따른 추가 기획조사로 집행계획 수립 및 RD 체결 지연 되었으나, '24년 12월 RD 체결 완료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 ('14-'25/650만불)	50	-	-	50	기타	아프가니스탄 정권 교체에 따른 사업 활동 추진 불가
아이티 UNDP 취약계층 여성역량 강화 및 소득증진 사업 ('18-'24/450만불)	20	-	-	-		국제기구 약정금 집행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 모니터링 등 예비비성으로 2천만원 사업비를 배정해두었으나, 24년 아이티 현지정세 악화로 모니터링 출장 추진 불가(2024.11월사업종료)
수단 UNDP 리버나일주 태양광물펌프 설치를 통한 관개개발사업 ('19-'24/640만불) : 사업취소	49	-	-	-		2023년 4월 수단 무력분쟁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취소 승인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본예산 (A)	예산 현액 (B)	집행액 (C)	2025 예산	집행부진	
					유형	사유
미얀마 한-메콩 생물다양성 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사업 ('21-'26/1,000만불)	100	-	-	50	기타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국가 비상사태 선포 기간 연장(6개월 단위) 등 정세불안으로 사업추진 제한, 기획조사 미실시
캄보디아 국립 축산물 안전 및 위생 연구원 설립 사업 ('23-'27/900만불) : 사업취소	100	-	-	-		2024년도 사업 취소

주) 한국국제협력단 집행단계 기준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국제기구협력(ODA):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집행 필요

가. 개 요

‘국제기구협력(ODA)’ 사업은 UN 주도의 국제사회 개발과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기구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활동 간 일관성 및 협력 증진을 통한 취약성 완화 및 갈등·분쟁 등 위험 예방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19억 1,500만원 중 802억 700만원(집행률 97.9%)이 집행되고, 17억 800만원이 불용되었음.[26]

[2024년도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 년 도 이월액(B)	이전용 등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기구협력 (ODA)	81,915	81,915	-	-	81,915	80,207	-	1,708	80,01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국제기구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적립된 사례가 있으므로, 외교부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국제기구협력(ODA)’ 세부사업에서 총 45건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본예산 및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9%를 기록하여 예산집행이 원활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누적지급액 2,231억 3,700만원 중 집행액은 1,501억 4,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7.3%이고, 총 45건의 사업 중 24건(53.3%)은 국제기구의 실집행률(누적지급액 대비 누적집행액)이 60% 미만으로 약 절반 정도의 사업에서 국제기구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26) 일반회계-국제기구협력(ODA)(2435-403)(개발협력국)

[국제기구협력(ODA) 사업 국제기구 누적지급액·누적집행액 및 실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총사업수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A)	누적집행액 (B)	실집행률(B/A)		
					60% 이상 사업	60% 미만 사업
국제기구협력(ODA)	45	223,137	150,141	67.3	21	24

주 1) 누적지급액(A): 2024년까지 국제기구에 지급된 금액
2) 누적집행액(B): 미화 기준, 2024년 기준환율 1,300원 적용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24건의 사업 중 4건의 사업은 2023년까지 국제기구에 지급된 금액의 70%도 집행되지 않았으나 한국국제협력단이 2024년에 추가로 약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WHO 키리바시 보건 분야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사업'의 경우 2024년 10월 국제기구 누적집행액이 19억 700만원으로, 2023년까지의 지급된 54억 9,8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한국국제협력단은 2024년 11월 25일에 추가로 7억 2,700만원을 국제기구(WHO)에 집행하였음.

또한 'UNDP 모잠비크 중북부 지역 재해 복원 및 사회통합 증진 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누적집행액이 8억 1,100만원(53.2%)으로, 2023년까지 지급된 15억 2,400만원의 50% 수준이었으나, 2024년 12월 12일에 14억 7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음.

[2023년까지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대비 누적집행액이 70% 미만임에도 2024년에 추가로 약정액을 지급한 사업]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3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A)	2024			국제기구		국제기구 실집행률 (G=F/E)	'25예산	비고
		본예산 (B)	KOICA 예산현액 (C)	국제기구 지급액(D)	누적지급액 (E=A+D)	누적집행액 (F)			
UNDP 태평양도서국 개발 프로젝트 내 기후변화 적응 및 젠더- 주류화 사업 ('19-'24/750만불)	9,176	169	241	241	9,417	5,456 (59.5)	57.9	-	ㅇ'24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4.9.10. ㅇ누적집행액 작성시점: '24.6월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3 국제기구 누적지급액 (A)	2024			국제기구		국제기구 실집행률 (G=F/E)	'25예산	비고
		본예산 (B)	KOICA 예산현액 (C)	국제기구 지급액(D)	누적지급액 (E=A+D)	누적집행액 (F)			
UNFPA 차드 지역사회 복원력강화 및 분쟁예방 활동을 통한 취약 여성 및 청년 삶의 질 개선 사업 ('21-'24/570만불)	5,866	1,353	1,432	1,432	7,298	3,931 (67.0)	53.9	-	ㅇ'24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1차)'24.7.11. (2차)'24.7.25. ㅇ누적집행액 작성시점: 24.7월
WHO 키리바시 보건 분야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 사업 ('21-'25/600만불)	5,498	1,244	727	727	6,225	1,907 (34.7)	30.6	973	ㅇ'24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4.11.25. ㅇ누적집행액 작성시점: '24.10월
UNDP 모잠비크 중북부 지역 재해 복원 및 사회 통합 증진 사업 ('22-'26/600만불)	1,524	2,602	1,409	1,407	2,931	811 (53.2)	27.7	2,485	ㅇ'24년 예산 국제기구 지급일 : '24.12.12. ㅇ누적집행액 작성시점: '24.12월

주 1) 국제기구 누적집행액 하단 집행률 = 국제기구 누적집행액(F) / 2023년까지 국제기구 누적지급액(A)
2) 누적집행액(F): 미화 기준, 2024년 기준환율 1,300원 적용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21년 감사 보고서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기구와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례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약정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지적한 사례가 있었음.[27]

국제기구 실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기구에 약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국제기구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적립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기구의 실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국제기구의 예산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7)「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감사보고서(2021.3.)」 (15) 국제기구와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약정체결 부적정(주의)

【국제교류기금】

<수 입>

11. 법정부담금: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지출 구조 조정 등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법정부담금' 은「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16조에 따라「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수입에 계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683억 1,3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음.[28]

[2024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법정부담금	69,595	69,595	68,313	68,313	-	-	100	54,47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전년 대비 793억 3,600만원(△42.8%) 감액된 1,059억 800만원임. 증액내역은 없고,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개정(2024.06.04. 개정, 2024.07.01. 시행)[29]으로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법정부담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151억 2,500만원 감액되었고,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이 기부하는 기부금품인 민간출연금은 286억 7,700만원 감액되었으며, 공공

28) 국제교류기금-법정부담금(59-593)(대외협력부)

29)「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개정 전·후 국제교류기여금 비교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복수여권 10년	15,000원	12,000원
복수여권 5년	12,000원	9,000원
단수여권	5,000원	면제
여행증명서	2,000원	면제

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을 회수하는 기금예탁원금회수는 전년 대비 전액 순감(△280억원) 되었고, 금융상품에 투자한 기금 중 2025년에 만기도래하여 회수할 금액인 정부예금회수(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수입은 전년 대비 70억 2,900만원(△13.3%) 감액 반영되었음.

2025년도 수입별 계획액 규모를 보면 법정부담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총수입의 51.4%를 차지하여 수입의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정부예금회수(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수입이 43.3%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법정부담금 수입은 2023·2024년 총수입 중 각각 45.8%, 44.5%의 비율을 보여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재원임을 확인할 수 있음.

[2025년 국제교류기금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계획(당초)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B)	증 감	
		당초	수정(A)		B-A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730**	**2,730**	**2,730**	**2,730**	**-**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2,730	2,730	2,730	2,730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1,608**	**71,608**	**100,285**	**56,483**	**△43,802**	**△43.7**
법정부담금 (59-593)	69,595 (45.8%)	69,595 (44.5%)	69,595 (37.6%)	**54,470 (51.4%)**	△15,125	△21.7
민간출연금 (59-594)	2,013	2,013	30,690	2,013	△28,677	△93.4
69 잡수입	**500**	**500**	**500**	**500**	**-**	**-**
85 정부예금회수	**76,409**	**52,889**	**52,889**	**45,860**	**△7,029**	**△13.3**
92 예탁원금회수	**-**	**28,000**	**28,000**	**-**	**△28,000**	**순감**
95 예탁이자수입	**560**	**840**	**840**	**335**	**△505**	**△60.1**
총 계	**151,807**	**156,567**	**185,244**	**105,908**	**△79,336**	**△42.8**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나. 검토의견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등에 따라 기금 수입이 장기적으로 감소하여 2028년 이후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으므로, 외교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조속히 지출 구조 조정 등 기금 고갈 대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교류기금을 운용하고 있음.[30]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63조제1항은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교류기금의 수입·지출 현황과 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여유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31]

국제교류기금의 적립액은 2019년에 1,929억 2,5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308억원(19.0%) 증가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시기 여권 발급 감소에 따라 법정기여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감소하였고, 기금적립금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4년 기준 적립금은 887억 4,0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041억 8,500만원(△54.0%)이 감소하였음.

이러한 기금적립금의 감소는 국제교류기금의 재정수입이 대부분 여권 발급에 의한 법정부담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권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임.

---

3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설치 · 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 · 관리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31)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국제교류기금 기금적립금 및 증감률]

(단위: 백만원)

연도	기금적립금	증감률(전년도 대비)	연도	기금적립금	증감률(전년도 대비)
2011	162,125	-	2018	190,384	4.1%
2012	164,154	1.3%	2019	192,925	1.3%
2013	151,370	△7.8%	2020	155,329	△19.5%
2014	138,010	△8.8%	2021	108,203	△30.3%
2015	144,019	4.4%	2022	79,639	△26.4%
2016	155,871	8.2%	2023	81,913	2.9%
2017	182,814	17.3%	2024	88,740	8.3%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편 2014년 이후 국제교류재단의 법정부담금(국제교류기여금)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2022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는 여권발급 건수의 증대(2014년 315만 1,000건→2024년 566만 5,000건)에 기인하고 있음. 사업비·경상경비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기여금 수입액은 683억원으로 2014년 대비 307억원(81.6%) 증가하였고, 사업비와 경상경비의 합은 652억원으로 2014년 대비 194억원(42.4%) 증가하였음.

[국제교류기여금 및 사업비·경상경비 변동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여금 예상액 (수입계획, A)	413	394	448	550	578	613	656	360	688	696	696
기여금 수입액 (결산, B)	376	478	517	649	610	594	181	90	289	675	683
예상액 대비 수입액(C=B/A)	91.0	121.3	115.4	118.0	105.5	96.9	27.6	25.0	42.0	97.0	98.1
사업비(D)	342	344	346	366	445	518	424	486	517	539	506
경상경비(E)	116	115	121	130	126	138	145	143	142	148	146
사업비+경상경비 (F=D+E)	458	459	467	496	571	656	569	629	659	687	652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4~2024년 여권발급 건수]

(단위: 천건,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여권발급 건수		3,151	3,939	4,670	5,236	4,947	4,717	1,077	694	2,836	6,308	5,665
	국내	3,052	3,833	4,531	5,109	4,801	4,543	953	563	2,693	6,179	5,554
		(96.9)	(97.3)	(97.0)	(97.0)	(97.0)	(96.3)	(88.5)	(81.1)	(95.0)	(98.0)	(98.0)
	국외	98	106	139	127	145	174	124	131	142	129	111
		(3.1)	(2.7)	(3.0)	(3.0)	(3.0)	(3.7)	(11.5)	(18.9)	(5.0)	(2.0)	(2.0)

자료: e-나라지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3년 2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이 기금적립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사업 확장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8년[32] 또는 2029년[33]에 국제교류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음.

또한 같은 해 8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사업 확장 추세를 지속하는 경우, 2030년부터 기금적립금이 고갈(△230억원)될 것으로 추정되었음.[34][35][36]

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글로벌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킹, 문화교류 협력강화 사업을 각각 48억원(△24.8%), 41억원(△21.3%), 26억원(△25.8%) 삭감하는 자체

32) 2023년 3월 10일에 작성된 2차 검토안(향후 추정 연간 지출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순사업비 연평균 증가율 4.46%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에서는 2028년에 연말 여유자금이 △49억원으로 감소하여 교류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

33) 2023년 2월 14일에 작성된 1차 검토안(향후 추정 연간 지출액은 최근 10개년 순사업비 연평균 증가율 3.87%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에서는 2029년에 연말 여유자금이 △253억원으로 감소하여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

34)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비를 2023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경우 적립금이 2032년 527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033년부터는 수지차가 다시 흑자로 전환되어 이후 적립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사업비를 5%, 10% 감축하는 경우 2024년부터, 2.5% 감축하는 경우 2028년도에 수지차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

사업비 감축 비율	수지차 흑자 전환 시점	사업비 수준	수지차 흑자 전환시 예상 기금 적립금
△10%	2024년	489억원	896억원
△5%	2024년	516억원	868억원
△2.5%	2028년	478억원	817억원

35)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장기 재정 추계 연구용역'에서도 2030년부터 기금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또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사단법인 재정성과연구원을 통해 진행된 '국제교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은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와 이에 대응한 국제교류기금 지출구조조정 방안(2024년 대비 107억원의 지출 감액)을 고려하여 중장기 재정수지 및 기금 적립액 전망치를 산출하였는데, 이 결과에서도 2031년부터 기금적립액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36) 감사원 감사결과 및 두 연구용역 결과는 기금적립액 고갈 전망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국고보조 사업화, 복권기금 활용 방안, 수탁사업의 예산지원 등을 제시하였음.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2024년 대비 2025년 지출규모를 117억원 감액하였고, 향후 일반회계가 아닌 국제교류기금을 활용한 사업 시행 필요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확대·유지·축소 및 폐지 등 중장기적인 지출구조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37][38]

[재단 고유사업과 외교부 이관 사업의 구분을 통한 지출 구조 조정 방안]

구분	재단 고유사업	외교부 이관 사업
추진 방향	기금으로의 시행 필요성, 재단의 전문성, 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어야하나 재단에 위탁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으로 현재 기금 위기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환 추진
예시	對美공공외교 사업,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예산분담을 통한 공동추진 사업(한국학 교수직 설치, 해외정책연구소 내 코리아체어 설치 등), 양국 공동추진 합의 사업(양자 포럼) 등	재단 고유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추진(KF아세안문화원, 한-중앙아 협력포럼사무국 등)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이후 국제교류기여금 인하에 따른 기금 고갈에 대비하여 지출 구조 조정방안을 외교부와 협의 중이나, 2025년 7월 현재까지 조정 방향이 결정되진 않아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법정부담금(국제교류기여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금수입구조와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등을 고려하면 기금적립금 감소와 이에 따른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조속히 지출 구조 변경 등 기금 고갈 대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7) 지출구조조정 주요내역(2024년 687억원→2025년 570억원 / △117억원)
- (글로벌 한국학 진흥) △48억(△24.8%) 삭감
  - ▲해외대학 대상 신규 공모사업 중단 ▲객원교수 파견사업 단계적 폐지
  - ▲한국 전문가 육성(장학 · 연구지원) 규모 축소
- (국제협력 네트워킹) △41억(△21.3%) 삭감
  - ▲해외 유력인사 초청사업 규모 축소 ▲미국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 폐지
  - ▲청년 대상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사업 폐지 ▲정책공공외교사업 규모 축소
  -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교육·문화사업 축소 등
- (문화교류 협력강화) △26억(△25.8%) 삭감
  - ▲한국전문 기금큐레이터직 신규 공모 중단 ▲한국소개 잡지 〈KOREANA〉 다국어 언어판 발간 중단
  - ▲재외공관 공동주관 문화교류사업 폐지 ▲아세안문화원 사업규모 축소
  - ▲한국 소개자료 발간 및 한국지식문화보급 사업 규모 축소 등

38)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월에 진행한 재정성과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지출규모 감액(△107억원)에도 2031년부터 기금적립액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기　타】

12.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외교부에 대해 시정요구 53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1건, 주의 23건, 제도개선 19건이었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0	22	19	-	51
예비비	-	-	1	1	-	-	2
합계	-	-	11	23	19	-	53

외교부는 시정요구사항 53건에 대해 47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8.7%)하고 6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51	45	88.2	6
예비비	2	2	100.0	-
합계	53	47	88.7	6

통일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06억 8,100만원(△68.0%)이 적은 144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000만원(△4.7%)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006	2,006	1,937	△69	1,448	1,448	1,300	△148	△637
기 금	38,512	38,512	13,178	△25,334	43,638	43,638	13,105	△30,533	△73
총수입	40,518	40,518	15,115	△25,403	45,086	45,086	14,405	△30,681	△710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8,659억 7900만원(△78.7%)이 적은 2,338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8500만원(4.5%)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23,340	223,340	199,047	△24,293	222,027	222,027	198,657	△23,370	△390
기 금	1,212,474	1,212,474	24,690	△1,187,784	874,474	877,774	35,165	△842,609	10,475
총지출	1,435,814	1,435,814	223,737	△1,212,077	1,096,501	1,099,801	233,822	△865,979	10,085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억 4,800만원으로, 14억 9,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3억원이 수납(수납률 89.8%)되고 1억 9,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448	1,448	-	1,448	1,494	1,300	194	-
합 계	1,448	1,448	-	1,448	1,494	1,300	194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221억 3700만원으로, 2,986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7%)되고 34억 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0억 3,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22,027	322,027	110	±1,750	-	322,137	298,657	3,448	20,032
합 계	322,027	322,027	110	±1,750	-	322,137	298,657	3,448	20,03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조 5,841억 1,400만원으로, 8,306억 3,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964억 6,600만원이 수납(수납률 50.3%)되고 301억 1,6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40억 5,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584,114	1,584,114	830,639	796,466	30,116	4,057
합 계	1,584,114	1,584,114	830,639	796,466	30,116	4,057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조 5,874억 1,400만원으로, 7,964억 6,600만원이 지출(집행률 50.2%)되고 8,676억 7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남북협력기금	1,584,114	1,584,114	3,300	1,587,414	796,466	-	867,607
합 계	1,584,114	1,584,114	3,300	1,587,414	796,466	-	867,607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통일부 자산은 전년 대비 2,079억 800만원이 증가한 3조 7,767억 3,2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유동자산이 1,577억 700만원 증가하고 투자자산이 446억 6,2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19억 8,900만원 증가한 2조 3,189억 3,6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542억 2,0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장기차입부채가 646억원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95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조 4,577억 9,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통일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7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2억 1,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139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7억 9,5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통일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776,732	3,568,824	207,908	5.8
		유동자산	396,959	239,252	157,707	65.9
		투자자산	2,853,394	2,808,732	44,662	1.6
		일반유형자산	415,236	405,263	9,973	2.5
		무형자산	12,497	16,014	△3,517	△22.0
		기타비유동자산	98,646	99,562	△916	△0.9
	부 채		2,318,936	2,306,947	11,989	0.5
		유동부채	472,939	527,159	△54,220	△10.3
		장기차입부채	1,844,100	1,779,500	64,600	3.6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1,897	288	1,609	558.7
	순자산		1,457,796	1,261,877	195,919	15.5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702	174,511	△180,213	△103.3
	재정운영순원가		114,871	287,766	△172,895	△60.1
	재정운영결과		113,971	287,766	△173,795	△60.4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통일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통일부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000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5,200억원이 예수되었고, 남북협력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5,200억원의 예수원금과 512억 1,100만원의 예수이자가 상환되었음.

[2024회계연도 통일부 재정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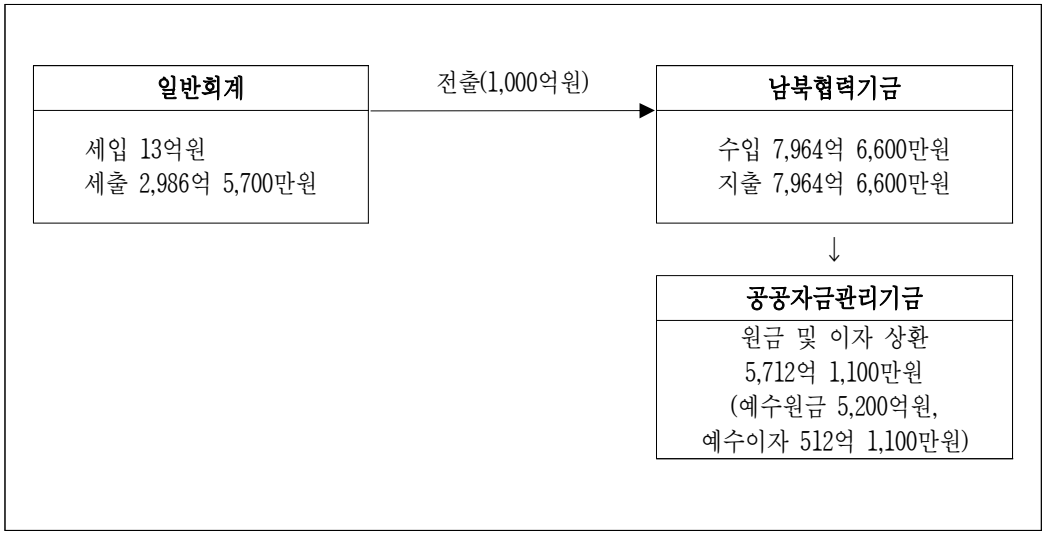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통일부는 일반회계 9개 프로그램, 69개 세부사업과 남북협력기금 7개 프로그램, 19개 세부사업에서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경주, 탈북민 안전망·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역량 확충,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 추진 등 각 분야별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음.

2024년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조사 지역 및 표본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등 계획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조사 지역 및 표본 규모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문헌조사 등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통일부가 통일플러스센터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교부금을 교부하고 이월 및 재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당초 2024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개최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므로, 통일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넷째,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행(2023.12.14.)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계획 대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장애인고용률: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통일부는 2025년 3월 말 기준 공무원 정원 533명 중 23명, 비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상시근로자 308명 중 5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장애인고용률은 각각 공무원 4.43%, 비공무원 1.62%로 나타남. 장애인 채용인원으로 보면 2021년 대비 공무원은 장애인 채용인원이 6명 증가하였으나, 비공무원은 장애인 채용인원이 오히려 1명 감소하여 장애인고용률은 0.33%p 감소하였음.

[2021년 이후 통일부 공무원 및 비공무원 장애인 채용인원]

(단위: 명,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무원	정원	611	620	536	536	533
	장애인 채용인원	17	25	24	24	23
	장애인고용률	2.78	4.03	4.48	4.48	4.43
비공무원	상시근로자	307	318	293	302	308
	장애인 채용인원	6	6	6	5	5
	장애인고용률	1.95	1.89	2.05	1.66	1.62

주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79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2) 각 연도말(2025년은 3월말) 기준
자료: 통일부

나. 검토의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나, 통일부는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비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제27조와 제79조의 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정원 및 상시근로자 수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3)]

통일부는 비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준수하지 못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통일부 비공무원 장애인 채용인원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명, %,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공무원	상시근로자수	307	318	293	302	308
	장애인 채용인원	6	6	6	5	5
	의무고용인원	10	11	11	12	12
	장애인고용률	**1.95**	**1.89**	**2.05**	**1.66**	**1.62**
	의무고용 이행여부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미이행
	고용부담금 납부여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미정
	고용부담금 납부액	**81,604,740**	**70,884,100**	**67,016,010**	**87,759,950**	미정

주) 각 연도말(2025년은 3월말) 기준
자료: 통일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3) 2022~2023년: 상시고용근로자 수의 3.6% 이상
2024년 이후: 상시고용근로자 수의 3.8% 이상

특히 국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021년 3.4%에서 2024년 이후 3.8%로 높아졌으나, 통일부의 비공무원 장애인 채용인원은 2021년 6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2021년 8,160만원이었던 고용부담금은 2024년 8,76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비공무원 중 12명을 채용해야 하나 채용공고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없어 채용이 곤란한 상황이고, 향후 장애인 채용 관련 컨설팅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임.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통일부는 2025년에 22건의 채용공고를 통해 43명의 비공무원을 모집하였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가점(서류전형 만점의 5%)을 부여하여 장애인 채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4)]

[2025년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공고 및 모집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채용공고		6	5	5	1	4	1	22
모집 인원	일반	10	11	15	2	4	1	43
	장애	-	-	-	-	-	-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채용공고

그러나 이러한 가점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일부는 향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가점 외에 2명 이상의 채용공고 시 장애인 채용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등 현재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법률 제정 취지를 존중하고 법률상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 제3호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별표 3] 채용시험 가점기준(제21조제4항 관련)

구분		부가점수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일반회계】

<세 입>

2. 과태료·가산금: 지속적인 수납률 감소에 대한 개선 필요

가. 개 요

'과태료' 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1,100만원 중 100만원이 수납(수납률 9.1%)되고 1,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5)]

'가산금' 은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90만원이 전액 미수납되었음.[6)]

[2024년도 과태료 및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10	10	11	1	10	-	9.1	10
가산금	-	-	0.9	-	0.9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가산금 수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북한을 왕래한 자, 법률에

5) 일반회계-과태료(56-563)(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6) 일반회계-가산금(58-581)(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조건으로 부과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함.

통일부의 과태료 수입을 보면, 2021년 징수결정액 4,600만원 중 3,800만원이 수납되어 82.6%의 수납률을 보였음. 그러나 2022년에는 75%, 2023년에는 40%로 수납률이 하락하였고, 2024년에는 징수결정액 1,100만원 중 100만원만 수납되어 수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과태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10	10	46	38	380.0	**82.6**	8	-
2022	10	10	8	6	60.0	**75.0**	2	-
2023	10	10	10	4	40.0	**40.0**	6	-
2024	10	10	11	1	10.0	**9.1**	10	-

자료: 통일부

[2024년 과태료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납부자(단체)	발생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태료 (56-563)	진○○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과태료 재판중)	0.5	-	0.5
	손○○		2	-	2
	권○○		1	-	1
	김○○		1	-	1
	이○○		1	-	1
	한○○		1	-	1
	조○○		1	-	1
	이○○	재외국민 방북신고의무 위반	2	-	2
	동○○○	미신고 북한주민 접촉	0.2	-	0.2
계			9.7	-	**9.7**

자료: 통일부

과태료의 수납률이 하락함에 따라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수납률도 하락하여 2024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0%를 보이고 있음.

[최근 4년간 가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	-	27	23	-	85.2	4	-
2022	-	-	4	3	-	75.0	1	-
2023	-	-	0.9	0.1	-	11.1	0.8	-
2024	-	-	0.9	-	-	-	0.9	-

자료: 통일부

[2024년 가산금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납부자(단체)	발생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가산금 (58-581)	이○○	납세기간 경과에 따른 추가 금액	0.9	-	0.9
	동○○○	납세기간 경과에 따른 추가 금액	0.084	-	0.084
계			0.984	-	0.984

자료: 통일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가 적기에 수납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법률상의 신고의무 이행 및 교류협력의 절차 준수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는 과태료 및 가산금의 조속한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예산규모 재검토 및 설문조사 불가 국가에 대한 문헌조사 등 보완 방안 모색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는 세계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 인식 조사를 통해 통일외교의 추진 보완 방향과 성과 측정 지표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원 중 2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7%)되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4년도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일정책추진	2,049	2,049	-	-	2,049	1,848	-	201	1,756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999	999	-	-	999	942	-	57	706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300	300	-	-	300	266	-	34	3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조사 지역 및 표본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등 계획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조사 지역 및 표본 규모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문헌조사 등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외교의 추진·보완방향과 성과측정지표 마련을 위해 2024년 예산에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쟁입찰을 통해 2024년 4월 23일에 통일연구원과 ‘2024년

7) 일반회계-통일정책추진(1031-300)(통일정책실)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에 착수하였음.

[2024년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계약내역]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2024년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2024.4.23. ~2024.12.18.	272,727,270	통일연구원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사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 시 28개국, 최소 25,000여 명을 표본으로 하여 온라인 패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였음. 이후 진행된 입찰공고의 제안요청서 내용에 따르면 12개국, 약 12,000~24,000명으로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가 축소되었고, 통일연구원이 제출한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에서는 8개국, 9,223명으로 정부예산안의 계획 표본규모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축소된 것이 확인되었음.[8)]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관련 정부예산안, 입찰공고, 결과보고서 상 조사지역 등 비교]

구분	2024 예산안	입찰공고	용역보고서
조사 지역 (대상국)	**28개국** (G7 및 APEC 21개국)	**12개국** [(핵심 관련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분단 경험국) 독일, 대만, 베트남, (인도태평양) 호주, 인도, 뉴질랜드, (기타) 영국, 프랑스 등]	**8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베트남)
표본 규모	**최소 25,000명**	국가별 1,000~2,000명 (유동적)	**9,223명**
조사 방법	온라인 패널 조사	온라인 설문(웹조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부가적인 조사방법 적용 가능)	온라인 설문(웹조사)
조사 문항	약 30개 문항 내외	-	26문항 (공통 24문항, 국가별 2문항)
소요 예산	**3.5억원** **→ 3억원(국회 확정)**	3억원	2억 7,273만원(계약) → 2억 6,579만원(정산)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조사대상의 축소 과정에서 예산안과 입찰공고에 대상국으로 기재되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8)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은 5,000만원(3억 5,000만원 → 3억원, △14.3%) 감액되었으나, 집행 단계에서 조사규모는 대폭 축소(25,000명 → 9,223명, △63.1%)되었음.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국임.

최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북-러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였고,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등 통일외교 관련 국제사회에서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러시아 및 중국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향후 통일외교 추진방향의 설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UN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국가 현황]

구분		국가
상임이사국(5)*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비상임이사국(10)	임기 2025년말	대한민국, 알제리, 가이아나,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임기 2026년말	덴마크, 그리스, 파키스탄, 파나마, 소말리아

주)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 행사하는 경우 안건 통과 불가
자료: UN 안전보장이사회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결국 통일부의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는 조사 지역 및 표본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특히 통일 관련 주요 이해관계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통일외교의 추진 보완 방향과 성과 측정 지표 마련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통일부는 조사를 북한과 관련성이 높은 국가로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책적 판단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8개국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수반되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국가 체제 특수성으로 자유로운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임.

또한 향후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시 러시아 및 중국은 여론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지 전문가 자문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자 2026년 예산안에 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표본 규모가 크게 축소(△15,777명, △63.1%)된 것을 단순히 다각적 분석을 위한 예산소요로 설명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집행에 있어서는 조사규모가 대상국과 조사인원에서 입찰공고한 내용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므로, 사업 관리에도 부실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직접적인 온라인 설문조사는 불가하더라도 민간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헌조사 등 보완 방안을 모색하여 통일을 둘러싼 주요국의 인식을 빠짐없이 반영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조사 결과를 도출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완 방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음.[9)]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설문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문헌조사·전문가 자문 등 보완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9) 이와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수행한 '2021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는 양국 국민의 통일인식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여 설문조사 진행(한국 국민 1,026명, 러시아 국민 1,600명 대상 조사)

4.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상 개최횟수 달성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통일 미래전략 구상·수립,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통일미래 관련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0억 5,0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3%)되고, 1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일정책추진	2,049	2,049	-	-	2,049	1,848	-	201	1,756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50	1,050	-	-	1,050	906	-	144	1,0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질의요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 시 규정에 부합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통일미래 정책개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회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설치를 위해 2023년 2월 28일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중심으로 통일미래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재정립함으로써 통일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11)]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9조제1항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10) 일반회계-통일정책추진(1031-300)(통일정책실)

11) 2023.2.28.「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통일부 보도자료)

회의를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12)]

통일부는 2023년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 회의 4회, 위원장단 회의 6회, 특별위원회 2회 개최하였음. 이는 전체회의 규정 횟수의 75%(4분기 중 3회), 분과위원회 규정 횟수의 33.3%(12월 중 4회)에 불과하여 규정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에는 전체회의 2회, 분과위원회 회의 3회, 위원장단 회의 5회, 특별위원회 3회 개최하였는데, 이는 전체회의 규정 횟수의 50%(4분기 중 2회), 분과위원회 규정 횟수의 25%(12월 중 3회)에 불과하여 오히려 2023년 대비 회의 개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전체회의	**3회** (3.15. / 8.9. / 12.20.)	**2회** (3.15. / 9.6.)	분기별 1회 개최 원칙 (연 4회)
분과회의	**4회** (3.30.~4.4. / 4.24.~5.1. / 8.18.~9.4. / 11.15.)	**3회** (4.3.~4.12. / 7.23.~8.29. / 10.10.~10.23.)	월 1회 개최 원칙 (연 12회)
위원장단 회의	6회 (4.5. / 5.3. / 6.20. / 8.2. / 9.15. / 11.14.)	5회 (2.13. / 3.29. / 4.29. / 6.10. / 9.13.)	
특별위원회 회의	2회 (3.31. / 4.21.)	3회 (4.24. / 5.2. / 5.2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2)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 또는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024년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회의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일자	참석 대상	참석 인원	회의안건	수당 집행액
위원장단 회의		2024.2.13.	6	6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리뷰 등	2,000
전체회의		**2024.3.15.**	**45**	**35**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논의 및 2기 위원회 운영방향 등**	8,850
위원장단 회의		2024.3.29.	6	6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방향 등	1,500
분과회의	**정치군사**	**2024.4.3.**	**9**	**8**	**새로운 통일담론 위원회 자문 등**	1,600
	경제	**2024.4.12.**	**8**	**5**		1,250
	사회문화	**2024.4. 9.**	**9**	**8**		2,000
	인권인도	**2024.4.12.**	**8**	**7**		1,750
	국제협력	**2024.4.12.**	**10**	**6**		1,200
특별위원회 회의		2024.4.24.	11	11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2,750
위원장단 회의		2024.4.29.	6	6	통일담론 기본방향 논의 등	1,500
특별위원회 회의		2024.5.2.	11	11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1,650
특별위원회 회의		2024.5.20.	11	8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2,000
위원장단-특위 합동회의		2024.5.29.	16	11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2,200
위원장단 회의		2024.6.10.	6	6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	1,200
분과회의	**정치군사**	**2024.7.29.**	**9**	**6**	**향후 통일담론 공론화 방향**	1,200
	경제	**2024.8.8.**	**8**	**7**		1,750
	사회문화	**2024.7.25.**	**9**	**8**		2,000
	인권인도	**2024.8.29.**	**8**	**5**		1,250
	국제협력	**2024.7.23.**	**9**	**4**		800
전체회의		**2024.9.6.**	**44**	**28**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및 위원회 운영방향 등**	5,600
위원장단 회의		2024.9.13.	6	5	국내외 공론화 등	1,000
분과회의	**정치군사**	**2024.10.16.**	**9**	**7**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1,750
	경제	**2024.10.10.**	**8**	**6**		1,500
	사회문화	**2024.10.16.**	**9**	**7**		1,750
	인권인도	**2024.10.23.**	**8**	**6**		1,200
	국제협력	**2024.10.21.**	**9**	**5**		1,000
합계			**298**	**228**		**52,250**

주) 전체회의 및 위원회 등 개최 수당 예산액: 1억 1,325만원(집행률 46.1%)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통일부는 위원들의 개별 일정을 맞춰 매 분기 또는 매달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2024년의 경우 12월 중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부득이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원칙으로 규정된 회의는 개최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통일미래 전략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중심으로 통일미래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재정립하고 통일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출범 취지를 고려하여 규정에 부합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보조금 교부방법 준수를 통해 이월·재이월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간 참여와 소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일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8억 8,500만원 중 47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6%)되고, 1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4년도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내통일기반조성	10,144	10,144	-	△1.5	10,143	9,384	-	759	8,741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4,885	4,885	-	-	4,885	4,717	-	168	2,980
자치단체경상보조	900	900	-	-	900	750	-	150	2258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	3,300	-	-	3,300	3,300	-	-	60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동조 제2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일의 기반을 조성 및 활영하고, 통일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각 권역별로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8년 인천 시범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2025년 5월 현재 인천·호남·강원센터는 운영 중이고, 경기센터는 2025년 8월 완공과 9월 개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센터는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여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13) 일반회계-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통일협력국)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 연차별 추진현황 및 계획]

<table>
<tr><th>2018년 9월</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r>
<tr><td>■ 시범센터 1개소(인천) 개관·운영</td><td>■ 인천지역 협업체계 구축</td><td>■ 인천센터 운영성과 평가</td><td colspan="4">■ 인천센터 확대운영 추진</td><td>■ 인천센터 정규화(지자체 이관)</td></tr>
<tr><td colspan="3" rowspan="4"></td><td colspan="2">■ 신규 설치 (호남센터)</td><td colspan="3">■ 신규 운영 (호남센터)</td></tr>
<tr><td rowspan="2">■ 신규센터 예산확보</td><td colspan="4">■ 신규 설치 (강원센터)</td><td colspan="2">■ 신규 운영 (강원센터)</td></tr>
<tr><td>■ 신규센터 예산확보</td><td colspan="4">■ 신규 설치 (충청 · 경기센터)</td><td>■ 신규 운영 (충청·경기)</td></tr>
<tr><td colspan="5">1개소 개소 · ·운영
[인천 시범센터]</td><td>1개소 신설
[총 2개소]</td><td>1개소 신설
[총 3개소]</td><td>2개소 신설
[총 5개소]</td></tr>
</table>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호남</th><th>강원</th><th>충청</th><th>경기</th></tr>
<tr><td colspan="2">위치</td><td>목포시 용해동</td><td>춘천시 삼천동</td><td>홍성군 홍북읍</td><td>의정부시 의정부동</td></tr>
<tr><td colspan="2">건립기간</td><td>'21.1. ~ '23.7.
('21.4. MOU 체결)</td><td>'21.1. ~ '24.10.</td><td>'22.1. ~ '25.11.</td><td>'22.1. ~ '25.8.</td></tr>
<tr><td colspan="2">건축 연면적</td><td>2,000㎡</td><td>1,597㎡</td><td>2,226㎡</td><td>2,083㎡</td></tr>
<tr><td colspan="2">총사업비(국비 50%)</td><td>6,300(3,150)</td><td>8,000(3,250)</td><td>13,740(4,000)</td><td>9,500(4,000)</td></tr>
<tr><td colspan="2">2024년도 예산</td><td>-</td><td>300
(공사비)</td><td>2,000
(공사비)</td><td>1,000
(공사비)</td></tr>
<tr><td colspan="2">면적당 공사 단가</td><td>3,150천원/㎡</td><td>5,009천원/㎡</td><td>6,172천원/㎡</td><td>3,840천원/㎡</td></tr>
<tr><td rowspan="3">지역 통일 관련 기관 입주</td><td>통일교육센터</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
<tr><td>하나센터</td><td>입주</td><td>입주</td><td>분사무소 입주</td><td>입주</td></tr>
<tr><td>통일관</td><td>신규지정</td><td>신규지정</td><td>신규지정</td><td>신규지정</td></tr>
</table>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4년도 예산에 통일플러스센터의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33억원(보조율 50%)과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9억원(보조율 50%)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나. 검토의견

통일부는 통일플러스센터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교부금을 교부하고 이월·재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가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편성한 보조금 예산의 교부 집행현황을 보면, 보조금 예산 42억원 중 40억 5,000만원을 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전라남도에 교부하였고,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15억 6,800만원이 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38.7%였으며, 본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37.3%였음.

[2024년도 사업시행주체별 보조금 교부·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통일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경기도	1,000	1,000	1,000	1,000	2,755	3,755	3,288	1,000	533	467	-	53.3
강원도	600	600	450	450	-	450	-	450	436	-	14	72.7
충청남도	2,000	2,000	2,000	2,000	1,644	3,644	1,537	2,000	-	2,107	-	-
전라남도	600	600	600	600	-	600	599	600	599	-	1	99.8
계	**4,200**	**4,200**	**4,050**	**4,050**	**4,399**	**8,449**	**5,424**	**4,050**	**1,568**	**2,574**	**15**	**37.3**

주 1) 경기: (1차, 2024.02.19.) 5억원, (2차, 2024.03.18.) 5억원
2) 강원: (1차, 2024.06.24.) 1억 5,000만원, (2차, 2024.07.18.) 1억 5,000만원, (3차, 2024.08.20.) 1억원, (4차, 2024.09.23.) 5,000만원
3) 충남: (1차, 2024.02.19.) 10억원, (2차, 2024.04.16.) 10억원
4) 전남: (1차, 2024.01.29.) 4억원, (2차, 2024.05.27.) 2억원
자료: 통일부

통일부가 충청남도에 교부한 보조금의 교부·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충청센터 건립을 위해 편성된 20억원의 보조금 중 10억원은 2024년 2월 19일에, 나머지 10억원은 4월 16일에 교부하여 보조금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음.

그러나 충청남도는 통일부로부터 교부받은 2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4,400만원을 더한 교부현액 36억 4,400만원 중 15억 3,700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이월액 중 1억 700만원이 재이월되었고, 2024년도 교부액 20억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당초 2024년도 예산을 교부할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임.

[2022~2024년 충청센터 보조금 교부·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통일부			충청남도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년	400	400	400	400	-	400	-	**400**	-
2023년	1,600	1,600	1,600	1,600	400	2,000	**356**	**1,644**	
2024년	2,000	2,000	**2,000**	2,000	1,644	3,644	**1,537**	**2,107**	-
2025년	452	452	-	-	2,107	2,107	955	-	-

주 1) 2025년 4월 30일 기준
2) 2024년 교부일자 및 금액: 1차(2024.02.19.) 10억원, 2차(2024.04.16.) 10억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제17조제1항에서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4]

그러나 2022년 교부된 보조금 중 4,400만원이 2024년까지 재이월되었고, 2024년 2분기까지 충청센터 건립공사는 입찰공고도 올리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음에도 통일부는 4월 16일까지 20억원의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으므로,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및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집행으로 볼 수 있음.[15]

1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이와 관련하여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신축공사' 입찰공고는 2024년 7월 25일에 나라장터에 게시되었음

공고명	게시일자	공사기간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계약방법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신축공사	2024.7.25.	착공일로부터 15개월	6,336,229,000원	제한경쟁

이에 대해 통일부는 충청센터 건립공사가 당초 2022년 12월까지 설계를 마쳐 2023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의 지연 및 설계 변경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2024년 6월에 설계를 마쳤고, 이에 따라 착공도 순연되어 보조금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선금·기성금 지급 및 신속한 추진으로 집행률을 높일 계획이었다는 입장임.

[통일플러스센터 충청센터 당초·현재 신축 계획 비교]

구분	당초 신축 계획(2021년 9월 기준)	현재 계획(2025년 3월말 기준)
충청센터	- 2022.1.~4. 건축기획 용역 - 2022.3.~5.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2.5.~12. 설계 - 2023.1.~2024.6. 공사	- 2022.2.~2022.5. 건축기획 용역 - 2022.3.~2022.12.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023.3.~2024.6. 설계 - 2024.8.~2025.11. 공사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선금 또는 기성금은 시공업체가 선정된 이후가 되어야 집행가능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통일부는 입찰공고조차 게시되지 않아 선금 또는 기성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시점에 이미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으므로, 여전히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교부방법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음.[16)]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라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월·재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6) 충청센터 건립 보조금 교부: 2024년 2월 19일(1차, 10억원), 2024년 4월 16일(2차, 10억원)
충청센터 건립공사 입찰공고: 2024년 7월 25일

6.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근거 규정 없는 피복비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기록센터 운영'**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실태 및 구체적 침해 사례를 조사·기록하여 실질적인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억 5,900만원 중 5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1%)되고,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4년도 기록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860	860	-	△4	856	840	-	16	964
기록센터 운영	612	612	-	△53	559	543	-	16	71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일부는 2024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관의 업무 지원을 위해 업체로부터 정장 자켓 30벌 제작에 대한 견적을 받아 피복비 소요액(297만원)을 산출하였음.[18]

이후 2024년 4월 5일 같은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피복비로 세목조정하여 유니폼을 제작하였고, 6월 7일에 제작업체로 피복비 297만원을 지급하였음.

[피복비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4.5.)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135-303	일반수용비 (210-01)	3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2135-303	피복비 (210-03	조사관 유니폼 제작

자료: 통일부

17) 일반회계-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2135-303)(북한인권기록센터)

18) 정장자켓 99,000원/벌 × 30벌 = 2,970,000원

[피복비 집행내역]

일자	비목	집행액(원)	집행내역
2024.6.7.	피목비(210-03)	2,970,000	◦ 99,000원 × 30벌 = 2,970,000원

자료: 통일부

나. 검토의견

통일부는 기록센터 운영 사업 추진 시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조사관 지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하였으므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시 조사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피복비로 세목조정하여 유니폼을 제작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를 근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은 피복비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피복비를 지급하고 기타 지원 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피복비 관련 내용]

1-3. 피복비(210-03목)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청소 등) 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복장 관련 조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일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복무규정에 따른 내부규정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통일부의 피복비 집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해 통일부는 매년 2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통해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제복을 통해 조사관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에 권위를 부여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응답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상징이 드러나는 제복이 필요하였다는 입장이나, 내부규정 제정까지는 검토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타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산림청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각각 「산림청 산림보호 단속직원 복제 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을 마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통일부의 경우에도 이러한 근거규정 마련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일부가 근거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조사관 유니폼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피복비로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므로, 향후 근거규정 마련 전에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9]

19) 피복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타 기관 사례를 검토하여 훈령·예규 등 내부규정 제정을 통해 피복비 집행의 근거를 마련한 이후 피복비를 편성·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7.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념행사를 위한 전용 부적정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은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억 8,800만원 중 4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987	15,987	-	323	16,310	15,857	-	453	16,945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획·조정	160	160	-	328	488	484	-	4	162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	-	-	-	-	-	-	-	4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5월 21일「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매년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되었고, 후속조치로 통일부는 2024년 7월 14일 영빈관에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2024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개요]

○ 일시·장소: 2024.7.14.(일) 10:00~10:40. 청와대 영빈관
○ 참　　석: 약 200여 명(북한이탈주민, 국회·정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용기'를 기리고 기념일 제정의 의미 조명,
꿈을 향해 도전하는 북한이탈주민 응원과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
남북 주민간 연대·화합을 통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염원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 일반회계-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2331-300)(인권인도실)

나. 검토의견

당초 2024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개최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통일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당초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인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추진하였음. 이는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 3억 500만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으로 3회에 걸쳐 전용하여 총 3억 5,434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3.15.)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70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비용 충당
		210-07	30			
전용 (2024.4.19.)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56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14	
		210-07	55			
		210-14	12			
		210-15	27			
전용 (2024.7.26.)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01	3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210-01	
			52		210-14	

자료: 통일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관련 지출내역]

(단위: 원)

구분	건명	일자	금액
일반수용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용역 조달 수수료 지급	2024.8.14.	2,112,160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공간 정비	2025.7.25.	1,980,000
임차료	북한이탈주민의 날 시민참여 행사(부대행사) 장소 임차료 지급	2024.7.8.	9,077,210
일반용역비	북한이탈주민의날 상징 조형물 제작 용역 계약 준공금 지급	2024.7.17.	55,000,000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계약 준공금 지급	2024.8.14.	286,170,500
계			354,339,870

자료: 통일부

한편 「국가재정법」은 제45조에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제46조제3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21)]

통일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재정법」 제45조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을 제한하는 동법 제46조제3항에 부합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북한이탈주민에게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였으며, 국내 각계각층의 인사의 참석으로 행사의 취지와 목적이 인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행사의 목적 및 취지는 일견 공감할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 등 예산 집행상 원칙은 준수할 필요가 있음.[22)]

---

2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히 통일부는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와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탈북민 토크콘서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용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고, 이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 국회에서 동일 취지로 시정 및 주의 요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재발 방지에 특히 주의했어야 할 것임에도 동일 사례를 반복한 것으로 부적절함.[23]

따라서 통일부가 2024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국가재정법」제45조 및 제4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2) 이와 관련하여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고(예측 불가능성),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출의 시급성이 있었으며(시급성), 기존 예산을 통해 충당할 수 없었으므로(보충성), 전용이 아닌「국가재정법」제22조 등에 규정된 예비비를 통한 사업의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23) 2023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699쪽)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5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사업 추진 부적절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국내통일기반조성(1031-301)	시정, 주의	통일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에서 당초 예산계획에 없던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용역) 추진을 위하여 변경 집행을 통해 일반용역비 1억원을 조성하고 8,000만원을 집행한 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정규 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시정요구 사항	❍ 통일부는 신규사업 추진시 관련 예산을 정규예산에 편성하고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시정) ❍ 통일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8.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북한정보포털 시각화 콘텐츠 홍보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은 북한 공개정보·실상의 이해 제고를 위해 북한정보포털(nkinfo.unikora.go.kr) 내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를 카드뉴스·인포그래픽 및 웹툰 등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억 700만원 중 1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3%)되고,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2024년도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세분석 역량 강화	2,282	2,282	-	-	2,282	2,091	-	191	2,251
북한정보 콘텐츠 개선	207	207	-	-	207	183	-	24	1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통일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2024년 4월 5일에 ‘북한정보포털 시각화 콘텐츠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북한정보포털 게시를 위한 시각화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추진하였음.

[2024년 북한정보포털 시각화 콘텐츠 개발 계약 현황]

(단위: 원)

계약명	입찰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북한정보포털 시각화 콘텐츠 개발	200,000,000	2024.4.5. ~2024.12.20.	178,000,000	제한경쟁(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4) 일반회계-정세분석 역량 강화(1533-307)(정보분석국)

나. 검토의견

북한정보포털의 추정 접속자 수 대비 시각화 콘텐츠 조회수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통일부는 향후 시각화 콘텐츠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북한정보포털 시각화 콘텐츠 개발’ 계약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카드뉴스 92건, 인포그래픽 43건, 웹툰 6건, 쇼츠 7건, 주요 남북관계 연표 2건으로 총 150건으로, 북한정보포털에는 2025년 2월 14일에 게시되었으며, 2025년 7월 말까지 총 조회수는 8,318회였음.

[2024년 북한정보포털 시각화 콘텐츠 제작 건수 및 콘텐츠별 조회수]

(단위: 건, 회)

구분		제작수량	조회수	비고
카드뉴스	정치군사	18	1,416	
	경제	33	707	
	사회문화	41	1,251	북한인권보고서 8건 제작 포함
인포그래픽	정치군사	23	886	
	경제	11	261	
	사회문화	9	255	
웹툰		6	2,522	
쇼츠		7	635	
주요 남북관계 연표		2	385	
계		**150**	**8,318**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통일부

콘텐츠가 게시된 북한정보포털의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속자 수는 366만 4,786명이고, 시각화 콘텐츠 게시(2024.2.14.) 이후 접속자는 약 305만 7,169명으로 추정됨.

[2025년 월별 북한정보포털 접속자 수]

(단위: 명)

구분	접속자 수	구분	접속자 수
1월	415,646	5월	687,344
2월	383,942	6월	591,762
3월	475,901	7월	531,069
4월	579,122	**합계**	**3,664,786**

자료: 통일부

한편 통일부는 북한정보포털 첫화면에 ‘북한이해 시각화 콘텐츠’ 홍보 배너를 게시하여 북한정보포털 접속자의 시각화 콘텐츠 접근을 유도하고 있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nkinfo.go.kr) 첫화면]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nkinfo.go.kr)

그러나 2025년 2월 14일부터 7월 말까지 북한정보포털의 추정 접속자 수 305만 7,169명 대비 시각화 콘텐츠 조회수는 8,318회로, 포털 접속자의 0.27% 정도가 시각화 콘텐츠를 이용하였음.

또한 조회수(8,318회)를 콘텐츠 제작 수량(150건)과 게시기간(5.5개월)으로 나눠보면, 조회수는 시각화 콘텐츠 1건당 1개월에 10.1회이므로, 콘텐츠 1건당 조회수가 1일 1회에도 미치지 못하여 콘텐츠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한정보포털 내 시각화 콘텐츠의 노출도 제고를 위해 바로가기 기능 적용, ▲국립통일교육원·북한자료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내 시각화 콘텐츠 배너 게시, ▲유관기관 SNS 계정 등을 통해 일반국민 대상 홍보이벤트 개최 및 성적우수자에게 기념품 제공, ▲지방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교사·학생들이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음.

현재와 같이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날 경우, 텍스트 콘텐츠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북한 공개정보와 실상의 이해를 높인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통일부는 시각화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수단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9.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의무 이행 지연 부적정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6.13. 제정)」의 시행(2023.12.14.)에 따라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운영함으로써 남북 간 경제적 교류와 상호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원 중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0%)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4년도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453	453	-	-	453	297	-	156	563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100	100	-	-	100	89	-	11	3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3년 6월 13일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2월 14일에 시행되었음.

이 법 제6조제1항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의무를 통일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26)]

통일부는 2024년 5월 8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 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5년 3월

25) 일반회계-개성공단 운영 제도화(3032-303)(남북관계관리단)

2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일 산업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1~12월 중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2024~2025년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평화경제특구법 시행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	2024.5.8. ~ 2024.11.29.	국토연구원	89,090,910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연구	2025.3.5. ~ 2024.10.31.	산업연구원	254,545,45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사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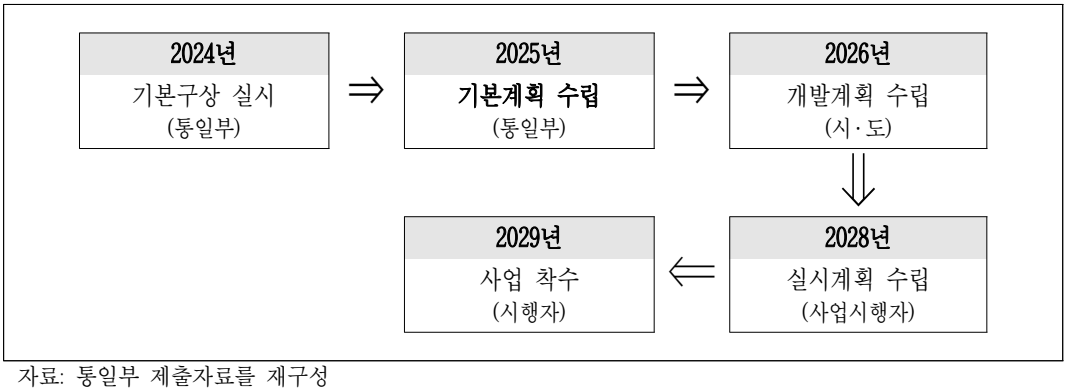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행(2023.12.14.)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계획 대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통일부는 당초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00% 증액된 1억원으로 확정·편성되었음.[27)]

27) 2024년 예산안(정부안)에 반영된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산출내역
□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23) 592 → ('24요구) 403백만원(△189백만원)
○ 평화경제특구 운영 지원 : ('24요구) 50백만원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 50백만원

그러나 통일부는 편성된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않고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은 2024년 예산안 제출 시의 계획보다 약 1년이 늦어지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도 순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방대한 사업규모와 파급효과, 타 부처 특구 용역 사례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확보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했다는 입장임.

당초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함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통일부가 사업 예산 검토에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고, 법률상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지연시킨 것임.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부터 평화경제특별구역 운영까지 기본계획에 이어지는 후속 절차도 지연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률 시행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통일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남북협력기금】

<수 입>

1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기타민간이자수입: 다각적인 회수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는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372억 4,700만원 중 61억 600만원이 수납(수납률 16.4%)되고 272억 2,3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9억 1,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28]

'기타민간이자수입' 은 남북 교역 및 경협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남한기업 앞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는 것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45억 3,000만원 중 14억 9,800만원이 수납(수납률 33.1%)되고 28억 9,3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억 3,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29]

[2024년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2,560	22,560	37,247	6,106	27,223	3,918	16.4	22,560
기타민간이자수입	3,856	3,856	4,530	1,498	2,893	139	33.1	3,85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8) 남북협력기금-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기획조정실)

29) 남북협력기금-기타민간이자수입(54-544)(기획조정실)

나. 검토의견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에 대한 대출원금 및 그 이자 비목인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민간이자수입의 수납률이 202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향후에도 기업 점검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를 통해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2월 말 기준 남북협력기금의 민간에 대한 대출잔액은 총 3,527억 1,800만원으로,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 중단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 금리 및 담보 유지 조건 하에 만기도래 시점에 1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상환유예된 금액은 1,746억원임.

[2024년 12월 말 기준 대출종류별 잔액 및 대출조건]

(단위: 백만원)

구분	잔액	대출조건
교역자금대출	4,842	연 1.5%
경협자금대출	108,717	연 1.0 ~ 1.5%
개성공단운영대출	80,796	연 1.0%
특별대출	158,363	(1차, 2차) 연 1.5 ~ 2.5% (3차) 연 1.5% (4차) 연 1.0% (개성공단 1, 2, 3차) 연 1.0%
합 계	352,718	만기도래 시점에 1년 단위로 상환유예 조치 시행 중

자료: 통일부

[연도별 상환유예액 현황]

(단위: 개, 억원)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업체수	238	251	241	269	264	248	230	229	212	242
상환유예액	1,253	1,236	1,287	1,561	2,257	2,663	1,760	1,830	1,746	1,733

주) 상환유예액: 원금 기준
자료: 통일부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징수결정액은 해당연도 만기도래하는 원금(원리금 상환유예한 금액은 제외)으로, 이 중 수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연체원금인데, 2020년 이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하락하는 추세임.

2024년의 경우 징수결정액 372억 4,700만원 중 61억 600만원이 수납(수납률 16.4%)되고 272억 2,3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9억 1,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16년 이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2017	66,417	34,785	8,658	26,127	-	13.0	24.9
2018	53,084	30,744	7,905	22,839	-	14.9	25.7
2019	36,041	27,101	6,647	20,454	-	18.4	24.5
2020	62,143	32,555	10,552	22,003	-	17.0	**32.4**
2021	73,099	36,798	9,218	27,580	-	12.6	**25.0**
2022	10,600	32,522	6,166	26,356	-	58.2	**19.0**
2023	18,241	32,178	5,280	26,898	-	28.9	**16.4**
2024	22,560	37,247	6,106	27,223	3,918	27.1	**16.4**

자료: 통일부

기타민간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은 해당연도 기일이 도래한 이자로, 이 중 수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연체이자인데, 연체원금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이후 수납률이 하락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징수결정액 45억 3,000만원 중 14억 9,800만원이 수납(수납률 33.1%)되고 28억 9,3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억 3,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16년 이후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2017	13,192	2,502	2,305	197	-	17.5	92.1
2018	7,985	3,269	2,169	1,100	-	27.2	66.4
2019	7,002	2,876	1,842	1,034	-	26.3	64.0
2020	4,992	2,850	1,712	1,138	-	34.3	**60.1**
2021	4,062	3,052	1,384	1,668	-	34.1	**45.3**
2022	3,411	2,513	804	1,709	-	23.6	**32.0**
2023	3,856	3,604	1,440	2,164	-	37.3	**40.0**
2024	3,856	4,530	1,498	2,893	139	38.9	**33.1**

자료: 통일부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기금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등 기업 동태 점검 확대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리스크관리 노력을 병행하고, 부실채권[30]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실시 후 가압류, 담보권 행사 등 적극적인 회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추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등 다각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연도별 연체기업수 및 연체액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연체기업수와 연체액이 감소하는 연도도 있으나, 이는 대출 상각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에 따른 것이고, 연체 기업수와 연체액은 증가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연체기업수 및 연체액 현황]

(단위: 개, 억원)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업체수		62	66	70	63	71	78	52	56	43
연체액		215	263	239	215	231	292	281	291	301
	원금	215	261	228	205	220	276	264	269	272
	이자	-	2	11	10	11	17	17	22	29

자료: 통일부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폐업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산조사 결과 회수 가능 재산이 없거나, 파산 · 면책 등 법적 절차 완료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출채권에 대해 현재까지 총 6회의 상각(총 86개사, 139억 8,000만원)을 실시하였음.[31]

[기금 대출 상각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1년	2014년	2016년	2019년	2022년	2024년	계
기업 수	7	6	5	18	30	20	86
상각금액	1,055	293	743	3,587	4,245	4,057	13,98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만기도래 시점에 1년 단위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수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기타민간이자수입의 미

30) 소멸시효 도래, 파산면책 등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처리 실시

31) 2024년 6월 「남북협력기금 부실채권 대손상각 처리(제202차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 중 20개사*에 대한 상각 처리
* 대출잔액 3,917,798,020원 및 미수이자 138,868,470원

수납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회수가능성이 없어진 채권대출채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대출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에도 기업 점검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를 지속함으로써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　타】

11.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통일부에 대해 시정요구 36건(중복 3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9건·주의 13건·제도개선 17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9	13	17	3	36
예비비	-	-	-	-	-	-	-
합계	-	-	9	13	17	3	36

통일부는 시정요구사항 36건에 대해 29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0.6%)하고 7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36	29	80.6	7
예비비	-	-	-	-
합계	36	29	80.6	7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통일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통일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30) 통일부는 이산가족 ‘서신 제작 교환’(영상편지 제작)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아카이브 제작 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00만원(140.0%)이 많은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65.0%)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	5	20	15	5	5	7	2	△13
총수입	5	5	20	15	5	5	7	2	△13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9억 7,800만원(△2.8%)이 적은 339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900만원(3.3%)이 증가함.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4,033	34,033	32,907	△1,126	34,974	34,974	33,996	△978	1,089
총지출	34,033	34,033	32,907	△1,126	34,974	34,974	33,996	△978	1,089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00만원이 수납(수납률 36.8%)되고 1,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5	5	-	5	19	7	12	-
합 계	5	5	-	5	19	7	12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49억 7,400만원으로, 이 중 339억 9,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2%)되고 9억 7,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4,974	34,974	-	-	-	34,974	33,996	-	978
합 계	34,974	34,974	-	-	-	34,974	33,996	-	97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산은 전년 대비 1,591만원이 감소한 288억 8,903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498만원 감소하고 무형자산이 1,092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채는 없음.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50억 8,522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298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50억 7,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537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8,889	28,905	△16	△0.1
		유동자산	-	-	-	-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8,350	28,355	△5	-
		무형자산	539	550	△11	△2.0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	-	-	-
		유동부채	-	-	-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8,889	28,905	△16	△0.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5,085	34,132	953	2.8
	재정운영순원가		35,078	34,112	966	2.8
	재정운영결과		35,078	34,112	966	2.8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4년도 주요 정책추진 방향인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를 위해, 일반회계(2개 프로그램)에서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및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총 11개 세부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일부 분과위원회가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자문위원에게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함.

둘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일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지 않음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회의: 개의정족수 미충족 회의의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 등

가. 개　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는 「대한민국헌법」 제9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라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임.[2)3)]

1981년 제1기 자문회의가 구성된 이래 현재 제21기 자문회의(위원 임기 2년) 21,984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임기가 만료되는 2025년 8월 31일 이후 제22기 자문회의가 구성될 예정임.

[제19~21기 자문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제19기 자문회의 (2019.9.1.~2021.8.31.)	제20기 자문회의 (2021.9.1.~2023.8.31.)	제21기 자문회의 (2023.9.1.~2025.8.31.)
국내	지역대표		3,118	2,944	3,288
		지역부의장	25	25	25
		지역협의회장	271	273	273
	직능대표		12,282	13,156	14,658
	소계		**15,400**	**16,100**	**17,946**
해외	재외동포대표		3,600	3,900	4,038
총계			**19,000**	**20,000**	**21,98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1.7%를 차지하는 2개의 단위사업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및 '지역협의회 활동지원'에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 예산현액 250억 8,200만원 중 248억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0%)되고, 2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주요사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비중
■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4,530	4,530	4,488	42	71.7
- 자문회의 운영	4,530	4,530	4,488	42	
■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20,552	20,552	20,349	203	
- 자문위원 역량강화	2,589	2,583	2,529	54	
- 지역협의회 운영	12,265	12,265	12,141	124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5,698	5,704	5,679	25	
소계	25,082	25,082	24,837	245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7	37	37	-	0.1
■ 정보화사업	474	474	427	47	1.4
■ 사무처 인건비	7,082	7,088	6,463	625	20.3
■ 기본경비	1,905	1,899	1,858	41	5.4
■ 시설관리	394	394	374	20	1.1
총계	34,974	34,974	33,996	978	100.0

주) 비중은 예산액 기준임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법정회의로 운영위원회(연 4회), 상임위원회(연 1회), 분과위원회(연 4회), 지역회의(격년), 지역협의회(분기별)를 운영하고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회의 구성, 개최횟수 및 정족수]

구분	구성	개회	정족수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 운영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수석부의장(부의장은 운영위원)	▸매년 4회 이상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구분	구성	개회	정족수
상임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 처리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수석부의장(부의장은 상임위원)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분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둘 수 있음(10개 이내)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의장이 임명하는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 포함 -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임	▸매년 4회 개회	
지역회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	▸격년 1회 개회	
지역협의회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 위원으로 구성	▸분기별 개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주) 지역회의(짝수년도)는 출범회의(전체회의, 홀수년도)와 번갈아서 격년 1회 개최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법정회의를 보면 운영위원회는 출석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출석률은 약 60%, 지역협의회는 약 50%대를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음. 지역회의의 경우 18개 국내지역회의의 평균 출석률이 49.5%로 나타나 다른 법정회의에 비해 특히 저조하였음.

[2022~2024년도 법정회의 출석률]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운영위원회 (연 4회)	1회	94.0	83.0	82.0
	2회	91.1	76.0	86.0
	3회	79.6	97.9	90.0
	4회	-	91.7	88.0
	평균	88.2	87.0	**86.5**
상임위원회(연 1회)		63.0	71.2	**60.0**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분과위원회 (연 4회)	1회	76.5	52.8	66.1
	2회	69.5	49.1	62.0
	3회	65.7	74.0	68.8
	4회	70.4	63.2	60.9
	평균	70.6	59.7	**64.4**
지역회의 (격년)	국내	53.0	-	**49.5**
	해외	45.9	-	63.1
	평균	51.7	-	**52.0**
지역협의회 (분기별)	1분기	54.2	51.5	56.4
	2분기	54.6	47.1	52.1
	3분기	54.7	78.2	54.9
	4분기	51.9	57.6	51.9
	평균	53.9	58.0	**53.8**

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출범회의가 없는 연도(짝수년도)에 국내 18개 시·도별(이북5도 포함)로 국내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자문위원들은 국내로 초청하여 해외 지역회의를 개최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일부 분과위원회가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자문위원에게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출석률을 살펴보면 2024년 1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회의 출석률은 49.1%, 2024년 2분기 종교·민족화합분과회의 출석률은 48.1%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의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4]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분과위원회)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하고, 그 회의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년도 분과위원회 중 출석률이 50% 미만인 회의]

(단위: 명, %, 원)

분과명	일자	출석대상	출석인원	출석률	출석수당
인권·탈북민지원	2024.02.28.	55	27	**49.1**	1,350,000
종교·민족화합	2024.05.17.	54	26	**48.1**	1,300,000
합계					**2,650,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제13조에서 자문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4년도 1·2분기 분과위원회 회의의 개의정족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출석위원에게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여 총 6,250만원의 회의출석수당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265만원은 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두 분과회의에 대한 회의출석수당이었음.[5)]

[2024년도 분과위원회 관련 회의출석수당 지급내역]

(단위: 명, 원)

구분	회의명	출석인원	지급액	비고
1분기	분과위원회	**322**	16,100,000	50,000원 × 322명
2분기	분과위원회	**303**	15,150,000	50,000원 × 303명
3분기	분과위원회	331	16,550,000	50,000원 × 331명
4분기	분과위원회	298	14,700,000	50,000원 × 294명*
합계		**1,254**	**62,500,000**	

주) 4분기 출석인원 298명 중 1시간 미만 참석인원(온라인) 4명은 회의출석수당 지급에서 제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도 1·2분기 분과위원회 출석률]

(단위: 명, %)

구분	분과명	회의일자	출석대상	출석인원	출석률
1분기	기획·조정	2024.01.17.	27	22	81.5
	통일·안보	2024.02.29.	48	33	68.8
	인권·탈북민지원	**2024.02.28.**	**55**	**27**	**49.1**
	국제협력	2024.02.26.	88	59	67.0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조(수당과 여비 등) ① 통일자문회의, 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지역회의·협의회 및 그 지회,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명, %)

구분	분과명	회의일자	출석대상	출석인원	출석률
	경제·과학	2024.02.21.	59	40	67.8
	교류·협력	2024.02.19.	58	48	82.8
	종교·민족화합	2024.02.20.	53	31	58.5
	국민소통	2024.02.28.	60	41	68.3
	청년	2024.02.27.	39	21	53.8
	합계		487	322	66.1
2분기	기획·조정	2024.04.02.	27	22	81.5
	통일·안보	2024.05.23.	48	32	66.7
	인권·탈북민지원	2024.05.20.	56	39	69.6
	국제협력	2024.05.17.	88	55	62.5
	경제·과학	2024.05.21.	59	34	57.6
	교류·협력	2024.05.22.	58	34	58.6
	종교·민족화합	**2024.05.17.**	**54**	**26**	**48.1**
	국민소통	2024.05.22.	60	39	65.0
	청년	2024.05.14.	39	22	56.4
	합계		489	303	6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회의출석수당은 자문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개의한 회의에 출석하여 수행한 자문 또는 정책제안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는 반대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임. 이를 고려하면 법령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여 개의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개의되지 못한 것이므로 출석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임.[6)]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가 정족수는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정책건의안 토의 등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져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회의의 개의정족수가 「국회법」 등에 비추어 높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여비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출장이 변경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지급이 가능하고 공무형편상 부득이하게 출장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발생한 취소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회의가 개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여비 지급이 가능하겠으나, 회의출석수당은 개의되지 않은 회의에서 토의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

6)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현재 예산상의 제약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문위원에게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라도 이를 통해 정족수 규정이 충족되었거나 법령상의 개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분과위원회 회의에 회의출석수당을 집행한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원활한 정책건의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온라인 통일정책건의 시스템'은 활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자문위원 대상 안내 등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의 원활한 정책건의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온라인 통일정책건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이 시스템은 최초 자문위원만 접속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통일정책과 관련한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음.

온라인 건의시스템을 통한 정책제안은 2020년 438건(월평균 36.5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176건(월평균 14.7건)으로 2020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25년에는 6월 30일까지 월평균 13.3건으로 시스템의 활용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온라인 통일정책건의 실적]

(단위: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월	건(평균)	월	건(평균)	월	건(평균)	월	건(평균)	월	건(평균)	월	건(평균)
1월	19	1월	17	1월	15	1월	5	1월	32	1월	9
2월	9	2월	25	2월	4	2월	3	2월	15	2월	6
3월	86	3월	36	3월	8	3월	8	3월	25	3월	5
4월	51	4월	15	4월	11	4월	9	4월	8	4월	7
5월	54	5월	37	5월	4	5월	2	5월	11	5월	37
6월	49	6월	37	6월	13	6월	2	6월	11	6월	16
7월	46	7월	19	7월	10	7월	7	7월	18	7월	-
8월	25	8월	7	8월	11	8월	2	8월	16	8월	-
9월	25	9월	9	9월	24	9월	33	9월	17	9월	-
10월	20	10월	15	10월	8	10월	47	10월	13	10월	-
11월	26	11월	17	11월	5	11월	32	11월	7	11월	-
12월	28	12월	6	12월	16	12월	20	12월	3	12월	-
계	438 (36.5)	계	240 (20.0)	계	129 (10.8)	계	170 (14.2)	계	176 (14.7)	계	80 (13.3)

주) 2025년 6월 30일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온라인 통일정책건의 시스템의 경우 자문위원이 직접적인 회의 출석과 관계없이 전자적인 형태로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자문위원의 상시적인 자문 및 정책건의를 실현하고, 법정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자문위원에게도 정책건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온라인 건의시스템 활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에게 문자·전자우편 또는 안내책자 발송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고령 및 국외 거주 자문위원의 온라인 접근 및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수의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절차 준수 필요

가. 개 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4년에 총 85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36억 487만원을 지출하였음. 이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총 53건, 11억 6,685만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32.4%를 차지하였음.

[2024회계연도 계약체결 건수 및 금액]

(단위: 원)

세부사업 (세부사업코드)	계약방법			계
	제한경쟁	수의계약	나라장터 쇼핑몰	
자문회의 운영 (1031-300)	445,800,000 (2건)	111,886,900 (6건)	-	557,686,900 (8건)
정보화사업추진 (1033-500)	377,520,000 (2건)	14,300,000 (1건)	29,058,650 (5건)	420,878,650 (8건)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 (1111-250)	138,240,000 (1건)	384,901,020 (36건)	2,708,000 (3건)	525,849,020 (40건)
전산운영경비 (1111-251)	-	64,756,000 (4건)	48,432,840 (9건)	113,188,840 (13건)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822,400,000 (4건)	536,003,200 (4건)	82,566,400 (4건)	1,440,969,600 (12건)
지역협의회 운영 (1131-301)	-	24,000,000 (1건)	-	24,000,000 (1건)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491,295,700 (2건)	31,000,000 (1건)	-	522,295,700 (3건)
합계	2,275,255,700 (11건, 63.1%)	**1,166,847,120 (53건, 32.4%)**	162,765,890 (21건, 4.5%)	**3,604,868,710 (85건, 1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일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지 않음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0조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수의계약(5건, 2억 6,593만원)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되어 시행령의 수의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음.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2024년 수의계약 중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단위: 원)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수의계약사유
청사 노후시설 개선(안전보강) 공사 계약	2024.5.17.	141,200,000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1)]
2025년도 업무수첩 제작	2024.12.26.	34,728,000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2024년 국내 정기회의 영상제작 용역	2024.2.9.	31,000,000	
제21기 국내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회의 회의시설 등 계약	2024.2.19.	35,000,000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
2024년 행정실장 직무연수 행사장 임차료 계약	2024.3.18.	24,000,000	
합계		265,928,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시행령의 규정 해석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임의의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시행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받는 것은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계약절차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기관이 임의로 지정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고 하여 시행령의 절차를 준수하거나 취지에 부합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수의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달청이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품목 중 일부를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요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8)9)]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음. 특히 의자·책상·파티션 및 프린터 등 수요기관에서 자주 구매하는 물품은 여러 제조사의 물품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수요기관은 사양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24년 체결한 수의계약 중 16건(6,838만원)의 계약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을 구매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임.

[2024년 수의계약 중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한 사례]

(단위: 원)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수의계약사유
사무용 집기(서가) 구입	2024.6.24.	14,245,2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사무용 집기(책상 등) 구입	2024.2.6.	13,505,000	
항온항습기 구매	2024.3.11.	10,956,000	
미디어소통과 사무용 복사기 구입	2024.8.30.	6,500,000	
사무용 집기(책상 등) 구입	2024.4.22.	4,502,520	
사무용 집기(수납장) 구입	2024.1.17.	4,257,000	
건조기, 냉장고 구매의 건	2024.7.16.	3,800,000	
사무용 집기(책장 등) 구입	2024.12.18.	1,773,600	
사무용기기(프린터 등) 구입	2024.4.22.	1,727,000	
사무용 가구(파티션 등) 구입	2024.10.31.	1,721,000	
사무용 집기(탁자,의자) 구입	2024.7.16.	1,672,000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단위: 원)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수의계약사유
보안용카메라(CCTV) 구입	2024.3.30.	1,386,000	
사무용기기(냉장고) 구입	2024.11.27.	880,000	
사무용기기(청사관리용 밥솥) 구입	2024.8.14.	682,000	
사무실용 냉장고 및 모니터 구입 지출	2024.10.23.	440,000	
사무용 집기(의자) 구입	2024.8.8.	330,000	
합계		**68,377,3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10]에는 세부품명 '책장(서가)'으로 19,865건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책상'으로 20,240건, '항온항습기'로 164건, '사무실칸막이(파티션)'로 22,268건 등이 등록되어 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24년도에 수의계약을 통해 같은 품목의 물품을 구매한 것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특히 항온항습기(HT-E7.5GC5), 전자복사기(Apeos C3070 GK), 사무실칸막이(GRN1015) 등 일부 물품은 구매한 제품과 동일제품이 등록되어 있어 구매 절차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임.[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매물품과 동일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단위: 원)

품목	규격명	물품식별번호	단가
항온항습기	HT-E7.5GC5, 냉방22/난방24kW, 가습8kg/h, 공냉식/상향식	23057269	11,500,000
전자복사기	(CN)Apeos C3070 GK, 컬러/흑백30cpm	24386421	6,600,000
전기밥솥	(CN)RR-40E, 40인용	25226280	290,000
사무실칸막이	GRN1015, 1000×30×1570mm	24268556	247,000
사무실칸막이	GRN8015, 800×30×1570mm	24268558	22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물품의 구매 계약 검토 시 품목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0) 2025년 6월 나라장터 쇼핑몰 검색 기준

11) 동일제품 중 일부 품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이었으나, 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여야 함.

【기　타】

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시정요구 3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제도개선 1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	1	-	3
예비비	-	-	-	-	-	-	-
합계	-	-	-	2	1	-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시정요구사항 3건에 대해 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6.7%)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3	2	66.7	1
예비비	-	-	-	-
합계	3	2	66.7	1

재외동포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87억 9,300만원(97,700.0%)이 많은 88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100만원(880,100.0%)이 증가함.[1)2)]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1	1	9	9	8,802	8,793	8,801
총수입	-	-	1	1	9	9	8,802	8,793	8,801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9억 6,000만원(△5.6%)이 적은 1,007억원으로, 전년 대비 585억 7,100만원(139.0%)이 증가함.

문의 : 손재일 예산결산조사관 sonjaeil@assembly.go.kr (02-6788-5676)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 舊 재외동포재단 해산 시 보유자금 반납 58억 2,000만원, 산하기관(재외동포협력센터) 2023년도 출연금 반납 22억 8,100만원, 재외공관 추진사업 및 동포단체 지원금 반납 등 6억 9,700만원 발생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42,129	42,129	106,660	106,660	100,700	△5,960	58,571
총지출	-	-	42,129	42,129	106,660	106,660	100,700	△5,960	58,571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00만원으로 88억 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8억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9	9	-	9	8,803	8,802	1	-
합 계	9	9	-	9	8,803	8,802	1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99억 100만원으로, 이 중 1,007억원이 집행(집행률 91.6%)되고 8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3억 8,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06,660	106,660	3,241	-	-	109,901	100,700	820	8,381
합 계	106,660	106,660	3,241	-	-	109,901	100,700	820	8,38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재외동포청 자산은 전년 대비 132억 3,000만원이 증가한 212억 1,9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3억 7,0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이 113억 6,9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20억 1,8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순감하였는데, 유동부채 9,000만원, 장기충당부채 1,300만원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3억 3,300만원이 증가한 212억 1,9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70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7억 9,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90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8억 5,7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1,219	7,989	13,230	165.6
		유동자산	1,321	1,691	△370	△21.9
		투자자산	8	-	8	-
		일반유형자산	6,177	4,159	2,018	48.5
		무형자산	12,116	747	11,369	1,522.0
		기타비유동자산	1,598	1,391	207	14.9
	부 채		-	103	△103	△100.0
		유동부채	-	90	△90	△100.0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13	△13	△100.0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1,219	7,886	13,333	169.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70,322	24,523	45,799	186.8
	재정운영순원가		90,206	38,349	51,857	135.2
	재정운영결과		90,206	38,349	51,857	135.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재외동포청은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2024년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2개 프로그램, 31개 세부사업을 통해 재외동포 보듬기, 한인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모국과의 유대 강화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사업은 상담사의 평균응대시간이 근무시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외동포 대상 홍보방안 모색 등을 통해 상담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위탁용역’ 사업은 2024년도 학술포럼 개최 시 사업추진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임차료에 포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향후 임차료 집행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은 연례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차년도 1월 동계연수를 진행함으로써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을 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연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수의계약: 물품 구매계약 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

가. 개　요

재외동포청은 2024년에 총 182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238억 4,942만원을 지출하였음. 이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총 80건, 101억 2,606만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2.5%였음.

[2024회계연도 계약방법에 따른 계약금액 및 건수]

(단위: 원)

구분	계약방법				계
	일반경쟁	제한경쟁	나라장터 쇼핑몰	수의계약	
계약금액	2,602,434,960 (4건, 10.9%)	8,889,256,330 (32건, 37.3%)	2,231,666,930 (66건, 9.3%)	**10,126,063,060 (80건, 42.5%)**	23,849,421,280 (182건, 100%)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재외동포청은 조달청이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품목 중 일부를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재외동포청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요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4)]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 등록하고 있음. 특히 소파·침대 및 청소기 등 수요기관에서 자주 구매하는 물품은 여러 제조사의 물품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수요기관에서 사양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음.

재외동포청은 2024년에 총 18건(8억 6,188만원)의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12월 23일에 스튜디오 촬영장비 및 조명 구매를 위해 체결한 2,198만원의 수의계약 등 8건(4,670만원)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였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것임.

[2024회계연도 공사·물품·용역·임차 계약건수 및 금액]

(단위: 원, 건)

구분	일반경쟁	제한경쟁	나라장터 쇼핑몰	수의계약	계
공사	-	-	-	304,488,100 (7)	304,488,100 (7)
물품	-	-	2,107,031,330 (63)	**861,882,630 (18)**	2,968,913,960 (81)
용역	2,602,434,960 (4)	8,889,256,330 (32)	-	8,848,429,020 (51)	20,340,120,310 (87)
임차	-	-	124,635,600 (3)	111,263,310 (4)	235,898,910 (7)
합계	2,602,434,960 (4)	8,889,256,330 (32)	2,231,666,930 (66)	10,126,063,060 (80)	23,849,421,280 (182)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2024년도 수의계약 중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한 사례]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재외동포청 스튜디오 촬영장비 및 조명 구매 [캠코더, 오디오믹서, AV스위쳐, 영사스크린 등]	2024.12.23. ~2024.12.31.	21,980,200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2)]
영사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 구성을 위한 L3스위치 구매[네트워크스위치]	2024.2.20. ~2024.3.31.	9,980,000	
재외동포청장 관사 비품 구매(침대, 식탁) [침대, 식탁, 협탁, 매트리스 등]	2024.8.21. ~2024.8.24.	6,244,000	
물품 구매 요청(소파)	2024.3.4. ~2024.3.5.	4,474,800	
재외동포청장 관사 비품 구매(침대)	2024.9.3. ~2024.9.30.	1,615,000	
관사 비품 구매(청소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2024.8.14. ~2024.8.19.	1,114,800	
재외동포청장 관사 비품 구매(청소기)	2024.11.29. ~2024.12.24.	890,000	
재외동포정책국 사무용 가구 (책상, 캐비닛)	2024.3.18. ~2024.3.22.	401,500	
합계		**46,700,300**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5]에는 세부품명 '캠코더'로 조달청이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39건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세부품명 '오디오믹서' 305건, 'AV스위쳐' 281건, '영사용스크린' 448건 등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어, 재외동포청이 2024년도에 수의계약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물품을 구매한 것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캠코더(XA60), AV스위쳐(Procast Live 51), 네트워크스위치(C9300-24T-A)는 재외동포청이 구매한 물품과 동일한 제품이 등록되어 있어 구매 절차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임.[6][7]

5) 2025년 6월 나라장터 쇼핑몰 검색 기준

6) ·오디오믹서: 여러 오디오 신호를 하나로 합쳐주거나, 각각의 오디오 신호의 볼륨, 톤, 위치 등을 조절하는 장치
·AV스위쳐: 여러 개의 비디오 또는 오디오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장비
·네트워크스위치: 컴퓨터와 같은 여러 IT 장치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장비

7) 동일제품 중 일부 품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이었으나, 이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 구매를

[재외동포청 구매물품과 동일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단위: 원)

품목	규격명	물품식별번호	단가
캠코더	(JP)XA60, 829만화소	24768051	2,310,000
AV스위쳐	Procast Live 51, 5in/1out	23459186	8,900,000
네트워크스위치	(CN)C9300-24T-A, 24port	23724115	10,434,000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향후 물품의 구매 계약 검토 시 품목에 따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요청하여야 함.

【일반회계】

<세 출>

2.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상담 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은 재외동포를 위한 24시간 365일 무중단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3억 2,000만원 중 12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5%)되고,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4년도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2,159	2,159	-	-	2,159	2,072	-	87	1,917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1,320	1,320	-	-	1,320	1,260	-	60	1,480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위탁운영	577	577	-	-	577	551	-	26	388
재외동포서비스 지원센터 운영개선	262	262	-	-	262	261	-	1	4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재외동포청은 전세계 708만 재외동포 대상 영사확인, 해외이주, 재외국민등록, 국적, 병무, 출생 등 각종 민원상담을 위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소관으로 관리자 3명, 상담사 22명으로 구성되며, 주·야간 교대근무로 24시간 무중단 5개 국어(한·영·일·중·러)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중임.

8) 일반회계-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5031-302)(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2024년도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계약내역]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2024-2025년도 재외동포 민원콜센터 및 영사서비스 실무연구센터 통합 위탁운영 용역	2024.1.1. ~2024.12.31.	1,799,501,060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상담사 인원]

(단위: 명)

구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계
상담사	주간	4	4	3	3	14
	야간	3	1	2	2	8
	합계	7	5	5	5	22

주) 총인원 25명 = 관리자 3명 + 상담사 22명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는 재외동포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4년 1월 19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1:1 채팅 상담을 개시하였고, 2024년 4월 30일에는 데이터통화(웹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24년 9월 10일에는 데이터채팅(웹챗) 서비스를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민원상담건수는 2023년 21,253건에서 2024년 57,509건으로 36,256건(63.0%) 증가하였음.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상담건수]

(단위: 건)

구분	대표전화	데이터통화(웹콜)	카카오톡	데이터채팅(웹챗)	계
2023	21,253	-	-	-	21,253
2024	47,912	3,427	5,227	943	57,509 (+36,256)

주 1) 상담응답호 기준
2) 2023년 6월 이후 상담건수 기준(2023.6.5. 재외동포청 개청)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상담사의 평균응대시간이 근무시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외동포 대상 홍보방안 모색 등을 통해 상담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평일 기준 상담사 1인당 전화응대 평균건수는 8·9시 출근 주간조(08~17시, 09~18시) 21.5건, 12시 출근 주간조(12-21시) 14.1건, 야간조(21~08시) 3.1건으로 나타남. 대표전화 평균응대시간을 적용하면 8·9시 출근 주간조 기준 평균응대시간이 96분 45초로 환산되고, 이는 상담사 1일 근무시간(8시간 기준)의 약 20.2%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9)]

[2024년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상담사 평일 1인당 전화응대(대표전화/웹콜) 건수]

(단위: 건)

구분	주간조		야간조
	8·9시 출근	12시 출근	심야(격일제)
평균건수	**21.5**	14.1	3.1
평균응대시간	**96분 45초**	63분 27초	13분 57초

주 1) 월~금요일 기준(주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2) 평균응대시간: 통화당 4분 30초 적용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4년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채널별 평균응대시간]

구분	대표전화	웹콜	카카오톡	웹챗
평균응대시간	4분 28초	4분 25초	14분 47초	11분 33초

주) 카카오톡 상담 2024.1.19. 개시 / 웹콜 2024.4.30. 개시 / 웹챗 2024.9.10. 개시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2024년 채팅상담을 포함한 전체 상담건수는 총 57,509건으로, 상담사 1인당 상담건수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대표전화 9.1건, 웹콜 1건, 카카오톡 1.1건, 웹챗 0.6건을 응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수치를 평균응대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68분 17초에 해당

9) 2024년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상담사 평균 투입인원

(단위: 명)

구분	현원	평균투입인원
주간조(8·9·12시 출근)	14	10
야간조(격일제)	8	3
합계	22	13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하는데 이는 상담사 1일 근무시간(8시간 기준)의 약 14.2%에 해당함.

이와 같이 재외동포청은 카카오톡·웹콜 및 웹챗을 도입하여 재외동포들의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월별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일 주간조 1인당 전화응대건수 및 2024년 전체 상담건수를 통해 산출한 평균응대시간은 각각 근무시간의 20.2%, 14.2%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기관 홈페이지와 공항 및 청사 옥외광고, SNS 홍보영상 등으로 민원콜센터를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전체 재외동포 대비 이용실적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특히 재외동포청 SNS 공식채널[10]의 홍보영상은 2024년 9월과 11월에 게시되었음에도 2025년 6월 현재까지 각각 277회, 455회 조회에 그치는 등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11]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향후 재외동포 대상 민원콜센터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상담실적 및 상담사 평균응대시간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0) 재외동포청 Overseas Koreans Agency, Korea(www.youtube.com/@OKAKOREA)

11) 민원콜센터의 2024년 상담실적은 57,509건이고 재외동포는 약 708만명으로 재외동포 10명 중 약 0.8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임차료 집행 시 예산집행지침 준수 및 소요 예산 재산정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위탁용역'** 은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학술포럼 개최 용역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8,700만원 중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2%)되고,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4년도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위탁용역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682	682	66	-	748	587	106	55	1,114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188	188	36	26	250	210	22	17	253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위탁용역	103	103	-	△16	87	75	-	12	11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위탁용역 예산은 1억 300만원이었고, 이와 별도로 학술포럼 행사장 임차료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되었음.

[2024년도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위탁용역 및 행사장 임차료 편성내역]

▸ **내역사업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이해 및 관심 제고'** - 1억 8,800만원
- **일반수용비(210-01): 2,000만원**
- **임차료(210-07): 1,000만원**
  -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행사장 임차 1,000만원
- **일반용역비(210-14): 1억 5,300만원**
  -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위탁용역 1억 300만원
  - 재외동포정책 홍보 동영상 제작 4,000만원
  - 재외동포정책 만족도 조사 1,000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500만원**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 일반회계-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5033-302)(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청은 2024년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개최를 위해 2024년 11월 8일에 1억 49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2월 6일 여의도에서 '2024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을 개최하였음.[13] 이 과정에서 재외동포청과 계약상대자는 12월 3일에 최초 계약금액에서 2,576만원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당초 행사장소 임차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체결 후 11월 18일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통지되었고, 계약상대자는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선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행사장 임차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직접 행사장 임차를 진행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감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설명임.

[2024년도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위탁용역 계약내역]

(단위: 원)

계약명	계약기간	입찰금액	계약금액 (낙찰금액)	계약방법	비고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2024) 대행 용역	2024.11.8. ~2024.12.20.	103,000,000	100,490,000	자체조달,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당초계약 (2024.11.8.)
	상동	-	74,728,000 (△25,762,000)		변경계약 (2024.12.3.)

주) 재외동포청은 12월 3일 변경계약 체결 후 12월 4일 일반용역비 1,600만원을 임차료로 세목조정하여, 12월 5일 행사장 임대업체에 25,762,000원을 지출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재외동포청은 '2024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을 개최하면서 사업추진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임차료에 포함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향후 임차료 집행이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청은 변경계약을 통해 감액한 일반용역비 2,576만원 중 1,600만원을 임차료로 세목조정하였고, 이를 기존에 편성되어있던 임차료 1,000만원에 더하여 총 2,576만원을 12월 5일에 행사장 임대업체에 지출하였음.

13) 「2024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
가. 일시: 2024.12.6.(금) 10:00~17:40
나. 장소: 루나미엘레(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2층)
다. 참석: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등 약 100명

[일반용역비 및 임차료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2.4.)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5033-302)	일반용역비 (210-14)	16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5033-302)	임차료 (210-07)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용역 계약 변경에 따른 적정 비목 확보

자료: 재외동포청

[2024년도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관련 임차료 지출내역]

(단위: 원)

일자	건명	금액	세목
2024.12.5.	(계약대금) 행사장 임차료 지출 건의 - '2024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25,762,000	임차료 (210-07)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외동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12월 3일에 견적서를 제출받았는데, 견적서의 내역은 오찬 등 식·음료비가 1,333만원(51.8%)이고, 회의장 및 장비 임차료가 1,243만원(48.1%)이었음.

[2024년도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행사장 임차 견적서 내역]

(단위: 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식음료비	식료	오찬(세트)	8,470,000
		오찬(VIP)	2,310,000
		다과(쿠키)	924,000
	음료	커피(소다)	1,320,000
		생수(500ml)	308,000
	소계		13,332,000
장소·장비 사용료	사용료	컨벤션홀	10,450,000
		사무국(15평)	
		대기실(20평)	
	시스템	스크린(LED)	1,980,000
		오디오(일체)	
		대기료(기사)	
	소계		12,430,000
총계			25,762,000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은 장소·건물 등의 일시

임차를 위한 비용은 임차료(210-07목)로,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는 사업추진비(240-01목)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재외동포청은 해당 견적금액 중 식음료비를 임차료가 아닌 사업추진비로 지출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임차료와 분리하지 않은 채 집행하였으므로 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향후 임차료 집행이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외동포청은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된 임차료 소요까지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진행함으로써 별도 편성된 임차료는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일반용역비 및 임차료 소요를 재산정하고,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재외동포청은 2024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개최를 위한 임차료와 일반용역비를 각각 1,000만원, 1억 300만원 편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행사위탁용역 입찰공고 시 행사장 임차료는 별도라고 기재하였음.

[2024년도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관련 편성내역]

구분	내역
2024년	128백만원(1회×128백만원) • (일반수용비)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전문가 사례금 및 소모품 구입 등 10백만원 • (임차료)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행사장 임차 10백만원 • (일반용역비)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위탁용역 103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전문가 초청 여비 5백만원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상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 ㅇ **수행기간 : 계약일~ '24.12.20. (▲포럼은 12월 개최 예정)** ㅇ **소요예산 : 금103,000,000원(금일억삼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예산항목 : 재외동포권익향상-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 상기 금액은 행사 위탁용역비 예산이며, 행사장 임차료(금일천만원)는 별도 계상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 지급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함.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위탁용역비와 임차료가 별도로 편성된 예산 및 입찰공고문과 달리 산출내역서에는 ‘회의장 1일 대관료’ 1,000만원이 입찰금액(1억 300만원)에 포함되었음.

[2024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위탁용역 산출내역서]

(단위: 원)

구분	항목	내용	금액
1	발제자 초청 비용	기조연사 및 세미나 연사료, 항공료, 의전차량	6,080,000
2	출연진 및 섭외수당	사회자 및 동시통역사 등	8,860,000
3	개회식 및 오찬	개회식 공연, 오찬, 부대행사 등	23,500,000
4	회의장 발표 시스템 설치 및 기자재	회의장 발표 시스템 설치 및 기자재 등	6,250,000
5	행사장 부대시설	행사장 조성 및 부대시설 기자재	5,740,000
6	디자인, 인쇄 및 제작물	인쇄제작물, 현수막 등 설치제작물	8,950,000
7	행사운영비	사전/현장운영비,출장비, 사후운영비	2,500,000
9	전문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13,806,585
합계 Ⅰ		1~9의 합	75,686,585
10	일반관리비	합계Ⅰ의 5%	3,784,329
합계 Ⅱ		합계Ⅰ + 일반관리비	79,470,914
11	기업이윤	합계Ⅱ의 5%	3,973,546
합계 Ⅲ		합계Ⅱ + 기업이윤	83,444,460
12	대관료	회의장 1일	10,000,000
합계 Ⅳ		합계Ⅲ + 대관료	93,444,460
13	부가세	합계Ⅳ의 10%	9,344,446
총계		합계Ⅳ + 부가세	102,788,906

자료: 재외동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위탁용역 입찰공고가 유찰(단독응찰 또는 무응찰)되지 않고 계약체결까지 진행되었고, 1,000만원을 초과한 집행잔액(1,2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일반용역비 1억 300만원으로 행사장 임차까지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 계상된 임차료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예산 편성 시 일반용역비 및 임차료 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산정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는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문화적 우수성과 사회·경제적 발전상을 체험하게 하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취, 재외동포와 국내 차세대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대감 증진,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76억 8,000만원 중 76억 8,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4]

[2024년도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3,754	23,754	-	-	23,754	23,754	-	-	27,757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7,680	7,680	-	-	7,680	7,680	-	-	8,82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은 모국 방문 체험을 통한 한인 정체성 함양 등을 목적으로, 하계·동계로 구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을 초청하고,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체험, 한국 역사 시설 방문, 토론·발표를 통한 타지역 동포사회 이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청이 출연금을 교부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4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 개요]

ㅇ 개 요
- 사업명: 2024년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 기 간: 2024년 7~8월 중(1~6차), 2025년 1월 중(7, 8차), 각 6박 7일
- 장 소: 서울 및 지방
- 인 원: 재외동포 2,123명, 국내참가자 729명

14) 일반회계-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5037-301)(교류협력국)

ㅇ **연수목적**

- 차세대 동포의 모국 방문 체험을 통해 한인 정체성 함양
-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
- 한인정체성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

ㅇ **주요 프로그램**

- 한인 정체성 함양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체험
  · 한국어 사용 체험
  · 한국 역사 이해, 유적지 및 관련 시설 방문
  · 한국 지역문화 체험(지방 체험)
- 글로벌 리더 육성
  · 리더십 교육: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이슈 이해 및 거주국과 한국의 관계 이해
  · 토론 및 발표를 통해 타지역 동포사회 이해

ㅇ **일정**

구분	기간	인원	비고
1차	2024.7.15.(월)~7.21.(일)	442명 (재외동포 295명, 국내 147명)	청소년
2차	2024.7.22.(월)~7.28.(일)	442명 (재외동포 290명, 국내 152명)	청소년
3차	2024.7.23.(화)~7.29.(월)	315명 (재외동포 275명, 국내 40명)	대학생
4차	2024.7.29.(월)~8.4.(일)	396명 (재외동포 267명, 국내 129명)	청소년
5차	2024.8.5.(월)~8.11.(일)	423명 (재외동포 280명, 국내 143명)	청소년
6차	2024.8.6.(화)~8.12.(월)	319명 (재외동포 279명, 국내 40명)	대학생
7차(동계)	2025.1.13.(월)~1.19.(일)	302명 (재외동포 252명, 국내 50명)	청소년
8차(동계)	2025.1.14.(화)~1.20.(월)	213명 (재외동포 185명, 국내 28명)	대학생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나. 검토의견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례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차년도 1월 동계연수를 진행함으로써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을 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연례적인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대학생[재외동포 2,123명(국내 1,729명 별도)]을 대상으로 8차에 나누어 초청이 진행되었음. 하계 연수는 2024년 7~8월, 동계 연수는 2025년 1월에 진행되었고, 이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사업예산 중 70억

1,000만원을 2024년에 집행하고, 11억 6,900만원을 이월하여 2025년에 집행하였음.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 이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교부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재외동포 재단	2022	5,250	-	-	5,250	5,228	-	22
	2023	3,319	-	-	3,319	3,319	-	-
재외동포 협력센터	2023	2,569	-	-	2,569	1,841	**522**	206
	2024	7,680	522	-	8,202	7,010	**1,169**	23
	2025	8,826	1,169	-	9,995	3,258	-	-

주 1) 2025년 집행액: 5월말 기준
2)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청 출범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3) 2022년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액에 합산하여 이월액을 0원으로 표기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2022~2024년도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일정]

구분		기간	인원	비고
2022년	1차	2022.7.14.(목) ~ 7.19.(화)	378명	청소년
	2차	2022.7.20.(수) ~ 7.27.(수)	208명	대학생
	3차	2022.7.28.(목) ~ 8.2.(화)	278명	청소년
	4차	2022.8.3.(수) ~ 8.10.(수)	202명	대학생
	5차	**2023.1.12.(목) ~ 1.17.(화)**	**259명**	**청소년**
2023년	1차	2023.7.10.(월) ~ 7.16.(일)	435명	청소년
	2차	2023.7.18.(화) ~ 7.25.(화)	265명	대학생
	3차	2023.8.1.(화) ~ 8.8.(화)	283명	대학생
	4차	2023.8.7.(월) ~ 8.13.(일)	426명	청소년
	5차	**2024.1.18.(목) ~ 1.24.(수)**	**255명**	**청소년**
2024년	1차	2024.7.15.(월) ~ 7.21.(일)	442명	청소년
	2차	2024.7.22.(월) ~ 7.28.(일)	442명	청소년
	3차	2024.7.23.(화) ~ 7.29.(월)	315명	대학생
	4차	2024.7.29.(월) ~ 8.4.(일)	396명	청소년
	5차	2024.8.5.(월) ~ 8.11.(일)	423명	청소년
	6차	2024.8.6.(화) ~ 8.12.(월)	319명	대학생
	7차	**2025.1.13.(월) ~ 1.19.(일)**	**302명**	**청소년**
	8차	**2025.1.14.(화) ~ 1.20.(월)**	**213명**	**대학생**

주) 인원 = 재외동포 + 국내참가자
자료: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이와 같이 당해연도 예산 일부를 이월하여 다음연도 동계연수에 집행하는 사업형태는 동계연수를 도입한 2022년부터 연례적으로 보이고 있음.[15)]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 제2항제2호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이하 '사고이월' 이라 함)를 예시하고 있음.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4년도 예산으로 2025년 1월에 사업을 실시한 것은 사업의 계획 시점부터 2024년도 예산을 2025년에 집행할 것으로 예정하였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이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학업일정 및 방학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이후에는 하계연수 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해 동계연수를 마련하면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다고 입장임.

그러나 연도를 기준으로 사업회차를 정리하거나, 국가별 방학 기간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춘계연수를 마련하는 등 법 규정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방안 모색에 미비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사업 추진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연례적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5)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舊 재외동포재단)는 2022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집행액에 포함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전년도 이월액을 세입세출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부적정한 결산 처리' 라는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의견 있었음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재외동포청에 대해 시정요구 11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제도개선 9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	9	-	11
예비비	-	-	-	-	-	-	-
합계	-	-	-	2	9	-	11

재외동포청은 시정요구사항 11건에 대해 9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1.8%)하고 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1	9	81.8	2
예비비	-	-	-	-
합계	11	9	81.8	2

국방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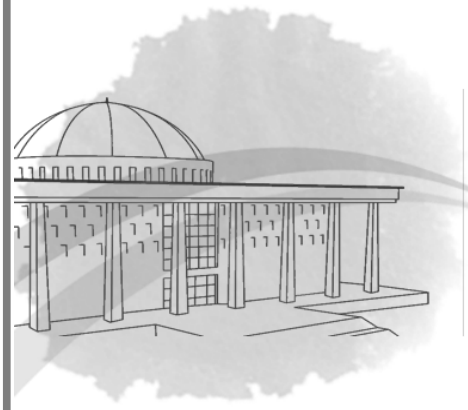

국방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948억 2,600만원(17.5%)이 많은 2조 6,470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97억 7,400만원(9.5%)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160,105	1,160,105	1,138,800	△21,305	841,418	841,418	1,262,515	421,097	123,715
기 금	1,230,885	1,230,885	1,278,488	47,603	1,410,818	1,410,818	1,384,547	△26,271	106,059
총수입	2,390,990	2,390,990	2,417,288	26,298	2,252,236	2,252,236	2,647,062	394,826	229,774

문의 : 박제성 예산결산조사관 thesquare@assembly.go.kr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882억 2,800만원(△0.2%)이 적은 43조 3,019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978억 9,700만원(5.6%)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7,427,415	37,427,415	36,319,688	△1,107,727	38,706,244	38,706,244	38,349,102	△357,142	2,029,414
기 금	4,483,884	4,483,884	4,684,347	200,463	4,683,915	4,683,915	4,952,829	268,914	268,483
총지출	41,911,299	41,911,299	41,004,035	△907,264	43,390,159	43,390,159	43,301,931	△88,228	2,297,897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4,612억 1,900만원으로, 2조 156억 9,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8,639억 9,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2.5%)되고 1,514억 4,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억 5,6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41,897	241,897	-	241,897	546,150	403,060	142,834	256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576,701	576,701	-	576,701	950,997	948,879	2,118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642,621	642,621	-	642,621	518,543	512,053	6,490	-
합 계	1,461,219	1,461,219	-	1,461,219	2,015,690	1,863,992	151,442	256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4조 547억 200만원으로, 이 중 42조 5,048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5%)되고 7,787억 4,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7,711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1,771,198	41,771,198	967,166	△9,782	-	42,728,582	41,457,547	670,866	600,169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576,701	576,701	84,031	±53,783	-	660,732	570,798	72,321	17,613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642,621	642,621	22,767	-	-	665,388	476,499	35,554	153,335
합 계	42,990,520	42,990,520	1,073,964	-	-	44,054,702	42,504,844	778,741	771,117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5조 1,109억 9,000만원으로, 9조 4,720억 8,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조 4,383억 8,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6%)되고 335억 8,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억 1,4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군인연금기금	4,259,184	4,382,943	8,484,342	8,472,487	11,855	-
군인복지기금	851,806	851,806	987,739	965,893	21,732	114
합 계	5,110,990	5,234,749	9,472,081	9,438,380	33,587	114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5조 2,385억 6,500만원으로, 이 중 9조 4,383억 8,000만원이 지출(집행률 180.2%)되고 53억 7,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552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군인연금기금	4,259,184	4,382,943	-	4,382,943	8,472,487	-	21,340
군인복지기금	851,806	851,806	3,816	855,622	965,893	5,379	33,875
합 계	5,110,990	5,234,749	3,816	5,238,565	9,438,380	5,379	55,21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방부 자산은 전년 대비 6조 4,704억 1,800만원이 증가한 279조 6,324억원 8,5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964억 4,7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6조 2,240억 7,400만원 증가함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6조 5,379억 4,100만원 증가한 280조 2,929억 3,3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16조 4,234억 4,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조 675억 2,200만원이 감소한 △6,604억 4,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국방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9조 8,318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157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5조 3,874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92억 8,6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방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79,632,485	273,162,067	6,470,418	2.4%
		유동자산	12,208,104	11,873,909	334,195	2.8%
		투자자산	1,557,234	1,653,681	△96,447	△5.8%
		일반유형자산	265,596,950	259,372,876	6,224,074	2.4%
		무형자산	268,913	259,571	9,342	3.6%
		기타비유동자산	1,283	2,029	△746	△36.8%
	부 채		280,292,933	263,754,992	16,537,941	6.3%
		유동부채	3,232,024	3,362,865	△130,841	△3.9%
		장기차입부채	3,155,882	3,022,607	133,275	4.4%
		장기충당부채	268,050,231	251,626,790	16,423,441	6.5%
		기타비유동부채	5,854,795	5,742,731	112,064	2.0%
	순자산		△660,448	9,407,074	△10,067,522	△107.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9,831,814	57,616,105	2,215,709	3.85%
	재정운영순원가		55,389,479	54,298,418	1,091,061	2.01%
	재정운영결과		55,387,452	54,298,166	1,089,286	2.01%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국방부 일반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와 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4회계연도 국방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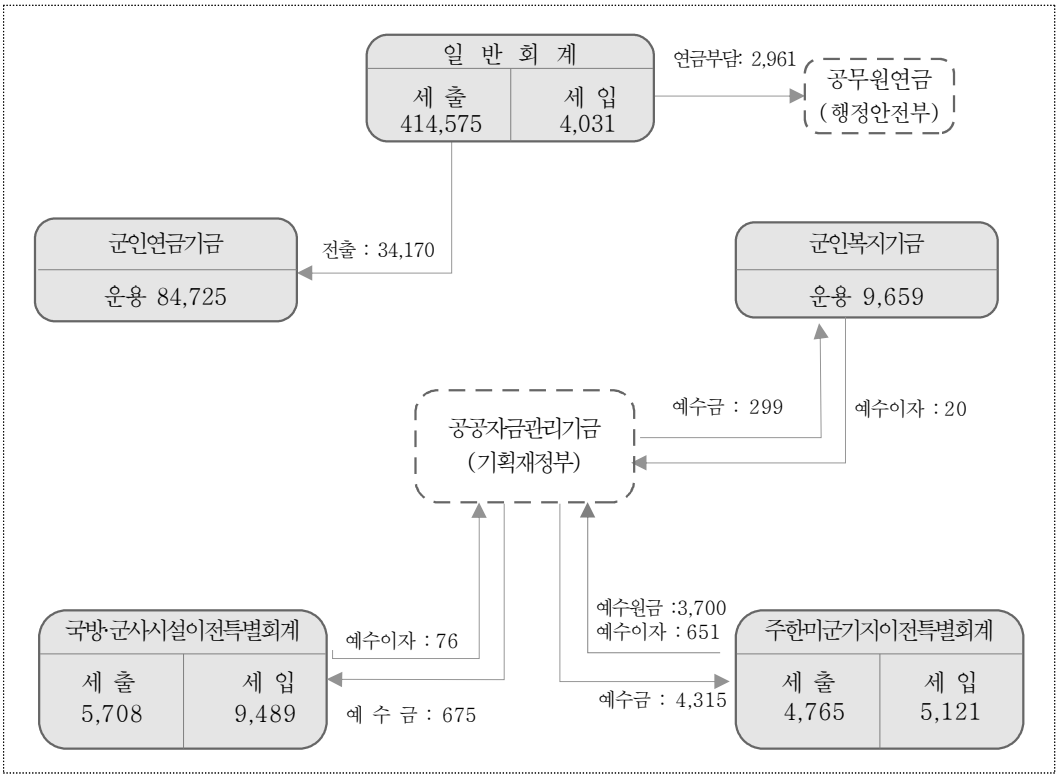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국방부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실전적이고 안정적인 전투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화된 교육훈련 기반을 강화하였음. 또한 선진 병영 환경 조성 및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하도록 장병복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총 227개의 세부사업에서 초급간부 처우개선, 병영생활관 및 군관사 개선, 군 급식 개선, 장병 봉급 지속적 인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은 민간조리원의 낮은 처우 수준이 중도퇴사로 이어져 집행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고 민간조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부족하므로,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징계부과금이 증가 추이에 있으므로, 국방부는 수납률 제고와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여 비정상적인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특수식량 사업 중 특전식량은 특정 업체만 충족할 수 있는 국방규격 설정에 따라 공개경쟁이 사실상 제한되어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국방규격 수립 시 실제 민간 업체들이 충족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넷째, 통신요금 사업은 임대회선 통신망 계약에 있어서 각 군별 다수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에 따른 예산절감이 어려우므로, 국방부는 임대회선 계약시 계약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비군사화 사업은 비군사화 대상 탄약의 신규발생 및 적체 물량이 국방부의 처리물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시설확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군사화 적체물량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징계부과금: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필요

가. 개　요

‘징계부과금’ 은 공무원의 법령 일탈행위로 인한 부과금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132억 7,000만원 중 8,800만원이 수납(수납률 0.7%)되고 131억 8,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2)]

[2024년도 징계부과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징계부과금	16	16	13,270	88	13,182	-	0.7	1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징계부과금은「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3)]에 따라 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산, 향

2) 일반회계-징계부과금(56-564)(기획조정실)

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응 등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 횡령, 배임, 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득 금액의 5배 내에서 부과되는 금액임.

나. 검토의견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징계부과금이 증가 추이에 있으므로, 국방부는 수납률 제고와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여 비정상적인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징계부과금 수납률을 보면, 2021년도 4.9%, 2022년도 0.0%(전액 미수납됨), 2023년도 10.0%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4년도는 징수결정액 132억 7,000만원 중 8,800만원만 수납되어 수납률이 0.7%에 불과함.

[연도별 징계부과금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	-	-	263	13	-	4.9	251	-
2022	-	-	-	276	-	-	0.0	276	-
2023	16	16	16	311	31	193.8	10.0	280	-
2024	16	16	16	13,270	88	550.0	0.7	13,182	-

자료: 국방부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은 2021년도 2억 6,300만원, 2022년도 2억 7,600만원, 2023년도 3억 1,100만원으로 3억원 내외 규모였으나, 2024년도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은 132억 7,000만원에 달함.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2024년도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 증가의 경우 특정 사건에 의한 것으로, 해군 ○함대에서 함정 공사 등 내부 정보를 관련 업체에 제공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게 비위 금액의 4배인 약 117억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에 기인한다고 함.

[해군 ○함대 금품비위 사건경과]

○ 2024. 4. 5. : 징계대상 파면 및 징계부과금(117억원) 부과처분 ○ 2024. 4. 17. : 징계부과금 징수 집행 지시 ○ 2024. 4. 25. : 징계부과금 수납고지서 발행(납부기한 : 6.7.) ○ 2024. 6. 17. : 미수납현황 보고(통보) 및 회수방안 검토 ○ 2024. 7. 23. : 징계부가금 납입 독촉장 송부(납부기한 : 8.31.) ○ 2024. 9. 5. : 관할 세무서 징수 위탁 추진 요청 ○ 2025. 2. 20. : 채권 회수절차 법무 검토 및 채무자 주소 조회 ○ 2025. 2. 25. : 주소지 관할 세무서(안동세무서) 징수업무 위탁 요청

자료: 국방부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징계부과금이 증가 추이에 있으므로 국방부는 수납률을 제고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일탈로 인한 비리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의 일탈로 인한 비리행위의 발생은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 및 청렴의식의 결여, 내부통제의 부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위의 사전차단 미흡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

이에 국방부는 공무원의 일탈행위을 예방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여 공무원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 체계적인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PKO[4] 경비보전금, FMS[5] 정산잔액, 과오지급금·군장학금 회수, 연체료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3,671억 1,100만원 중 2,659억 7,800만원이 수납(수납률 72.5%)되고 1,009억 3,0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억 300만원은 불납결손되었음.[6]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120,674	120,674	367,111	265,978	100,930	203	72.5	194,87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기타경상이전수입은「국고금관리법」및「국유재산법」등에 따라 연체료 및 과오지급금, 정산잔액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과목임.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증가하는 미수납액에 대한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회수 실적에 따른 평가체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수납률을 보면, 2021년도는 징수결정액 1,748억 3,100만원 중 900억 5,7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51.5%이고, 2022년도는 징수결정액 1,990억 3,100만원 중

4) PKO(Peace Keeping Operation): 평화유지활동

5) FMS(Foreign Military Sales):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판매하는 무기 수출 방식

6)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기획조정실)

1,101억 2,9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55.3%이며, 2023년도는 징수결정액 2,802억 4,000만원 중 1,948억 7,7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69.5%이고, 2024년도는 징수결정액 3,671억 1,100만원 중 2,659억 7,8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72.5%로 나타나는 등 연도가 지날수록 수납률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111,353	111,353	111,353	174,831	90,057	51.5	84,505	269
2022	116,904	116,904	116,904	199,031	110,129	55.3	88,576	326
2023	118,774	118,774	118,774	280,240	194,877	69.5	85,203	160
2024	120,674	120,674	120,674	367,111	265,978	72.5	100,930	203

자료: 국방부

그러나 연도별 수납률 개선과는 별도로 실제 미수납액을 보면, 2021년도 845억 500만원에서 2024년도 1,009억 3,000만원으로 약 164억원 증가하여 미수납 채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2024년도 미수납 내역을 보면,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은 2,221건에 968억 7,500만원, 납기미도래는 651건에 30억 3,500만원, 징수유예 등은 642건에 10억 2,0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어,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사유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		미수납사유
				건수	금액	
계	367,111	265,978	203	3,514	100,930	
기타경상 이전수입	367,111	265,978	203	2,221	96,875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651	3,035	납기미도래
				642	1,020	징수유예 등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사유의 미수납 채권 중 장기 미수납 채권의 경우 상당 부분 수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데 반해, 납기미도래와 징수유예의 경우 일부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미수납액이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164억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대한 실질적인 추적 노력이나 체계적인 정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함.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조 강화 및 추심 전문기관의 활용 등 적극적인 미수납 채권 회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방부는 증가하는 미수납액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세 출>

3.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 민간조리원 운용률 제고 및 관리 규정 마련 필요

가. 개 요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은 조리병의 조리기술을 보완하고 군 급식의 맛과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00억 2,800만원 중 960억 8,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3%)되고 139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4년도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민간조리원운영	110,028	110,028	-	-	110,028	96,089	-	13,939	103,847

국방부는 조리전문성 확보 및 급식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 식수인원 250명 이상 취사장에 1명의 민간조리원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는 식수인원 80명 이상 취사장에 2명의 민간조리원을 고용하고, 이와 더불어 300명 이상 취사장에는 1명의 민간조리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연도별 민간조리원 운영 현황]

기간	식수인원(명) 기준	민간조리원 인원(명/개소)
1996~2006년	250명 이상	1
2007~2011년	200명 이상	1
2012~2014년	150명 이상	1
2015년	120명 이상	1
2016년	110명 이상	1

7) 일반회계-민간조리원운영(1231-305)(군수관리관실)

기간	식수인원(명) 기준	민간조리원 인원(명/개소)
2018년	90명 이상	1
2019~2020년	80명 이상	1
2021년	80~299명	1
	300명 이상	2
2022년~2023년	80명 이상	2
	300명 이상	3

자료: 국방부

최근 5년간 민간조리원 정원은 2019년 1,982명에서 2024년 3,30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액도 2019년 509억 5,800만원에서 2024년 1,100억 2,800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민간조리원 예산 및 정원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50,958	57,638	62,881	98,087	105,437	110,028
정원	계 (증 감)	1,982 (+79)	1,987 (+5)	2,278 (+291)	3,188 (+910)	3,305 (+117)	3,305 (-)
	육 군	1,698	1,698	1,975	2,750	2,750	2,720
	해 군	76	79	86	95	134	156
	공 군	42	42	42	42	104	104
	해 병	113	115	120	243	247	246
	국 직	53	53	55	58	70	7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은 민간조리원의 낮은 처우 수준이 중도퇴사로 이어져 집행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고, 민간조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부족하므로,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민간조리원 운영률은 2019년의 경우 정원 1,982명에 현원 1,900명으로 95.9%로 나타났으나, 2024년의 경우 정원 3,305명에 현원 2,778명을 운영하여 운영률이 84.1%로 낮아지고 있음. 또한 연도 중 중도퇴사의 경우 2019년 103명에서 2024년 348명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민간조리원의 운영률이 낮게 나타나고 중도퇴사 인원이 증가되면, 조리전문성 확보 및 급식 질 개선이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음.

[연도별 민간조리원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정원(A)	현원(B)	결원(A-B)	운영률(B/A)	중도퇴사
2019년	1,982	1,900	82	95.9	103
2020년	1,987	1,919	68	96.6	231
2021년	2,278	2,014	264	88.4	116
2022년	3,188	2,494	694	78.2	169
2023년	3,305	2,713	592	82.1	83
2024년	3,305	2,778	527	84.1	348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낮은 처우 수준과 열악한 근무지 접근성 등이 민간조리원의 운영률 하락 및 중도퇴사 인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군 민간조리원과 교육부의 교육공무직 조리사를 비교해 보면, 1인당 월 급여에 있어서 44만 7,600원 정도 민간조리원이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군 민간조리원에는 없는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면허수당(월 10만 3,300원 내외)·근속수당(약 월 4만원)·가족수당(약 월 14만원) 및 정기상여(연 1회, 100만원) 등을 교육공무직 조리사가 추가로 받고 있어서 발생되는 차이라 할 수 있음.

[군 및 교육부 민간조리원 임금 현황]

(단위: 원)

구분		군 민간조리원	교육공무직 조리사
1인당 월 급여 계*		2,347,547	2,795,133
월별 지급	기본급	2,045,880	2,066,000
	급식비	140,000	150,000
	교통보조비	70,000	-
	위험근무수당	-	50,000
	면허수당(월 기본급 5%)	-	103,300
	근속수당(1~2년 근무 기준)	-	40,000
	가족수당(4인 가족 기준)	-	140,000
연 1회 지급	명절상여금(연간)	1,100,000	1,850,000
	정기상여금(연간)	-	1,000,000
격년 지급	건강검진비(격년 지급)	-	200,000

*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월 단위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군 민간조리원-학교 조리사 간 임금 비교(' 25년 기준)
자료: 국방부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한 처우 수준이나 근무지 접근성 외에도, 민간조리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족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현재 민간조리원 운영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군인 급식 규정」[8]은 급식 및 급식기준액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조리원의 인력 운영·복무 관리·예산지원 및 업무 평가 등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조리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급식 질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민간조리원 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9]

---

8) 「군인 급식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營外居住)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식기준액은 하루에 군인 1명에게 현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군인에게는 월별로 급식기준액에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3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군별로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9) 이와 관련하여 민간조리원의 인력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 급식의 질 개선 여부, 취사병과의 관계, 민간조리원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4. 공공요금 사업: 공공요금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및 적정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공공요금' 사업은 군의 시설 및 시설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7,069억 9,700만원 중 7,068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억 9,000만원은 불용되었음.[10)]

[2024년도 공공요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공요금	538,110	538,110	-	168,887	706,997	706,807	-	190	580,668

공공요금 지원 기준을 보면, 군사시설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는 국고에서 지원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시설과 민간인도 이용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설유형에 따라 전액국고 지원, 국고 지원 한도량 초과 시 개인 부담, 개인 부담 등으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기준]

구분	시설유형	징수 및 지원기준
공관	단독관사, 연립관사, 아파트	전액국고 지원
지휘관관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국고 지원하되 한도량 설정, 초과 시 개인 부담
	아파트	개인부담
일반관사	단독관사, 연립관사, 아파트	개인부담 단, 단독관사에 한해 지휘관 관사와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국고지원(초과 시 개인 부담)
간부숙소	-	국고 지원하되 한도량 설정, 초과 시 개인 부담

자료: 국방부

10) 일반회계-공공요금(2536-302)(자원관리실)

나. 검토의견

공공요금 중 전기료 부족으로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전기료 단가 및 공공요금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예산 이·전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은 예산액 4,950억원 중 5,033억원이 집행되여 83억원이 부족하였고, 2022년은 예산액 5,381억원 중 5,649억원이 집행되어 268억원이 부족하였으며, 2024년은 예산액 5,381억원 중 7,068억원이 집행되어 1,687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2022년부터 예산액은 증가되지 않았으나, 집행액은 계속 증가하여 2024년도의 경우 공공요금 부족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공공요금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편성(A)	4,950	5,299	5,381	5,381	5,381
예산집행(B)	5,033	5,321	5,649	6,704	7,068
(전년대비 집행증가율)	(2.4)	(5.7)	(6.2)	(18.7)	(5.4)
부족액(B-A)	83	22	268	1,323	1,687

자료: 국방부

2024년도 국방부는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이·전용 등을 통해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예산액의 31.4%에 해당하는 금액인 1,688억 8,700만원을 조달하였음. 이와 같은 예산 이·전용은 2021년 53억 9,400만원, 2022년 280억 4,600만원, 2023년 1,343억 600만원, 2024년 1,688억 8,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연도별 공공요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529,932	529,932	5,394	535,326	532,053	100.4	99.4	-	3,274
2022	538,110	538,110	28,046	566,156	564,921	105.0	99.8	-	1,235
2023	538,110	538,110	134,306	672,416	670,359	124.6	99.7	-	2,057
2024	538,110	538,110	168,887	706,997	706,807	131.3	100.0	-	190

자료: 국방부

연도별 공공요금별 집행률을 보면, 전기료는 2022년 111.2%에서 2024년 142.0%로 증가하였고, 상수도료는 2022년 94%에서 2024년 102.6%로 증가하였으며, 하수도료는 2022년 92.7%에서 2024년 120.7%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모든 공공요금 집행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2024년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요금 부족액 1,687억원 중 1,546억원이 전기료에서 발생되고 있고, 이·전용 등을 통해 증액된 대부분의 금액은 공공요금 중 전기료 부족분에 충당되고 있음.

[연도별 공공요금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편성액	3,476	3,481	3,686	1,305	1,304	1,166	600	596	529
집행액	3,866	4,866	5,232	1,226	1,244	1,197	556	594	639
(집행률)	(111.2%)	(139.8%)	(142.0%)	(94.0%)	(95.4%)	(102.6%)	(92.7%)	(99.7%)	(120.7%)
부족액	△390	△1,384	△1,546	-	-	△31	-	-	△110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물가상승에 따라 공공요금 중 전기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전용 등을 통해 공공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경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그 부족분을 이·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만, 연례적으로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추세라는 점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11]

따라서 국방부는 이·전용 등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연도별 공공요금 집행 추이와 전기료 단가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1) 지금과 같이 이·전용 등을 통해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액되면 이·전용해준 사업에 영향을 주어 당초 국회가 승인해 준 사업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5.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필요

가. 개 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6억 7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12)]

[2024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사정책지원		17,366	17,366	374	3,773	21,513	21,264	57	191	20,795
	장애인 고용부담금	7,826	7,826	-	3,781	11,607	11,607	-	-	9,960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와 차별 없는 고용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국제적 협약[13)]과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4년 기준 국가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6항[14)] 및 제79조제1항[15)]에 따라 정원의 3.8% 이상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할 의무가 있고, 공무

12) 일반회계-인사정책지원(2439-306)-장애인 고용부담금(인사기획관실)

13)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

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현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의무가 있음.

나. 검토의견

국방부는 법률에 따른 장애인 군무원과 장애인 공무직 근로자 고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를 고려한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중 군무원[16] 124명, 공무직 근로자 55명이 미달되었고, 2022년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중 군무원 268명, 공무직 근로자 104명이 미달되었으며, 2024년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중 군무원 568명, 공무직 근로자 183명이 미달되는 등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미달됨은 물론, 의무고용 미달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군무원	의무고용 인원(ⓐ)	743	942	1,048	1,290	1,452
	고용인원(ⓑ)	619	724	780	863	884
	의무고용 미달인원 (ⓐ-ⓑ)	**124**	**218**	**268**	**427**	**568**
공무직	의무고용 인원(ⓐ)	271	285	318	366	423
	고용인원(ⓑ)	216	230	214	241	240
	의무고용 미달인원 (ⓐ-ⓑ)	**55**	**55**	**104**	**125**	**183**
의무고용률		**3.4**	**3.4**	**3.6**	**3.6**	**3.8**

주) 공무원은 의무고용인원 충족으로 장애인고용 부담금 관련 해당사항 없음
자료: 국방부

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16) 군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특정직 공무원임.

또한 동 법률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기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17]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로 2020년도 8억 7,000만원, 2022년 52억 7,300만원, 2024년 116억 700만원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군무원	예산	-	2,741	4,153	6,324	6,324
	집행	-	3,088	4,017	6,526	8,809
공무직	예산	524	571	712	1,502	1,502
	집행	870	738	1,256	1,661	2,798
총 계	예산	524	3,312	4,865	7,826	7,826
	집행	**870**	**3,826**	**5,273**	**8,187**	**11,607**

주 1) 군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6.12.27. / 시행 ’20. 1. 1.)에 따라 ’21년부터 고용부담금 납부
2) 공무원은 의무고용인원 충족으로 장애인고용 부담금 관련 해당사항 없음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의 복지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군무원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하여 장애인 고용 컨설팅, 장애인 채용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고용 인원 미달규모도 증가되고 있음.[18] 이에 따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편성 대비 부담금 납부액이 초과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국방부는 법령에 따라 군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정·현원의 3.8%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인사 수요 발생 시 이를 고려한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8) 이는 장애인 고용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음.

6. 기본급식 사업: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급식 만족도 제고 필요

가. 개 요

‘기본급식’ 사업은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장병 체력 및 기본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조 7,794억 5,600만원 중 1조 7,785억 3,200만원이 집행되고 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억 8,300만원은 불용되었음.[19)]

[2024년도 기본급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본급식	1,731,520	1,731,520	509	47,428	1,779,456	1,778,532	41	883	1,684,395

기본급식 사업은 「군인급식규정」에 따라 영내자급식, 영외자급식, 해외파병급식으로 나뉘어져 집행되고 있음.

영내자급식은 장병의 전투력 유지·향상을 위한 1일 3끼의 병영식(영내급식) 지원을 위한 것이고, 영외자급식은 영내급식 지원이 제한되는 영외거주 간부에게 영내급식을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해외파병급식은 해외파병부대(청해·아크·동명·한빛) 소속 장병의 영내급식 지원을 위한 것임.

2024년도 영내자급식은 예산액의 103.8%인 1조 5,008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영외자급식은 예산액의 97.5%인 2,720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해외파병급식은 예산액의 95.4%인 57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음.

19) 일반회계-기본급식(1231-301)(군수관리관실)

[2024년도 기본급식 내역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영내자급식	1,446,081	1,446,081	509	54,656	1,501,246	1,500,816	41	389
· 영외자급식	279,456	279,456	-	△6,956	272,500	272,009	-	491
· 해외파병급식	5,983	5,983	-	△273	5,710	5,707	-	3
합 계	1,731,520	1,731,520	509	47,427	1,779,456	1,778,532	41	88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기본급식 사업은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급식의 질'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국방부는 급식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장병의 급식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장병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병의 의견을 반영한 식단 구성, 조리 수준 향상, 위생관리 강화 등 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024년 군 급식 및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20]에 따르면, 전반적인 급식 종합 만족도는 2023년 3.37점에서 2024년 3.59점(5점 만점)으로 조금 상승하였음.

세부적으로 급식 환경이 3.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급식운영 3.64점, 급식 위생 3.52점이며, 급식의 질이 3.5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 "2024년 군 급식 및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24년 12월, 국방부

[2024년도 급식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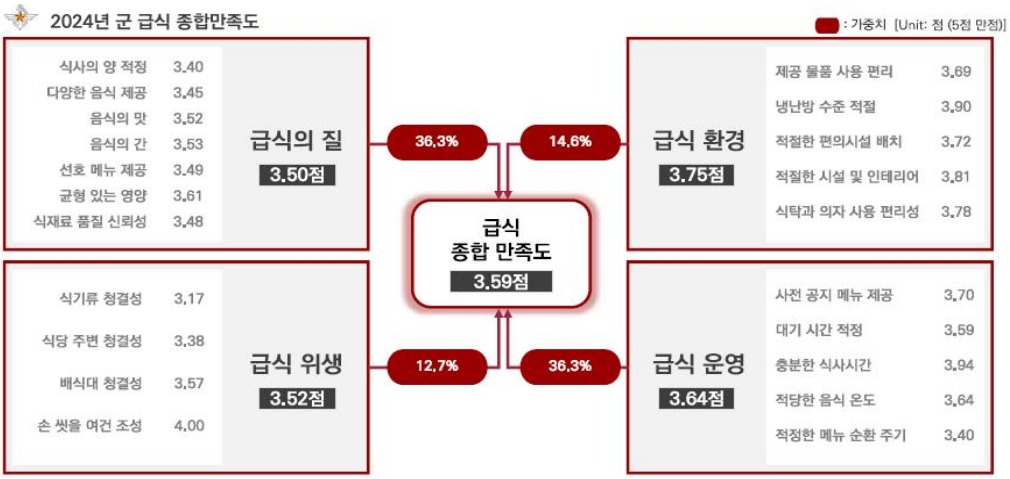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그러나 급식의 질은 장병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식자재의 품질 개선, 조리 전문성 강화, 메뉴 다양화 등 급식의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방부는 단순한 급식 환경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장병의 급식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21]

21)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등 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7. 특수식량 사업: 특전식량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국방규격 설정 필요

가. 개 요

'특수식량' 사업은 전시 또는 유사시 대비 비상 급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67억 5,800만원 중 267억 4,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0만원은 불용되었음.[22)]

[2024년도 특수식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특수식량	26,765	26,765	-	△7	26,758	26,741	15	2	26,739

특수식량 사업은 「군인급식규정」에 따라 유사시 등에 대비하여 전투식량·특전식량 및 구명식량을 확보하는 것임.

세부적으로 전투식량은 전시대비 초기단계 비상 급식품 확보 및 접적군단·도서지역의 전투식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특전식량은 적 지역 침투작전시 비상식량 휴대 식품을 지원하는 것이며, 구명식량은 항공기 및 함정 조난대비 비상식량을 지원한 것임.

나. 검토의견

특수식량 사업 중 특전식량은 특정 업체만 충족할 수 있는 국방규격 설정에 따라 공개경쟁이 사실상 제한되어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국방규격 수립 시 실제 민간 업체들이 충족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각 기능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투식량은 당초 예산액 253억 9,000만

22) 일반회계-특수식량(1231-303)(군수관리관실)

원의 104.5%인 265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특전식량은 당초 예산액 12억 7,400만원의 90.6%인 11억 5,400만원이 내역사업 간 조정을 통해 전투식량으로 변경되어, 실제 집행액은 1억 2,000만원에 그쳤으며, 구명식량은 1억 200만원의 96.1%인 9,8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4년도 특수식량 기능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 전투식량	25,390	25,390	1,151	26,540	26,523	26,540	26,523	15	2	26,666
· 특전식량	1,274	1,274	△1,154	120	120	120	120	-	-	-
· 구명식량	102	102	△4	98	98	98	98	-	-	73
합 계	26,765	26,765	△7	26,758	26,741	26,758	26,741	15	2	26,739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이 국방부가 임의로 특전식량 예산의 대부분(90.6%)을 전투식량으로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가 승인해준 예산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내역사업 간 조정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예산 승인 취지를 존중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23)]

[특수식량 내역변경 내역]

구 분	’24년 조정내역		조정 사유(과부족 사유)
전투식량	+1,151백만원	사업조정 +1,151백만원 (특전식량→전투식량)	특전식량 조달 제한에 따른 특수식량 전체 비축률 제고를 위한 사업조정
특전식량	△1,154백만원	사업조정 △1,151백만원 (특전식량→전투식량)	특전식량 조달 제한에 따른 특수식량 전체 비축률 제고를 위한 사업조정
		사업조정 △3백만원 (특전식량→영내자급식)	2024년 간부훈련급식비 과소 편성(요구 대비 약 20%)에 따른 주부후식비 부족분 충당
구명식량	△4백만원	사업조정 △4백만원 (구명식량→영내자급식)	2024년 간부훈련급식비 과소 편성(요구 대비 약 20%)에 따른 주부후식비 부족분 충당

자료: 국방부

23)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음.

또한 국방부는 특전식량 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전투식량 L형(특전식량)은 2017년부터 연구개발을 거쳐 2022년 규격화 완료 후 2024년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타 전투식량 대비 국방규격이 까다롭고 수익성이 높지 않아 1개 업체 단독 응찰로 2회 유찰되어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규격은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과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일뿐만 아니라 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쟁입찰을 통한 합리적인 조달 단가 유지와 품질 향상은 물론, 시장의 건전한 구조를 유도하는 기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만 충족할 수 있는 과도하게 제한적인 품질 기준이나 규격이 설정되면,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 외에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조달 시장의 경쟁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인 유찰·수의계약 의존·공급 불안정 등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경쟁입찰 제도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음.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규격 수립 시 기술적 기준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제 민간 업체들이 충족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국방규격 설정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8. 기본피복 사업: 면밀한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에 의한 집행 효율화 필요 등

가. 개 요

'기본피복' 사업은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전투화 등 공통 피복류를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657억 3,100만원 중 3,458억 7,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6%)되고 31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6억 8,700만원은 불용되었음.[24)]

[2024년도 기본피복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본피복	374,184	374,184	10,073	△18,525	365,731	345,877	3,168	16,687	350,712

기본피복은 군인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투복·전투화 및 근무복 등을 일컬으며, 기본피복의 적절한 품질유지가 군인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첫째, 기본피복 사업은 재고관리 및 수요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피복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집행실적을 보면, 2020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6%이었으나, 2024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4%로 조금 하락하고 있고, 이·전용액은 2020년 16억 8,500만원에서 2024년 185억 2,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불용액도 2020년 19억 6,200만원에서 2024년 166억 8,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4) 일반회계-기본피복(1241-301)(군수관리관실)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367,828	367,828	3,593	△1,685	369,736	362,659	98.6	5,115	1,962
2021	401,446	401,446	5,115	△7,128	399,433	379,689	94.6	16,433	3,311
2022	385,824	377,464	16,433	△12,966	380,931	352,381	93.4	18,070	10,480
2023	374,810	374,810	18,070	△35,702	357,178	321,990	85.9	10,073	25,115
2024	374,184	374,184	10,073	△18,525	365,731	345,877	92.4	3,168	16,687

자료: 국방부

세부적으로 2024년 이·전용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 보유중인 재고물량을 고려하여 일부 조달물량이 축소되었고, 잡화류는 2025년 신형 우의가 전력화될 예정임에 따라 2024년 편성된 구형 우의 교체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기타 계약해지 및 낙찰차액에 따라 이전용 금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감액	사유
이·전용 내역	전투복	63,290	△3,034	· 기 보유중인 전투복 재고물량을 고려, 편성 대비 조달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 해당 재원은 군 배상금 부족소요를 지원하는 데 활용
	전투화	30,490	△1,231	· △ 편성 대비 전투화 계약단가 하락, △ 보유중인 재고물량을 고려, 편성 대비 조달물량을 축소함에 따라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재원은 급식비 부족소요를 지원하는 데 활용
	근무복/정복	22,228	△1,925	· 간부들에게 근무복 및 정복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편성인원 대비 실제 임관자가 일부 감소함에 따라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 해당 재원은 급식비 부족소요를 지원하는 데 활용
	내의류	46,688	△1,290	· 장병들에게 런닝, 팬티, 양말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 보유중인 재고물량을 고려 조달물량을 일부 축소함에 따라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재원은 급식비 부족소요를 지원하는 데 활용
	운동복	68,456	△6,940	· 장병들에게 동운동복, 춘추운동복, 하운동복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 보유중인 재고물량을 고려 조달물량을 일부 축소함에 따라 재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재원은 급식비 부족소요를 지원하는 데 활용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감액	사유
	잡화류	31,695	△6,161	· 장병들에게 우의류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기능성 전투우의)이 진행 중이며, ’25년 하반기 개선된 신형 ‘기능성 전투우의’가 전군에 전력화될 예정인 바, -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4년 편성된 우의류 예산*(기존 구형 우의류의 노후교체 소요를 위한 예산)을 군급식비 부족소요를 지원하는 데 활용
	간부보충피복	39,102	△1,150	· 컴뱃셔츠 계약해지 및 보충피복판매소 취급품목(방상내피 등)중 일부 품목의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재원 발생으로 급식비 부족소요를 지원하였음

자료: 국방부

다음으로 2024년도 불용액 내역을 보면, 전투복은 계약된 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일부 물량이 취소되어 불용액 발생되었고, 개인방한피복류는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취소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방상내피 및 방상외피 수의계약 물량 일부를 계약하지 않고 보류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간부보충피복은 셔츠 계약해지 및 보충피복판매소 취급품목 중 일부 품목의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도 불용액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불용액	사유
불용 내역	전투복	63,290	3,144	· 전투복 사업은 사계·하계전투복, 컴뱃셔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는 계약된 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컴뱃셔츠’ 계약 물량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
	개인방한피복류	37,938	5,418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취소소송 진행에 따라, 방상내피 및 방상외피 수의계약 물량 일부를 계약하지 않고 보류해야만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용
	간부보충피복	39,102	3,822	· 간부보충피복비 예산은 각 피복류를 구매한 후 해당 재고를 보충피복판매소에 우선 보관하고, 향후 간부보충피복비로 구매한 사람에게 해당 품목을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 2024년은 컴뱃셔츠 계약해지 및 보충피복판매소 취급품목(방상내피 등)중 일부 품목의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일부 불용

자료: 국방부

그런데 국방부가 제시한 이·전용 사유 중 “기 보유중인 재고물량을 고려하여 일부 조달물량의 축소”와 “2025년 신형 우의가 전력화될 예정임에 따라 2024년 편성된 구형 우의 교체 예산은 미집행”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발생되지 않았을 내용임.

또한 국방부가 제시한 불용액 사유 중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 취소소송이 진행[25]됨에 따라, 방상내피 및 방상외피 수의계약 물량 일부를 계약하지 않고 보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26]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훈·복지단체에 별도의 수의계약 물량을 할당[27]하는 것은 해당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기본피복은 재고관리 및 수요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피복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본피복의 조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개경쟁에 의해 구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방부는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등 신규사업 추진 시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전투피복체계 품질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투우의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11억 8,500만원을 세목 조정하여 집행하였음.

---

25) 소송은 2022년 2건 종결/2건 진행 중, 2023년 2건 종결/3건 진행중, 2024년 1건 종결/2건 진행중으로, 보훈 및 복지단체의 피복류 수의계약 물량배정 감소에 대한 취소 소송은 모두 국가가 승소 중에 있음.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7) 피복예산 중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비율(수의계약 금액/당해연도 피복예산 편성액) : 2022년 7.5%(511억원/6,816억원) / 2023년 5.9%(413억원/6,896억원) / 2024년 7.8%(493억원/6,333억원)

[전투우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세목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7.14./ 11.28./12.9)	기본피복 (1241-301)	210-03	1,185	기본피복 (1241-301)	210-01	피복류 품질개선 추진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 부족소요 지원을 위한 세목조정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사업 추진 여부는 2023년 8월에 결정되었으나, 이를 위한 부대시험 평가(야전운용 적합성 평가)의 세부계획(규모 및 물량, 소요예산 등)은 2024년 6월 결정되어 부대시험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를 예산편성 주기상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8월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이고,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됨. 또한 2024년 중반에 세부계획이 확정된 이후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해도 되었을 것임.

향후 국방부는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 등 신규사업 추진 시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9. 통신요금 사업: 임대회선 계약주체 단일화 검토 필요

가. 개 요

‘통신요금’ 사업은 군 통신업무 지원을 위한 통신망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05억 5,700만원 중 1,203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6,200만원은 불용되었음.[28)]

[2024년도 통신요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통신요금	113,434	113,434	-	7,123	120,557	120,386	10	162	86,210

각 군이 사용하는 (유선)통신망은 군 자체 운용망(광대역통신망, BTL)과 민간통신회사 임대회선으로 구성되고, 민간통신회사를 통한 임대회선은 군 자가망이 구축되지 않은 부대 등의 인트라넷, 인터넷, C4I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만 7,612회선을 운용 중에 있음.

육군이 1만 4,525회선으로 가장 많고 해군 1,329회선, 공군 1,073회선, 해병 685회선 순임.

[각 군별 민간통신사(KT, SKB, LGU+) 임대회선 이용 현황]

(단위: 회선 수)

총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
17,612	14,525	1,329	1,073	685

자료: 국방부

28) 일반회계-통신요금(2131-304)(지능정보화정책관실)

나. 검토의견

통신요금 사업은 임대회선 통신망 계약에 있어서 각 군별 다수의 계약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에 따른 예산절감이 어려우므로, 국방부는 임대회선 계약시 계약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각 군별 임대회선 통신망 집행금액은 육군 408억 5,700만원, 해군 66억 8,300만원, 공군 139억 800만원, 해병대 36억 6,800만원 등 총 651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각 군 모두 예산 편성액을 초과하여 임대회선 사용금액을 집행하고 있음.

[2024년도 각 군 임대회선 통신망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편성액	2024년 집행액	비고
육군	35,107	40,857	-임대회선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안부 발간) 및 민간통신회사의 이용약관을 기반으로 청약하여 월사용요금을 납부하고 있음 -이용약관에 따라 장기회선 할인 적용 및 통합납부로 다량·다회선 할인 적용
해군	6,532	6,683	
공군	13,286	13,908	
해병대	3,481	3,668	
합계	58,406	65,116	

자료: 국방부

각 군별 임대회선 계약 주체를 보면, 육군은 군단/작전사에서, 해군은 함대사령부에서, 공군은 항공통신전대에서,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 본부에서 각각 계약하고 있어 계약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각 군별 임대회선 계약 주체]

구분	계약단위
육군	- 장기회선: 군단/작전사 청약 및 육군본부에서 통합납부 - 단기회선: 군단/작전사 청약 및 납부
해군	- 함대사령부 청약 및 해군본부 통합납부
공군	- 항공통신전대 청약 및 납부
해병대	- 해병대사령부 본부 청약 및 납부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군을 통합한 임대회선 계약은 부대 증·창설, 무기체계 도입,

훈련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민간 임대회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지역(도서지역, 산간 고지대 등)의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일부 통신사만 이용 가능하여 통합계약이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전군 통합 임대회선 계약이 어렵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일부 타당성을 가지나,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우선 각 군이 개별적으로 임대회선을 계약할 경우 동일 지역 내 중복 회선 임차나 통합할인 미적용 등의 비효율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전군 통합계약시 회선 수요의 일괄 관리 및 단가 협상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특수지역(도서·산간지역)의 경우 통합 계약 체계를 마련하되 별도 조건이나 단가로 계약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대의 증·창설이나 무기체계 도입 등으로 인해 회선 수요가 수시로 발생시 일정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옵션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임대회선 계약의 분산은 통신보안 및 관리 책임의 일관성을 해치고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며, 국방부는 전군 통합 임대회선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지역이나 긴급한 수요 발생 등은 예외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의무물자확보 사업: 면밀한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필요

가. 개 요

‘의무물자확보’ 사업은 예방중심의 군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백신비 및 장병 진료를 위한 필수의약품, 의료기재 소요와 장비운영을 위한 소모품, 안경지원 등 원활한 의무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05억 6,600만원 중 1,089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5%)되고 8억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억 200만원은 불용되었음.[29)]

[2024년도 의무물자확보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등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의무물자확보	111,214	111,214	1,345	△1,993	110,566	108,922	842	802	99,911
보건용마스크	3,749	3,749	-	△3,024	725	725	-	-	1,339
안경제작	4,821	4,821	-	△1,326	3,495	3,455	-	40	3,92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보건용마스크’**는 장병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KF급)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2,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보건용마스크 지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완료된 후 외부근무 및 대민지원 등에 따른 감염 위험 및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용마스크가 보급되고 있음.

2024년도 예산은 보건용마스크 보급기준을 주 단위 지급기준(주당 5~7매)에서 연 단위 지급기준(연 50매)으로 변경되어 수량이 감소되었고, 조달단가도 2023년 250원에서 2024년 240원으로 책정되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안경제작’**은 저시력 장병 전투력 향상 및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4억 9,500만원 중 34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었고, 4,000만원은 불용되었음.

29) 일반회계-의무물자확보(2231-304)(보건복지관)

나. 검토의견

첫째, 보건용마스크 사업의 연도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면밀한 수요예측에 의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 등을 재정립하여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건용마스크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액 37억 4.900만원 중 7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9.3%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예산편성 대비 낮은 집행률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2022년도의 경우 532억 7,100만원 중 259억 7,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8.8%이고, 2023년도의 경우 231억 9,500만원 중 41억 6,600만원이 집행되어 18.0%의 집행률을 보임.

2024년도는 편성 물량을 전년도 9,278만개에서 1,562만개로 줄이고 예산편성액도 전년도 231억 9,500만원에서 37억 4,900만원으로 크게 낮추었음에도 집행률이 19.3%로 저조함.

[연도별 보건용마스크 집행 현황]

연도	예산 편성			집행			
	물량(개)	단가(원)	예산(백만원) (A)	물량(개)	단가(원)	집행(백만원) (B)	집행률 (B/A)
'22년	96,856,408	550	53,271	81,145,200	250	25,971	48.8%
				30,727,780 (비말마스크)	185		
'23년	92,781,000	250	23,195	17,360,100	240	4,166	18.0%
'24년	15,620,833	240	3,749	5,000,000	145	725	19.3%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세먼지 발생 일수에 대한 수요 예측 불일치, 계약 단가 하락, 재고물량 활용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집행률이 50%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예산 편성의 부적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계약단가 하락이 예상되었다면 그에 맞춰 수량 조정이나 편성액 감액이 병행되었어야 하고, 재고물량 활용 역시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요소로, 재고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국방부는 면밀한 수요예측에 의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인별 지급기준을 재정립하여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경제작 사업의 연도별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면밀한 수요파악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경제작 사업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안경제작 사업은 시력저하 장병에 대한 안경 보급을 통해 복무 편의성 및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당초 편성예산 48억 2,100만원 중 34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7%)되었음. 당초 편성예산 대비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022년도 57.6%, 2023년도 70.6%, 2024년도 71.7%로 연도별 집행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집행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22년은 도수측정기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저시력자 전투용 안경테의 집행률이 61.6%, 렌즈조제비 집행률이 50.5%로 나타남. 2023년은 K1 방독면 안경테의 집행률이 62.6%, 저시력자 전투용 안경테의 집행률이 70.0%, 렌즈조제비 집행률이 67.2%로 낮게 나타남. 2024년은 K1 방독면 안경테와 시력검사용 챠트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저시력자 전투용 안경테의 집행률이 50.1%, 렌즈조제비 집행률이 73.4% 등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K5 방독면 안경테만 100.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안경제작사업 집행현황]

(단위: 개, 원, 천원, %)

연도	세부	물량	단가(원)	예산(천원) (A)	집행(천원) (B)	집행률 (B/A)
2022년	K1 방독면 안경테	104,601	2,817	294,661	290,295	98.5
	K5 방독면 안경테	42,704	2,817	120,297	322,480	268.1
	전투용안경 저시력자 안경테	116,505	3,433	399,962	246,218	61.6
	렌즈조제비	263,810	20,000	5,276,200	2,662,648	50.5
	챠트,시력검사용	20	210,924	4,218	4,294	101.8
	도수측정기	26	1,484,700	38,602	0	0.0
	조종사 안경 등	418		18,317	18,077	98.7
	계	527,666		6,152,257	3,544,012	57.6
2023년	K1 방독면 안경테	82,449	3,000	247,347	154,961	62.6
	K5 방독면 안경테	35,335	3,000	106,005	240,206	226.6
	전투용안경 저시력자 안경테	122,337	3,366	411,786	288,113	70.0
	렌즈조제비	240,121	20,000	4,802,420	3,226,952	67.2
	챠트,시력검사용	6	210,924	1,266	15,660	1,237.0
	조종사 안경 등	310		18,317	18,312	99.9
	계	480,558		5,587,141	3,944,204	70.6

(단위: 개, 원, 천원, %)

연도	세부	물량	단가(원)	예산(천원) (A)	집행(천원) (B)	집행률 (B/A)
2024년	K1 방독면 안경테	37,718	3,157	119,075	0	0
	K5 방독면 안경테	67,053	3,157	211,686	212,861	100.5
	전투용안경 저시력자 안경테	104,771	2,528	264,861	132,734	50.1
	렌즈조제비	209,542	20,000	4,190,840	3,084,094	73.4
	챠트,시력검사용	64	251,870	16,120	0	0
	조종사 안경 등	310		18,317	25,317	138.2
	계	419,458		4,820,899	3,455,006	71.7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4년의 경우 K-1 방독면 안경테 및 시력검사용 차트는 야전자산 충족으로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특히 K-1 방독면 안경테는 신형 K-5 방독면이 전력화됨에 따라 구형 K-1 방독면 안경테 소요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 밖에 동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장병들이 직접 외출을 통해 안경 등을 맞춰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낮은 집행률의 원인을 단순히 야전자산 충족이나 신형 방독면 전력화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저시력자 전투용 안경테와 렌즈조제비의 집행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0%~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적정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음.

향후 국방부는 면밀한 수요파악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안경제작 사업에 대한 장병들의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의무시설개선 사업: 면밀한 사전 분석을 통한 사업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의무시설개선' 사업은 열악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의료 인력의 진료 여건을 보장하고, 환자의 2차 감염 사전 차단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29억 1,700만원 중 491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8.1%)되고 94억 8,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2억 8,500만원은 불용되었음.[30)]

[2024년도 의무시설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의무시설개선	46,524	46,524	16,532	△139	62,917	49,148	9,484	4,285	14,314

[내역사업별 미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미집행액
(1)6여단 의무대 신축('22~'25)	7,671	4,827	2,844
(2)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신축('22~'25)	5,357	2,612	2,745
(3)22사단 의무대 신축('22~'25)	5,095	3,433	1,662
(4)항공우주의원진료시설증개축('22~'25)	6,992	5,990	1,002
(5)대전병원 격리병동 리모델링('22~'24)	3,146	2,305	841
(6)5비 의무대 신축('22~'25)	5,228	4,407	821
(7)해의원 격리병동 리모델링('23~'25)	1,666	916	750
(8)8전비 의무대 증개축('22~'24)	3,739	3,315	424
(9)국군외상센터 헬리패드 개선('22~'24)	1,879	1,531	348
(10)해의원 개방병동 환경개선('24~'25)	590	266	324
(11)53사단 의무대 신축('21~'25)	3,596	3,357	239
(12)의연소 BL3 연구시설 신축('21~'24)	772	572	200

30) 일반회계-의무시설개선(2231-305)(보건복지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미집행액
(13)계룡대 지구병원 신축('21~'24)	4,121	3,980	141
(14)15사단 의무대대 신축('23~'26)	1,176	1,047	129
(15)31사단 의무대 신축('21~'24)	1,564	1,444	120
(16)18전비 의무대대 승강기 설치('24~'25)	253	150	103
(17)포항병원 3층병동 리모델링('23~'24)	625	525	100
(18)상무대 의무대 신축('24~'27)	219	169	50
(19)특수전학교 의무중대 신축('23~'26)	2,598	2,574	24
(20)21사단 의무대 리모델링('22~'24)	4,854	4,504	35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의무시설개선 사업은 사전 준비 부족과 행정절차 미흡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방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설계 내용의 완성도와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 여건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의무시설개선사업은 6여단 의무대 신축, 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신축, 22사단 의무대 신축, 대전병원 격리병동 리모델링, 해의원 격리병동 리모델링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중 10개 내역사업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발생되었음.

주요 사업별 이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국방부는 6여단 의무대 신축 사업의 경우 설계용역 일시 중지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가 이월되었고, 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신축 사업의 경우 해군사관학교 근무지원대 신축과 통합하여 진행 중이었으나 근무지원대 신축부지의 건물 해체 승인 지연(2024.6월)으로 전체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 등이 이월되었다고 함.

또한 22사단 의무대 신축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간 설계변경의 발생과 사토처리를 위한 부지선정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어 공사비 등이 이월되었고, 항공우주의료원 진료 시설 증·개축 사업의 경우 설계 시 누락된 증축부지 안전성 검토 등으로 인한 잦은 사업계획 변경(2023~2024년, 5회)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가 이월되었다고 함.

[내역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1)6여단 의무대 신축('22~'25)	7,108	7,671	4,827	**2,124**	720	62.9
(2)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신축('22~'25)	4,578	5,357	2,612	**2,296**	449	48.8
(3)22사단 의무대 신축('22~'25)	5,091	5,095	3,433	**1,630**	32	67.7
(4)항공우주의원진료시설증개축('22~'25)	2,673	6,992	5,990	**985**	16	85.4
(5)대전병원 격리병동 리모델링('22~'24)	2,432	3,146	2,305	**594**	246	73.3
(6)5비 의무대 신축('22~'25)	5,141	5,228	4,407	**796**	24	84.3
(7)해의원 격리병동 리모델링('23~'25)	961	1,666	916	**556**	193	55.0
(8)8전비 의무대 증개축('22~'24)	3,788	3,739	3,315	-	424	88.6
(9)국군외상센터 헬리패드 개선('22~'24)	-	1,879	1,531	-	348	81.5
(10)해의원 개방병동 환경개선('24~'25)	70	590	266	**323**	1	45.1
(11)53사단 의무대 신축('21~'25)	-	3,596	3,357	**118**	122	93.3
(12)의연소 BL3 연구시설 신축('21~'24)	-	772	572	-	200	74.1
(13)계룡대 지구병원 신축('21~'24)	4,387	4,121	3,980	-	141	96.6
(14)15사단 의무대대 신축('23~'26)	2,576	1,176	1,047	-	130	89.0
(15)31사단 의무대 신축('21~'24)	-	1,564	1,444	-	120	92.3
(16)18전비 의무대대 승강기 설치('24~'25)	211	253	150	**61**	42	59.3
(17)포항병원 3층병동 리모델링('23~'24)	628	625	525	-	99	84.1
(18)상무대 의무대 신축('24~'27)	219	219	169	-	50	77.1
(19)특수전학교 의무중대 신축('23~'26)	1,218	2,598	2,574	-	25	99.0
(20)21사단 의무대 리모델링('22~'24)	5,443	4,854	4,504	-	350	92.8

자료: 국방부

이월액이 발생한 10개 내역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유형화하면, 설계오류 수정 등에 따른 설계지연이 5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개발제한구역 협의 등에 따른 대관협의 지연이 3개 사업이며, 기타 현장 여건 변동 및 감리계약 지연이 각각 1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의무시설개선 사업의 주요 집행부진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비율)	사업수
설계 지연	5,109 (54.0%)	5개
대관협의 지연	3,210 (33.9%)	3개
현장여건 변동	594 (6.3%)	1개
감리계약 지연	556 (5.9%)	1개
계	9,469 (100.0%)	10개

주 1) (설계 지연) △국회 지적사항 반영 △설계오류 수정(의료기관 필수설비 누락 등) △증축부지 안전성 검토 등의 사유로 설계 지연
2) (대관협의 지연) △개발제한구역 협의, △건물해체 승인 지연, △인허가 면적 대비 사업계획 상이 등 대관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지연
3) (현장여건 변동) △사토처리를 위한 부지선정 지연, △오수소독 및 배출 설비 재검토 등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 변동으로 사업 지연
4) (감리계약 지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전면책임감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감리계약 유찰로 인한 공기 연장으로 사업 지연

자료: 국방부

이상과 같이 2024년 의무시설개선 사업의 10개 내역사업에서 집행 지연 및 이월액이 발생된 것은 주로 설계 오류 및 대관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사전 준비 부족과 행정절차 미흡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방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설계 내용의 완성도와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 여건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며, 사업대상지의 지형·지질 조건 등 현장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는 등 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재해보상금 사업: 지급인원 감소 추이와 집행률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재해보상금' 사업은 군 복무 중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58억 5,300만원 중 190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3.8%)되고 67억 8,400만원은 불용되었음.[31)]

[2024년도 재해보상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해보상금	25,853	25,853	-	-	25,853	19,069	-	6,784	25,853

재해보상금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군인에게 장애등급 및 장애원인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보상금과 군 복무 중 공무상 사망(전사, 특수직무순직, 그 밖의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으로 구분됨.

장애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32)]에 근거하고 있고, 사망보상금은 같은 법

31) 일반회계-재해보상금(2242-301)(보건복지관실)

32)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제39조[33]에 규정되어 있음.

장애보상금의 지급배율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1급), 6배(2급), 4.5배(3급), 3배(4급)에, 원인별로 1배(일반장애), 1.88배(특수직무공상), 2.5배(전상)가 적용되고 있으며, 사망보상금의 지급배율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공무상 사망), 45배(특수직무순직), 60배(전사)가 적용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2024년도 재해보상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재해보상금 편성 시 장애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이와 연도별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재해보상금 지급인원을 보면, 장애보상금 지급인원은 2022년 458명에서 2024년 287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망보상금 지급인원도 2022년 243명에서 2024년 205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재해보상금 지급인원 발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장애보상금 (등급별)	1급	43	31	40
	2급	31	21	26
	3급	84	73	52
	4급	300	198	169
	계	**458**	**323**	**287**
사망보상금		**243**	**271**	**205**

자료: 국방부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33)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사망보상금)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순직(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③ 외국 근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24년도 재해보상금은 예산편성액 258억 5,300만원 대비 190억 6,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3.8%)되었음. 연도별 재해보상금 집행률은 2022년 83.5% 대비 2024년 73.8%로 9.7%p 낮아졌음. 세부적으로 장애보상금 집행률은 2022년 68.1% 대비 2024년 64.4%로 3.7%p 낮아졌으며, 사망보상금 집행률은 2022년 99.8% 대비 2024년 81.0%로 18.8%p 하락하였음. 특히 장애보상금은 연도별 예산 집행률이 3년 연속 60%대로 부진한 상태임.

[연도별 재해보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편성	결산	집행률	편성	결산	집행률	편성	결산	집행률
재해보상금	28,492	23,779	83.5	24,726	22,287	90.1	25,853	19,068	73.8
장애보상금	14,695	10,010	68.1	10,652	7,276	68.3	11,268	7,251	64.4
사망보상금	13,797	13,769	99.8	14,074	15,011	106.7	14,585	11,817	81.0

* 2023년 장애보상금 → 사망보상금으로 10억원 조정하여 집행
자료: 국방부

2024년도 집행 부진에 대하여 국방부는 재해보상금 인원 및 금액을 추계하기가 어려워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보상금 중 장애보상금은 연도별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추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국방부는 재해보상금 편성에 있어서 장애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이와 연도별 집행률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3.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상근예비역 가입률 제고 필요

가. 개 요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올바른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시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조 184억 4,800만원 중 1조 36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5%)되고, 147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4년도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병내일준비지원	1,019,109	1,019,109	-	△661	1,018,448	1,003,654	-	14,794	1,327,660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35]에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병역의무이행자에게 전역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병역법」제79조의2[36]에 근거를 두고 있음.

2022년 1월 납입 원리금부터 매칭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도는 원리금의 33%인 14.1만원, 2023년도는 원리금의 71%인 30만원, 2024년 이후부터는 입금액의 100%가 매칭 지원되고 있음,

[연도별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 매칭비율]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보수(월액, 병장 기준)	67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적금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34) 일반회계-병 내일준비지원(2242-304)(보건복지관실)

35) 장병내일준비적금: 2021년 비예산 사업으로 시작, 기본금리 5%, 비과세, 시중은행에서 제공

36)「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입금액의) 100%	(입금액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전역시 정부지원금(최대) *해당년 1월 육군(18개월) 입대 기준	349.2만원	600만원	810만원	990만원

자료: 국방부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지원절차는 복무만료 후 적금 만기 해지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 및 금액 등이 확인된 후 지원금이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상근예비역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와 가입 유도 방안을 강구하여 상근예비역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동 사업은 예산현액 1조 184억 4,800만원의 98.5%인 1조 36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2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48.4%, 2023년도 예산현액 집행률 76.2%와 비교할 때 2024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8.5%는 개선된 수치임.

[연도별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219,009	219,009	△32,117	186,892	90,386	48.4	-	96,506
2023	658,421	658,421	-	658,421	501,400	76.2	-	157,021
2024	1,019,109	1,019,109	△661	1,018,448	1,003,654	98.5		14,794

자료: 국방부

역종별 가입률을 보면, 현역이 25만 7,779명 중 25만 6,773명이 가입하여 99.6%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상근예비역은 4,988명 중 1,909명이 가입하여 38.3%의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복무요원은 1,574명 중 911명이 가입하여 57.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2024년도 역종별 가입현황]

구 분		복무인원	총가입자	가입률	평균납입액 (최대 40만원)
국방부	현역	257,779명	256,773명	99.6%	39.6만원
	상근예비역	4,988명	1,909명	38.3%	28.2만원
	대체복무요원	1,574명	911명	57.9%	35.2만원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45,213명	42.009명	92.8%	37.8만원

자료: 국방부, 병무청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장병의 사회진출을 돕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국방부의 현역병 대상 사업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고 보여짐.[37)]

다만 상근예비역의 가입률이 38.3%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복무형태가 유사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의 가입률 92.8%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근예비역의 가입률이 50%p 이상 낮음. 평균납입액 역시 상근예비역은 28.2만원으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의 37.8만원보다 약 10만원 가량 낮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상근예비역 대상 사업추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상근예비역의 경우 가정을 꾸리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복무 중 급여를 저축하기보다는 생활비로 사용함에 따라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그 목적이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가정을 가진 상근예비역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정을 꾸리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낮은 가입률을 정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오히려 생계 부담이 있는 상근예비역일수록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국방부는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와 가입 유도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7) 또한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가입률은 57.9%로 다소 낮게 보일 수 있으나, 병내일준비지원금이 최대 24개월까지만 지급되는 제도적 한계를 감안할 때 전체 복무기간이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가입률은 반드시 낮다고 만은 할 수 없으며,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14.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 과도한 이·전용 지양 필요

가. 개 요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은 국직 부대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훈련용 탄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09억 2,000만원 중 176억 2,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4.2%)되고 31억 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음.[38)]

[2024년도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386	386	43	20,490	20,920	17,622	3,196	101	8,383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던 드론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므로, 국방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 권한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사업은 당초 5.56mm 보통탄, 연습용 수류탄 및 40mm 연습유탄을 구입하기 위해 3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5.56mm 보통탄 구입에만 3억 3,6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다르게 집행되었음.

[2024년도 소형자폭드론외 기타 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천발)

구분	세부 구분	예산액	집행액	편성수량	집행수량
기타 탄	5.56mm 탄약	328	336	621	710
	연습용수류탄	7	0	1	0
	40mm 연습유탄	40	0	0.2	0
	cs 캡슐	1	0	0.3	0

자료: 국방부

38) 일반회계-주요기관 교육용 탄약(2339-304)(군수관리관실)

또한 국방부는 예산액의 53배 이상인 204억 9,000만원을 사업조정(세부사업 변경) 및 이·전용하여 증액한 후 소형자폭드론 구입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2024년도 소형 자폭드론 구입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약기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소형자폭드론-I형 (국내구매)	2024.11.14 ~ 2024.12.27	-	7,000	7,000	3,704	3,196	101	52.9
소형자폭드론-II형 (국외구매)	2024.10.2 ~ 2024.12.16	-	13,490	13,490	13,490	-	-	100.0
계		-	20,490	20,490	17,194	3,196	101	83.9

자료: 국방부

그런데 지금과 같이 당초 사업비를 크게 증액하여 국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39] 및 제46조제3항[40]에 따른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국방부는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최근 실전 사례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어 드론 관련 전술 배양 및 전문 운용인력 양성을 위해 드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설명은 예산집행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해외 사례만을 근거로 사후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짐. 특히 과도한 이·전용을 통한 예산 집행의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가 반복적으로 이·전용하여 신규 드론사업을 추진한 것은 국

3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0)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회의 재정통제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향후 국방부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 권한을 철저히 존중하고, 추가적인 전력 소요가 발생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 계약 체결 확대 필요

가. 개 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및 안전교육훈련 발전 등 국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39억 2,600만원 중 316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4%)되고, 2억 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억 4,400만원은 불용되었음.[41]

[202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난 및 안전관리	32,527	32,527	832	567	33,926	31,687	296	1,944	32,245

재난예방공사는 병영 내 인명과 군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을 보강하는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어야 함.

나. 검토의견

동 사업 추진시 재난예방공사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재난예방공사의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2024년도 국방부는 재난예방공사 관련 계약을 총 211건 체결하였으며 이 중 수의계약을 160건(75.8%),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51건(24.2%) 체결하였음. 최근 4년간 재난

41) 일반회계-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군수관리관실)

예방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2021년도는 수의계약 89.8%에 경쟁입찰 10.2%로 나타나고 있고, 2024년도는 수의계약 75.8%에 경쟁입찰 24.2%로 수의계약 비율이 조금 낮아졌으나, 여전히 수의계약의 비율이 경쟁입찰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 재난예방공사 계약 현황]

(단위: 건, %)

연도	수의계약		경쟁입찰		총 계약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1년	221	89.8	25	10.2	246	100.0
2022년	160	88.9	20	11.1	180	100.0
2023년	171	83.8	33	16.2	204	100.0
2024년	160	75.8	51	24.2	211	100.0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①입찰방식에 따른 평가결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②응찰 가능한 업체를 다수 확보하기 위함이며, ③재난예방공사의 특성상 예방이 긴급히 요구되거나 위험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우기 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①수의계약은 애초에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의한 가격 및 품질 경쟁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에 실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②응찰 가능한 업체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해야 하며, ③재난예방공사는 본질적으로 자연재해 발생 전에 사전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구조물을 보강하는 사업이므로, 우기 이전 실시를 목표로 연초 또는 전년도부터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일정과 집행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42]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지명경쟁,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방부는 대부분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경쟁입찰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향후 국방부는 재난예방공사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 계약 집행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16. 비군사화 사업: 탄약 비군사화 적체물량 해소 필요

가. 개 요

'비군사화' 사업은 탄약 비군사화 적체물량을 해소함으로써 저장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탄약 비군사화 처리 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대상 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1억 3,700만원 중 211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고 100만원은 불용되었음.[43]

[2024년도 비군사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비군사화	21,102	21,102	-	35	21,137	21,136	-	1	17,038

탄약 비군사화는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용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불용으로 판정된 탄약을 안전하게 해체·폐기하여 군사적 활용 가치가 낮은 탄약의 방치로 인한 저장공간 부족, 폭발 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비군사화 사업의 운영방식은 5년 단위 계약을 통해 민간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화학공업(주)에 의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위탁운영(계약금액 516억 9,400만원)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비군사화 사업은 비군사화 대상 탄약의 신규발생 및 적체 물량이 국방부의 처리물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시설확충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군사화 적체물량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비군사화 처리실적을 보면 전년도 잔여량(3만 7,218톤)과 전년도 신규발생

43) 일반회계-비군사화(2340-302)(전력자원관리관실)

물량(4,529톤)을 합산한 대상물량(적체물량) 4만 1,747톤 중 3,661톤을 처리(처리율 8.8%)하여 잔여량이 3만 8,086톤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잔여량 수치는 2020년 2만 9,759톤에서 2021년 3만 1,527톤, 2022년 3만 5,667톤, 2023년 3만 7,218톤, 2024년 3만 8,086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탄약 비군사화 처리실적]

(단위: 톤)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상물량(적체물량)		31,928	33,998	37,322	39,864	41,747
처리 실적	시설처리	1,376	1,306	1,189	2,053	2,727
	장소처리	793	1,166	466	593	934
	계 (처리율)	2,169 (6.8%)	2,471 (7.3%)	1,655 (4.4%)	2,646 (6.6%)	3,661 (8.8%)
잔 여 량		**29,759**	**31,527**	**35,667**	**37,218**	**38,086**
신규발생		4,239	5,795	4,197	4,529	6,671

자료: 국방부

신규발생 물량은 2020년 4,239톤에서 2024년 6,671톤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연도별 처리실적을 초과하는 수치임.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처리하지 못하는 잔여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자탄 분해시설 및 가열형 기폭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해 해결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필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비군사화 시설 확충 계획]

구 분	내 용
비군사화 시설 추가건설	❍ 자탄분해시설 건설: 2023년 ~ 2026년 ❍ 가열형 기폭처리시설 건설: 2026년 ~ 2029년 ❍ 신규개발 탄약 비군사화시설 확보: 2030년 이후
기술개발 확 대	❍ 1단계: 비군사화시설 건설사업과 연계, 주요탄종 기술개발 ❍ 2단계: 군 주도, 국과연 지원 기술개발 추진 ❍ 3단계: 비군사화 기술개발 조직 구성, 기술개발 전담 추진
시설운영 개선 및 현대화/자동화	❍ 가열형기폭처리시설 3교대 운영을 통한 처리능력 향상 등 ❍ 노후 주요설비 교체(소각로 교체 등) 및 비군사화 시설 자동화 체계 구축
신기술을 활용한 비군사화	❍ 신기술을 활용한 탄약 비군사화 방안 연구 추진(지속) * 레이저, 미생물을 활용한 비군사화 방안(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자료: 국방부

그런데 향후 국방부가 추진할 비군사화 신규 시설의 처리능력을 보면, 2026년까지 완공하는 자탄분해시설은 연간 처리능력이 300톤이고, 2029년까지 확충하는 가열형 기폭처리시설은 연간 처리능력이 500톤으로 연간 총 800톤의 처리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나, 매년 신규로 처리해야할 비군사화 물량이 2020년 4,239톤에서 2024년 6,671톤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추가로 확보되는 연간 800톤의 처리능력만으로는 실질적인 적체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탄약 비군사화시설 추가 건설 계획]

구 분	자탄분해시설	가열형 기폭처리시설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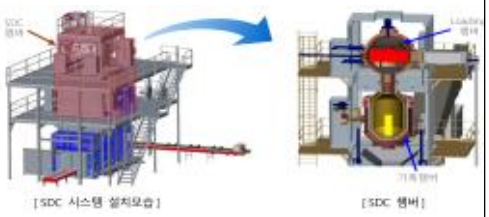 [SDC 시스템 설치모습] [SDC 챔버]
건축기간	2023. 4월 ~ 2026. 11월 예상(건설 中)	2026. 7월 ~ 2029. 12월
예 산	194.8억원	199.6억원
처리능력	연간 300 톤	연간 500 톤
처리탄종	- 성형장약자탄, 구(球)형자탄	- 조명・소이・신호・연막・최루탄 등 화공품 탄약류, - 대인지뢰류, 중형 고폭탄, 구(球)형/나비형 자탄 등

자료: 국방부

이처럼 탄약 비군사화 처리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장기 보관으로 인한 폭발・화재 위험이 커지고, 탄약의 보관 및 관리 비용이 늘어나 예산의 비효율성이 심화되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민원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군사화 대상 탄약의 신규발생 및 적체 물량이 향후 국방부가 시설확충을 통해 추진하는 처리물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단기적인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군사화 적체물량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　타】

1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방부에 대해 시정요구 54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2건·주의 9건·제도개선 33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2	9	33	-	54
예비비	-	-	-	-	-	-	-
합계	-	-	12	9	33	-	54

국방부는 시정요구사항 54건에 대해 3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0.4%)하고 16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54	38	70.4	16
예비비	-	-	-	-
합계	54	38	70.4	16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국방부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국방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3회계연도 결산	(16) 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및 법무부 등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무조정실은 그 이행을 지원한다.
	(17)국방부는 777사령부 산하부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병무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억 800만원(32.2%)이 많은 4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00만원(△8.7%)이 감소함.[1)]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00	300	487	187	336	336	444	108	△43
총수입	300	300	487	187	336	336	444	108	△43

문의 : 박제성 예산결산조사관 thesquare@assembly.go.kr (02-6788-567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09억 8,100만원(△5.1%)이 적은 3,908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4억 400만원(27.1%)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33,109	333,109	307,488	25,621	411,873	411,873	390,892	20,981	83,404
총지출	333,109	333,109	307,488	25,621	411,873	411,873	390,892	20,981	83,404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억 3,600만원으로, 5억 5,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억 4,400만원이 수납(수납률 80.7%)되고 1억 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36	336	-	336	551	444	107	-
합 계	336	336	-	336	551	444	107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118억 7,300만원으로, 이 중 3,908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9%)되고 209억 8,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11,873	411,873	-	±730	-	411,873	390,892	-	20,981
합 계	411,873	411,873	-	±730	-	411,873	390,892	-	20,981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병무청 자산은 전년 대비 30억 8,400만원이 증가한 3,802억 9,800만원으로, 이는 무형자산이 10억 6,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6억 9,700만원 각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17억 2,1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31억 4,2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226억 2,900만원 증가한 1,763억 2,3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1,330억 3,7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95억 4,500만원이 감소한 2,039억 7,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병무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96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5,329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1억 6,2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병무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80,298	377,214	3,084	0.8
		유동자산	9,505	7,784	1,721	22.1
		투자자산	63	80	△17	△21.3
		일반유형자산	357,682	354,540	3,142	0.9
		무형자산	4,845	5,912	△1,067	△18.0
		기타비유동자산	8,202	8,899	△697	△7.8
	부 채		176,323	53,694	122,629	228.4
		유동부채	5,308	13,735	△8,427	△61.4
		장기차입부채	6,283	8,265	△1,982	△24.0
		장기충당부채	164,731	31,694	133,037	419.8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03,975	323,520	△119,545	△37.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9,658	28,650	1,008	3.5
	재정운영순원가		532,929	358,767	174,162	48.5
	재정운영결과		532,929	358,767	174,162	48.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병무청은 일반회계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병무청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처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군소요 적정 충원 및 신속한 동원태세로 튼튼한 안보 지원, 보충역 및 대체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회 통합 기여,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자긍심 고취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일반회계 4개 프로그램 20개 세부사업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모집·현역병 입영·산업지원인력·사회복무요원 교육·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대체역 편입 및 소집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징계부과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보완하여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이 예산상의 문제로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모든 복무지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잠복결핵검사 양성률이 1%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현행 잠복결핵검사 사업은 실효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병무청은 검사 대상자 범위를 축소·조정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징계부과금: 징계부과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및 점검 필요

가. 개 요

‘징계부과금’ 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수납할 부과금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6,100만원 중 200만원이 수납(수납률 3.8%)되고 5,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2)]

[2024년도 징계부과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징계부과금	-	-	61	2	59	-	3.8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공무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징계부과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보완하여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징계부과금(56-564)(기획조정관실)

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3]에 따라 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 횡령, 배임, 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득 금액의 5배 내에서 부과되는 금액임.

징계부과금은 2024년도 외에는 징수결정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2024년도만 징계부과금 6,100만원이 발생되었음.

징계부과금 세부 내역을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4] 위반 3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5] 위반 2건 등 총 5건의 징계부과금이 발생되었음.

---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4)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4년도 징계부과금 세부 내역]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부과 사유	부과일	부과금액	수납액	미수납액
배○○	국공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2024. 6. 4.	35,615	-	35,615
박○○	국공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2024. 6. 4.	22,600	-	22,600
김○○	국공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2024. 9. 12.	1,180	1,180	-
김○○	국공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2024. 9. 12.	1,180	1,180	-
정○○	국공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2024. 12. 24.	829	-	829

* 2024년 이전 징계부과금 발생내역 없음, 미수납 3건 중 1건(829천원)은 2025.2월 수납완료
자료: 병무청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일탈로 인해 비리행위가 발생되는 원인은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 및 청렴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고, 내부통제가 부족하여 비정상적인 행위가 사전에 차단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병무청은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보완하여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 복무규정 위반자 전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실시 필요

가. 개　요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무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7억 7,600만원 중 57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900만원은 불용되었음.[6)]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사회복무요원 교육	5,751	5,751	-	122 △97	5,776	5,767	-	9	4,174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복무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으로 나뉘어지고 있음.

복무기본교육은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대상인 '기본과정'과 성실복무자 및 미래설계 등 교육 희망자가 대상인 '디딤과정'으로 구분되고, 복무지도교육은 복무규정 위반자 및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나래과정', 반복적 복무규정 위반자 및 반복적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롬과정', 현역복무부적합자 중 군 복무 적응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음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음.

6) 일반회계-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사회복무국)

[사회복무요원 과정별 교육 현황]

구분	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기본과정	디딤과정	나래과정	새롬과정	이음과정
교육방식	집합 및 온라인	집합 및 온라인	집합 및 온라인	집합 및 온라인	집합 및 온라인
교육대상	모든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대표, 10개월 이상 성실복무자 및 미래설계·진로탐색 교육 희망자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반복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이외에 복무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현역복무부적합자 중 군 복무 적응 곤란자
교육시기	군사교육소집 해제일 또는 소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수료 후	복무부실 발생 후 가급적 최기일	복무부실 발생 후 가급적 최기일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수료 후 가급적 최기일
교육기간	4박 5일	2박 3일	2박 3일	4박 5일	2박 3일

자료: 병무청

나. 검토의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위반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이 예산상의 문제로 일부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모든 복무지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복무 기본 및 지도교육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2021년도는 3만 7,588명 계획 대비 3만 8,830명(103.3%)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고, 2024년도는 2만 9,440명 계획 대비 2만 8,773명(97.7%)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교육계획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	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기본	디딤	나래	새롬	이음
2021년	계획	37,588	-	35,968	400	720	420	80
	실적	38,830	103.3	37,099	439	778	419	95
2022년	계획	29,808	-	27,808	1,040	520	400	40
	실적	29,861	100.2	27,881	1,038	526	362	54
2023년	계획	30,000	-	28,640	400	520	400	40
	실적	30,733	102.4	29,351	424	507	399	52
2024년	계획	29,440	-	28,080	400	520	400	40
	실적	28,773	97.7	27,320	418	563	425	47

자료: 병무청

이 중에서 복무지도교육은 복무분야 부적응자에 대한 교육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임무의 이해, 바람직한 근무태도 등 성실복무를 유도하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2024년도 복무지도교육 대상자 및 이수 현황을 보면, 나래과정은 520명 계획 대비 563명, 새롬과정은 400명 계획 대비 425명, 이음과정은 40명 계획 대비 47명 등 약 1,000여명의 교육실적을 보이는 등 모든 과정이 계획인원은 초과하고 있음.

그런데 복무지도교육 잠재적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위반자 등의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도는 복무이탈 853명, 복무의무위반 1,191명 등 총 2,044명이고, 2022년도는 복무이탈 990명, 복무의무위반 1,087명 등 총 2,077명이며, 2024년도는 복무이탈 912명, 복무의무위반 981명 등 총 1,893명으로 매년 약 2천여명 정도의 잠재적 복무지도교육 대상자들이 발생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복무지도교육 실적은 연도별 약 1천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음.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위반자 등 발생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복무이탈(무단결근) *			복무의무위반 **		
		소계	복무연장 (7일이내)	고발 (8일이상)	소계	경고 (복무연장)	고발
2020년	2,044	853	670	183	1,191	1,180	11
2021년	1,743	819	638	181	924	915	9
2022년	2,077	990	754	236	1,087	1,077	10
2023년	2,125	1,087	826	261	1,038	1,026	12
2024년	1,893	912	695	217	981	961	20

* 복무이탈 시 마다 복무연장(이탈일수(1일) + 5일 연장복무), 8일이상 복무이탈한 경우 고발
** 복무의무위반 시 마다 경고(5일 연장복무) 처분, 위반 사유별 경고 누적 시 고발
자료: 병무청

이에 대해 병무청은 매년 교육예산이 감액되어 의무교육인 복무기본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복무지도교육(나래·새롬 등)은 예산상의 문제로 교육대상 인원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교육예산은 2020년 94억 6,000만원에서 2024년 57억 5,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음. 이에 따라 복무지도교육 계획인원도 2020년 2,960명에서 2024년 960명으로 감소되었음.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9,460	8,423	6,649	5,860	5,751
전년대비 증감		△1,037	△1,774 (이관 1436)	△789 (이관 957)	△109
복무지도교육 계획인원	2,960	1,220	960	960	960

* 교육운영 사업과 관련 없는 예산항목 이관(2,393백만원)
- 공무직 인건비(2022년) :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사업으로 1,436백만원 이관
- 교육생 여비, 수송차량 임차료(2023년) : 병역의무자지원 사업으로 957백만원 이관

자료: 병무청

그러나 복무지도교육은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교육으로써 이들이 병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교육임을 고려할 때, 병무청이 예산상의 문제로 복무지도교육을 모든 복무규정 위반자에게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동 교육의 취지를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병무청은 복무지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무규정 위반자 등 잠재적 교육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복무지도교육 인원을 확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잠복결핵검사: 잠복결핵 양성률을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등

가. 개 요

'잠복결핵검사' 사업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6억 8,800만원 중 28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0%)되고 8억 5,000만원은 불용되었음.[7)]

[2024년도 잠복결핵검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병역판정검사	19,551	19,551	-	±399	19,551	18,496	-	1,055	22,519
잠복결핵검사	3,688	3,688	-	-	3,688	2,838	-	850	3,56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잠복결핵검사 사업은「결핵예방법」제3조에 따라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2017년도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실시되고 있음.[8)]

잠복결핵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자 전원 및 모집병 지원자이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7급(보류) 및 귀가자 등으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등이 대상자에 해당되고 있음.

검사절차는 병역판정검사 시 채혈 후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양성판정에 대한 사후관리는 잠복결핵 검사결과를 대상자에 통보 및 안내함으로써 치료권유 등이 실시되고 있음.

---

7) 일반회계-병역판정검사(1131-301)(병역자원국)

8)「결핵예방법」
제3조(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 · 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양성판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구분		주관기관	내 용
입대 전	1차	병무청	잠복결핵 검사결과 통보 및 안내
	2차	질병관리청	치료기관 안내, 치료권유
입대 후	3차	국방부	미치료자 치료권유 및 치료(치료자 질병관리청 통보)

자료: 병무청

나. 검토의견

첫째, 잠복결핵검사 양성률이 1%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건강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현행 잠복결핵검사 사업은 실효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병무청은 검사 대상자 범위를 축소·조정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잠복결핵검사에 대한 양성판정률을 보면, 2022년 1.0%, 2023년 1.5%, 2024년 1.1%, 2025년 2월 28일 현재 0.5%로 낮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잠복결핵검사 결과]

(단위: 명)

연도	검사 인원	검사 결과			
		음성	%	양성	%
2022년	255,231	252,663	99.0	2,568	1.0
2023년	244,559	240,783	98.5	3,776	1.5
2024년	227,537	225,055	98.9	2,482	1.1
2025년	43,597	43,361	99.5	236	0.5

자료: 병무청

이처럼 최근 수년간 잠복결핵검사의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1%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0.5%로 더욱 하락하고 있어,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검사 대상자가 대부분 건강한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예산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고, 결핵 고위험군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실시하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걸러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말하기·재채기 등을 통해 공기 전파(Airborne transmission)가 이루어질 수 있어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지만,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않아 전염성이 없다는 점에서 결핵만큼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님.[9] 이에 병무청은 잠복결핵검사 대상을 제한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10]

잠복결핵검사 사업은 건강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양성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사업의 효과성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병무청은 잠복결핵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시 검사 대상을 제한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11]

9) 대한결핵협회홈페이지(https://www.knta.or.kr)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10) 병무청은 국방부 및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사업규모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음.

11)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제한할 필요

둘째, 단가 산정의 부정확으로 낙찰차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제 계약금액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예산액에서 낙찰액을 제외한 낙찰차액을 보면, 2022년 2,200만원, 2023년 3억 7,600만원, 2024년 8억 3,000만원, 2025년 10억 3,300만원으로 낙찰차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잠복결핵검사 예산 및 낙찰자액 내역]

구분	예산		낙찰액		낙찰차액 (백만원)
	예산액 (백만원)	1인당 단가(원)	예산액 (백만원)	1인당 단가(원)	
2022년	4,069	16,000	4,047	15,570	22
2023년	4,014	16,000	3,638	14,500	376
2024년	3,688	16,000	2,858	12,400	830
2025년	3,560	16,000	2,527	11,358	1,033

자료: 병무청

이는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경쟁입찰에 따라 1인당 단가가 낮게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예산편성 시 보수적인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함에 따라 낙찰차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단가 과다 편성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병무청은 실제 연도별 계약금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검사 단가를 계상할 필요가 있음.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병무청에 대해 시정요구 12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제도개선 11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1	11	-	12
예비비	-	-	-	-	-	-	-
합계	-	-	-	1	11	-	12

병무청은 시정요구사항 12건에 대해 1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91.7%)하고 1건을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2	11	91.7	1
예비비	-	-	-	-
합계	12	11	91.7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비공개(p. 228 - p. 284)

문의 : 박제성 예산결산조사관 thesquare@assembly.go.kr (02-6788-5677)

행정안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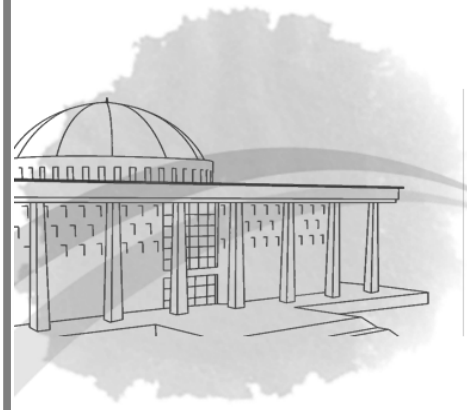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107억 3,500만원(△56.5%)이 적은 1,960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억 800만원(25.0%)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8,671	68,671	147,068	78,397	306,811	306,811	196,076	△110,735	49,008
총수입	68,671	68,671	147,068	78,397	306,811	306,811	196,076	△110,735	49,008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조 2,569억 5,700만원(△3.2%)이 적은 70조 1,903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1,633억 5,300만원(△3.1%)이 감소함.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0,487,829	80,487,829	72,353,752	△8,134,077	72,447,356	72,447,356	70,190,399	△2,256,957	△2,163,353
총지출	80,487,829	80,487,829	72,353,752	△8,134,077	72,447,356	72,447,356	70,190,399	△2,256,957	△2,163,353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068억 1,100만원으로, 2,216억 9,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960억 7,600만원이 수납(수납률 88.4%)되고 256억 1,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95,470	295,470	-	295,470	128,372	110,777	17,59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41	11,341	-	11,341	93,322	85,300	8,023	-
- 지역자율계정	1,861	1,861	-	1,861	17,801	17,771	31	-
- 지역지원계정	9,480	9,480	-	9,480	75,467	67,475	7,992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54	54	-	-
합 계	306,811	306,811	-	306,811	221,694	196,076	25,618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2조 4,790억 2,600만원으로, 70조 1,903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261억 9,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조 2,624억 2,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9,758,818	69,758,818	30,765	606	147	69,790,336	67,505,953	25,971	2,258,4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88,538	2,688,538	152	-	-	2,688,690	2,684,446	227	4,017
- 지역자율계정	216,684	216,684	-	-	-	216,684	216,684	-	-
- 지역지원계정	2,453,891	2,453,891	152	-	-	2,454,043	2,449,799	227	4,017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030	11,030	-	-	-	11,030	11,030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6,933	6,933	-	-	-	6,933	6,933	-	-
합 계	72,447,356	72,447,356	30,917	606	147	72,479,026	70,190,399	26,198	2,262,429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행정안전부 자산은 전년 대비 2,214억 9200만원이 감소한 11조 9,424억 7,500만원으로, 이는 투자자산이 143억 1,500만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12억 2,000원, 일반유형자산이 2,032억 4,200만원, 무형자산이 163억 3,200만원 각각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46억 5,700만원 증가한 1,793억 9,2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156억 3,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391억 4,800만원이 감소한 11조 7,630억 8,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9조 8,572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575억 3,5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0조 2,283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815억 3,5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1,942,475	12,156,967	△214,492	△1.8
		유동자산	105,225	105,347	△122	△0.1
		투자자산	14,315	9,325	4,990	53.5
		일반유형자산	11,448,867	11,652,109	△203,242	△1.7
		무형자산	368,787	385,119	△16,332	△4.2
		기타비유동자산	5,281	5,066	215	4.2
	부 채		179,392	154,735	24,657	15.9
		유동부채	66,075	57,050	9,025	15.8
		장기차입부채	113,316	97,685	15,631	16.0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1,763,084	12,002,232	△239,148	△2.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69,857,299	72,414,834	△2,557,535	△3.5
	재정운영순원가		70,228,336	72,709,871	△2,481,535	△3.4
	재정운영결과		70,228,336	72,709,871	△2,481,535	△3.4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결산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흐름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1,108억원	67조 5,060억원	853억원	26,844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혁신,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안전 구현을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20개 프로그램과 289개 세부사업에서 지방자치분권, 지자체 경쟁력 제고, 디지털플랫폼 정부기반 구축,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 증진, 재난피해 최소화,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지방교부세 중 2.2조원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은 2024년 예산 대부분이 2023년에 발생한 피해복구비의 지급을 위해 이연집행되었고, 당해 연도에 발생한 지출소요에 대해서는 대규모 이·전용 및 차년도 본예산 편성에 의해 부족재원을 충당하였는데, 예비비의 적기 사용 등을 통해 재해대책비 부족액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주한미국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부 지역사업의 예산이 수시배정을 거쳐 연말에야 교부되어 대부분 미집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는 향후 계획변경을 위한 협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보조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 사업은 학습데이터를 제작 및 배포하여 각 지자체의 지능형 관제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 현 사업 여건상 비용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데이터 활용 여부 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일부 지자체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실집행부진 지자체에 대해 감액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실제 감액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집행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실집행관리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사업은 2024년 출자대상으로 선정된 5개 지역개발 프로젝트중 4개 프로젝트에서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어 2025년 6월말 기준으

로도 출자금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자펀드 결성시한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일부 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절차상 하자로 이월되지 못하였음에도 반납처리되지 않아 정산이 2025년 4월까지 지연되었고, 당초 이월액에 의해 충당하고자 하였던 2023년의 지출소요를 2024년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사업운영이 부적정하였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보조사업 관리의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은 상담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추진되다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집행 부진 및 불필요한 추가지출소요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지방교부세: 세수결손 시 교부세 미교부 부적절

가. 개 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임.[2)]

지방교부세는 목적 및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3개 특별교부세(지역현안특별교부세,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2024년 예산현액 합계 66조 7,593억 2,400만원 중 64조 5,229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2조 2,363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지방교부세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A)							
보통교부세	59,843,917	59,843,917	-	-	59,843,917	57,793,200	-	2,050,717	60,401,769
지역현안특별교부세	740,337	740,337	-	-	740,337	715,000	-	25,337	658,551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85,084	185,084	-	-	185,084	178,800	-	6,284	164,638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925,421	925,421	-	-	925,421	893,699	-	31,722	823,189
부동산교부세	4,109,800	4,109,800	-	-	4,109,800	4,109,800	-	-	4,004,709
소방안전교부세	954,765	954,765	-	-	954,765	832,495	-	122,270	985,649
합계	66,759,324	66,759,324	-	-	66,759,324	64,522,994	-	2,236,330	67,038,505

주) 2025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보통교부세(1631-300)(교부세과), 일반회계-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교부세과), 일반회계-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교부세과), 일반회계-부동산교부세(1633-300)(교부세과), 일반회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자연재난실), 일반회계-소방안전교부세(1645-300)(안전예방정책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는 목적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및 3개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 일부[3]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음.[4]

[지방교부세의 유형 구분]

구분		교부기준
보통교부세 (내국세 일부의 19.24% 중 97%)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6조)
특별교부세 (내국세 일부의 19.24% 중 3%)	국가지방 협력 (10%)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지역현안 (40%)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재난안전 관리 (50%)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100%)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되, 재정여건을 감안·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개별소비세 45%)		소방인력 운용·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내국세 일부 = 내국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 + 특별회계 법정 재원에 해당하는 세목) × 19.24%

4)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3
4. 부동산교부세: 제1항제2호의 금액 + 제1항제5호의 정산액
5. 소방안전교부세: 제1항제3호의 금액 + 제1항제6호의 정산액

나. 검토의견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2.2조원 상당의 지방교부세를 불용처리한 것은 국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을 예상하고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24.10.28.)에서 해당 부족액을 ㉠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14~16조원), ㉡ 교부세(금) 배정 유보(교부세 50%, 교부금 80%)(6.5조원) 및 ㉢ 통상적 불용(7~9조원)에 의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예산액 합계 66조 7,593억 2,400만원 중 약 3.3%인 2조 2,363억 3,000만원이 불용처리하였음.

[2024년 지방교부세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액 (A)	집행액	불용액 (B)	비율 (B/A)
보통교부세	59,843,917	57,793,200	2,050,717	3.4
지역현안특별교부세	740,337	715,000	25,337	3.4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85,084	178,800	6,284	3.4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925,421	893,699	31,722	3.4
소방안전교부세	954,765	832,495	122,270	12.8
부동산교부세	4,109,800	4,109,800	-	-
합계	66,759,324	64,522,994	2,236,330	3.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는 각각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교부금액 결정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에서는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규정상 전액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5] 그리고 「지

5)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

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교부세의 재원이 증감하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

그런데 정부는 2023년에도 세수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 8조 1,688억 5,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7)] 이에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불용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8)]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지방교부세 미교부 관련)]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33) 지방교부세 미교부 및 미교부 규모 임의결정 재발방지 필요	관련 사업명	지방교부세 프로그램(1600)	시정
	지적 사항	❍ 2023년 국세수입 결손에 따라 정부는 지방교부세 예산(75.3조원) 중 8.2조원(보통교부세 7.2조원 및 부동산교부세 1.0조원)을 미교부(불용) -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400.5조원 대비 85.9%인 344.1조원 수납 -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지방교부세법」 취지에 반하는 교부금 미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2014년 행정안전부는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음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였음	
	시정 요구 사항	❍ 행정안전부는 2023년과 같이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미교부(불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결정하는 집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6) 「지방교부세법」
제5조(예산 계상)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7) 보통교부세 7조 1,688억 5,200만원 및 부동산교부세 1조원

8) 결산 시정요구에 명시된 '201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는 이하와 같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28)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교부금 미배정 문제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지방교부금(1331-300)	시정
	지적 사항	○ 안전행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2013년 지방교부금 1조 130억 3,200만원을 미배정하고 이를 이월·불용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국고지원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반함.	
	시정 요구 사항	○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2013년도와 같이 지방교부금 미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현행법에는 세수결손 등에 대응하여 ㉠ 교부세의 재원에 해당하는 내국세·종합부동산세 및 담배개별소비세 등 세입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차차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을 경정하고 교부세도 함께 증감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는데, 이와 달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교부세 예산을 세수결손 등을 이유로 미교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종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임.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당시) 지자체에 약 7조원의 자체 가용재원[9]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감액조정이 필요한 규모를 4.3조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년도(2024년) 미교부분과 차차년도(2026년) 정산분으로 분산하기로 하고, 2024년에는 이 중 2.1조원(50%)을 교부하고 나머지 2.2조원을 미교부한 것이라는 입장임.[10]

이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지방교부세는 목적상 각 지자체의 필수적이거나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부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확정된 지방교부세 예산을 정부가 미교부할 경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경정 시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나 지자체의 수용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어 보이므로, 정부는 세수 결손 등의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 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세수재추계 결과 5.4조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 중 약 80%인 4.3조원을 미교부하였음.

2. 수입대체경비 사업: 지출규모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초과 지출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등

가. 개 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각 교육과정의 운영비 등을 수입대체경비로 지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82억 4,700만원 중 80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1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4년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7,641	7,641	-	606	8,247	8,074	-	173	7,64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수입대체경비사업 관련 수입은 2024년 결산 기준 **'수입대체경비(기타잡수입)'** 과목에서 수납되고 있으며, 2024년 징수결정액 89억 8,5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12]

[2024년도 수입대체경비(기타잡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수입대체경비 (기타잡수입)	7,990	7,990	7,990	8,985	-	-	100.0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1) 일반회계-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1433-650)

12) 일반회계-수입대체경비(기타잡수입)(69-691)

나. 검토의견

첫째, 동 사업의 '역량교육·평가 운영' 관련 예산이 매년 과소계상되어 예산규모 대비 과다한 초과지출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관련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여 초과지출액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으로, 동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각종 경비[13]는 1999년 이래 공무원 교육훈련경비의 유료화 방침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처리되고 있음.[14]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액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그런데 2024년 교육과정별 결산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액 76억 4,100만원 대비 집행액은 80억 7,400만원으로 총 4억 3,300만원이 초과지출되었는데, 초과지출액 중 77.4%인 3억 3,500만원이 역량평가·교육과정 관련 예산이 집행되면서 발생하였음.

[2024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교육과정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당초 예산액 (A)	2024년 집행액 (B)	초과지출액 (B-A)
장기교육과정	3,572	3,666	94
기본교육과정	2,944	2,947	3
전문교육과정	613	614	1
역량평가·교육과정	129	464	335
교육운영 지원	383	383	-
합계	**7,641**	**8,074**	**43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는 2024년 예산 편성내역상 경비규모와 집행내역상 지출규모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2024년 역량교육·평가운영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4억 1,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47배 규모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음.

13) 사무용품 등 소모성물품 구입비, 강사료, 교재인쇄비 등.

14)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2024년 역량교육교육평가 운영 내내역사업 편성내역-집행내역 비교]

2024년 예산 편성 내역	2024년 집행내역
ㅇ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 운영 : 1억 2,900만원 **- 역량교육·평가 운영비: 7,500만원** · 역량교육 강사 및 평가위원 수당: 6,500만원* = 1회×500만원×13회=6,500만원 · 역량교육·평가 교재인쇄·물품구매비 등: 1,000만원* = 1회×80만원×13회=1,000만원 - 역량교육 과제개발 연구용역: 5,400만원	**ㅇ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 운영 : 4억 6,400만원** **- 역량교육·평가 운영비: 4억 1,000만원** · 역량교육 강사 및 평가위원 수당 : 2억 6,500만원 · 역량교육·평가 교재인쇄·물품구매비 등 : 1억 4,500만원 - 역량교육 과제개발 연구용역: 5,4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최근 4년간(2021-2024) 역량평가·교육 내내역사업의 집행 현황을 보면, 과년도 지출실적이나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역량교육·평가 운영비로 동일하게 7,500만원이 계상되어 초과집행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4년간(2021-2024) 역량평가·교육과정 운영 경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산출내역	본예산 (A)	집행액 (B)	초과집행 (B-A)
2021	**ㅇ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 운영 : 1억 3,500만원** - 역량교육·평가 운영 7,500만원 - 역량교육 과제개발 연구용역 6,000만원	135	582	447
2022	**ㅇ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 운영 : 1억 3,500만원** - 역량교육·평가 운영 7,500만원 - 역량교육 과제개발 연구용역 6,000만원	135	567	432
2023	**ㅇ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 운영 : 1억 2,900만원** - 역량교육·평가 운영 7,500만원 - 역량교육 과제개발 연구용역 5,400만원	129	338	209
2024	**ㅇ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 운영 : 1억 2,900만원** - 역량교육·평가 운영 7,500만원 - 역량교육 과제개발 연구용역 5,400만원	129	464	335
2025	**ㅇ 지방공무원 역량교육평가 운영 : 1억 2,900만원** - 역량교육·평가 운영 7,500만원 - 역량교육 과제개발 연구용역 5,400만원	129	-	-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국·과장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교육 및 평가를 수행하는 동 과정운영의 특성상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행안부 위탁 여부 및 자치단체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위탁인원이 유동적이어서 관련 지출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최근 4년간(2021-2024) 매년 예산액 대비 지출액 규모가 2.62배~4.31배에 이르고 있으므로, 적정 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국가가 시설물 또는 용역을 능동적으로 확대제공하였을 때 발생하는 초과경비를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초과지출액의 발생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세출예산의 추계방식을 개정하여 수입대체경비사업 본연의 취지와 무관한 초과지출액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입대체경비(기타잡수입) 세입과목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가 최근 2회계연도 연속으로 과소계상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과거 결산상 수납실적을 적정반영하는 등 동 세입예산의 추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수입대체경비사업은 시설·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별도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15] 및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함.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인재개발법」을 근거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사업[16]의 경비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고,[17] 동 세입과목에는 이 교육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납되고 있음.

그런데 동 세입과목 예산이 최근 2개 회계연도(2023-2024)에 걸쳐 과소계상되었고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은 80억 7,800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에 비해서는 소폭 증액편성되고 있으나, 2023년 수납실적(85억 4,400만원) 및 2024년 수납실적(89억 8,500만원)

15)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16) 일반회계-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1433-650)(지방자치인재개발원)

17)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금액이 계상되었음.

[최근 4년간 수입대체경비(기타잡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A)	수납액 (B)	초과수입 (C=B-A)
2021	7,312	5,977	△1,335
2022	7,531	5,880	△1,651
2023	**7,757**	**8,544**	**787**
2024	**7,990**	**8,985**	**995**
2025	8,078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 중인 교육사업 수요가 지자체 승진규모 및 인사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통상적인 예산 편성 시점(전년도 5월)과 교육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전년도 12월~당해년도 1월)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차년도 교육예상인원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경비를 관련 세입예산의 초과수납액으로 충당해야 하는 수입대체경비사업의 특성상 세출예산과의 균형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중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과거 추세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과소계상을 반복하여 초래할 우려가 있음. 2018년도부터 세입예산의 산출내역 및 수납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된 2018년·2023년 및 2024년 모두 세입예산이 과소계상되었고, 2019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금액이 큰 세출예산 추정치를 기준으로 편성되었음에도 과소계상되고 있음.[18)]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비대면 교육만을 실시한 3개년(2020-2022년)에는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면 교육이 재개된 2023년부터는 또다시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이 과소계상되고 있음.

[최근 8년간 수입대체경비(기타잡수입) 연간 산출내역 및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A)	산출내역	수납액 (B)	초과수납 (B-A)
2018	6,891	17년 예산액×인상률(1.5%) = 6,789백만원x1.015 = 6,891백만원	8,327	1,436
2019	7,632	18년 세출사업 결산추정치(7,410백만원)×인상률(3%)= 7,632백만원	9,340	1,708

18) 참고로, 2019년에 전년도 세출사업의 결산추정치(74억 1,000만원)가 아닌 전년도 예산액(68억 9,100만원)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면 17억 800만원이 아닌 22억 4,200만원의 초과수납이 발생하였을 것임.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A)	산출내역	수납액 (B)	초과수납 (B-A)
2020	7,099	19년 세입과목 결산추정치(9,346백만원)×인상률(△24.1%)= 7,099백만원	4,926	△2,173
2021	7,312	20년 예산액×물가상승률(3%) = 7,099백만원 x 1.03 = 7,312백만원	5,982	△1,330
2022	7,531	21년 예산액×물가상승률(3%) = 7,312백만원×1.03 = 7,531백만원	5,880	△1,651
2023	7,757	22년 예산액×물가상승률(3%) = 7,531백만원×1.03 = 7,757백만원	8,544	787
2024	7,990	23년 예산액×물가상승률(3%) = 7,757백만원×1.03 = 7,990백만원	8,985	995
2025	8,078	최근 5개년(20~24) 세출예산 증가율 평균치(1.1%) 적용 24 예산액×세출 증가율(1.1%) = 7,990백만원×1.011= 8,078백만원	-	-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동 세입과목의 과소계상은 사업소요 예측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이미 과소계상된 이력이 있는 추계방식을 반복적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초과수입과 교육생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세입규모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3. 재난대책비(보조): 이연집행에 따른 이·전용 과다

가. 개 요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복구계획 수립 등을 거쳐 피해자 지원금 및 공공시설의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6,537억 6,300만원 중 6,537억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19]

[2024년도 재난대책비(보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난대책비 (보조)	600,040	600,040	-	53,723	653,763	653,762	-	1	1,020,02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동 사업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6,000억원의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 및 피해조사·복구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19) 일반회계-재난대책비(보조)(재난복구지원국)

나. 검토의견

재난대책비(보조) 사업은 2024년 예산 대부분이 전년도(2023년)에 발생한 피해복구비의 지급을 위해 이연집행되었고, 그 결과 당해년도(2024년)에 발생한 지출소요에 대해서는 대규모 이·전용 및 차년도(2025년) 본예산 편성에 의해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예비비의 적기 사용 등을 통해 재해대책비 부족액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신속한 정부지원을 목적으로 「재난관리법」상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20]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동 사업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21]

최근 4년간(2021-2024) 결산 현황을 보면, 부족액 발생 시 이·전용 등을 통해 타 사업 재원을 활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여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음.

[최근 4년간(2021-2024) 재난대책비(보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820,000	820,000	-	5,878	16,622	842,500	842,500	100.0	-	-
2022	100,035	100,035	-	62,652	469,465	632,152	632,152	100.0	-	-
2023	150,035	150,035	-	18,418	-	168,453	168,453	100.0	-	-
2024	600,040	600,040	-	53,723	-	653,763	653,762	100.0	-	1
2025	360,020	360,020	-	-	-	-	-	-	-	-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2024년 집행내역을 보면, 지자체 재난대책비 지원을 위해 계상된 6,000억원 중 90.0%인 5,402억 8,300만원이 2023년에 발생한 여름철 집중 호우(2023.6.27.~7.27.)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사용되었음.

그 결과 당해년도(2024년)에 발생한 두 차례의 집중호우 및 연말에 발생한 대설·강풍·풍랑 피해 등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출소요[22]에 대해서는 2024년 본예산의 잔여재원 외에 537억원 규모의 이·전용 등에 의해 부족액이 충당되었음.

---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1) 2011년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은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출되었으나 예비비 지출 시 요구되는 행정절차(국무회의-대통령 재가) 이행 등으로 지원시기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 2011년부터는 재원 일부가 보다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일반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음.

22) 2,358억원 규모로 추정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복구) 사업 이·전용 등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세부사업 명	금액	이·전용 등 사유
이용 (24.11.16.)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290	7.8.~19. 호우, 9.19.~21.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3,300	
	제주4.3피해보상	28,8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803	
	민방위교육훈련시설 장비확충	4,000	
이·전용 (24.12.27.)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362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재원 확보
	지자체경쟁력지원	50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112	
	한국섬진흥원 지원	500	
	지방세정보화추진	183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660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39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567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정보화)	341	
	국경일등정부행사	143	
	정부포상	250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709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100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	399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보상금)	121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8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1,591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136	
	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700	
	인건비(기록)	968	
	인건비(청사)	450	
	인건비(국가정보자원관리원)	60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인건비	425	
	인건비(대통령기록관)	500	
	중앙안전상황실운영	118	
	재난안전산업활성화	119	
	승강기안전관리개선	120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641	
	지진대비인프라구축	800	
합계		53,723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2025년 편성된 본예산 3,599억 6,000만원 중 66.0%인 2,375억 9,800만원이 2024년에 발생한 피해복구비 등의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서, 전년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비 등 일부가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이연집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2024년-2025년 예산 산출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산출내역	예산액	산출내역
600,000	○ 재난대책비 지원: 6,000억원 **- 2023년 호우·태풍 피해복구비 등 지원 : 5402억 8,300만원** - 2024년 피해복구비 등 지원 : 597억 1,700만원	359,960	○ 재난대책비 지원: 3,599억 6,000만원 **- 2024년 호우 피해 복구비 등 지원 : 2,375억 9,800만원** - 2025년 피해복구비 등 지원 : 1,223억 6,2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비 지원규모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 대부분이 전년도에 발생한 피해복구비에 사용될 경우 당해년도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부족액이 과다 발생하여 본예산 편성의 취지인 신속한 국비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지출소요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해년도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2024년과 같이 이연집행으로 초래된 부족재원을 대규모 이·전용(증)에 의해 충당하는 집행방식을 지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23]

23) 참고로, 2022년에도 제11호 태풍 힌남노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및 여름철 집중호우(2022.8.8.~8.17.) 발생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부족액 중 4,694억 6,500만원을 예비비를 배정·사용하여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출소요를 충당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비목	세사업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목)	재난대책비(보조)	50,000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목)	재난대책비(보조)	419,465	8.8.~17. 호우 및 제11호 힌남노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합 계		469,465	

자료: 행정안전부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관계부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가. 개 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은 국가안보 목적상 지역발전이 정체된 측면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101억 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4)]

[2024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10,101	110,101	-	-	110,101	110,101	-	-	61,79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은 전액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로 계상되었고 국비보조율은 토지매입비 지원 내역사업(114억 4,500만원)의 경우 평균 68%, 주변지역 지원 내역사업 등(986억 5,600만원)의 경우 50% 수준임.

[202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중 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비목	2024년예산액	지원 비율
토지매입비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목)	11,445	68.0주)
주변지역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목)	82,066	50.0
사드기지 주변지역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목)	16,590	50.0
합계		110,101	-

주) 3개 기지 지원비율 평균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24) 일반회계-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300)(균형발전지원국)

나. 검토의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부 지역사업의 예산이 수시배정(2024.10.30.)을 거쳐 연말에야 교부되어 대부분 미집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는 향후 계획변경을 위한 협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보조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최근 4년간(2021-2024) 결산을 보면, 매년 보조금의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8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4년 보조금의 실집행률은 71.8% 수준으로 전년도(70.9%)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월액 규모는 299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최근 4년간(2021-2024)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차기 이월	불용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	105,402	105,402	105,402	105,402	10,018	115,313	89,668	15,539	88	77.8
2022	107,670	107,670	107,670	107,670	15,492	120,562	89,858	25,687	-	74.5
2023	111,049	111,049	111,049	111,049	19,089	129,138	91,568	28,811	15	70.9
2024	110,101	110,101	110,101	110,101	21,244	131,345	94,320	29,961	-	71.8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2024년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15개 지역사업 중 11개 사업에서 11월 이후에야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이 중 10개 사업의 보조금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2024년 주요 실집행부진 사업(실집행률 50% 미만)]

(단위: 백만원, %)

시도	사업명	사업 기간	당해교부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집행 잔액	차기 이월	불용액	보조금 교부일
부산	가야대로 507번가길 일원도로개설	19-24	822	187	22.7	638	638	-	24.2.21.
경북	초전~벽진 도로 건설	24-26	1,449	591	40.8	857	857	-	24.6.21.
경북	사드기지 입우회도로 개설	24-26	1,000	20	2.0	980	980	-	24.6.21.

(단위: 백만원, %)

시도	사업명	사업 기간	당해교부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집행 잔액	차기 이월	불용액	보조금 교부일
강원	서면대교 건설	24-29	2,300	-	-	2,300	2,300	-	2024.8.19.
경기	민락~고산연결도로	19~30	1,000	-	-	1,000	1,000	-	2024.11.7.
부산	레일스포츠파크	22~27	1,000	-	-	1,000	1,000	-	
대구	평광동 도로	22~28	2,000	-	-	2,000	2,000	-	
경북	단산터널	23~25	1,000	-	-	1,000	1,000	-	
강원	서부권역광역교통망	24-28	1,000	-	-	1,000	1,000	-	
강원	혈리~어평도로확포장	24~29	500	-	-	500	500	-	
강원	무이~생곡도로	24~29	500	-	-	500	500	-	
강원	군도1호선도로확포장	24~28	1,000	-	-	1,000	1,000	-	
대전	장동~이현도로	24~27	400	-	-	400	400	-	
충북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	24-25	650	17	2.7	633	633	-	
충남	둔포원도심연결도로	24~28	1,000	-	-	1,000	1,000	-	2024.12.12.
합계			15,621	815	5.1	14,808	14,808	-	-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1월 이후 보조금이 교부된 13개 사업[25]은 수시배정대상으로 지정되었다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26]를 거쳐 10월 말(10.30.)에야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서 불가피하게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27] 이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조속히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25) '정촌체육시설' 및 '신도시~공단진입도시 계획도로 확포장' 등 2개 사업은 11월 이후 보조금이 교부되었음에도 전액 실집행(실집행률 100.0%)되었음.

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수시배정 대상으로 분류된 13개 지역사업 중 11개 지역사업[28]은 전년도인 2023년에 지자체의 계획변경(안) 제출 및 행정안전부의 협의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협의요청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2024년 10월 24일에야 기획재정부의 의견제시가 이행되었음.

[2024년 수시배정 이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경과]

시도	사업명	지자체-행안부 계획변경(안) 제출일	행안부-관계부처 협의요청일주)	기획재정부 의견제시일	수시배정일
경기	민락~고산 연결도로	2023.5.9.	2023.5.17.	2024.10.24.	2024.10.30.
부산	레일스포츠파크	2024.9.5.	2024.9.27.		
대구	동구 평광동도로	2023.3.31.	2023.5.17.		
경북	단산터널	2023.3.28.	2023.5.17.(1차) /2024.2.5.(2차)		
강원	서부권역광역교통망	2023.4.10.	2023.5.17.		
강원	혈리~어평도로확포장	2023.4.10.	2023.5.17.		
강원	무이~생곡도로	2023.4.10.	2023.5.17.(1차) /2024.1.22.(2차)		
강원	군도1호선도로확포장	2023.4.10.	2023.5.17.		
대전	장동~이현도로	2023.4.21.	2023.5.17.		
충남	둔포원도심연결도로	2023.7.13.	2023.7.14.		
충북	오근장동복지거점센터	2023.4.17.	2023.5.17.		
경남	정촌 체육시설	2023.3.27.	2023.5.17.		
경남	신도시~공단진입도시 계획도로 확포장	2024.9.5.	2024.9.27.		

주) 행정안전부의 협의요청은 기획재정부 등 여러 관계부처들에게 동시에 발송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수반하는 신규사업 추진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의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고, 2024년 검토대상이 된 사업의 수가 13건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법령상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그러나 관계 법령에서 협의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계획변경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28) '레일스포츠파크' 및 '신도시~공단진입도시 계획도로 확포장' 등 2개 사업 제외

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추진 전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등

가. 개 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물품·배달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7억 8,500만원 중 37억 1,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6%)되고, 10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29]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A)							
지역경제활성화	5,582	5,582	25	-	5,607	4,420	-	1,187	3,819
지방물가안정관리 등 추진	4,833	4,833	25	-	4,858	3,783	-	1,075	3,117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4,785	4,785	-	-	4,785	3,713	-	1,072	3,06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착한가격업소'는 인근 지역 업소들에 비해 낮은 가격을 책정·유지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영업자 신청 또는 국민 등의 추천을 받아, 지자체가 가격·공공성 및 위생·청결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되며, 2024년 사업은 홈페이지 유지보수(3,500만원) 외 47억 8,500만원 규모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보조율 30%)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1년부터 제도 운영이 시작되었고, 2023년부터 필수 소모품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이 최초로 추진되었으며, 2024년에는 추가로 배달료를 지원하였음.[30]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경과]

2011년 :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 시작
2014년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운영
2023년 : 착한가격업소 필요 소모품 국비 최초 지원
(※ 총 50억 규모(국비30%, 지방비70%))
2024년 :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위한 배달료 사업 추진
(※ 총 100억 규모(국비30%, 지방비70%))

29) 일반회계-지역경제활성화(1349-301)

30) 2025년에는 배달료 지원이 수행되지 않을 예정임

나. 검토의견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중 ‘배달지원’은 지원대상 업소 수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산정하지 않고 추진되었다가 실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시 업소 수 등 지원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대상으로 2023년부터 연간 85만원 규모의 물품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2024년부터 배달수수료 일부[31]를 지원하였음. 2024년 기준 동 사업에 계상된 보조금 47억 8,500만원 중 물품지원을 위해 17억 8,500만원이 계상되고, 배달지원을 위해 30억원이 계상되었음.

그런데 배달지원을 위해 계상된 보조금 30억원 중 19억 2,800만원이 교부되고, 교부된 19억 2,800만원 중 9억 6,000만원이 실집행되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32.0%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합계	4,785	4,785	3,713	3,713	-	3,713	2,685	3,713	2,685	-	1,028	56.1
물품지원	1,785	1,785	1,785	1,785	-	1,785	1,725	1,785	1,725	-	60	96.6
배달지원	**3,000**	**3,000**	**1,928**	**1,928**	**-**	**1,928**	**960**	**1,928**	**960**	**-**	**968**	**32.0**

자료: 행정안전부

산출내역과 실집행내역을 비교하면, 산출내역 기준 지원대상 업소 수가 배달 여부와 무관하게 예산안 편성 당시 전체 외식업소 수[32]를 기준으로 5,125개소로 산정되었으나,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금 산출내역에 반영된 업소 수는 그보다 적은 2,210개소에 불과하고, 실지원대상이 된 업소의 수는 그보다 적은 1,427개에 그치고 있어 실지원대상이 당초 계획 대비 28.5%에 불과하였음.

31) ‘배달의 민족’ 배달수수료 4,000원을 기준점으로 하여 50%에 해당하는 2,000원/건을 지원하였음.

32) 5,125개소

또한 보조금 교부시 금액 산출 기초에 해당하는 연간 평균 배달 건수가 1,600건인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산출내역상 1,000건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고, 실집행내역 기준 평균 배달 건수 역시 1,121건에 불과하였음.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 지원) 사업 산출내역-(실)집행내역 비교]

구분	산출내역 기준 (A)	보조금 교부내역 기준 (B)	보조금 실집행내역 기준 (C)	차이 (A-C)
지원대상 업소 수(A)	5,125개소	2,210개소	1,427개소	3,698개소
지원단가(B)	2,000원	2,000원	2,000원	-
연간 평균 배달 건수(C)	1,000건	1,600건	1,121건	△121건
지출(예정)소요 (보조율30%) (A×B×C)	30억원	19.28억원	9.6억원	20.4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사업계획 시 지역별 배달건수·인구수 및 배달서비스 확장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비 3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와의 협의결과 및 군 단위 지역의 배달인프라 부족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그보다 적은 19억 2,8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정확한 사업수요 파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임.

또한 13개 지자체가 국비 수요를 제출하고도 보조금을 전액 미집행하였고 배달수수료 부담 및 배달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주들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배달수수료 지원에 따른 유인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식업소 전체의 수를 기준으로 5,125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33] 보조금 교부 시 산출기초가 된 연간 평균 1,600건의 배달건수 역시 지자체의 신청수요만을 바탕으로 과다산정된 것이어서, 집행관리상 확인된 문제들과 더불어 사업추진의 전제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지원규모 확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에 관한 검토를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33) 2025년 5월말 기준 외식업소 중 실제 배달업소 수는 1,250개소로 집계되고 있음.

6. 편의시설 정비: 무분별한 낙찰차액의 사용 지양 필요

가. 개 요

‘편의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5억 6,800만원 중 15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4%)되고,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2024년 편의시설 정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 정비	18,041	18,041	80	△1,669	16,452	16,051	-	401	16,227
편의시설 정비	983	983	-	585	1,568	1,511	-	55	944

주) 2025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34) 일반회계-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2231-301)(정부청사관리본부)

나. 검토의견

편의시설 정비 사업에서는 당초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실 음향시스템의 교체를 긴급 추진하여 발생한 자산취득비(430-01목) 부족액을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충당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4년 비목별 집행현황을 보면, 공사비(420-03목) 및 자산취득비(430-01목) 등이 당초 예산 대비 초과집행되고 있고, 부족액은 이·전용 등의 문서화된 예산 변경 없이 타 내역사업의 같은 비목에 편성되어 있던 경비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을 배정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음.

[2024년 편의시설 정비 내역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주)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편의시설정비	983	983	-	585	1,568	1,511	-	57	944
실시설계비 (420-02목)	10	10	-	-	10	10	-	-	43
공사비 (420-03목)	180	180	-	166	346	291	-	55	206
자산취득비 (430-01목)	793	793	-	420	1,213	1,210	-	2	695

주) 예산변경 없이 타 내역사업 공사비(430-01목) 자산취득비(430-01목) 등을 배정하여 사용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정보화 관련 예산·건설비·일반용역비 및 연구용역비 등 4개 유형의 경비에 한해서는 일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경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낙찰차액의 불용이 원칙임을 시사하는 것임.

그런데 자산취득비(430-01목)의 부족액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타 내역사업의 집행잔액(3억 9,800만원) 및 낙찰차액(2,200만원)이 사용되고 있고, 편의시설 정비 사업 안에서도 같은 내역사업의 타 계약건에서 발생한 낙찰차액(1억 2,375만원)이 사용되는 등 합계 1억 4,575만원의 낙찰차액이 사용되고 있음.

[2024년 자산취득비(430-01목) 재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세목	본예산 (A)	예산 현액 (B)	차이 (B-A)	비고
노후 시설정비	시설물 보수작업	자산 취득비 (430-01목)	268	251	△17	집행잔액 (3억 9,800만원) 낙찰차액 (2,200만원)
방호보안 시설보강	노후 영상설비 (CCTV 등) 관제설비		1,000	917	△83	
	청사 출입통제 장비 등 정비		1,403	1,083	△320	
편의시설 정비	대강당 등 회의실 장비교체		560	980	420	타 계약건 낙찰차액 (1억 2,375만원)
	휴게공간 등 공용공간 환경개선		233	233	-	-
합 계			3,464	3,464	±42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자산취득비에 관해서는 집행지침상 낙찰차액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고, 전년도 연말(2023.12.26.) 세종청사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음향시스템의 결함이 발견되어 연초부터 긴급히 추가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상 이·전용 등의 예산변경 절차를 거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낙찰차액은 불용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바, 지출목적 및 내용이 상이한 계약 건의 낙찰차액이 제한없이 교차사용되면 사업계획과 집행의 불일치가 관행화되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하게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집행행위를 지양하고,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소요 발생 시에도 이·전용 등의 예산변경 절차에 따라 부족액을 충당할 필요가 있음.

7.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검증된 대안의 마련이 필요

가. 개 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사업은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민간건축물에 보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6억 6,700만원 중 6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음.[35]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A)							
지진대비인프라구축	5,382	5,382	14	△800	4,596	4,517	-	79	5,511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2,717	2,717	-	△800	1,917	1,898	-	19	1,550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1,467	1,467	-	△800	667	659	-	8	-

주) 2025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지원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사업으로, 2024년 예산 14억 6,700만원 중 8억원이 타 사업으로 이·전용(감)되어 집행되었음.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사업 예산 세부내역]

ㅇ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14억 6,700만원 = 30개소×4,890만원×10%(국비보조율)

35) 일반회계-지진대비인프라 구축(2731-307)(자연재난실)

나. 검토의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지원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도 사업의 실수요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년도(2023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법령상 의무를 전제하지 않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수요 확보를 위한 대안의 실효성이 검증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법령상 내진성능 확보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 등의 소유주가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면 비용 일부(국비 10%, 지방비 10%)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사업이 최초 실시된 2022회계연도 이래 매년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A)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2	1,565	1,565	-	-	-	-	-	-	-	-	-	-
2023	1,467	1,467	534	534	-	534	500	534	500	34	-	34.1
2024	1,467	1,467	659	659	34	692	21	659	-	659	13	-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10→20%), 지방세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 50~100%) 등을 통해 사업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2024.12.31.)[36]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시행 시점이 각각 2024년 12월·2025년 1월이고, 2025년에는 연구용역만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조치들의 실효성이 검증되지는 못하였음.

그 결과 2024년 기준 30개소를 대상으로 총 14억 6,7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8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이 확정되었고,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국비지원규모 합계도 당초 예산 대비 44.9% 수준(6억 5,900만원)에 불과하였음. 또한 당해년도에 교부된 국비의 실집행 실적이 전무하였음.

행정안전부는 2025년 실시되고 있는 1억원 규모의 연구용역(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대책 발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사업을 재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수요 확보를 위해 조치된 대안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36)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1027쪽

8.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 학습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 사업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효율화를 지원하고, 실영상 기반 학습데이터플랫폼 및 재난분야 AI 알고리듬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2억 5,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37]

[2024년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 (정보화)	3,251	3,251	-	-	3,251	3,251	-	-	5,07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예산은 '지능형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정보화 사업을 위한 ISP 추진 경비 외 실증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는 2건의 시범사업(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공모 지원) 경비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2024년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편성 근거
지능형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ISP	431	○ 지능형 CCTV 관제 지원시스템 구축 ISP: 4억 3,100만원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	820	○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 8억 2,000만원 - 4억 1,000만원×2개 지자체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공모	2,000	○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공모 지원: 20억원 - 5억원×4개 지자체
합계	3,251	

자료: 행정안전부

37) 일반회계-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정보화)(3032-509)(안전예방정책실)

나. 검토의견

첫째, 동 사업은 학습데이터를 제작 및 배포하여 각 지자체의 지능형 관제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 현 사업 여건상 비용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데이터 활용 여부 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당초 육안관제를 인공지능에 의한 지능형관제로 완전대체하고자 하였으나 지능형관제의 오탐률이 높아 육안관제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사업내용을 직접 지능형관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에서, 각 지자체의 지능형관제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사업 ISP 수립 전-후 사업내용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총사업비	내용	총사업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CCTV 전면 교체**	4,400 ~7,600억원 (추정)	CCTV 영상 기반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재난유형별 학습데이터 제작·관리**	304억 9,700만원 (ISP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4.11.29.),「지능형 CCTV 관제체계 전환 목표 수정 검토 보고」

그런데 변경된 사업내용은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학습데이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당초 목표대로 '육안관제를 지능형관제로 대체'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민간업체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

육안관제를 지능형관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CCTV의 도입 및 영상 제공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 CCTV의 도입비용 및 실영상 데이터의 관리비용 등이 요구됨.

또한 연구개발에 의한 영상분석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고도화된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운용하는 비용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없을 경우[38]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 등이 요구됨.

이는 당초 CCTV 전면 교체를 위한 총사업비로 추정되었던 7,600억원[39] 규모 이상의 비용이 각 지자체에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40] 해당 비용에 더하여 총 37개 유

38)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영상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유형에 따른 별도의 연구개발 수행이 필요한데, 민간업체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수행할 유인이 없음.

39) 행정안전부(24.11.29.),「지능형 CCTV 관제체계 전환 목표 수정 검토보고」

40) 행정안전부는 CCTV 교체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경비를 37.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비용은 지능형 CCTV의 비율이 10% 미만인 22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CCTV 30,946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에 불과함.

형에 달하는 재난유형별로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유지보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리적인 추정치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41]

행정안전부는 육안관제를 지능형관제로 전면 대체한다는 당초의 목표 대신 각 지자체 주도로 지능형관제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입장이며, CCTV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현재 지능형 CCTV 운용비율이 낮은 지자체들부터 CCTV 교체 등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임.

또한,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민간업체의 참여여건이 불투명한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서 영상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력 사이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고, 재정력에 여력이 있더라도 각 지자체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지능형관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또한 학습데이터가 공유되더라도 육안관제가 지능형관제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재난유형별로 영상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모델 개발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민간업체의 학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1) 영상분석시스템의 개발은 재난유형별로 따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제5차 국가재난안전계획(2025~2029)」 및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채택하고 있는 분류체계에 따르면 공통 유형(8개)을 제외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은 자연재난 9개 유형・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8개 유형 등으로 총 37개 유형에 이르고 있음.

둘째, 동 사업에서는 정보화사업과 내용상 연관성이 있는 실증공모와 ISP를 동시에 추진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진방식으로는 ISP 수립 시 실증공모의 결과물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실증공모의 결과가 ISP에 활용될 수 있도록 ISP 수립 이전에 실증공모를 추진 및 완료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에서는 2024년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외에 실증공모를 위한 2건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일정상 실증공모 사업보다 ISP가 먼저 종료되어 실증공모 사업의 최종결과물이 ISP에 반영될 여지가 없었음.[42)]

[2024년 지능형 CCTV 관제체제 구축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주업체	계약기간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ISP	431	43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2.~24.8.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	820	82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2.~24.12.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공모	2,000	2,0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2.~24.12.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의 경우 2023년부터 추진된 연구개발사업(R&D)인 '지능형 CCTV 및 관제시스템 표준 프로토타입 개발'의 연구결과를 지자체에 시범적용하는 사업으로서, ISP 사업은 AI 학습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 설계가 주된 내용이므로 실증사업과 사업내용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이태원 참사(2022.10.) 및 오송지하차도 참사(2023.7.)의 후속대책 핵심과제로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ISP와 2건의 실증공모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2024년 실시된 2건의 실증공모 사업은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ISP를 거쳐 추진될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학습데이터의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ISP 수립 이전에 실시 및 완료되는 것이 보다 적정하였을 것으로 보임.

42) 2건의 시범사업은 2024년 연말까지 추진되고 있어, 일정상 사업결과가 ISP 최종결과물 제출(24.8.9.)에 반영될 수 없었음.

[시범개발적용 사업 및 실증공모 사업주요 내용]

구분	시범개발적용 사업	실증공모 사업
사업명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범개발 및 시범적용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공모
사업비	8억 2,000만원	20억원
사업기간	24.2.~24.12.	24.2.~24.12.
목적	지능형 표준 프로토타입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6가지 유형) 시범 적용(2개 지자체)	지자체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문제해결(4개 지자체)
내용	R&D 결과물을 적용하여 영상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기술 실증	지자체 수요조사로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기업의 영상분석 기술 및 지자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실증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본 사업 내용과 관련이 있는 실증공모를 가급적 ISP 수립 이전에 실시·완료하여 관련 내용이 ISP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 적정한 출연금의 비목으로 변경 필요

가. 개 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 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정책연구 및 조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0억 5,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43]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	3,054	3,054	-	-	3,054	3,054	-	-	3,42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은 전액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개별 법령상 근거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음.

[202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 사업 중 출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비목	피출연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법적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	기관운영출연금 (350-01목)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3,05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자료: 행정안전부

43) 일반회계-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1131-302)(자치분권국)

나. 검토의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일부 출연사업은 내용상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지원되는 것이 적정하므로, 비목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에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변경하여 집행잔액이 사후정산을 거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르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등에 해당하며, 사업출연금(350-02목)은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소용되는 비목을 각각 뜻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사업출연금(350-02목) 구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사업출연금(350-02목)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자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4.1.)

그런데 2024년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외에도 정책연구개발비 5억 5,000만원 및 지방투자사업 임의타당성 재조사 2억원 등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편성되었고, 2025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소멸대응연구과제를 위한 3억원 역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편성되고 있음.

[2024년·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개발연구등 지원 사업 예산 산출내역]

2024년	2025년
○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30억 5,400만원 - 인건비: 74억 7,500만원×31.3%=23억400만원 **- 정책연구개발비** **: 32과제×26백×66% = 5억 5,000만원** **- 지방투자사업 임의타당성 재조사** **: 1억×4회×50% = 2억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34억 2,300만원 - 인건비 : 10,310백(24년)×23%=23억 7,300만원 **- 정책연구개발:** **32과제×27백×63.7% = 5억 5,000만원** **- 지방투자타당성조사** **: 1억원×4회×50%=2억원** **- 소멸대응연구과제 : 1억원×3회=3억원**

주) 운영비 및 시설비가 아닌 편성 근거 및 집행내역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개발·지방투자타당성조사 및 소멸대응연구과제 등 사업단위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도 실제로는 경상경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고, 이 사업들은 수익성·목적성 사업이 아니라 연구기관 본연의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산출내역상 과제의 수나 과업수행 횟수 등을 근거로 금액이 산정되고 있어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사업출연금(350-02목)은 본래 출연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원되는 것이므로 수익성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출연금(350-02목)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집행지침상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은 정산 및 반납 없이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관하여 기관 세입에 계상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사업출연금(350-02목)은 집행지침상 출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정산 후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과 사업출연금(350-02목)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실익이 존재함.

[기관운영 및 사업출연금(350-01목·350-02목) 사후정산방식 비교]

구분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	사업출연금(350-02목)
정산 등 사후관리	- 정산 및 반납 없이 차기 연도 세입으로 계상	- 관계 법령 및 주무부처 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처분에 있어 출연금의 투명성·효율성 고려

자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재정리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출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실제 지출용도에 부합하도록 사업출연금(350-02목)에 부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비목으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산출내역도 투명하게 적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 등의 과정에서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0.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의 수립이 필요

가. 개 요

‘범정부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은 재난발생 시 현장활동 등에 종사하는 일선 현장근무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등을 격려·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억 3,500만원 중 2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6%)되고, 1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0만원이 불용되었음.[44]

[2024년 범정부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안전사고 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	450	450	-	-	450	309	139	2	600
범정부차원의 재난 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435	435	-	-	435	294	139	2	58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44) 일반회계-안전사고 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2632-305)(안전예방정책실)

나. 검토의견

범정부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일부가 당초 사업목적과 상이한 신규사업에 집행되었는 바,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45] 이는 행정부가 국회가 심의·확정한 내용과 다르게 수행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당초 물품 지원을 위해 계상[46]했던 예산 3억 3,500만원 중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6,700만원을 국회에서 심의된 바 없는 '재난현장종사자 사기진작·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에 집행했는데, 이는 당초 심의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2024년 범정부차원의 재난안전활동 강화 및 지원 사업 편성 근거-집행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편성 근거		집행 내역	
내용	예산액	내용	(미)집행액
재난안전관리 종사자 물품 등 지원	3억 3,500만원	재난안전관리 종사자 물품 지원	1억 2,700만원
-	-	재난안전관리 종사자 사기진작 홍보 프로그램	6,700만원
-	-	미집행	1억 4,100만원
재난안전관리 종사자 위문 격려	1억원	경찰, 소방, 지방 등 재난안전관리 종사자 격려	1억원
합계	4억 3,500만원	합계	4억 3,5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새로 추진된 사업의 내용은 재난안전관리 종사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 및 가족들을 「KBS 열린음악회 특집방송」(2024.12.22. 방영)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어서, 당초 계획상 지출용도인 물품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4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6) 2024년 예산 기준 산출내역: 10,000명 × 33,500원 = 3억 3,500만원

[재난·안전관리 종사자 사기진작 홍보 프로그램 사업 내용]

- (추진배경) 일선에서 재난업무에 수고하는 재난・안전 공무원 등을 KBS 열린음악회에 초청 격려하고 재난현장에서의 노고를 알리기 위한 특집방송 기획・홍보 - (특집방송 계획) 2024. 12. 22.(일) 「KBS 열린음악회 특집방송」, 17:40 - (참 석 자) 재난/안전 부서 공무원, 소방·경찰·해경 및 그 가족 등 1,150명 - (행사내용) 일선 재난・안전 현장 종사자 등의 지친 심신 격려를 위한 감사의 인사 전달, 대한민국 안전 영웅 활약상 소개, 위로 무대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행정안전부는 동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이 재난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 등 지원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향후 예산 심사 시 예산집행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구체적 사업내용을 적시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재정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은 행정부가 연중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사전에 확정될 필요가 있고,[47]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해석상 모호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편성내역과 상이한 사업을 기성 예산을 사용하여 신규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7) 참고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던 물품지원 외 다른 내역(안전사고 대책 추진관련 인쇄 및 물품제작)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정된 예산의 범위는 물품지원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임.

11.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실집행 저조

가. 개 요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제도연구 차원에서 AI학습용 민원상담 데이터를 구축 및 개방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억 8,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48]

[2024년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9,984	9,984	-	-	9,984	9,984	-	-	11,605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484	484	-	-	484	484	-	-	6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기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대상으로 사업출연금(350-02목) 4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인건비 및 민원도우미 서비스 학습데이터 생성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되었음.

[2024년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 예산 산출내역]

ㅇ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제도 수립 및 제도운영: 4억 8,400만원**
-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제도 수립을 위한 인건비 7,700만원
- 민원도우미 서비스 학습데이터 생성모델 개발 4억 7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48) 일반회계-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2031-504)(디지털정부혁신실)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상담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집행 부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담 원천데이터를 질의-응답 형태의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각 정부기관이 학습데이터 자동생성 모델을 사용하여 소관 분야의 민원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음.[49]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4억 8,400만원의 사업출연금(350-02목)을 교부하였으나, 인건비 집행액(7,4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4억 1,000만원)가 전액 미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5.3%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2024년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 출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B)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484	484	484	484	-	484	74	484	74	410	-	15.3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민원도우미 서비스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최종 협의(2차 협의)가 2024년 9월 11일에야 완료되었고, 실제 용역사업은 차년도(2025년)에야 시작되어 만 1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된 데 따른 것임.

49) 행정안전부(24.11.),「민원도우미 서비스 학습데이터 생성 모델 개발 사업계획」

[2024-2025년 공공분야 인공지능 정책수립 및 제도운영 사업 추진경과]

연.월	단계별 사업경과
2023.6.15.	행안부-권익위 국민신문고 데이터 활용 협의 **(국민신문고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 110콜센터 상담데이터를 활용하기로 추진방향 전환)**
2024.2.	행안부-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1차 협의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활용을 위한 최초 협의)**
2024.4.~2024.8.	사업 추진내용 구체화
2024.9.11.	행안부-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2차 협의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활용을 위한 최종 협의)**
2024.11.20.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제공 협의 완료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2024.12.	학습데이터 자동 생성 모델 구축을 위한 용역계약 조달 발주
2025.1.~2025.4.	**사업 추진 및 잔여금액 실집행 완료** **(110콜센터 상담원천데이터(TXT) 제공 - 25.2.1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는 행정안전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110콜센터 상담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면서도 개인식별정보 제거 등 상담원천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인력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임.[50]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예산 확정 이전에는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예산 확정 이후에야 110콜센터 상담데이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1차 협의)를 추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상담데이터 가공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은 예산안 편성 시점부터 면밀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전년도 협의과정(23.6.15.)에서 이미 110콜센터 상담데이터를 활용하기로 추진방향을 전환하였으면서도 실제 활용에 요구되는 소요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 과정에서 실제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요인들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0) 데이터 제공을 위한 최초 협의는 2024년 2월부터지만 실제로 개인식별정보 제거 등의 작업을 거쳐 데이터가 제공된 시점은 차년도(2025년) 2월 13일임.

12. 범정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 보다 면밀한 계획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범정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 사업은 기관 간 모순이 있거나 관례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민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억 3,000만원 중 3억 2,5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6%)되고, 1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51]

[2024년 범정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	4,420	4,420	45	±330	4,465	4,241	-	224	5,492
범정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	430	430	-	±247	430	325	-	106	10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843호, 2023.4.4. 제정 및 시행)을 근거로 만 2년의 기한을 두고 설치된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에 의해 추진되었음.

51) 일반회계-정부혁신 추진 및 확산(1933-307)(디지털정부혁신실)

나. 검토의견

동 사업에서는 당초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던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민원 다국어 번역 용역’에 사용되었는 바,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음.[52] 이는 행정부가 국회가 심의·확정한 내용과 다르게 수행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면, 당초 ‘제도혁신 정책화 우수사례 영상 등 제작’을 위해 편성되었던 일반용역비(210-14목) 5,000만원 및 ‘행정·민원제도 개선 관련 연구’을 위해 편성되었던 2억 4,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이 ‘민원서식 다국어 번역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었음.

[2024년 범정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 사업 예산의 편성 근거-집행내역 비교]

(단위: 천원)

편성 내역			집행 내역			
내용	세목	예산액	내용	세목	변경 후 예산액	집행액
제도혁신 정책화 우수사례 영상 등 제작	일반용역비 (210-14목)	50,000	민원서식 다국어 번역 용역[1]	일반용역비 (210-14목)	50,000	162,000
행정·민원 제도 개선 관련 연구	일반연구비 (260-01목)	240,000	민원서식 다국어 번역 용역	일반용역비 (210-14목)	130,000[2]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정책연구비 (260-02목)	110,000	55,000

주 1) ‘민원서식 다국어 번역 용역’은 2024년 확정 예산 편성 내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이 1억 3,000만원은 당초 일반연구비(260-01목)로 계상되었다가 정책연구비(260-02목)로 세목변경(4.30.)되었고, 계속해서 일반용역비(210-14목)로 전용(5.30.)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 업무 특성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연구용역 주제를 확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민원 제도 개선 관련 연구’로 편성하였고, 추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5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은 행정부가 연중 임의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사전에 확정될 필요가 있는데, 연구용역과 내용 및 성격이 상이한 '민원서식 다국어 번역 용역'을 추진한 것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본래 추진하고자 했던 '행정·민원 제도 개선 관련 연구'을 위한 예산 2억 4,000만원 중 5,500만원만이 본래 계획대로 연구용역을 위해 집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당초의 사업계획 자체가 미흡하게 수립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예산안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용 등을 통한 사업의 추진은 제한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3.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실집행관리 조치의 철저 이행 등

가. 개 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조원이 전액 집행되었음.[53]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	-	1,000,000	1,000,000	-	-	1,00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차 년도인 2022년(7,500억원 출연)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출연금(350-02목) 1조원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음.[54]

[최근 4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비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750,000	1,000,000	1,000,000

자료: 행정안전부

5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균형발전지원국)

5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법률 제18545호(2021.12.7.)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추진체계를 보면,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55]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조합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련 사무를 법정 위탁하고 있음.[56]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배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최종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조합은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며, 공제회는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사무를 수탁하여 수행하고,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하게 됨.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사업 추진체계]

기관명	구분	권한
행정안전부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피출연기관	「지방자치법」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기관	-

매년 교부되는 출연금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57]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으로 2,500억

5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5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으로 7,500억원이 각각 배분되었고 있으며, 광역지원계정 재원 중 40%에 해당하는 1,000억원은 현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58]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배분기준]

(단위: 억원, %)

배분대상	금액	비율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	10,000	100.0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2,500	25.0
시・도 배분금액	1,500	15.0
인구감소지역(89개) 관할 시・도 배분	1,350	13.5
전체 시・도 배분	150	1.5
집합투자기구 출자주)	1,000	10.0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7,500	75.0
인구감소지역(89개) 배분	7,125	71.25
관심지역 배분	375	3.75

주) 2024년 기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시・도에 배분되는 1,500억원 중 1,350억원은 산식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에 배분되며, 나머지 150억원은 재정 및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배분되고 있음.

<광역지원계정 배분금액의 배분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_i \times a1_i \times a2_i}{\sum(A_i \times a1_i \times a2_i)}$$

A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1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비율
$a2_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 · 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 · 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1 \times \text{해당 시·도 배분계수}$$

기초지원계정 통해 시・군・구에 배분되는 7,500억원 중 7,125억원은 인구감소지역

58)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에 배분되며, 나머지 375억원은 관심지역에 배분되고 있음.[59]

2024년 결산 기준 출연금 1조원 중 8,787억 2,4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87.9%)되고, 1,212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재원으로 규정[60]되어 있어 정산후 불용·반납 대상 금액은 없음.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합계	1,000,000	878,724	121,276	-	87.9
광역지원계정	249,425	152,225	97,200.5	-	61.0
기금배분	149,425	149,425	0.5	-	10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100,000	2,800	97,200	-	2.8
기초지원계정	748,276	725,000	23,276	-	96.9
관리운용경비	2,298	1,499	799	-	65.2

자료: 행정안전부

59)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3조제2호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6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나. 검토의견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 일부 지자체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향후 실집행관리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광역지자체 및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에 최초로 교부된 2022년 이후 최근 3년간(2022-2024) 집행 현황을 보면,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은 2022년 25.9%·2023년 37.8% 및 2024년 42.9% 수준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전반적으로는 실집행이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정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자체 수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2	광역	15	187,154	163,510	87.4
	기초(인구감소)	89	532,800	30,317	5.7
	기초(관심지역)	18	27,800	105	0.4
	합계	**122**	**747,754**	**193,932**	**25.9**
2023	광역	15	249,477	231,837	92.9
	기초(인구감소)	89	710,370	136,970	19.3
	기초(관심지역)	18	36,800	8,185	22.2
	합계	**122**	**996,647**	**376,992**	**37.8**
2024	광역	15	149,425	136,932	91.6
	기초(인구감소)	89	710,400	233,588	32.9
	기초(관심지역)	18	36,400	14,406	39.6
	합계	**122**	**896,225**	**384,926**	**42.9**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실집행부진을 지적하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투자계획 심사 시 이전에 제출된 성과집행현황을 주요 요소로 평가하는 등 실집행률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61]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업선정·예산교부 단계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62]

61) 관련 시정요구의 내용은 이하와 같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전반적으로는 실집행률이 개선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기금 사업 실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겠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2025년부터는 기금 교부 2년 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상 배분될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63]을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실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해당하는 107개 지자체 중 19개 지자체는 2년 연속 실집행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하고, 이 중 4개 지자체는 매년 기금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어 실집행관리 대상임에도 실집행이 개선되지 않는 지자체들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3)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관리철저 필요 등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주의, 제도개선
	지적 사항	○ 2022년 신규사업인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 예산에 9개월분만이 편성되어 2022년 상반기 중 기금을 배분할 계획이었으나, 배분기준 고시 마련 및 사업 선정 기간 소요로 기금 배분이 9월 1일에서야 이루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실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남	
	시정 요구 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비가 과다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투자계획 심사 시 이전에 제출된 성과 집행현황도 주요 요소로 평가하여 실집행률 관리를 강화할 것(주의)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투자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제도개선) ○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과다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62) 관련 시정요구의 내용은 이하와 같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19)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실집행 개선 필요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1261-300)	제도개선
	지적 사항	○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은 매년 1조원씩 기금으로 출연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고 있으나,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의 실집행률은 37.8%로 저조하고, 2023년말 기준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도 존재하여 사업의 집행 점검·관리가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임	
	시정 요구 사항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사업에 대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선정·예산교부 단계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63)「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운용 및 관리 규정」
제6조(기금의 감액) ①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사업연장 없이 **기금 교부 2년 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이 저조한 경우**

[2년 연속(2023-2024) 주요 실집행부진 지자체 사례(실집행률 10% 미만)]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자체명	2023년			2024년		
		배분 금액 (A)	실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배분 금액 (A)	실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인구 감소 지역	경기도 연천군	6,400	-	-	6,400	-	-
	경상북도 영천시	9,600	-	-	6,400	-	-
	경상북도 울릉군	8,000	-	-	8,000	38	0.5
	충청남도 금산군	12,000	27	0.2	8,000	242	3.0
	경기도 가평군	8,000	40	0.5	6,400	204	3.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9,600	66	0.7	11,200	481	4.3
	전라남도 진도군	6,400	154	2.4	6,400	283	4.4
	충청남도 태안군	7,200	232	3.2	8,000	392	4.9
	충청남도 서천군	8,000	100	1.3	11,200	558	5.0
	경상남도 함안군	7,200	105	1.5	6,400	411	6.4
	충청남도 청양군	9,600	68	0.7	8,000	727	9.1
	부산광역시 동구	6,400	-	-	6,400	635	9.9
관심 지역	광주광역시 동구	3,000	50	1.7	2,000	-	-
	대전광역시 동구	2,000	-	-	1,600	-	-
	대전광역시 중구	2,000	-	-	2,000	-	-
	대전광역시 대덕구	1,600	113	7.1	1,600	-	-
	경상남도 통영시	1,600	45	2.8	1,600	-	-
	부산광역시 중구	2,000	121	6.1	2,000	168	8.4
	경상북도 경주시	2,000	-	-	1,600	136	8.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결정하면서 실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어야 했으나, 해당 규정의 적용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진의 요건을 '3년간 누적 실집행률이 30% 미만인 경우'로 해석한 결과인데,[64] 국회에 의해 2년 연속 실집행부진이 지적되고 관련 시정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액대상 지자체가 전무하다고 판단한 것은 판단기준 자체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실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실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감액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64)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안」(24.11.13.), 21쪽.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시·도에 배분된 기금이 평가등급이 낮은 기초지자체에 지원되거나 기초지자체 사업이 중복투자되었다가 실집행부진이 발생하는 등 투자계획을 심사하여 차등지원을 수행하는 취지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 배분액의 운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기초지원계정에서 지원되는 기금을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차등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차등지원의 취지는 지방소멸 대응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유도하고 각 지자체의 평가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음.[65]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기초지원계정 배분액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구분하여 차등을 두고, 각 지역 내에서도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S-A-B-C의 4개 등급을 구분하여 차등지원되었음.

2024년 차등배분 기준을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등급에 따라 지자체별로 64~144억원이 지원되고, 관심지역은 등급에 따라 지자체별로 16~36억원이 지원되도록 하였음.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상 차등배분 기준]

등급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지원금액	지역 수	지원금액	지역 수
S	144억원	4개	36억원	1개
A	112억원	14개	28억원	3개
B	80억원	26개	20억원	5개
C	64억원	45개	16억원	9개
전체	총 89개 지역 지원		총 18개 지역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달리, 2024년 광역지원계정에 배분된 2,500억원 중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되는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억원은 투자계획에 관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당 시·도가 관할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수나 비율, 인구감소지수 등의 특성에 따라 배분되었음.[66]

65)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024년 투자계획 평가계획」상 기본방향: 평가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 · 평가단 등 요청 반영, 지방소멸 대응 목적에 맞는 지자체별 기금사업 발굴 유도

66) 광역지원계정의 배분액 1,500억원 중 90%인 1,350억원은 각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비율, 인구감소지수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되고, 나머지 10%인 150억원은 전체 시도의 재정 및 인구관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하의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

[2024년 시·도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배분현황]

(단위: 억원)

시도명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배정금액	207	3	179	268	11	32	7	21
시도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배정금액	7	10	304	193	11	144	96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시도가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투자계획서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 명확한 기준 없이 기금을 재배분하게 되면, 차등지원에 따른 차이가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배분된 기금에 의해 완화되거나 역전되어 차등지원의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67]

또한 광역지원계정에서 지원된 기금이 기초지원 사업을 통해 동명의 사업에 중복투자되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는데.[68] 이러한 중복투자가 명확한 기준 없이 수행될 경우 사업규모가 투자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음.

<광역지원계정 배분금액의 배분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 · 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u>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u>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_i \times a1_i \times a2_i}{\sum(A_i \times a1_i \times a2_i)}$$

A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1_i$ = 해당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비율

$a2_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관할하는인구감소지역 비율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u>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u>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 · 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 · 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1 \times \text{해당 시·도 배분계수}$$

67) 구체적으로 대구시의 '군위군 희망주택 조성사업'(사업비 14억원)이나 강원도의 '홍천 K-Bio 첨단도시 조성사업'(사업비 13억원), 대전시의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2억 4,900만원) 및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2억 4,900만원), 인천시의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2억 2,000만원), 충북도의 '단양 청년희망센터 조성사업'(1억원), 경기도의 '가평 귀농귀촌 지원사업'(4,200만원) 및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5,200만원) 등 투자계획서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은 지자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68) 구체적으로 '군위군 희망주택 조성사업',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인제부:터(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 및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풍류영동 기반구축' 등은 기금의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에서 동시에 지원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인제부:터(지역활력타운)’ 등의 사업은 2024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복투자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된 측면이 있음.

종합하면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지원되는 기금이 명확한 방향성이나 기준 없이 관할 기초지자체에 재투자되면서 기초지원계정 지원과정에서 차등지원을 수행하는 취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므로,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지원되는 기금의 운용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산 후 기금운용주체에게 반납되지 않고 재투자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기금운용주체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운용 및 관리 규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기제출 확정된 투자계획서 내 사업에 포함’ 시키거나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 하도록 규정되고 있음.[69]

기확정된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 규정 제8조의2제1항을 근거로 ‘사업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해당 지자체의 사업변경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잔여 사업비는 해당 지자체의 신규 사업에 투자되고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잔여 사업비가 이월되어 기존 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됨.[70][71]

이상의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미집행된 금액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나 기금운용주체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반환되지 않고 지자체에 유보되었다가, 해당 지자체의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의 차년도 사업비에 반영되도록 처리되고 있음.

---

69)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운용 및 관리 규정」 제8조의3(기금 집행잔액 등 사용) ① 자치단체별 당해 완료된 모든 기금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기제출 확정된 투자계획서 내 사업에 포함 또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한다.
② 사업추진 불가로 미집행된 사업비의 경우 지자체가 기제출 확정된 투자계획서 내 사업에 포함 또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한다.

70)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초지원계정 운용 및 관리 규정」 제8조의2(기금투자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합회의 의결 후 기제출한 투자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변경사유, 타당성, 변경 계획 등이 포함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71) 2024년과 2025년 처리현황을 보면 2024년 9건의 사업변경 신청 중 1건이 승인되어 해당 지자체의 신규 사업에 투자되고, 나머지 8건의 신청은 불승인되어 기존 사업비로 이월되었음. 2025년 5건의 사업변경 신청은 모두 승인되어 해당 지자체의 신규 사업에 투자되었음.

그 결과 매년 배분되는 기금 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관련 이자수입 전액이 반환되지 않고 유보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가 사업비를 장기간 유보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최근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변경 승인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24년			2025년		
구분	건수	금액	구분	건수	금액
승인	1	2,000	승인	5	6,208
불승인주)	8	10,530	불승인	-	-
합계	9	12,530	합계	5	6,208

주) '불승인'은 사업변경 신청이 승인되지 않아 기존 사업에 투자됨을 뜻함
자료: 행정안전부

14.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시한 준수 필요

가. 개 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활성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민간자금을 유치할 마중물 역할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72)]

[2024년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A)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	-	1,000,000	1,000,000	-	-	1,000,000
광역계정	250,000	250,000	-	-	250,000	250,000	-	-	250,0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	-	10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중 광역지원 계정에 할당된 1,000억원이 모펀드에 출자되었고, 그중 28억원이 2024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주)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 대해 운영비로 지급되었음.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등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합계	1,000,000	878,724	121,276	-	87.9
광역지원계정	249,425	152,225	97,200.5	-	61.0
기금배분	149,425	149,425	0.5	-	10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100,000	2,800	97,200	-	2.8
기초지원계정	748,276	725,000	23,276	-	96.9
관리운용경비	2,298	1,499	799	-	65.2

자료: 행정안전부

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균형발전지원국)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모펀드는 재정·산업은행 및 지방소멸대응기금[73]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있음. 모펀드 및 지자체 출자금·민간금융사의 자금과 매칭되어 자펀드가 결성되고,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지자체 및 자펀드로 구성된 SPC가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구조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구조는 SPC(보통주), 자펀드 출자(우선주), 자펀드 대출금 및 PF 대주단 대출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정부는 조성된 모펀드 3,000억원이 전액 투자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74]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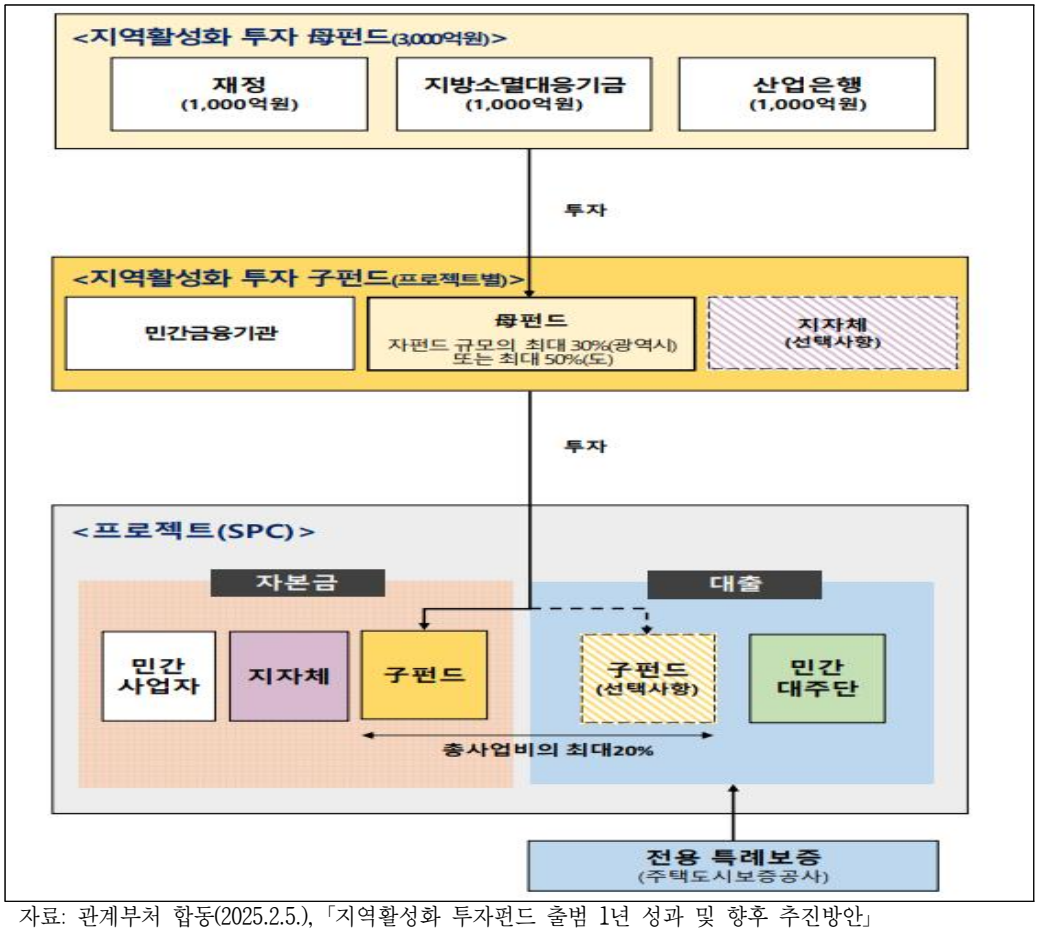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2.5.),「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7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74) 관계부처 합동(2025.2.5.),「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투자대상 사업의 목적 및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수도권 소재 개발사업 등 규정상 열거된 일부 유형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75] 또한 2025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부터 전체 펀드 약정금액의 1/3 이상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76]

2025년 6월말 기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출자(예정)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등 5건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2조 4,934억원임.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의 출자(예정) 대상 지역개발 프로젝트 선정 현황]

(단위: 억원)

(지역명) 지역개발 프로젝트명	총사업비		
		모펀드	
			지방소멸대응기금
(충북 단양)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680	68	23
(경북 구미) 구미 국가산단 신규 거주시설	876	39	13
(전남 여수) 묘도 LNG터미널	14,362	1,436	479
(경북 경주) 경주 수소연료전지	7,716	772	257
(충남 서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300	130	43
합계	24,934	2,445	815

주) 2025.6.30.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75) 수도권 소재 개발사업, 사행성 도박·유흥주점 시설 등의 개발사업,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및 주민 혐오시설을 포함하는 개발사업, 주택 분양 사업, (예비)사업성 검토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분양형 개발사업 등

76) 단, 모펀드 운용 개시 후 14개월이 지난 후에는 잔여기간 동안 투자 지역에 구분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출자대상으로 선정된 5개 지역개발 프로젝트중 4개 프로젝트에서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어 출자금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자펀드 결성시한 준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연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성과로 약 2.5조원 규모의 5개 지역개발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81.5%의 모펀드 소진율을 달성하였다고 발표(2025.2.5.)한 바 있음.[77]

그런데 자펀드 조성 현황을 보면, 5개 지역개발 프로젝트 중 자펀드가 결성된 것은 '묘도 LNG터미널' 1개 프로젝트 뿐이고,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구미 국가산단 신규 거주시설' 및 '경주 수소연료전지' 등 3개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2회에 걸쳐 결성시한이 연장되었고,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프로젝트는 위탁운용사를 재선정하고 있음.

[2024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에 의한 출자(예정) 지역개발 프로젝트 현황]

(단위: 억원)

지역개발 프로젝트명	사업비			위탁운용사 최종선정일	자펀드 결성 시한	현황
	총사업비	모펀드	지방소멸 대응기금			
(충북 단양)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680	68	23	24.11.27.	25.9.29. (2회 연장)	협의 중
(경북 구미) 구미 국가산단 신규 거주시설	876	39	13	25.1.24.	25.11.24. (2회 연장)	협의 중
(전남 여수) 묘도 LNG터미널	14,362	1,436	479	24.9.2.	25.4.2. (1회 연장)	자펀드결성 (25.2.28.)
(경북 경주) 경주 수소연료전지	7,716	772	257	24.11.27.	25.9.29. (2회 연장)	협의 중
(충남 서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300	130	43	-	-	위탁운용사 재선정 중
합계	24,934	2,445	815			

주) 2025.6.30.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자펀드 결성은 결성시한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최초 결성시한은 선정계획[78]상 위탁운용사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설정되고 있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의를 거쳐 3개월 씩 2회,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77) 관계부처 합동(2025.2.5.),「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78)「지역활성화 투자펀드 2025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행정안전부는 결성시한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는 입장임.

4. 제재 사항 및 기타 □ 제재 사항 ◦ 결성 시한(협의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이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결성시한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어, 결과적으로 위탁운용사가 선정된 4개 프로젝트 모두에서 최초 결성시한(4개월)이 준수되지 않고 있고,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에도 최대 10개월까지 자펀드 결성이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위탁운용사 최종선정일'을 기준으로 자펀드 결성시한이 선정되므로, '충남글로벌홀티플렉스' 프로젝트와 같이 위탁운용사가 최종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 이외의 제재 대상 자체가 없어 위탁운용사 재선정 시까지 자펀드 결성이 재차 연기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자펀드 결성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결성시한 준수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위탁운용사가 선정 취소되는 경우에도 자펀드 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반하는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등

가. 개 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창업비용 및 일 경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756억 5,000만원 중 756억 3,800만원(집행률 99.8%)이 집행되고, 4,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300만원이 불용되었음.[79]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75,650	75,650	115	±80	75,765	75,638	44	83	19,85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기준 동 사업의 세부유형은 지역혁신형(PART1)·상생기반대응형(PART2) 및 지역포용형(PART3) 등으로 구분되며, 상생기반대응형은 다시 소멸위기지역 창업(PART2-1) 및 창업성장플러스(PART2-2) 등으로 세분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유형(2024년 기준)]

유형구분		주요 지원내용	2024년 예산
지역혁신형(PART1)		청년 대상 지역특화 일자리·임금 지원	627억 900만원
상생기반 대응형 (PART2)	소멸위기지역 창업 (PART2-1)	인구감소지역 청년의 신규 창업 등 지원 (1년차) 창업준비비용 1,500만원 지원 (2년차) 창업 성공시 1,500만원 지원 (3년차) 청년 신규 채용 시 1년간 인건비(2,400만원) 지원	118억 6,800만원
	창업성장 플러스 (PART2-2)	서울 외 지역 청년의 창업 '정착' 지원 (1년차) 시제품·홍보·공간임차 등 1,500만원 지원 (2년차) 청년 신규 채용 시 1년간 인건비(2,400만원) 지원	
지역포용형 (PART3)		청년 일 경험 위해 1년 간 임금(2,250만원 내외)·직무교육 등 지원	6억 3,400만원
합계			752억 1,100만원

주)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예산 4억 3,900만원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7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3131-303)(균형발전지원국)

나. 검토의견

첫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3년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일부가 절차상 하자로 이월되지 못하였음에도 반납처리되지 않아 정산이 2025년 4월까지 지연되었고, 당초 이월액에 의해 충당하고자 하였던 2023년의 지출소요가 2024년 예산으로 집행되어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보조사업 관리의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17개 시・도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각 보조사업자에게 참여청년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 4년간(2021-202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도별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2021		2022		2023		2024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교부액	실집행액
서울	3,039	2,450	2,094	1,821	1,106	934	359	250
부산	17,121	15,580	23,622	21,293	19,683	16,414	9,926	6,939
대구	25,954	22,824	27,620	25,194	21,809	18,861	4,972	4,197
인천	5,454	4,961	7,265	6,333	6,566	4,888	1,711	1,428
광주	8,274	6,930	14,259	11,499	12,864	9,597	4,017	2,225
대전	8,840	7,786	6,330	5,317	2,906	2,420	682	491
울산	1,892	1,431	1,273	1,145	779	685	776	211
세종	1,417	1,297	1,032	868	837	714	283	254
경기	14,955	12,332	9,542	8,067	6,447	4,561	2,602	1,652
강원	11,793	10,216	11,205	9,173	8,781	6,699	4,474	2,377
충북	12,287	11,188	17,115	15,603	17,828	13,838	5,673	4,582
충남	19,953	17,889	20,720	17,725	16,917	13,900	6,796	4,860
전북	20,382	17,050	21,099	16,975	19,305	12,126	6,380	4,710
전남	20,933	18,304	22,810	14,163	14,531	8,801	5,679	4,227
경북	36,566	32,755	33,193	28,565	28,490	23,058	11,540	8,022
경남	19,174	15,416	13,477	10,742	14,198	9,874	6,349	5,080
제주	6,121	5,299	6,109	5,780	5,510	4,470	2,992	1,665
합계	234,155	203,706	238,766	200,263	198,558	151,846	75,211	53,170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을 통해 각 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회계연도 종료 시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산되고 있음.

그런데 경상남도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의 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8,000만원 중 이월액(17억 1,700만원)과 불용액(15억 2,400만원)을 제외한 15억 3,900만원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지 않고 2024년 연말까지 미정산 잔여금으로 유보되고 있음.[80)]

[2023년·2024년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현황(일부)]

(단위: 백만원)

연도	시도	교부액	전기 이월	교부 현액 (A)	실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이월액 제외		차기 이월	불용액	미정산 잔여금
							교부액	실 집행액			
2023	경남	14,198	1,737	15,935	11,155	70.0	14,198	9,874	1,717	1,068	1,539
2024	경남	6,343	1,717	8,060	6,208	77.0	6,343	5,080	342	921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미정산 잔여금의 처리 경과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보조금 정산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 이월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보조사업자인 경상남도(이하 '보조사업자'라고 함)는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상 이월신청된 17억 1,700만원 및 불용처리된 10억 6,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3,900만원을 시스템과 별도로 이월신청하고 있음.

그러나 이 15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채로 이월승인 절차가 완료 및 통보(2024.1.11.)되었고, 이 금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임에도 보조사업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었음. 이후 차차년도인 2025년 1월에야 반납결정이 통보되었고, 해당 반납액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수기 고지서 발급 요청(2025.4.22.)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처리(2025.4.23.)되고 있음.

[미정산 잔여금 처리 경과(2023.12.25.~2025.4.23.)]

일자	관련 주체	주요 경과
2023.12.15.	행정안전부 → 각 시도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이월신청 안내문 발송
2023.12.22. /2023.12.26.	보조사업자(경남) →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이월내역(32억 5,600만원) 제출(2023.12.22.) 및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접수(2023.12.26.)
2024.1.11.	행정안전부 → 각 시도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이월승인(17억 1,700만원) 통보

80) 2025년 1월에 반납결정이 통보되고, 4월에 수기고지서가 발급되어 불용처리되고 있음.

일자	관련 주체	주요 경과
2024.10.15.	보조사업자(경남)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이월 미승인액 관련 문의
2025.1.17.	행정안전부 → 보조사업자(경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이월 미승인액 관련 답변
2025.4.22.	보조사업자(경남)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2025.4.23.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자의 이월신청이 이월대상 국비에 대한 매칭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은 채로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후 협의를 거쳐 사후적으로나마 불용처리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해당 금액이 보조사업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기는 했으나 임의로 집행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보조금 집행잔액은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까지는 반납이 완료되어야 하는데,[81] 문제되는 2023년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차차년도인 2025년 4월에야 반납고지서가 발급되고 있어 적기에 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주체인 행정안전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지자체에 의해 임의로 집행될 위험 또한 있었다는 점에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이월이 승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적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 유보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방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의 매칭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미사용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보조금 일부가 지출원인행위(채용행위) 없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5년 일몰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신규채용 없이 중도이탈자에 대한 대체 채용만을 실시하고 있음. 2024년 채용실적을 보면, 채용공고 기준 모집인원 1,911명 중 1,655명이 채용되었음.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체 채용 실적]

(단위: 명)

지자체명	공고인원 (A)	채용인원(제출) (B)	미채용 (A-B)
서울	16	15	1
부산	290	255	35
대구	144	144	0
인천	13	11	2
광주	100	96	4
대전	13	10	3
울산	73	60	13
경기	33	31	2
강원	174	93	81
충북	113	111	2
충남	199	185	14
전북	66	41	25
전남	151	109	42
경북	358	332	26
경남	63	63	0
제주	105	99	6
계	1,911	1,655	256

주) 2024년 연내(1.1.~12.31.) 채용실적 기재 요청
자료: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등에 한해 이월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82)]

8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동 사업 보조금은 인력채용을 전제로 인건비성 비용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도탈락자 발생 후 대체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사용된 보조금은 정산 후 반납되는 것이 적정하였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계속사업의 경우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인해 미사용된 보조금 규모를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이월 규정의 준수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동 사업 보조사업자 중 울산 및 제주는 공고인원 대비 미채용 인원이 존재함에도 보조금 집행잔액 전액이 이월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공고인원 대비 3명이 미채용되고 있음에도 정산 후 반납되는 금액 합계가 약 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상 3개 시도의 보조사업에서는 불용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용처리된 금액이 없거나 소액이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상 이월 규정이 미준수된 것으로 보임.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실집행 현황(울산·제주)]

(단위: 명, 백만원)

보조사업자 지자체	2024년 미채용인원	2024년 예산액	2024년 교부액	2024년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울산	13	776	776	211	565	-
대전	3	660	660	491	167	2
제주	6	2,951	2,951	1,665	1,285	-

주) 2024년 연말(12.31.)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통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는 중도탈락자로 인해 미사용된 보조금 규모를 따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에만 2,709명(중도탈락율 21.9%)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였고, 2024년 실집행 단계에서만 176억 9,900만원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조금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셋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 추이에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현장점검 및 지자체의 정기·특별점검을 독려하는 등 허위수급 적발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에서는 부정수급 적발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의 분기별 현장점검 및 지자체의 자체점검 등이 실시되고 있음.[83] 그런데 최근 4년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정수급 적발 실적 및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2021년 300만원(1건)·2022년 1,080만원(5건)·2023년 2억 4680만원(12건) 및 2024년 6억 6,460만원(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최근 4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부정수급 적발 건수	과징금 부과 건수	징수결정액	수납액
2021	1	1	3,000	2,500
2022	5	5	10,799	9,951
2023	12	12	204,677	106,073
2024	19	19	664,622	-
합계	**37**	**37**	**883,098**	**118,524**

주) 수납액은 2024년 연말(12.31.)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최근 4년간 부정수급 적발경로를 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점검노력에 의한 적발보다 부정수급 신고에 의한 적발 건수 및 비중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부정수급 적발 경로]

(단위: 건, %)

구분	행정안전부 현장점검		지자체 정기·특별점검		민간 적발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21	-	-	-	-	1	100.0	1	100.0
2022	-	-	1	20.0	4	80.0	5	100.0
2023	-	-	4	33.3	8	66.7	12	100.0
2024	1	5.3	5	26.3	13	63.2	19	100.0

주) 2021년 행정안전부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정기·특별점검 미실시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허위수급은 서류상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 내부고발 등에 의한 허위수급 적발이 최근 급증하였고, 선발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요건미충족이

83) 기획재정부(2024.9.2.),「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나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등의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부정수급 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2021-2024) 과징금이 부과된 37건 중 허위수급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건수가 총 26건으로 70.3%의 비중이어서 허위수급 적발을 위한 관리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2021-202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기간 합계	
					건	비중
요건미충족	1	2	2	3	8	12.5
목적외사용	-	3	-	-	3	8.1
허위수급	-	-	10	16	26	70.3
연간 합계	**1**	**5**	**12**	**19**	**37**	**100.0**

주) 연도는 적발시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현장점검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지자체의 정기·특별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허위수급의 적발실적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6. 마을기업 육성사업: 고용성과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수익사업을 지원하여 소득·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6억 9,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84]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수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2,695	2,695	-	-	2,695	2,695	-	-	1,67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지역주민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1-3차에 걸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특성에 맞춰 재도약마을기업(성과저조·회생대상), 우수마을기업(2회차 지원완료), 모두애(愛)마을기업(3회차 지원완료) 등을 지정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였음.

[마을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 일반	보조금 규모	최대 3회, 1억원(1회차 5,000만원, 2회차 3,000만원, 3회차 2,000만원)
	자부담	보조금 20% 이상
맞춤 지원	재도약 마을기업	마중물 사업비(1,000만원)·컨설팅 지원 후 재지정 운영실적 저조하나 회생 의지가 있는 기업 대상
	우수마을기업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판로 지원 등 수행 2회차 사업비 정산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 경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 3회차 사업비 정산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 경과

자료: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24. 11.)

8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보조사업

나. 검토의견

마을기업 지정 취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마을기업 1개당 상용근로자 수도 정체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고용 측면에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마을기업 지정은 지역성·기업성·공동체성 및 공공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동 사업 성과지표로 '마을기업 고용인원' 및 '마을기업 지정건수' 등을 측정하여 기업성 측면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음.

또한 2022년부터는 '마을기업 고용인원'에 관한 재정사업 성과지표를 '평균 고용인원'에서 '상용근로자 수'로 변경하여 마을기업을 통해 지원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년간 전국 마을기업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매년 지정 취소되는 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2024년에는 신규 지정 없이 74건이 취소되어 마을기업 수도 2023년 1,800개소 대비 1,726개소로 감소하였음.

[최근 4년간 마을기업 신규 지정·지정 취소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구분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국비)	9,635	6,595	6,695	2,695
신규 지정	109	113	88	0
지정 취소	**64**	**40**	**58**	**74**
운영 중	1,697	1,770	1,800	1,726

주) 2024년부터 마을기업 신규지정 중단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마을기업당 상용근로자 수를 보면 1.70명~1.98명 수준으로 정체되고 있어, 사업 성숙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일자리의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음.

[최근 7년간(2018-2024) 마을기업당 상용근로자 수]

(단위: 개,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마을기업 수(A)	1,514	1,556	1,652	1,697	1,770	1,800	1,726
상용근로자 수(B)	2,925	3,077	3,219	2,888	3,171	3,189	3,167
마을기업당 상용근로자 수(B/A)	**1.93**	**1.98**	**1.95**	**1.70**	**1.79**	**1.77**	**1.83**

주) 상용근로자는 계약상 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뜻함
자료: 행정안전부

이상의 우려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마을기업이 신규지정 후 추가 국비지원 없이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85]이고, 2011년 이후 지정된 2,386개 마을기업 중 660개만이 취소되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마을기업은 사회적 기업과 달리 고용창출 외 지역소멸 방지·지역공동체 가치 복원 및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지역문제의 해결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매년 지정 취소되는 건이 발생하고 있어 마을기업의 양적 성과가 국비 지원 없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용 창출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지정의 고용 측면에서의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5) 신규 지정 이후, 5년간 생존률 88%

17.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연구과제의 적기 추진 필요 등

가. 개 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6억 3,600만원 중 12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8.9%)되고, 8,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86]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사업 2024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수정 (A)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1,636	1,636	-	-	1,636	1,291	83	262	1,83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방시대위원회는 회의체 운영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마련·시행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8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방시대위원회 운영(1132-325)

나. 검토의견

첫째, 동 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어야 할 연구과제 6건 중 1건만이 연내 정상 추진되었고, 나머지 5건의 과제 중 3건은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차년도(2025년)에 종료 예정이며, 2건은 과제 수행이 중단되어 관련 예산이 불용되는 등 연구과제 수행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음.

2024년 기준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3억원의 연구비가 계상되었고, 이 중 연내 집행된 금액은 9,000만원으로 집행률이 30% 수준에 그쳤음.

과제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을 보면,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된 6건의 연구과제 중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1건을 제외한 나머지 5건의 과제들이 연내 종료되지 못하였음.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연구과제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	낙찰	정책연구심의위 심의 일자	계약 기간	계약 유형	비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60	54	24.4.30.~ 24.5.2.	24.7.1. ~ 24.12.27.	경쟁	-
대도시(특례시) 지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40	36	24.4.30.~ 24.5.2.	24.9.2. ~ 25.3.28.	경쟁	-
특별자치시 · 도 자치권 확대 및 특화 발전 방안 연구	40	34.5	24.9.30.~ 24.10.4.	24.12.18. ~ 25.5.16.	경쟁	-
지방이양 비용평가 산정 방안 연구	50	45.5	24.9.30.~ 24.10.4.	24.12.30. ~ 25.4.28.	수의 (단독)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복수주소제 도입방안 연구	50	-	24.9.30.~ 24.10.4.	-	미체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24.12.11) 결과 3개 입찰기관 모두 부적격
권한이양 과제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50	-	24.9.30.~ 24.10.4.	-	미체결	연구주제·내용 수정·보완 위해 계약 미발주
합계	290	170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착수된 4건의 연구과제 모두 착수시점이 하반기(7.1.~12.31.)에 속하고, 미착수된 2건의 연구과제의 경우 1건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시점이 연말에 근접(12.11.)하고, 나머지 1건은 과제 발주를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였음.

행정안전부는 현안 대응 차원에서 연구과제 계획을 수립·실행하다보니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 심의대상 과제들은 일정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 집행지침상 연구용역비(260목) 역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선행 절차인 과제 수요조사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연말 집행이 가능한 시점에 연구과제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구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사업 연구과제들은 현재 일반연구비(260-01목)를 재원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내용은 일상적인 조사·연구라기보다 지방분권 등의 주제에 관한 정책연구에 해당하므로, 정책연구비(260-02목)로 계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예산 집행지침은 연구과제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관련 재원을 일반연구비(260-01목)와 정책연구비(260-02목)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연구비(260-01목)와 정책연구비(260-02목) 비교]

구분	일반연구비(260-01목)	정책연구비(260-02목)
개요	ㅇ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ㅇ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
세부지침	ㅇ 기술용역·전산용역·임상연구용역 및 기타 연구용역으로 구분 ㅇ 분야별 집행상한기준(예:「측량대가의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ㅇ「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제56조 적용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제50조-제51조) -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결과 공개(제53조~제54조) - 정책연구 추진성과 점검 등 관리(제55조)

자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4.1.) 재구성

일반연구비(260-01목)의 경우 세부지침에 분야별 집행상한기준 외에 집행관리상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정책연구비(260-02목)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9조 내지 제56조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세목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들의 재원은 전액 일반연구비(260-01목)로 계상되고 있으나, 연구과제의 주요 내용은 집행지침상 정책연구비(260-02목)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며, 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과제의 지속적인 수행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사업관리를 위해 동 사업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을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도록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18.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 실집행부진 개선을 위한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빈집을 철거·복구 및 공공활용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50억원 중 49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4%)되고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87]

[2024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1]
	본예산	수정 (A)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9,275	19,275	-	±5,000	19,275	19,212	-	63	8,915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	5,000	5,000	-	±5,000	5,000	4,969	-	31	세부사업 이관[2]

주 1) 2025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2025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부사업으로 이관되었으며, 100억원이 편성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동 사업 예산은 2024년 예산 확정 당시 전액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되었으나,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전용(2024.5.31.)되었음.

[2024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주요 추진경과]

연월	주요경과
2023년 12월	• 2024년 예산 확정(50억원, 일반용역비) • 지자체 사업 확대 및 전용 건의
2024년 1월~2월	• 지자체 수요조사 실시(1,551호)
2024년 2월	• 예산 전용 협의 신청(24.2.7.)
2024년 5월	• 예산 전용(24.5.31.)
2024년 7월	• 사업비 교부 시작
2024년 9월	• 빈집정비지원팀 신설 및 사업 이관 (새마을발전협력과→균형발전제도과)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8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

나. 검토의견

첫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연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실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2024년 실집행 현황을 보면, 당해 교부된 보조금 49억 6,900만원 중 13억 3,000만원(실집행률 26.6%)만이 실집행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

[2024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5,000	5,000	4,969	4,969	-	4,969	1,330	4,969	1,330	3,584	31	26.6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당초 일반용역비(210-14목)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의 비목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변경하면서 7월에야 보조금이 최초로 교부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2024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주요 추진경과]

연월	주요경과
2023년 12월	• 2024년 예산 확정(50억원, 일반용역비) • 지자체 사업 확대 및 전용 건의
2024년 2월	• 예산 전용 협의 신청(24.2.7.)
2024년 5월	• 예산 전용(24.5.31.)
2024년 7월	• 사업비 교부 시작
2024년 9월	• 빈집정비지원팀 신설 및 사업 이관 (새마을발전협력과→균형발전제도과)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2025년 6월말 기준으로도 2024년 교부된 49억 6,9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1억 1,200만원(실집행률 42.5%)에 지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2025년 교부된 보조금 91억원 중에는 6억 4,000만원만이 실집행(실집행률 7.0%)되고 있어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지원은 연중 직접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시기상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는 사유로 2024년 한시적으로 10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였는데,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국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예산은 당초 전액 일반용역비(210-14목)로 계상되었으나 예산 전용(2024.5.31.)을 통해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목)로 비목이 변경되었는데, 국비보조율 100%를 적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연중 보조사업 변경으로 지방비 매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 첫 해인 2024년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전액 국비보조하였으나,[88] 2025년부터는 철가 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70%만 국비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임.

[2024년·2025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비목	지원 금액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목)	5,0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2025		10,00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절감할 수 있었던 국비가 지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히 계획하여 사업계획 부실 수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8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빈집을 정비하여 숙박시설 등으로 공공활용하고자 기획하였다가 계획 변경으로 철거사업만 지원하게 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공공활용 방식 일부가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공공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빈집정비를 통해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도록 하고, 철거 부지 또는 정비된 빈집을 공공활용하고자 하였음.

계획상 연계사업(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활용하여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빈집을 공유 숙소·오피스 등으로 활용하여 청년인구의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

[2024년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 계획상 연계사업(안)]

연계 사업명	사업내용
생활인구 활성화사업	인구감소지역과 대도시·인접지역 간 협력하여 생활인구 활성화 ※ 빈집 재활용을 통한 숙박시설 조성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 및 숙박 할인 등)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청년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시 빈집 활용 ※ 빈집을 활용한 공유 숙소·오피스 등 조성
지방소멸기금사업	빈집 정비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빈집 활용 기금사업 발굴
고향사랑기부제	빈집 관련 사업과 연계 가능한 답례품 발굴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2024년 예산 전용(2024.5.31.) 전·후의 사업변경 내역을 보면, 당초 계획에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있던 보수사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철거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2024년 예산 전용 전·후 사업내용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단순철거: 500만원(농어촌) / 1,000만원(도시) 지원 단순보수: 1,000만원 지원 철거·보수 후 공공활용: 3,000만원 지원	→	단순철거(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 조건) : 국비 500만원+지방비 200만원(농어촌) / 국비 1,000만원+지방비 400만원(도시) 지원

주) 해당 금액은 지자체 지원 시 단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내역은 철거대상마다 상이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수사업을 거쳐 리모델링된 건물을 공공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2024년 연말(24.12.31.) 기준 공공활용 방안이 확정된 43호는 각각 주차장(20호)·텃밭(16호) 및 주민쉼터(7호) 등으로만 활용되었음.

[2024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공공활용 현황]

(단위: 호)

준공호수	준공 후 공공활용			
	주차장	텃밭	주민쉼터	협의 중
136	20	16	7	93

주) 2024년 연말(24.12.31.)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행정안전부는 이상과 같은 사업내용 변경에 대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지원단가에 맞는 사업수요부터 우선 발굴하여 소진하도록 지원조건을 '공공활용을 전제로 하는 단순철거'로 일원화시킨 것이고, 반드시 빈집을 재활용하지 않더라도 철거만으로 경관개선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타 사업과의 연계에 관해서는 지자체 의사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보수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예산안 편성 시 사업계획을 보면 건물이 없더라도 부지의 공공활용만으로 실현가능한 캠핑장·주말농장 및 농산물 판매장 등의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현재 공공활용 현황을 보면 주차장·텃밭 및 주민쉼터 등으로만 운용되고 있으므로, 공공활용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3년간(2022-2024)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의해 지원된 빈집정비 관련 8개 사업들은 리모델링된 빈집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빈집 철거 후 부지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으므로, 사업 간 연계를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넷째,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있으나, 지원단가에 맞는 사업수요가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 지원규모 대비 70%를 하회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전에 사업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계획상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철거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고, 연초 사업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79개 시・군・구 1,551호를 대상으로 153억 8,3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런데 연초 실시된 사업 수요조사는 변경 전 지원조건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변경 후 사업조건은 변경 전과 달리 보수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공공활용 시 추가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활용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빈집 소유주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수요에 변동이 있을 수 있었음.

[2024년 예산 전용 전-후 사업내용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단순철거: 500만원(농어촌) / 1,000만원(도시) 지원 단순보수: 1,000만원 지원 철거・보수 후 공공활용: 3,000만원 지원	→	단순철거(철거 후 3년간 공공활용 조건) : 국비 500만원+지방비 200만원(농어촌) / 국비 1,000만원+지방비 400만원(도시) 지원

주) 해당 금액은 지자체 지원 시 단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집행내역은 철거대상마다 상이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수혜자 입장에서 불리한 사업조건 변경에도 사업수요를 다시 조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예정했던 수준에 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사업수요가 감소하여, 해당 지역이 지원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그 결과 2024년 연초 수요조사 기준 지원대상 빈집 871호 중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호수가 717호로 82.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2024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지원대상 841호 중 약 68.8%에 해당하는 579호만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호수여서 지원대상 중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획 대비 감소하였음.[89]

89) 또한, 2025년 6월말까지 확정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비율은 60.0% 수준으로 2024년에 비해서도 하락(2024년 68.8% → 2025년 6월말 기준 60.0%)하였음.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 실시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변경 후 사업계획상 지원대상			실제 지원대상		
	합계	인구감소·관심지역	기타 지역	합계	인구감소·관심지역	기타 지역
지원호수	871	717	154	841	579	262
비중	100.0	82.3	17.7	100.0	68.8	31.2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빈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90]하고 있음에도 빈집정비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평균단가에 비해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사업수요 확보가 어려웠다고 답변하였음.[91]

그러나 사업수요 확보는 2025년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예산을 확대편성 하기 전에 완료되었어야 하는데도 사업내용 변경 이후에 사업수요를 재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보조사업 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예산규모는 계획대로 유지되면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해당하는 빈집의 지원비율은 계획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어, 타 부처와 달리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우선지원하겠다는 사업 취지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추진 시 이상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90)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2025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 계정으로 지원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에 대한 예산 배분 권한이 없으며, 다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우선하여 고려할 것을 요구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9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상적인 철거사업 단가가 도시 기준 2,000~3,000만원, 농어촌 기준 1,000~2,000만원 수준임에 반해 동 사업의 지원단가는 그보다 낮은 수준(국비·지방비 합계 기준 농어촌 700만원 / 도시 1,400만원)임.

19. 작은 섬 공도 방지: 보조사업 사전준비 철저

가. 개 요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은 소규모 섬을 대상으로 식수·전력 및 접안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1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92)]

[2024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A)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883	10,883	-	-	10,883	10,847	-	36	11,478
작은 섬 공도방지	3,150	3,150	-	-	3,150	3,150	-	-	2,835

주) 2025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내역사업은 예산 전액이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 교부액 31억 5,000만원 중 19억 6,6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62.4%)되고, 15억 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

9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1241-300)

나. 검토의견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은 일부 지역 보조사업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해역이용협의 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를 보다 면밀하게 이행하여 사업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에서는 경남 사천시・전남 고흥군・전북 군산시・전북 고창군 등 4개 자치단체의 2024년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이 50% 미만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이들 4개 자치단체는 이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 교부되었던 보조금 일부가 재이월되는 등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는 추세임.

[2024년 지역별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주체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교부액	집행액 (C)			
경남 통영시	**126**	**468**	**594**	**401**	**126**	**-**	**193**	**-**	**0.0**
경남 사천시	**252**	**56**	**308**	**159**	**252**	**103**	**148**	**-**	**40.8**
전남 고흥군	**441**	**435**	**876**	**296**	**441**	**101**	**581**	**-**	**22.9**
전남 영광군	252	31	283	283	252	251	0	-	99.6
전남 완도군	1,260	562	1,822	1,438	1,260	875	385	-	69.4
전남 진도군	472	350	822	811	472	466	5	6	98.7
전남 신안군	31	4	35	35	31	31	-	-	100.0
전북 군산시	**31**	**133**	**164**	**120**	**31**	**-**	**45**	**-**	**0.0**
전북 고창군	**283**	**108**	**391**	**244**	**283**	**135**	**147**	**-**	**47.7**
경북 울릉군	-	107	107	99	-	-	-	8	-
합계	3,150	2,257	5,407	3,887	3,150	1,966	1,506	14	62.4

주) 실집행률 50% 미만인 지자체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함
자료: 행정안전부

실집행부진 사업에서의 지연 사유를 보면, 7개 사업 중 통영(남도), 고흥(진지내도), 고흥(첨도) 및 군산(죽도) 등 4개 사업에서 주민의견 수렴 또는 민원발생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통영(초도), 고흥(진지내도), 고흥(첨도) 등 3개 사업에서는 해역이용협의가 지연되어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 실집행 부진 사유]

지자체	사업명	지연사유
경남 통영시	통영(납도)	24년 예산(15백만원)은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으로 **주민의견 수렴(우물 정비) 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집행되지 못했으나,** 25년 3월 종료되어 전액 집행함
	통영(초도)	선착장 연장공사에 대해 **해역이용협의 절차 이행** 등 지연되어 24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됨. 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으나, 25년 5월 공사가 완료되어 전액(111백만원) 집행함
경남 사천시	사천(별학도)	데크길 조성공사 중 일부 선금(103백만원)은 지출했고, 연말까지 공사는 완료했으나 자금은 25년 1월 전액 집행(149백만원) 하였음
전남 고흥군	고흥(진지내도)	선착장 연장공사 추진 중 **주민 의견수렴 및 해역이용협의 지연 등으로** 24.12월 공사가 착공, 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중으로 25년 7월경 전액 집행 예정임
	고흥(첨도)	선착장 연장공사 추진 중 **주민 의견수렴 및 해역이용협의 지연 등으로** 24.12월 공사가 착공, 일부 선금만(101백만원) 지급됨. 현재는 정상 추진중으로 25년 7월경 전액 집행 예정임
전북 군산시	군산(죽도)	상수도 관로공사를 위해 공사 장비가 섬에 진입해야 하나, **인근 섬 김 양식장에 방해가 있다는 민원으로** 공사 지연됨. 현재는 민원이 해소되어 공사 진행중이며, 금년 8월중 전액(32백만원) 집행 예정
전북 고창군	고창(외죽도)	관정 및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행정절차가 추가 이행됨에 따라 24년 11월 공사 착공되었고, 선금(136백만원)만 집행한 후 25년 5월 공사가 완료하고 전액(150백만원) 집행함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등의 협의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이행하여 사업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기　타】

20.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행정안전부에 대해 시정요구 55건(중복 3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7건(중복 2건)・주의 23건(중복 2건)·제도개선 25건(중복 2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7(2)	23(2)	25(2)	(3)	55(3)
예비비	-	-	-	-	-	-	-
합계	-	-	7(2)	23(2)	25(2)	(3)	55(3)

행정안전부는 시정요구사항 52건에 대해 36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9.2%)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52	36	69.2	16
예비비	-	-	-	-
합계	52	6	69.2	16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행정안전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행정안전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10)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시 지방재정과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집행상 애로 요인 발생 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34)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충실히 관리한다.
	(35)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중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36) 행정안전부는 태풍·홍수 등에 따른 하천의 범람·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명 및 주택·농경지에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37) 행정안전부는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예산 확정 시 보조금 조기 교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현황을 적극 점검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	(18)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성과와 재정 관리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찰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801억 7,300만원(113.1%)이 많은 1조 5,508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2억 7,300만원(6.0%)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208,657	1,208,657	1,462,566	253,909	1,370,726	1,370,726	1,550,839	180,113	88,273
총수입	1,208,657	1,208,657	1,462,566	253,909	1,370,726	1,370,726	1,550,839	180,113	88,273

문의 :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pmh1117@assembly.go.kr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678억 9,400만원(△0.5%)이 적은 12조 9,22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58억 9,300만원(4.7%)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2,454,781	12,454,781	12,336,917	△117,864	12,990,704	12,990,704	12,922,810	△67,894	585,893
총지출	12,454,781	12,454,781	12,336,917	△117,864	12,990,704	12,990,704	12,922,810	△67,894	585,893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3,707억 2,600만원으로, 2조 8,832억 4,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5,508억 3,900만원이 수납(수납률 53.8%)되고 1조 3,276억 8,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47억 2,2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279,380	1,279,380	-	1,279,380	2,799,001	1,466,614	1,327,665	4,722
책임운영특별회계(경찰병원)	91,346	91,346	-	91,346	84,248	84,225	23	-
- 손익계정	86,990	86,990	-	86,990	79,736	79,713	23	-
- 자본계정	4,356	4,356	-	4,356	4,512	4,512	-	-
합 계	1,370,726	1,370,726	-	1,370,726	2,883,249	1,550,839	1,327,688	4,722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조 712억 9,600만원으로, 이 중 12조 9,777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73억 5,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62억 3,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2,949,393	12,949,393	25,662	-	-	12,975,055	12,894,361	7,358	73,336
책임운영특별회계(경찰병원)	91,346	91,346	35	-	-	91,381	78,484	-	12,896
- 손익계정	86,990	86,990	35	-	-	87,025	74,858	-	12,166
- 자본계정	4,356	4,356	-	-	-	4,356	3,626	-	7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60	4,860	-	-	-	4,860	4,860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860	4,860	-	-	-	4,860	4,860	-	-
합 계	13,045,599	13,045,599	25,697	-	-	13,071,296	12,977,705	7,358	86,232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경찰청 자산은 전년 대비 2,729억 1,400만원이 증가한 18조 860억 7,4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615억 8,2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2,173억 3,5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68억 9,100만원 증가한 4,020억 1,4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89억 7,9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660억 2,200만원이 증가한 17조 6,840억 6,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경찰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5,754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9억 2,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4조 4,776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14억 9,4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경찰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8,086,074	17,813,160	272,914	1.5 %
		유동자산	1,369,690	1,308,108	61,582	4.7 %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16,585,157	16,367,822	217,335	1.3 %
		무형자산	92,656	98,980	(6,324)	(6.4 %)
		기타비유동자산	38,570	38,250	320	0.8 %
	부 채		402,014	395,123	6,891	1.7 %
		유동부채	55,366	49,693	5,673	11.4 %
		장기차입부채	71,535	62,556	8,979	14.4 %
		장기충당부채	105,720	104,738	982	0.9 %
		기타비유동부채	169,393	178,136	(8,743)	(4.9 %)
	순자산		17,684,060	17,418,038	266,022	1.5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575,482	1,479,560	95,922	6.5 %
	재정운영순원가		14,477,836	13,826,382	651,454	4.7 %
	재정운영결과		14,477,642	13,826,148	651,494	4.7 %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경찰청 결산은 일반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의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96억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53억원이 전출되었음.

[2024회계연도 경찰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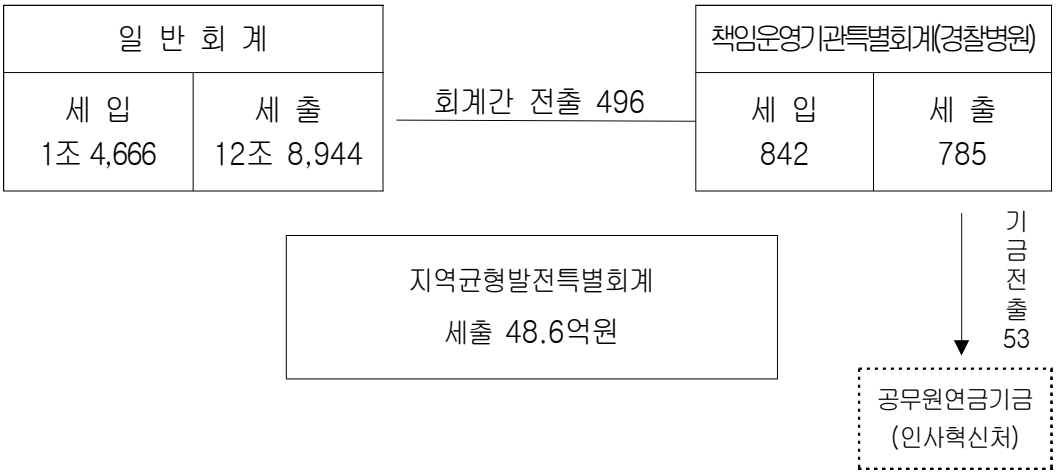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경찰청은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을 전략목표로 총 15개 프로그램, 43개 단위사업, 162개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경찰청 인건비와 관련하여 경찰직·일반직 공무원 간 과도한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 특성에 맞는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정·현원 간 불일치 문제가 있으므로 직무의 종류 및 책임도 등이 고려된 인력운용이 필요함.

둘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에 있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납 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인건비: 경찰직·일반직 공무원 간 과도한 비대칭 문제 및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경찰청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소속 경찰관, 일반직공무원 등에게 보수·제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부 인건비 및 소속 기관 인건비 등 총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총 예산현액 10조 252억 5,900만원 중 10조 22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230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경찰청 소관 인건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경찰청인건비	659,294	659,294	-	9,750	669,044	668,997	-	47	693,208
시도경찰청인건비	9,224,865	9,224,865	-	△19,751	9,205,114	9,196,244	-	8,870	9,656,917
경찰대학인건비	27,075	27,075	-	-	27,075	25,419	-	1,656	28,558
경찰인재개발원 인건비	11,202	11,202	-	-	11,202	10,689	-	513	11,662
중앙학교인건비	58,175	58,175	-	△226	57,949	54,953	-	2,994	62,354
수사연수원인건비	4,817	4,817	-	228	5,045	5,045	-	-	5,244
경찰병원인건비	50,141	50,141	-	△311	49,830	40,884	-	8,946	50,207
합 계	10,035,569	10,035,569	-	9,978	10,025,259	10,002,231	-	23,026	10,508,1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경찰청인건비(7101-111)(기획조정관)
일반회계-시도경찰청인건비(7101-112)(기획조정관)
일반회계-경찰대학인건비(7102-114)(경찰대학)
일반회계-경찰인재개발원 인건비(7102-115)(경찰인재개발원)
일반회계-중앙학교인건비(7102-116)(중앙경찰학교)
일반회계-수사연수원인건비(7102-117)(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특별회계-경찰병원 인건비(4302-111)(경찰병원)

나. 검토의견

첫째, 현재 경찰청의 인력구성은 일반직공무원 대비 경찰공무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치안현장업무와 행정지원업무 간 분업 및 각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경찰청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현원 기준 총 14만 4,087명은 경찰직공무원 13만 1,807명(95.5%)과 경찰직 외 공무원 6,140명(4.5%)으로 구성됨. 전체 인력의 대부분이 경찰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치안현장뿐만 아니라 경무·정보화 및 기획 등의 행정지원 분야까지 경찰직 인력이 광범위하게 배치되어 있음.

[2024년도 경찰청 인력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경찰직 (A)	경찰직 외					합계 (B)	경찰직 비율 (A/B)
			일반직	총액임기제	교육직	소방직	합계		
2024	정원	130,972	5,640	957	22	76	6,695	137,667	95.1%
	현원	131,807	5,485	635	20	-	6,140	144,087	95.5%

주) 2024년 12월 말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직과 일반직 각각에 적합한 업무를 재분류하고, 일반직으로의 전환 또는 일반직 증원이 필요한 직무분야 및 규모를 파악하고자, 2017년 '경찰 직무별 직종 적합성 분석을 통한 경찰직과 일반직 간 정원대체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후생·복지 등 법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일반직 공무원에게 보다 적합한 업무 분야에 경찰직이 상당수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부서로 발령을 받아 숙련도가 형성되는 시기에 다시 보직이 변경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또한 예산 및 경비 집행, 경리, 장비관리, 복지 등의 행정지원업무는 일반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제시되었으며,[3] 전체 정원 대비 일반직 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1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음.[4]

경찰청은 연구 이후 2018년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부터 경무직 등 내근 중심 직무를 대상으로 일반직 공무원 배치

3) 단기적으로 대체 가능성·필요성이 있는 업무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최근 일반직 공무원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2024년에는 별도로 일반직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2019~2024년 일반직 증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부서	경찰서 경무과	경찰서 경무과 경찰서 교통과 시·도청 경무과	경찰서 경무과	경찰서 경무과	증원없음	증원없음
증원 인원	264	453	538	103	-	-

자료: 경찰청

2024년 12월 말일 기준 인력 현황(현원기준)을 살펴보면, 본부에 비하여 일선 조직에 해당하는 시·도 경찰청의 일반직 비율(3.5%)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경찰대학 등 부속기관은 일반직 비율(57.7%)이 높은 편임.

본부 내 기능별 현황에 따르면, 미래치안 등 일반직으로의 대체 가능성이 높은 기능에서는 일반직 비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나, 여전히 경무인사·대변인 및 감사 등의 기능에서는 경찰직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5)]

○경무인사 기능 중 경리계, 복무관리계, 청사관리계, 경찰박물관 등의 업무
○정보화장비 기능의 정보화장비업무, 청사관리업무, 유실물관리업무, 체납과태료 업무
○생활안전기능의 경비업체 허가·단속(행정처분)·지도교육, 관리업무 및 생활질서계의 총포화약관리업무
○형사과 종합조회처리실(범죄통계 및 치안자료 분석·관리) 업무, 타 기관 정보제공업무, 공직선거업무 등과 각 과·계별 통계분석·정리업무, 자료관리업무 등(사건관리(접수, 평가, 통계, 수배 등), KICS 및 수사자료 관리(체포영장 등), 월 중요사건 보고, 통계 및 실적 관리, 각종 통계 산출·분석)

자료: 경찰청

4) 주요 선진국 경찰조직 내 일반직 공무원등 비율 (미국: 30.2%, 영국 27.0%, 프랑스 18.8%, 독일 14.7%, 일본 11.24% 등)

5) 최근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2년 이내 우선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대체 가능한 직무에 대하여 미래치안(정보화장비), 기획·경무·인사, 대변인(홍보), 부속기관, 감사 순서로 조사되었음.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광희 의원실·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2024.10.7.)
○조사주체: 한국시민교육연합
○조사대상: 경찰청 소속 경찰직(4,483명) 및 일반직(602명) 공무원
○조사기간: 2024.5.7.~2024.5.14.

[2024년 경찰청 인력 현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본부							시·도 경찰청	부속기관
	미래치안	기획조정	경무인사	대변인	감사	그 외	총계		
경찰직	76	72	88	21	59	1,014	1,330	129,895	582
일반직 등	76	156	77	7	13	276	605	4,663	795
총계	152	228	165	28	72	1,290	1,935	134,558	1,377
일반직 비율	50.0	68.4	46.7	25.0	18.1	21.4	31.3	3.5	57.7

주1) 2024년 12월 말 기준
주2) 일반직 등 = 일반직 + 총액임기제 + 교육직
자료: 경찰청

한편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경찰직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별도과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있으며, 동일계급 기준으로 일반직보다 기본급이 높게 책정되고, 일부 계급에서는 성과급 등에서도 우대되는 구조임.

[2024년도 경찰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보수 비교]

(단위: 백만원)

경찰직				일반직			
계급(호봉)	기본급	성과급(평균)	직급 보조비 등	계급(호봉)	기본급	성과급(평균)	직급 보조비 등
치안정감(20호봉)	7,522,700	7,666,950	890,000	1급(20호봉)	7,289,100	7,666,950	890,000
치안감(20호봉)	6,922,800	6,915,350	790,000	2급(20호봉)	6,573,900	6,915,350	790,000
경무관(20호봉)	6,311,200	6,257,650	640,000	3급(20호봉)	5,949,100	6,257,650	640,000
총경(20호봉)	5,603,000	5,761,150	540,000	4급(20호봉)	5,248,600	5,761,150	540,000
경정(15호봉)	4,576,800	4,858,850	390,000	5급(15호봉)	4,361,400	4,858,850	390,000
경감(15호봉)	4,087,100	4,648,820	325,000	6급(15호봉)	3,736,800	4,262,280	325,000
경위(15호봉)	3,754,700	4,201,560	325,000				
경사(10호봉)	3,073,600	3,768,270	320,000	7급(10호봉)	2,939,100	3,623,950	320,000
경장(10호봉)	2,741,200	3,120,260	315,000	8급(10호봉)	2,638,700	3,010,260	315,000
순경(10호봉)	2,514,800	2,698,850	315,000	9급(10호봉)	2,385,100	2,559,590	315,000

자료: 경찰청

따라서 경찰직 인력의 과도한 배치는 단순히 업무 적합성이나 전문성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어, 경찰직과 일반직 간 인력구조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필요한 실정임.

경찰청은 치안현장업무와 행정지원업무 각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일반직 전환·대체가 가능한 직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둘째, 경찰청은 직급별로 정·현원 간 불일치 문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직 내 인력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력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말 기준 경찰청(시·도 경찰청 등 소속기관 포함)의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계급별로 정·현원 간 괴리가 나타남. 경찰직의 경우, 경감·경위 계급의 현원은 정원의 2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경사 이하에 있어서는 현원이 정원에 미달하고 있음.

[2024년 직급별 경찰직·일반직 공무원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경찰직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합계
정원(A)	1	7	30	83	687	3,214	10,967	17,401	28,698	31,361	38,523	130,972
운용정원	1	7	32	96	744	3,290	11,182	18,139	29,953	32,264	38,751	134,459
현원(B)	1	7	31	91	746	3,274	27,086	38,010	26,818	20,302	15,441	131,807
비율(B/A)	100.0	100.0	103.3	109.6	108.6	101.9	247.0	218.4	93.4	64.7	40.1	100.6

일반직	고공단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A)	10	6	73	7	90	356	999	2,269	1,695	5,505
현원(B	7	6	52	7	92	726	2,151	1,307	1,007	5,361
비율(B/A)	70.0	100	71.2	100	102.2	203.9	215.3	57.6	59.4	97.4

주1) 운용정원 = 법정정원 + 타부처정원 + 별도정원 + 복수직종 포함
주2) 일반직: 전문경력관·연구직 제외, 일반직 9급의 경우 관리운영 포함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면 상위직급의 정원과 상관없이 근속승진이 이루어지므로 정·현원 간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경찰공무원법」상 근속승진 규정은 재량규정이므로, 업무 수행 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조직 내 인력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6)]

[「경찰공무원법」 관련 규정]

제16조(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상의 정원 구조는 치안현장에서 다수의 실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하위 계급일수록 인원이 많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경위·경감 등 인력이 정원 대비 과도하게 증가하고, 하위 계급 현원은 부족하여 다이아몬드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임.

이에 따라 중간관리자급으로 설계된 인력이 실무 업무에 투입되는 등 직급별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정원 제도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경찰청은 정·현원을 고려하여 인력구조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급체계에 따른 기능별 역할 분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직 운용기준 및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이에 대해 경찰청은 근속승진 제도는 승진적체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법률 형식 상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경찰청을 포함한 전 부처에서 직무 및 인력여건 등에 대한 고려없이 근속승진 기간이 경과하고 승진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임.

【일반회계】

<세 입>

2.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과태료' 는「도로교통법」제160조,「경비업법」제31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근거하여 교통법규 또는 단속법 위반행위에 대한 질서벌로서 금전적 납부 의무를 부과·징수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2조 4,064억 8,200만원 중 1조 3,188억 8,600만원이 수납(수납률 54.8%)되고 1조 837억 3,600만원이 미수납되어, 38억 6,1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7)]

[2024년도 과태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1,134,090	1,134,090	2,406,482	1,318,886	1,083,736	3,861	54.8	1,324,27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과태료는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미수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과태료 수납률 제고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찰청의 연도별 과태료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년 50% 내외로 저조하며, 특히 최근 2021년 이후 미수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도 미수납액은 1조 837억 3,600만원에 달함.

7) 일반회계-과태료(56-563)(생활안전교통국, 범죄예방대응국)

[연도별 과태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694,816	694,816	694,816	1,621,189	751,822	108.2	46.4	859,727	9,640
2021	699,607	699,607	699,607	1,759,607	860,688	123.0	48.9	894,690	4,229
2022	848,674	848,674	848,674	2,122,089	1,141,266	134.5	53.8	974,404	6,418
2023	969,554	969,554	969,554	2,293,491	1,228,436	126.7	53.6	1,060,986	4,069
2024	1,134,090	1,134,090	1,134,090	2,406,482	1,318,886	116.3	54.8	1,083,736	3,861

자료: 경찰청

2024년 과태료 미수납액의 위반 사유별 구성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미수납액이 1조 1,032억 4,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4년 과태료 미수납액의 위반 사유별 구성]

(단위: 건, 백만원)

위반 사유	미수납 건수		미수납액	
	사유별 건수	비중	사유별 금액	비중
「도로교통법」	15,831,041	100.0%	1,103,246	100.0%
「경비업법」	3	0.00%	56	0.00%
「총포화약법」	-	-	-	-
합 계	15,831,041	100%	1,103,302	100%

자료: 경찰청

또한 2024년 「도로교통법」위반 미수납 과태료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 및 금액이 60% 내외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한편, 0~2년 기간의 비교적 최근에 부과된 과태료의 건수 및 금액도 전체 미수납 금액 중 22.5% 내외로 나타남.

[2024년 「도로교통법」 위반 미수납 과태료의 기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기간	5년이상	4~5년	3~4년	2~3년	1~2년	0~1년	계
건수	9,633,661	482,841	667,030	1,097,634	1,881,768	2,068,107	15,831,041
(비중)	60.85	3.05	4.21	6.93	11.89	13.06	100
금액	680,598	40,740	52,889	81,125	122,846	125,047	1,103,246
(비중)	61.69	3.69	4.79	7.35	11.13	11.33	100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24년 미수납액에는 과거에 부과된 미수납액이 포함되어있고, 징수가 어려운 불법차량에 부과된 과태료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미수납의 사유 및 기간별 현황, 경찰청 설명 등을 고려할 때, 장기 미수납 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징수 독려나, 일회성 단속으로는 수납이 어려울 것이므로 징수가능성을 파악하여 회수 가능한 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경찰청은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가상자산 압류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태료 수납률은 50% 내외에 그치고 있어 현재 수행 중인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보완이 필요함.[8)]

한편 신규 부과 건에 대하여는, 무인단속장비 설치 확대 및 제한속도 하향정책 등에 따라 신규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징수결정액 증가가 미수납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과태료 수납률 저조 문제는 세입확보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찰청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최근 3년간 신규 추진한 정책의 2024년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내용	추진시기	2024년 실적	
			건수	징수액
고액·장기 체납자 효율적 관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2023.5. ~	677	40
	체납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추심	2024.4.~	2,170	137
채권 압류 지속 실시	과태료 독촉(2차) 고지서 발송	2024.8.~	1,117,438	81,335
업무 효율화	음주단속 현장에서 유관기관 합동체납차량 단속	2022.4.~	274	20,554

자료: 경찰청

[(참고)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구 분	내 용	추진시기
고액·장기 체납자 효율적 관리	30만원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2014.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위탁	2017.1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7년 이상 15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신규 위탁	2020.2.~
	고액 체납 불법명의 차량 운행 제한	2018.10.~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2023.5.~
	체납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압류, 추심	2024.4.~
채권압류 지속 실시	전자 예금압류, 추심 활성화	2014.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장정보 시스템 연계	2020.11.~
	과태료 독촉(2차) 고지서 발송	2024.8.~
업무 효율화	워크숍, 전문교육 실시 및 성과 우수자 포상	2009.1.~
	불납결손 처리지침 개정	2020.5.~
	대여차량 과태료 대상자 변경 업무 자동화·전산화	2020.12.~
	납부 가상계좌 시스템 개선 (전용회선 → 중계업체, 1개은행 → 4개은행)	2021.4.~
	음주단속 현장에서 유관기관 합동체납차량 단속	2022.4.~

자료: 경찰청

<세 출>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교통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8억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 되었음.[9)]

[2024년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교통안전활동	42,894	42,894	45	-	42,939	41,052	31	1,856	45,178
기타 교통활동 지원	5,110	5,110	-	13	5,123	4,943	-	174	7,62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1,800	1,800	-	-	1,800	1,800	-	-	2,7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제공하는 10만원 중 3만원(국고보조율 30%)을 지원하려는 것임. 기본 지원금 10만원 외에 지자체별로 현금이나 상품권 등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

9) 일반회계-교통안전활동(1331-312)(생활안전교통국)

나. 검토의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납 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업 목적인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예산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10] 2024년의 경우 예산현액 18억원 중 17억 9,0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99.4%)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총 11만 4,436건으로 전년대비 반납 건수가 증가하였음.[11]

[최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실집행 내역 및 운전면허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연도	자치단체 실집행 내역				운전면허 현황		
	예산액	교부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A)	자진반납 건수 (B)	자진반납 비율(B/A)
2020	1,392	1,392	1,316	76	3,682,632	76,002	2.1
2021	1,392	1,392	1,335	57	4,016,538	83,997	2.1
2022	1,800	1,800	1,781	19	4,387,358	112,942	2.6
2023	1,800	1,800	1,781	19	4,747,426	112,896	2.4
2024	1,800	1,800	1,790	10	5,166,386	114,436	2.2
2025	2,700						

자료: 경찰청

그러나 최근 5년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42,369건이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비율은 21.6%로 교통사고 건수와 전체 교통사고 대비 비율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이 교통안전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10) 2018년 부산시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되었음.

11) 예산 편성 당시 계획인원(2024년 기준 총 60,000명)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반납이 이루어진 자치단체의 경우, 초과 지원금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

연도	전체 교통사고 (A)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B)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비율 (B/A)
2020	209,654	31,072	14.8
2021	203,130	31,841	15.7
2022	196,836	34,652	17.6
2023	198,296	39,614	20.0
2024	196,349	42,369	21.6

주) 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자료: 경찰청

특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면허소지자가 반납하여야 효과적일 것이나, 시범적으로 실제 운전 증빙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천안시의 2024년 면허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반납자 중 실제 운전자 반납 비율이 16.9%에 그치고 있으므로,[12] 운전면허 반납 자체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 ①운전면허 반납 후 대체교통수단 지원사업과 관련한 시정요구와 ②동 사업의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실제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차등 지원방식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함께 의결되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13]

12) 천안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반납자 (A)	594	674	810	812	821
실제운전 증빙 반납자 (B)	84	93	110	163	139
실제운전자 반납률 (B/A)	14.1	13.8	13.6	20.1	16.9

주) 자동차보험 가입여부 등을 통해 면허반납 전까지 운행을 하였는지 입증 절차를 거침
자료: 경찰청

1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2024.1.) 91p.
주요 개선방안으로, ①실제 운전자 비율이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 ②시골지역의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체교통수단 등 맞춤형 교통정책 마련, ③연령기준에 있어서 위험성이 보다 높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이 제시되었음.

더불어 현재까지는 대체교통수단 지원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14]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비율 감소와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조속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15][16]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

구분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26)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제도개선)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시에도 동 사업에 대해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지속 여부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을 받은 바 있음 ○ 경찰청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 동 사업과 같은 일회적인 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 운전을 포기하는 대가로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의 반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경찰청은 동 사업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농어촌지역 교통약자 대체교통수단 지원사업 주관부처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검토할 것 **○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령대·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운전면허 반납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사업을 민간과 협업하여 진행 중** ※ 관련 업무협약 체결('24. 10월) ○ 현재 4개 지자체(강원 평창, 전남 강진, 충북 제천, 경북 영천)를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 완료(2.20.), 사업 추진 중 ○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해 대체교통수단 지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25. 下)
조치상황 ('25.4.30.)	조치 완료 (2025.2.)

14) 경찰청은 4개 지자체(강원 평창, 전남 강진, 충북 제천, 경북 영천)를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대체교통수단 지원 차원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5) 관련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TS)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의도치 않은 페달 조작 등을 예방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투입되어 경찰청·TS 및 손해보험협회 간 협약을 통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16)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2026년 사업부터 실제 운전 여부를 증빙하는 고령운전자를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개편 중이라는 설명임.

4.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대국민 서비스 공개의 추가적 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보호구역의 교통·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20억 6,000만원 중 15억 3,700만원을 집행(집행률 74.6%)하였고, 5억 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17]

[2024년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교통행정전산화	3,310	3,310	-	-	3,310	2,737	501	73	1,615
교통경찰 전산시스템 고도화	2,158	2,158	-	-	2,158	1,634	501	24	617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060	2,060	-	-	2,060	1,537	501	22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종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정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왔으나, 「도로교통법」 개정(2023.1.3.)에 따라 경찰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한 전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 규정이 마련됨.[18]

---

17) 일반회계-교통행정전산화(1332-511)(생활안전교통국)

18) 「도로교통법」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 · 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정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규로 구축되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조사 자료 등 보호구역 정보가 탑재됨. 동 시스템은 내·외부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내부시스템은 행정업무 및 정책관리 용도로 활용되고, 외부 시스템은 국민에게 보호구역의 통계·공간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보호구역 관리시스템 개요]

구 분	보호구역/ 안전속도 정보관리 시스템 ssis.koroad.or.kr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내부) biz.safetyzone.go.kr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대국민) safetyzone.go.kr
목적	보호구역정보관리와 안전속도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정보수집 관리·제공	
운영주체	도로교통공단	경찰 및 지자체	경찰
사용주체	경찰, 도로교통공단	경찰: 열람권자 지자체: 사용관리권자	경찰: 열람권자 지자체: 사용관리권자
운영기간	2019.~	2025.2.11.~	2025.10.(예정)
제공정보	- 보호구역 지정통계 및 공간정보 영역표출 - 도로 구간별 안전속도 제공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처리 자료 취합 정리	보호구역 통계, 공간정보, open-api 제공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자체 실태조사 정보수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2024년 말 개시 예정이었던 대국민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청은 대국민 서비스 공개가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구역에 대해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리 등에 반영하고 있음.[19]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의 변환 및 통계처리, 공간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대국민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됨.

19)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당초 동 시스템은 2024년 말까지 구축 완료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수집 및 검증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대국민 서비스 공개 시점이 2025년 10월로 연기되었음.

경찰청은 서비스 개시 일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시스템 구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력한 보호구역 영역정보에 표현 오류가 다수 발견되어 공개 일정이 조정되었다는 설명임.

시·도별 보호구역 자료 수집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실태조사 입력 건수는 전체 보호구역 20,035건 중 9,677건이며, 이 중 정보오류 등으로 2,046건만이 최종 승인되었음. 이에 따라 전체 보호구역 건수 대비 실태조사 승인완료 건수 비율인 공간정보 등록률은 9.71%에 불과한 상황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시·도별 정보 수집 현황]

(단위: 건, %)

연번	지역	보호구역 현황				실태조사 현황		공간정보 등록률 (B/A)
		계(A)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실태조사 입력	실태조사 승인(B)	
1	서울	1,888	1,671	194	23	790	-	-
2	부산	913	825	83	5	94	-	-
3	대구	777	702	69	6	537	191	24.6
4	인천	912	640	265	7	378	1	0.1
5	광주	589	514	61	14	218	127	21.6
6	대전	601	450	145	6	383	-	-
7	울산	458	324	134		142	145	31.7
8	세종	138	126	3	9	37	-	-
9	경기	4,210	3,614	593	3	2801	748	17.8
10	강원	1,029	755	231	43	408	134	13.0
11	충북	1,162	726	428	8	844	19	1.6
12	충남	1,110	1,042	60	8	766	41	3.7
13	전북	1,721	958	762	1	440	89	5.2
14	전남	1,136	1,035	98	3	697	344	30.3
15	경북	1,603	1,193	407	3	693	146	9.1
16	경남	1,288	1,141	142	5	407	61	4.7
17	제주	500	337	140	23	42	-	-
합 계		20,035	16,053	3,815	167	9,677	2,046	9.71

주) 2025년 6월 30일 기준
자료: 경찰청

동 사업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은 기존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중심의 정보관리 체계에서, 법적근거 미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 정보수집·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그 취지에 비춰보아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및 정보관리 체계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따라서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자료 등록을 독려하고, 오류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국민 시스템 개시 일정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부대운영 사업: 토지 사용계약으로 인한 배상금 등 발생 부적정

가. 개 요

'부대운영' 사업은 경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청사 공공요금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59억 400만원 중 653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2%)되고, 5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4년도 부대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동대운영및관리	74,108	74,108	520	15,048	89,676	88,988	-	778	75,514
부대운영	50,497	50,497	-	15,407	65,904	65,345	-	559	54,11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경찰청은 부대운영에 있어 부지매입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향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지를 제3기동단 청사부지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다한 규모의 배상금 및 소송비용이 발생하였음.

경찰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의 부지사용료 소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4년 4개의 세부사업에서 150억 4,800만원을 전액 이·전용(증)하여 배상금을 지급하였음.

20) 일반회계-기동대운영및관리(2131-314)(경비국)

[2024년도 부지사용료 소송 배상금 관련 예산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세목 (코드)	
이용 (2024.12.30)	시도경찰청인건비 (7101-112)	보수 (110-01)	9,884	기동대운영및관리 (2131-314)	배상금 (310-02)	부지사용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헬기운용 및 현대화 (4232-31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000			
	교통과학장비관리 (1331-313))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400			
전용 (2024.12.30)	경비경찰활동 (2131-311)	특정업무경비 (250-03)	1,764		배상금 (310-02)	
합 계			15,048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09년 8월 3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654번지 일대의 13,065.1㎡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되, 추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함.

이후 2011년 말부터 해당 부지를 제3기동단 청사로 사용하였고, 2011년~2017년 동안 서울토지주택공사의 9차례 매매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경찰청은 다른 부지와 교환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이에 명시적으로 무상사용 약정 협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20년 8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 총 150억 4,8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2024년 5월 16일 확정되었음.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장기 점유한 사유에 대하여, 경찰청은 토지매입비 예산을 2006년~2022년 4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과다 및 판결 미확정을 이유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장기 점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점은, 예산의 사전편성·심의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를 선행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토지매입비 등 재정 소요가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를 선행하여 재원을 확보한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 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21)]

21) 제3기동단 부지사용료 소송의 배상금 외 소송비용 내역

(단위: 원)

구 분	지 급 일	금 액
대리인 선임비용	2019.4.4. (1심 / 2018가합114639)	11,000,000
	2020.9.11. (항소심 / 2020나2020874)	7,700,000
	2022.3.30. (상고심 / 2022다215302)	7,700,000
	2024.8.2. (파기환송심 / 2024나2008940)	5,500,000
합 계		31,900,000

자료: 경찰청

6.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 사업: 사전계획 미흡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이월 부적정

가. 개 요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 사업은 외국경찰관 대상 초청연수 등 치안ODA사업의 운영을 위한 전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8억 4,300만원 중 4억 4,900만원이 집행(집행률 24.5%)되고 13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음.[22)]

[2024년도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경찰대학운영	11,914	11,914	-	225	12,139	10,739	1,394	6	14,592
경찰대학운영	9,974	9,974	-	225	10,199	8,805	1,394	-	11,763
국제경찰교육 훈련센터신축	1,843	1,843	-	-	1,843	449	1,394	-	3,41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경찰대학 부지 내에 치안ODA 사업에 필요한 강의공간 및 숙박공간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7억 8,400만원(국비 100%)의 건축사업임.[23)] 경찰대학은 종래 외국인 경찰관 대상으로 초청연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24)] 국제경찰교육센터 신축이 완료될 경우 해당 시설을 활용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

22) 일반회계-경찰대학운영(4131-311)(경찰대학)

23) 연차별 국비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2022	2023	2024	2025	2026
154	139	1,843	3,419	2,229

자료: 경찰청

24) 2024년의 경우 관련 초청연수 사업을 총 7건 수행하였으며, 2025년의 경우 총 10건을 수행할 계획임. (2025년 8월 초 기준 완료:6건, 예정:4건)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외국 경찰관 초청연수 등 치안ODA 사업에 필요한 전용 교육시설 신축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 (당초: 2022~2025년)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경찰대학 부지 내 ○ 규모 및 면적 : 지하1층, 지상4층 / 소요면적 2,650㎡ ○ 시설용도 : 강의실 및 숙박시설 ○ 총사업비 : 77억 8,400만원 (당초: 62억 3,700만원)

자료: 경찰청

나. 검토의견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증액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므로, 경찰청은 수행 예정인 치안ODA 초청연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사업의 비목별 결산을 살펴보면, 2024년 예산액 18억 4,300만원 중 4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사비 및 감리비 13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4년도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5년도 예산액
실시설계비	60	60	-	-	-
공사비	1,759	375	1,384	-	3,371
감리비	19	9	10	-	40
시설부대비	5	5	-	-	8
합 계	1,843	449	1,394	-	3,419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청사 증축 사업의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추진되어 사업비 조정이 비교적 용이하나, 경찰대학의 경우 학교 기관으로서 일반회계로 추진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였고, 이에 8개월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 사업 일정]

사업 착수 및 설계	➡	총사업비 조정 및 공사	➡	건축공사 및 완공
• 사업 반영 •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자체 일상감사 • 설계용역 계약 • 기본설계 • 중간설계		• 총사업비 변경 협의 • 설계 조정 • 일상감사 • 긴급 공사 발주 • 공사계약		•공사 착공 및 감리 •공사완료
당초 2022. 1. ~ 2023. 10. 변경 2022. 1. ~ 2023. 12.		당초 2024. 2. ~ 2024. 8. 변경 2024. 8. ~ 2024. 12.		당초 2024. 8. ~ 2025. 12. 변경 2024. 12. ~ 2026. 4.

자료: 경찰청

또한 경찰청은 물가 변동률 상승 및 연약지반 보강 등 설계 및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총사업비 증액 협의가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임.

[총사업비 증액 협의 내역]

(단위: 백만원)

증액 사유	1차 증액요구 (2023.8.28)	2차 증액 요구 (2024.1.10)	최종 반영
• 외국인 교육 필수시설	-	996	314
• 물가변동	-	771	462
• 전기·통신 등 설비 인입비	-	631	134
• 기존설비 철거 및 이설	-	209	209
•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	158	158
• 공사비증가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적용	-	37	24
• 빗물이용시설	-	98	-
• 기반시설분담금	-	79	86
• 연약지반보강	-	47	47
• 건설사고 예방 용역비	-	44	53
• 방음 가설 울타리	-	20	-
•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60	-	60
합 계	60	3,090	1,547

자료: 경찰청

그러나 총사업비 증액 협의 내역을 살펴보면 물가변동, 연약지반보강 외에 외국인 교육 필수시설(9억 9,600만원)·기존 설비 철거 및 이설(2억 900만원)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 가능한 요소가 주요 증액 사유로 포함되어 있음. 총사업비 증액협의가 단순히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며,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경찰청은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 신축 이후의 ODA 초청연수 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일정 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건축사업 추진 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예산상 소요 및 주요 변수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공공요금및제세: 보험료 단가 추이를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가. 개 요

'공공요금및제세'는 경찰 차량에 필요한 보험료 및 제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63억 9,700만원 중 122억 9,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5.0%)되고, 4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25]

[2024년도 공공요금및제세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차량관리	115,111	115,111	-	115,111	93,666	338	21,107	106,030
공공요금및제세	17,177	17,177	-	16,397	12,292	-	4,105	15,26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공공요금및제세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차량 보험시장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보험료 단가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및 낙찰차액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상 단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차량관리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는 경찰차량 보험료와 제세로 구성되며, 이 중 보험료의 2024년 예산액은 162억 500만원이었으나 실제 117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72.3%에 그침.

2024년 차량보험의 실제 계약대상 차량대수는 예산 편성 시보다 3대 증가하였으나, 대당 보험료가 예산상 단가보다 약 25만원 하락(91만원→65.8만원)하여 총 44억 8,5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함. 2025년 보험계약[26]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 시 단가를 80.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계약단가는 64만원으로 약 32억 9,600만원의 예산 미집행이 예상됨.

25) 일반회계-차량관리(4231-312)(미래치안정책국)

26) 2024년도 말에 2025년 경찰차량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최근 공공요금및제세 중 경찰차량 보험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률	집행 보험료 산식
2020	12,840	11,868	972	92.4	16,894대*70만원
2021	15,524	15,486	38	99.8	17,079대*91만원
2022	15,681	15,344	337	97.9	17,251대*89만원
2023	15,838	12,656	3,182	80.0	17,660대*71.7만원
2024	16,205 (17,808대*91만원)	11,720	4,485	72.3	17,811대*65.8만원
2025	14,296 (17,679대*80.9만원)	11,000	3,296	76.9	17,167대*64만원

주) 2025년 집행현황의 경우 2025년 차량보험 계약체결액 기준
자료: 경찰청

이는 종전 특정 보험사가 경찰차량 보험계약 공고에 단독 응찰하여 선정되었으나, 2023년도 차량보험 계약부터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며 경쟁구도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의 경우 대당 차량보험료 단가가 60만원대까지 하락하였기 때문임.

경찰차량 보험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최근 보험료 단가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향후 예산편성 시 차량 보험료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경찰병원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입>

8.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사업수입 감소 및 일반회계전입금 의존도 개선 필요

가. 개 요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은 경찰병원의 입원·외래환자 진료수입 및 제증명료 등 사업운영 관련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41억 8,800만원 중 241억 6,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미수납액 2,000만원이 발생하였음.[27]

[2024년도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31,700	31,700	24,188	24,169	20	-	99.9	32,20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은 사업수입의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체수입 증대 노력,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 의존도 개선 노력이 요청됨.

경찰병원은 동 사업의 2024년 세입예산액을 전년 예산액 대비 10억 9,900만원 감액한 317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241억 6,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76.2%에 그쳤으며, 수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27) 경찰병원특별회계(손익계정)-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491)(경찰병원)

[최근 5년간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 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28,192	28,912	-	28,192	31,176	31,154	110.5	99.9	22	-
2021	30,220	30,220	-	30,220	39,370	39,346	130.2	99.9	23	-
2022	30,746	30,746	-	30,746	32,799	32,778	106.6	99.9	21	-
2023	32,799	32,799	-	32,799	29,519	29,499	89.9	99.9	20	-
2024	31,700	31,700	-	31,700	24,188	24,169	76.2	99.9	20	-

자료: 경찰청

사업수입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하여, 경찰병원은 코로나 19 전담병원 운영(2020.12.~2022.5.)으로 진료환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의료대란 및 전공의 부재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임. 2019년~2024년 경찰병원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2022년 감소하다 2023년에 소폭 반등하였으나 2024년 27만 7,049명으로 최근 6년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

[2019~2024년 경찰병원 환자 수 추이]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398,979	350,749	311,826	311,660	328,090	277,049

자료: 경찰청

환자 수 감소와 사업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최근 3년 간(2023년~2025년) 일반회계에서 경찰병원특별회계(손익계정)로의 전입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도 세입액 797억 1,300만원 중 일반회계전입금이 456억 4,600만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함. 이와 같이 재정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2023~2025년 경찰병원특별회계(손익계정)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경찰병원 특별회계 (손익계정) 세입(A)	자체수입		일반회계전입금(B)	일반회계전입금 비율 (B/A)
		사업 수입	사업 외 수입		
2023	81,949	29,499	25,374	27,076	33.0
2024	79,713	24,169	9,898	45,646	57.3
2025	88,441	32,207	8,015	48,219	54.5

주1) 2025년의 경우 예산안 기준
주2) 사업 외 수입은 재화 용역 판매수입(장례식장 운영, 주차장 운영 등), 전년도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
자료: 경찰청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목적 병원으로서, 민간병원과 달리 적극적 수익 창출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하므로 일정 수준의 재정자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28] 자체수입 확보 방안 마련, 인건비 중심의 경직된 예산구조에 대한 탄력적 운영, 경상경비 절감 노력 등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최근 환자 수 감소 및 의료인력 공백으로 인하여 인건비(2024년 기준, 집행률 81.5%), 의약품 구입비(집행률 81.8%) 등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29]

따라서 경찰병원은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 및 예산 효율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청됨.

28)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안전(사회질서) 분야 보고서' (KDI, 2017.11.30.)

29) 이에 경찰병원은 공간 임대료, 주차수입 확대, 장례식장 운영수입 증대 및 특성화를 위한 경찰특화의료연구복합센터(2027년 개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임.

〈세　출〉

9. 임상연구비 지원 사업: 임상연구비 지급 평가기준 강화 및 실소요액 지원 필요

가. 개　요

'임상연구비 지원' 사업은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임상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억 5,600만원 중 4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30]

[2024년도 임상연구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진료업무운영관리	21,223	21,223	35	157	21,415	18,806	-	2,609	21,608
임상연구비지원	456	456	-	-	456	454	-	2	45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에 따라 매년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급금을 결정하며, 2024년의 경우 총 67건의 연구에 대하여 4억 5,400만원을 지급하였음.

나. 검토의견

경찰병원은 임상연구비 지원사업 수행 시 연구 실소요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재정비하고, 연구결과 보고서의 활용 및 심의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최종보고서의 형식 요건 및 평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은 임상연구비를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31]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임상

30) 경찰병원특별회계(손익계정)-진료업무운영관리(4331-311)(경찰병원)

연구비의 실소요를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경찰병원 임상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의료진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급 결정에 따라 최종 임상연구비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됨. 심의위원회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는 학술지 등재 여부 등이 있음.

임상연구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등급별로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지급(659만원, 33건 등)되고 총 4장 분량의 보고서에 722만원의 지급사례가 존재하는 등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32]

또한 일부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사진으로 대체되는 등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서술이 존재하지 않아 추후 연구성과 공유 및 의료수준 향상에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정하지 못한 집행 사례라 할 것임.

[2024년도 임상연구 최종보고서 최종심의 등급 및 지급액 내역]

(단위: 원)

결정등급	연구비 지급금 구간	지급금 구간별 지급건수	
S	11,300,000	3건	9건
	10,713,380 ~ 10,4881,270	4건	
	7,729,200 ~ 6,973,830	2건	
A	8,980,000	2건	2건
B+	7,773,500	2건	4건
	7,567,800 ~ 7,221,280	2건	
B	6,585,000	33건	52건
	6,567,000 ~ 6,207,170	3건	
	6,117,210	3건	
	6,081,220 ~1,637,260	13건	
합 계	452,132,750		67건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9조(지급의 제한 및 목적 외의 사용금지) 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5. 연구비를 연구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32) 경찰병원은 공공부문 의료진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수당적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는 설명임.

따라서 경찰병원은 소요명세 제출 등 실소요 점검절차를 조속히 마련하여 임상연구비 결정에 반영하고, 연구성과 확산 및 의료수준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보고서 제출과 심의위원회 평가 시의 최소한의 형식 요건 및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 경찰병원 2024년 임상연구 보고서 논문 사례]

• 사례1 722만원 지급 (평가등급 B+)

중 장년 경찰 남성 환자중 갑상선 고주파술 시행받은
환자들의 경과 관찰 및 고찰

중 장년 경찰 남성 환자중 갑상선 고주파술 시행받은 환자들의
경과 관찰 및 고찰

서론

갑상선 결절은 목 정중앙에 위치한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것으로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한다. 부검연구에 따르면, 성인에서 약 50%에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며, 대부분은 촉지되지 않았다. 초음파 검사 연구에 따르면, 갑상선 결절이 확인 된 환자의 50%는 50세 이상이었다.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양성이며, 양성 갑상선 결절의 치료는 수술이나 고주파 절제술로 제거할 수 있다. 고주파 저렛는 변형된 전기 소작법으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탐침자를 경피를 통해 갑상선내 결절내에 삽입하여 결절 조직에 이온 전류를 보내어 저항가열을 일으켜 세포의 응고괴사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결절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인 갑상선 절제술은 경부 전면에 절개를 가하여 기도 전면에 위치한 갑상선을 양측 혹은 한측을 절제하는 수술로 전신마취하에 시행되며, 수시간 소요된다.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부종, 되돌이 후두신경 손상, 부갑상선 기능저하, 갑상선 기능저하등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양성 갑상선 결절의 대표적인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본원에서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찰 환자를 대상으로 그 경과와 효과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본원에서 갑상선 고주파가 도입된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상선결절에서 고주파절제술의 크기, 감소 정도, 감소기간을 검토하였다.

- 81 -

결과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 까지 국립경찰병원에서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받은 남성 경찰공무원은 총 36명이었으며 평균 나이 47.6 (36-58) 였다. 초음파검사상 평균 종양의 크기는 2.43cm (1.75~4.08) 이었으며 갑상선 초음파 결과 K-TIRADS 2 17명, K-TIRADS 3 가 19명이었다. 평균 추적관찰 기간은 17.6개월 (14.3~38.9)이었으며, 50%이하로 감소한 환자가 7명 (19.4%) 50이상 감소한 환자가 19명 (52.8%), 임상적으로 의미없는 흔적으로 남거나 소멸된 경우가 10명 (27.8%)였다.

고찰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초음파 유도하에 탐침자를 이용하여 결절을 축소시키는 최소 침습적 절제술로써 2017 갑상선 결절 진료권고안에 따르면, 갑상선 종양이 미용상의 문제를 유발하거나 종양으로 인해 통증과 같은 압박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종양이 추적검사상 지속적으로 자라는 경우, 종양에 의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유발되는 경우 갑상선 양성 결절에 대한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갑상선 양성 결절의 치료로써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보편적이며 표준적인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본원에서 이와 같이 갑상선 양성 결절에 대해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50% 이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Textbook of endocrine surgery, Clark, Duh, 2nd edition
2.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 결절 진료권고안 2024
3. Thryoid Radiofrequency Ablation Guideline, Korean J Radiol 19(4) 2018

- 82 -

• 사례2 659만원 지급 (평가등급 B)

COVID-19 감염 후 발생한 hyponagremia를
주소로 입원한 환자

COVID-19 감염 후 발생한 hyponagremia를 주소로 입원한 환자

초 록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특히 COVID-19 감염 과 관련하여 저나트륨혈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경과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COVID-19 감염 후 오심 및 구토를 주소로 입원한 환자로 저나트륨혈증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부신피질호르몬저하가 진단되었다. 이 환자의 경우 첫 번째 COVID-19 감염 후에도 저나트륨혈증이 있었다. 이차성 부신피질호르몬 저하의 원인이 없고, 일차성 원인도 없어 COVID-19 감염 후 발생한 부신피질기능부전증으로 인한 저나트륨을 진단하여 이에 대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중심 단어

COVID-19, 저나트륨혈증, 부신피질기능저하증

서 론

COVID-19 감염 후 저나트륨혈증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COVID-19 가 유발하는 전신 염증 반응, 호르몬 불균형, 또는 신장 기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나트륨혈증은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체내 체액 저류로 인한 희석성 저나트륨혈증, 탈수 및 나트륨 소실, 신장 손상, 그리고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인한 대사 이상이 있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항이뇨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SIADH) 이 체내 물의 과다 흡수를 유도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다.

COVID-19 감염과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감염 자체가 새로운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코티솔, 알도스테론)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체내 스트레스 반응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COVID-19 바이러사는 여러 기전을 통해 부신 기능에 영향을 비칠 수 있다.

첫째, COVID-19 바이러스는 부신 조직에서도 발견되는 ACE2 수용체를 통해 침투하여 부신 손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둘째, COVID-19 의 과도한 염증 반응(사이토카인 폭풍)은 부신 축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체내 코티솔 요구량을 증가시켜 상대적인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기존에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이 있는 환자는 COVID-19 감염으로 인해 코티솔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신 위기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넷째, COVID-19 치료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 시 부신 기능을 억제하여 치료 후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다.

저나트륨혈증의 증상은 경미한 경우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심해지면 두통, 메스꺼움, 혼동, 졸음, 심해지는 경련이나 의식 소실과 같은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혈청 나트륨 농도를 측정하고 소변 검사와 삼투압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증상의 심각도와 원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한다. 경미한 경우 체액 섭취를 제한하거나 구토, 설사와 같은 유발 원인을 교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중증도 이상에서는 병원에서 고장성 식염수 (3% NaCl)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SIADH 와 관련된 경우에는 물 섭취를 제한하거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론

임상 경과 및 치료

입원당시 환자 혈청 나트륨은 128 mmol/L 로 저나트륨혈증 소견을 보였고, 증상은 오심과 구토를 호소하였다. COVID-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소견을 보였다.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갑상선 혈액 검사 및 부신피질호르몬자극검사를 시행하였다.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정상이였고, 부신피질자극호르몬검사에서는 충분히 자극되지 않는 소견을 보였다. 3% 식염수 치료 및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서 환자으이 혈장 나트륨은 정상 소견을 보였고, 구토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며 퇴원시 환자 혈청 나트륨 수치는 정상 범위였다. 주기적인 나트륨 혈청 추적 관찰 및 스테로이드 투여하면서 저나트륨혈증 소견 없이 외래 추적 관찰 중에 있다 (Table 1).

결 론

COVID-19 감염 후 저나트륨혈증은 유발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전이 알려져 있다. COVID-19 감염 후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감염 중에는 탈수를 피하면서도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균형잡인 전해질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COVID-19 감염 후 전해질 이상이나 의심되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신장 기능과 전해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549 -

참고 문헌

1. COVID-19 infection and adrenal insufficiency: Management consideration. Th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105(8),133
2.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diabetes in patients with Covid-19. The Lancet Diabetes and Endocrinology, 8(6),546-550
3. Adrenal insufficiency in critical illness and COVID-19. Current Opinion in Endocrinology, Diabetes, and Obesity. 28(4),394-400
4. Prevalence and outcomes of hyponatremia among COVID-19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Int J Health Sci. 16(5),69-84
5. Syndrome of inappropriate antidiuresis/hyponatremia in COVID-19. Pituitary. 2004

- 550 -

자료: 경찰청

【기　타】

1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교통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경찰청에 대해 시정요구 14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7건・제도개선 7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7	7	-	14
합계	-	-	-	7	7	-	14

경찰청은 시정요구사항 14건에 대해 1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5.7%)하고 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4	12	85.7	2
합계	14	12	85.7	2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경찰청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경찰청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38) 경찰청은 자체 성능검사 결과가 미흡한 항목들을 개선한 이후 저위험권총을 도입한다.
	(39) 경찰청은 남대문경찰서 옥외전광판을 주요 치안 정책의 대국민 홍보 등 경찰 활동 홍보 용도 위주로 쓰도록 한다.

나. 검토의견

경찰청은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연령대·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차등 지원 방식 등 실질적인 사업방식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경찰청은 동 시정요구에 대해 대체교통수단 마련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연령대·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2025년 8월 초 기준 사업방식 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해 보임.[33][34]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26)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경찰청은 동 사업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농어촌지역 교통약자 대체교통수단 지원사업 주관부처(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의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령대·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방식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운전면허 반납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사업을 민간과 협업하여 진행 중 ※ 관련 업무협약 체결('24. 10월) ㅇ 현재 4개 지자체(강원 평창, 전남 강진, 충북 제천, 경북 영천)를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 완료(2.20.), 사업 추진 중 ㅇ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해 대체교통수단 지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25. 下)

33)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검토의견 관련

34)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2026년 사업부터 실제 운전 여부를 증빙하는 고령운전자를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개편 중이라는 설명임.

소방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억 6,600만원(13.0%)이 많은 49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3,900만원(30.2%)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246	4,246	3,776	△470	4,349	4,349	4,915	566	1,139
총수입	4,246	4,246	3,776	△470	4,349	4,349	4,915	566	1,139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01억 1,700만원(△3.0%)이 적은 3,302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4억 9,800만원(14.4%)이 증가함.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08,781	308,781	288,774	△20,007	340,389	340,389	330,272	△10,117	41,498
총지출	308,781	308,781	288,774	△20,007	340,389	340,389	330,272	△10,117	41,498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3억 4,900만원으로, 51억 6,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9억 1,500만원이 수납(수납률 95.1%)되고 2억 5,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349	4,349	-	4,349	5,167	4,915	253	-
합 계	4,349	4,349	-	4,349	5,167	4,915	253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690억 3,400만원으로, 3,302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89.5%)되고 321억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6억 3,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340,389	340,389	28,645	±4,929	-	369,034	330,272	32,129	6,633
합 계	340,389	340,389	28,645	±4,929	-	369,034	330,272	32,129	6,633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소방청 자산은 전년 대비 1,073억 7,500만원이 증가한 7,520억 8,1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1,099억 2,200만원으로 증가하고 무형자산이 29억 5,8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9억 8,600만원 증가한 20억 900만원으로 유동부채 19억 8,6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053억 8,900만원이 증가한 7,500억 7,2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소방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533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억 7,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511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1,4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소방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52,081	644,706	107,375	16.7
		유동자산	3,647	2,895	752	26.0
		투자자산	559	602	△43	△7.1
		일반유형자산	717,369	607,447	109,922	18.1
		무형자산	29,000	31,958	△2,958	△9.3
		기타비유동자산	1,506	1,804	△298	△16.5
	부 채		2,009	23	1,986	8,634.8
		유동부채	2,009	23	1,986	8,634.8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750,072	644,683	105,389	16.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53,368	127,392	25,976	20.4
	재정운영순원가		251,123	221,509	29,614	13.4
	재정운영결과		251,123	221,509	29,614	13.4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소방청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구현을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70개 세부사업에서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교대근무를 하는 현장 업무 종사자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해당 소방관들의 참여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 공사 일부를 제외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회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추진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은 실무협의체 회의 및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회의에서 정상추진 및 집행가능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 소방본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향후 국고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현장 업무 근무자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가. 개　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소방공무원 중 희망자 및 ‘마음건강 고위험군’,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선발하여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리적 충격 해소 및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억 9,000만원 중 6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

[2024년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4,163	4,163	-	-	4,163	4,093	-	70	4,677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690	690	-	-	690	690	-	-	69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국고보조율 50%의 보조사업으로, 소방청이 시·도 소방본부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시·도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대면·비대면 등)하고 대상자를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2) 일반회계-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기획조정관)

[2024년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집행절차]

표준지침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	운영계획 수립 대상자 선발	➜	프로그램 운영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심신수련 전문기관

자료: 소방청

나. 검토의견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은 교대근무를 하는 현장 업무 종사자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해당 소방관들의 참여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 선정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마음건강 고위험군' 및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있음.[3)]

'마음건강 고위험군'은 마음건강 설문조사 및 상담에 의한 관리·치료 필요군과 대형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대원 중 '긴급심리지원'에 의해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인원이며,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긴급심리지원 대상자)'은 사람 및 자살사고 현장 출동,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현장 출동 인원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긴급심리지원 대상자]

▸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 출동 ▸ 영·유아 사망사고 현장 출동 ▸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현장 출동	▸ 구급대원(소방공무원) 폭언·폭행 발생 ▸ 동료의 순직 및 자살사고 발생 ▸ 현장활동 시 부상 및 상해 발생

자료: 소방청

2024년 사업 참여자를 보직별로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2,489명 중 화재(38.1%), 행정(31%), 구급(17%), 구조(10%), 상황실(4%) 순으로 참여자가 많았음.

전체 소방공무원 중 행정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7.3%인 것과 비교할 때 행정인력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3) 소방공무원은 불규칙한 근무여건과 사고현장 경험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건강 이상이 빈번하게 나타남.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 자살위험 비율이 2023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음.

[2024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참여현황]

연도	화재	구조	구급	상황실	화재조사	행정	기타	합계
2023년	901명 (35%)	255명 (10%)	447명 (17%)	94명 (4%)	59명 (2%)	796명 (31%)	53명 (2%)	2,605명 (100.0%)
2024년	950명 (38.1%)	200명 (8%)	396명 (15.9%)	74명 (3%)	65명 (2.6%)	749명 (30.1%)	55명 (2.2%)	2,489명 (100.0%)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소방청은 현장인력의 경우 교대근무를 주로 하고,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대체근무자 확보가 필요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4)]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관련 지침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인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장업무 근무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소방청은 향후 현장 업무 근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절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5)]

4)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66,059명 중 행정인원은 11,466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17.4%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직의 경우 인원 대비 프로그램 참여 비중이 높음.

5) 소방청은 2025년부터 '직무분야별 배정 기준(직무분야별 인원 및 스트레스 정도 등 반영)'을 마련하여 현장인력의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였음.

< 2025년 4월말 기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 참여 현황 >

화재	구조	구급	상황실	화재조사	행정	기타
338명 (39.9%)	72명 (8.5%)	260명 (30.7%)	29명 (3.4%)	1명 (0.1%)	137명 (16.2%)	10명 (1.2%)

자료: 소방청

2. 국립소방병원 건립: 일부 공사 누락을 통한 타당성 재조사 우회 부적정

가. 개 요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주요 상병에 대한 진료 및 연구수행 전담기관을 충청북도 음성군에 건립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944억 2,200만원 중 717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0%)되고, 126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음.[6)]

[2024년도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소방 병원 건립	71,298	71,298	11,506	1,618	94,422	71,753	12,668	-	69,06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현재 소방병원은 302개 병상, 19개 진료과목,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5년 9월초 건축물 사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7)]

[2025년도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및 공사장 전경]

조감도	공사장 전경

자료: 소방청

6) 일반회계-국립소방병원 건립(1131-305)(기획조정관)

7) 당초 7월초 건축물 사용 승인이 목표였으나 일부 공사 지연으로 사용 승인이 지연되었음.

나. 검토의견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은 공사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회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추진 행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타당성 재조사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는 '총사업비'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건설사업의 경우 토목·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8)]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한 최초의 총사업비는 907억원으로 승인되었으나, 교통영향평가 결과 지하주차장 1개 층을 추가하게 되어 약 300억원(기존 총사업비 대비 약 33%)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음.

총사업비 약 300억원이 증액될 경우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9)]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10)],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11)]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

8)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9)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 ·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1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타당성재조사) 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이란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11)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타당성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물가인상분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 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소방청은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경우 1년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을 예상하고 기본설계 단계까지 반영된 헬리패드, 의료가스장비·배관공사·방사선차폐 공사·의료IT시스템 등을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외하였음.

제외 후 2021년 12월에 총사업비를 168억원(기존 총사업비 대비 약 18.5%)만 증액하였고,[12]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외한 공사는 낙찰차액을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 발생 시 총사업비를 감액하도록 규정[13]하고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였음.

결국 2024년에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고,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발주를 하고자 119항공정비실 공사비 등 불용예정액 16억 1,8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총사업비 78억원(헬리패드 38억원, 의료가스장비·배관공사 26억원, 방사선 차폐공사 6억원, 의료IT시스템 8억원)을 증액하였음.

이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

나.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한 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사업을 말한다.

12)

< 국립소방병원건립사업 총사업비 조정내역 >

(단위: 백만원)

차수	차수설명	변경일	총사업비	공사비증감	감리비증감	시설부대비증감	설계비증감	비고
최초	예비타당성조사	2020.02	90,687	81,535	3,954	186	5,012	
1차	설계협의1차	2020.09.21	97,584	6,897	-	-	-	
2차	설계협의2차	2021.12.28	114,404	16,414	373	33	-	
3차	설계협의3차	2022.06.28	130,069	13,534	2,101	30	-	
4차	공사자율1차	2023.02.20	116,653	△11,920	△1,232	△25	△239	낙찰차액 반납
5차	공사자율2차	2024.03.19	117,941	1,288	-	-	-	
6차	공사자율3차	2024.05.30	122,222	4,107	168	6	-	
7차	공사협의1차	2024.07.24	133,477	10,743	488	24	-	
8차	공사자율4차	2024.08.08	134,481	1,004	-	-	-	
9차	공사자율5차	2024.12.30	135,878	1,282	115	-	-	
10차	공사자율6차	2025.03.19	136,771	893	-	-	-	
11차	공사협의2차	2025.04.14	140,126	2,528	821	6	-	
12차	공사자율7차	2025.06.14	141,370	1,244	-	-	-	
합 계				129,549	6,788	260	4,773	

자료: 소방청

13)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국고, 지방비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분담 비율에 따라 낙찰차액을 구분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2024년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10.)	전국소방헬기통합관리운영지원(312)	420-03	1,218	국립소방병원건립	420-03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119항공정비실 공사비 불용예정액을 공사비로 전용
전용 ('24.10.)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301)	420-03	97	국립소방병원건립	420-03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구조본부 불용예정액을 공사비로 전용
전용 ('24.10.)	지진대비대응역량강화(305)	420-03	303	국립소방병원건립	420-03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구조본부 불용예정액을 공사비로 전용
합계			1,618			

자료: 소방청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제3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어 이미 공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임.[14]

공사의 일부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계상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중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다시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 재조사를 부당하게 우회하는 것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타당성 재조사의 목적을 형해화 하는 것임.

따라서 소방청은 유사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4)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3.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사업: 철저한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은 전문적인 화재진압 역량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화재 훈련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4억 5,900만원 중 54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15)]

[2024년도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5,459	5,459	-	-	5,459	5,459	-	-	3,91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을 통해 핵심시설인 실화재훈련시설은 국고보조(국고보조율 50%)로 설치하고, 기타 부대설비와 건축물은 시・도 소방본부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치함.

[2024년 실화재훈련시설 사업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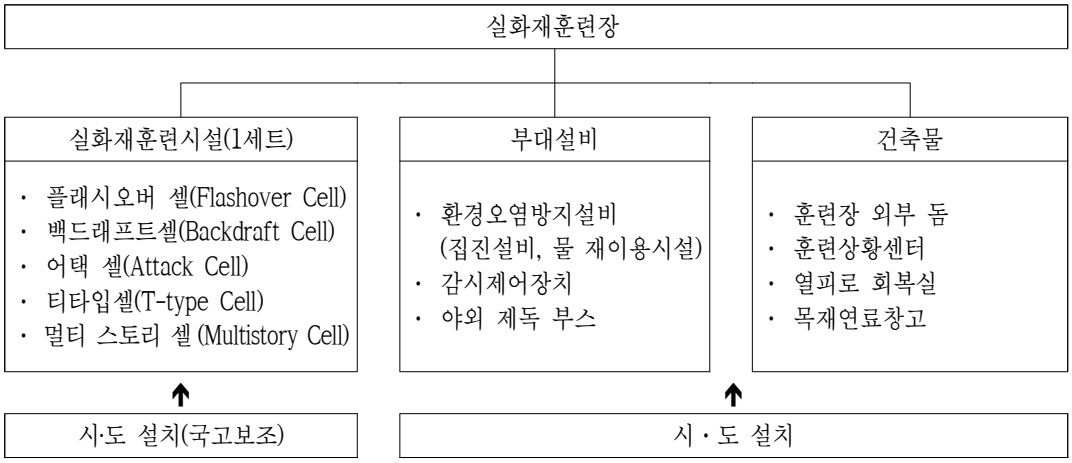

자료: 소방청

15) 일반회계-실화재훈련시설 구축(1132-324)(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은 2024년 실무협의체 회의 및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회의에서 정상추진 및 집행 가능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 소방본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거나 집행이 부진하였므로, 향후 국고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사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6]

같은 조 제2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7]

이에 따라 소방청은 2024년 3월에 계획된 국고보조금의 70%인 약 9억 5,500만원을 1차적으로 시·도 소방본부에 교부하였고, '실무협의체 회의'[18]와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회의'[19]를 구성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및 사업관리를 하였음.

---

1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u>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u>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u>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u>

18)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및 계획 등을 안내하고 제안요청서(규격서) 협업 작성, 시·도 소방본부별 집행·점검 등을 논의하였음.

19)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경과 확인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음.

[2024년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별 집행점검 결과]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회의결과			
	실무협의체 최초회의 (2024.1.12.)	실무협의체 2차회의 (2024.4.8.)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회의 (2024.8.16.~2024.8.20.)	실무협의체 3차회의 (2024.11.21.)
충청남도	-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및 집행·점검 계획 안내 - 제안요청서(규격서) 협업 작성	정상추진 중	2024년 내 국비 전액집행 가능	사업완료기간 지연 예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상추진 중	2024년 내 국비 전액집행 가능	사업완료기간 지연 예상
경상남도		정상추진 중	2024년 내 국비 전액집행 가능	사업완료기간 지연 예상
서울특별시		정상추진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5년 2월경 설계용역 완료 예정	사업완료기간 지연 예상

자료: 소방청

서울의 경우 2023년 연말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되어 서울시 본예산에 매칭을 위한 지방비가 미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1차 교부 시점('24.3.20.) 이후 약 한 달 뒤('24.4.26.)에 잔여분을 전액 교부하였으며, 충청남도·경상남도·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8월 중순에 있었던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회의 결과 2024년 내 국비 전액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9월에 잔여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음.

[2024년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별 보조금교부일자 및 교부금액]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1차교부		2차교부		3차교부	
	교부시점	교부금액	교부시점	교부금액	교부시점	교부금액
충청남도	2024.3.20.	955.325	-	-	2024.9.9.	409.425
서울특별시	2024.3.20.	955.325	2024.4.26.	409.425	-	-
경상남도	2024.3.20.	955.325	-	-	2024.9.9.	409.425
전북특별자치도	2024.3.20.	955.325	-	-	2024.9.9.	409.425

자료: 소방청

그러나 실무협의체 회의 및 국고보조금 집행점검 회의에서 정상추진 및 연내 국비 전액집행 가능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전액 교부 이후 시·도 소방본부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거나, 2024년 8월까지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9월 보조금 전액 교부 이후에 사업완료기간 지연이 예상되어 국고보조금의 집행이 부진하거나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함.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4년 4월 8일 실무협의체 2차 회의까지는 정상추진 중으로 판단되었으나, 2024년 4월 26일 국고보조금 전액 교부 직후인 2024년 5월에 서울시 차원에서 훈련시설·설비 보강 및 회복공간 증설 등의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여 설계 및 시공일정이 조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전액 이월되었음.

또한 충청남도·경상남도·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8월 16일~8월 20일까지 진행된 국고보조금집행 점검 회의에서 2024년 연내 전액 집행 가능으로 판단되어 2024년 9월 9일에 잔여 보조금을 전액교부하였으나, 계약절차지연·행정절차 소요·업체 간 분쟁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사업완료기간이 지연되었고, 2024년 11월 21일 실무협의체 3차 회의에서야 사업완료기간 지연이 예상된다고 판단되었으며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집행이 부진하거나 이월되었음.

[2024년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의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충청남도	1,365	1,365	1,365	1,365	-	1,365	1,092	1,365	1,092	273	-	80.0
서울특별시	1,365	1,365	1,365	1,365	-	1,365	-	1,365	-	1,365	-	0.0
경상남도	1,365	1,365	1,365	1,365	-	1,365	-	1,365	-	1,365	-	0.0
전북특별자치도	1,365	1,365	1,365	1,365	-	1,365	917	1,365	917	448	-	67.2
합계	5,460	5,460	5,460	5,460	-	5,460	2,009	5,460	2,009	3,451	-	36.8

자료: 소방청

위와 같은 집행결과를 보면, 소방청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대로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 시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엄밀하게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20]

소방청은 향후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21]

20) 소방청은 국고보조금 사업은 시·도 소방본부가 주체적으로 시행하며, 중앙부처는 총괄·점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집행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향후 정기·수시점검 강화, 보조사업계획의 사전 타당성 심사 강화, 국고보조금 교부 방법 개선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하였음.

21) 2024년 구축 대상 지역 중 충청·전북·경남 3개소는 2025년 내로 구축완료 예정이며, 서울의 경우 설계용역 완료 이후 2026년 하반기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임.

<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 향후 추진 일정>

① 전북 : 훈련시설 설치 및 완공 예정(~'25.7.) / 국비 전액 집행 예정 ② 충청 : 훈련시설 설치 및 완공 예정(~'25.7.) / 국비 전액 집행 예정 ③ 경남 : 훈련시설 설치 및 완공 예정(~'25.12.) / 국비 전액 집행 예정 ④ 서울 : 설계용역(~'25.6.) 및 착공 예정(~'25.9.) → 국비 전액 집행 방안 마련중

자료: 소방청

또한 국고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5대 개선과제(① 사전 심사강화, ② 교부방법 개선, ③ 집행점검 강화, ④ 2개년 사업 추진, ⑤ 교육정례화)를 추진하여 국고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하였음.

4.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 위탁사업자 관리 노력 필요

가. 개 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은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업체에게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억원 중 6억 6,600만원이 집행(집행률 60.5%)되고 2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4년도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1,910	1,910	348	-	2,258	1,760	285	213	1,907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1,100	1,100	-	-	1,100	666	285	149	1,1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위탁운영과업 71건에 대한 검사 결과, 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 등 22건이 미흡하여 보완요청이 이루어지고 기한 내 과업이 완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소방청은 향후 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매년 조달청 경쟁입찰(최저가)을 통해 빅데이터 플랫폼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기관은 소방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여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사업실적을 제출함.

22) 일반회계-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화재예방국)

[2024년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집행 절차]

소방청		전문수탁기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관리·감독	⇨ 위수탁 지정 ⇦ 운영성과보고 및 사업실적 제출	• 플랫폼 운영 활성화 • 플랫폼 고도화 • 생태계 유통 강화 • 정보자료 수집 • 혁신서비스 발굴 • Data 분석/품질관리 • 센터관리 및 지원 • 융합데이터 생산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여 2개월 주기로 성과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과업 실적은 주 단위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의 경우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위탁과업 71건 중 22건이 미흡하여 보완요청이 이루어지고, 계약한 기간 내에 과업이 완수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비 2억 8,5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고 위탁사업자에게 2,258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하였음.

주요 미흡 사항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후 후속 보완조치 미수행, 테스트 후 구체적인 적용방안과 결과서 부재, 시스템 취약점 점검 후 보완조치 미수행, 사업자 귀책의 주관기관 전가, 분석 결과보고서의 품질 미흡 등임.

[2024년도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위탁운영 불합격 통보 관련 주요 시정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평가결과
홈페이지	회원 가입 유형에 따른 적절한 회원 관리 및 현행화	가입된 회원정보 조회시, 소속, 연락처 등의 상세한 정보가 없으며, 개인정보는 그대로 노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한 만료 회원에 대한 처리 지원 (재동의, 회원 탈퇴 처리 등)	재동의 등의 절차 부재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취약점 점검 후 후속 보완조치 미수행
테스트	- 제안사는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사용자 관점에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 미수립 - 신규 기능 위주의 관리자 기능 테스트 수행,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 미수행 - 구축단계 산출물에 단위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과 결과서가 있을 것임. 최소한 그것을 활용하여 기능 이상 유무 테스트를 진행하고 결과를 남겨야 함

구분	요구사항	평가결과
	단계별·유형별 각 테스트 계획서에는 시작조건과 완료 조건을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사업담당자와 협의 미진행 해당 산출물에 시작 조건과 완료 조건 필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함	각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 적용 방안과 결과서가 없음.
시스템	정기점검은 원칙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	12월 정기점검 결과는 11월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함
	정기점검 시 각종 로그 등을 분석하여 항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조정	로그 분석은 수행한 바 없음. Process 및 디스크, DB 용량 체크가 전부임
	장애 복구 완료 후 당일 장애 복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2월 14일 장애발생 통보(허정원PM에게 오류 화면을 문자로 전송)하였으나, 장애 복구 결과보고서 미제출
	장애 발생 이후, 개선 계획에 대한 조치실시	개선계획을 전달받은 바 없음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송수신 현황에 대한 점검 내역 미제출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대한 결과보고서 부재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불필요한 포트에 대한 점검 부재
	발주처의 요청 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분석 점검 툴을 이용하여 점검하거나, 사업단에서 취약점 툴을 이용하여 점검한 결과물을 년 1회 이상 처리하여 개선해야함	취약점 점검 후 후속 보완조치 미수행
사업 관리	사업수행기간 동안 전담 사업자 귀책으로 분야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담 사업자가 일괄 책임져야 함	- 클라우드 비용 사후 정산을 요구하는 등 사업자 귀책을 주관기관에 전가 - 클라우드 미정산 비용을 모두 집행 후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분석	타분야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연계 분석 수행(2건 이상) 및 홈페이지 게시	분석 결과보고서의 품질 미흡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미충족)
	금융 빅데이터 등 타분야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연계 분석 추진(2건 이상)	

주) 2025년 1월 24일 준공검사 완료
자료: 소방청

사업실적에 대해 소방청은 위탁운영과제의 이행에 대해 정기(주간보고) 및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을 지속요구하였으나, 사업단의 협조가 미흡하고 사업책임자(PM)의 중도퇴사로 인한 내부 인수인계 지연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탁운영과제의 준공검사 단계에서 최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제출된 산출물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어 검사를 완료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음.

소방청은 향후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5. 119항공정비실 건립: 단계별 예산편성 노력 및 추가적인 사업지연 예방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은 전국 소방헬기의 계획 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 부품재고 관리와 신속한 정비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및 헬기정비 예산절감을 위해 119항공정비실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4억 2,800만원 중 21억 1,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1%)되고 1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4년도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3,833	3,833	59	△1,218	2,674	2,347	186	142	13,141
119항공정비실 건립	3,587	3,587	59	△1,218	2,428	2,115	186	127	12,91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은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조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건축사업 추진 시 단계별 예산편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2024년 119항공정비실 건립을 위해 전체 공정률 대비 5%의 공사금액인 12억 1,800만원을 기초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절차에 따른 정비실 건립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2024년 착공이 불가능하여 국립소방병원 공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23) 일반회계-119빅데이터 분석・운영(1133-311)(화재예방국)

[2024년도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119항공 정비실 건립	3,587	3,587	-	-	2,428	2,115	2,369	2,056	186	127	12,919
건설보상비 (410-00)	1,200	1,200	-	-	1,200	1,200	1,200	1,200	-	-	1,200
기본조사 설계비 (420-01)	324	324	59	-	383	383	324	324	-	-	-
실시설계비 (420-02)	813	813	-	-	813	532	813	532	186	95	-
공사비 (420-03)	1,218	1,218	-	△1,218	-	-	-	-	-	-	11,495
감리비 (420-04)	24	24	-	-	24	-	24	-	-	24	173
시설부대비 (420-05)	8	8	-	-	8	-	8	-	-	8	51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소방청은 항공정비실 건립사업을 대상으로 총 3회의 적정성 검토(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중 2회를 2024년에 실시하였고, 계획설계 검토에 54일('24.3.27.~5.20.), 중간설계 검토에 72일('24.7.15.~9.25.)이 소요되어 적정성 검토기간 중 검토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이후 총사업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총사업비 증액요구사항인 물가상승률 및 기초파일공사비, 감리비에 대한 자료, 기획재정부 사업설명 및 보완자료 대응에 약 2개월이 소요되어 공사가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 결과 당초 2026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7년 6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추진 현황]

단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비고
예비타당성조사		-	-	-
타당성조사		-	-	-
기본계획 수립		2022.5.	2022.5.	-
부지 선정		2021.12.	2021.12.	-
공공건축 사전검토		-	-	-
시(군)관리계획		-	-	-
실시설계 용역	기본설계	2023.8.~12.	2023.11.~2024.7.	7개월 지연
	실시설계	2024.1.~4.	2024.7.~2025.6.	1년 2개월 지연
토지보상		2023.3.	2023.12.	9개월 지연
공사		2024.9.~2026.3.	2025.10.~2027.6.(예정)	1년 3개월 지연 예정
시설완공		2026.3.	2027.6.(예정)	1년 3개월 지연 예정
운영		-	-	-

자료: 소방청

설계 적정성 검토는 대상 사업[24]에 대해 설계단계마다 용도 및 규모의 사업목적 적합 여부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과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소방청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인 2023년 하반기까지 설계용역이 체결되지 않고 2023년 11월 24일에서야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11월 30일에 용역이 착수된 사정과 공종·설계단계별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을 규정한 국토교통부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별표1]이 100~500억 공사비 건축의 경우 설계기간을 기본설계 4.5개월, 실시설계 7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설계와 관계기간 협의 등까지 고려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24)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음

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2) (국방사업) 기획재정부「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사업기간 2년 이상인 20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및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3) (보조사업 시설공사)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

자료:「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및 관련 법규정을 바탕으로 재구성

[공종별·설계단계별(기본설계,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도로	8	9	14	8	12	14
철도	12	13	15	12	15	18
지하철	13	16	17	24	27	30
공항	12	13	16	12	13	15
하천	12	18	24	7	10	12
항만	12	13	14	10	11	12
댐	13	14	15	14	15	16
상하수도	16	19	21	14	16	18
건축	4.5	7	9.5	7	7.5	8
단지조성	4	-	-	7	-	-

비고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3) 실시설계 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1]

따라서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제39조[25]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차년도에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소방청은 향후 건축사업 추진 시 단계별 예산편성 노력을 기울여 적기에 공사비 등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5)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의 적기 구축을 통해 비용절감과 운항의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집행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소방헬기의 정비는 전국 17개 시·도 및 중앙119구조본부에서 119항공대 조직 내 별도의 정비조직 없이 정비사들이 정비해오고 있으나, 새로 건립되는 119항공정비실에서는 외주정비로 해오던 중정비사항[26]을 전담할 예정임.[27]

소방청이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정비실 건립 이후 연평균 총 76억원이 절감되고, 헬기가동률이 1.4배 향상되며, 운항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28]

[119항공정비실 건립 전후 변화 및 기대효과 비교]

구 분	기 존	119항공정비실 건립이후 변동
정비통합	**항공대 정비** ㅇ자체정비(25시간~300시간) (25시간~ 100시간) + (6개월 ~ 300시간) + **외주업체 정비** ㅇ외주정비(600시간 ~ 10년) ㅇ부품정비(중요부품 분해) ㅇ엔진정비(엔진 분해)	**119항공정비실 정비** ㅇ중정비(6개월~10년) + **항공대 정비** ㅇ자체정비(25시간~100시간) + **외주업체 정비** ㅇ부품정비(중요부품 분해) ㅇ엔진정비(엔진 분해)
기대효과	〈가동률 저하〉 정비일정 중복, 정비기간 연장으로 헬기가동률 저하	〈효율성〉 헬기 가동률 1.4배 향상 (정비기간 평균 20~25일 이상 단축 예상)
	〈예산과다투입〉 독점적 정비서비스 이용에 따른 낮은 가격 협상력	〈경제성〉 연평균 총76억원 절감, 20년간 합산 1,727억 절감예상
	〈정비 비효율〉 통합 정비관리 부재 및 다기종 운용으로 정비 비효율 발생	〈안전성〉 전문적 항공정비실 운영에 따라 운항 안전성 확보

주 1) 상기 시간, 개월, 년은 소방헬기의 운항 시간 및 기간임
2) 기존의 ⋯⋯ 에 기입된 기간에 해당되는 중정비 부분이 119항공정비실로 이관될 예정임
자료: 소방청

26) 중정비사항: 소방헬기 항공시간 600시간이내 ~10년이내에 받는 각종 정비사항

27) 전국 119항공대 17개소(중앙119구조본부 1개소, 서울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16개소)에서는 일부 자체정비 사항은 지속할 예정임.

28) 소방청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 2026년부터 76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설명함.
① 약 30억원 절감: 정비사 근무 조정, 항공대별 3명 교대근무로 구성됨(현재 헬기 대당 4명)
(기존: 124명, 헬기31대×4명) → (변경: 51명, 17개 항공대×3명)
② 약 22억원 절감: 부품 공동구매 등으로 물품대가 인하되어 약 22억원 절감
(기존: 부품대 220억원) → (변경: 198억원)
③ 약 24억원 절감: 정비실 자체정비를 통해 연평균 외주정비 비용에서 물품대를 제외한 금액을 절감가능액으로 추계함

특히 AW139 헬기[29] 기종을 기준으로 제작사별로 외주 정비를 맡겼던 정비들을 119항공정비실에서 통합하여 정비하면서 정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예를 들어 1년 이상 운항한 AW139 기종의 경우 정비실 구축 전에는 50일 이상 정비기간이 소요되었다면, 정비실 구축 이후에는 30일 이내에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19항공정비실 건립 전·후 기체정비 기간 비교(AW139) 기준]

정비실 구축 전(前)	구분	119항공대						외주정비						
		25 시간	50 시간	100 시간	6 개월	200 시간	300 시간	600 시간	900 시간	3,000 시간	1년	2년	4년	10년
	정비 기간	1일	2일	3일	5일	5일	50일 이상	28일 이상	50일 이상	2개월 이상	50일 이상	60일 이상	2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장소	119항공대						제작사별 외주 정비업체						
정비실 구축 후(後)	구분	119항공대			119항공정비실									
		25 시간	50 시간	100 시간	6 개월	200 시간	300 시간	600 시간	900 시간	3,000 시간	1년	2년	4년	10년
	정비 기간	1일	2일	3일	5일	5일	35일 이내	28일 이내	35일 이내	2개월 이내	30일 이내	40일 이상	40일 이상	3개월 이내
	장소	119항공대			119항공정비실									

주 1) 시간, 개월, 년은 소방헬기의 운항 시간 및 기간임
2) 119항공대 정비는 119항공정비실 구축이후에도 자체정비 범위를 축소하여 존치함('25시간~300시간' → '25시간~100시간')

자료: 소방청

전문적인 항공정비실 운영을 통한 정비와 이를 통한 헬기가동률의 증가는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하여 일선 화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소방청은 119정비실 건립 사업이 추가 지연 없이 사업효과를 적기에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9) 이탈리아의 Leonardo산 헬기로, 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요원 등 필수요원 4~5명을 포함 14명이 탑승할 수 있고 항속 거리 741km, 최고 속도가 302km에 달하며 최대 3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음. 특히 1,800L의 담수 용량으로 산불 진화 등 각종 화재진압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음.

【기　타】

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소방청에 대해 시정요구 12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건·주의 5건·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5	6	-	12
예비비	-	-	-	-	-	-	-
합계	-	-	1	5	6	-	12

소방청은 시정요구사항 12건에 대해 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6.7%)하고 4건을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2	8	66.7	4
예비비	-	-	-	-
합계	12	8	66.7	4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소방청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소방청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3회계연도 결산	(9) 소방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과 영업이익 활용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인사혁신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594억 3,900만원(△1.6%)이 적은 21조 6,311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661억 700만원(8.3%)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962	5,962	6,306	344	6,527	6,527	7,337	810	1,031
기 금	19,800,576	19,800,576	19,958,746	158,170	21,984,071	21,984,071	21,623,822	△360,249	1,665,076
총수입	19,806,538	19,806,538	19,965,052	158,514	21,990,598	21,990,598	21,631,159	△359,439	1,666,107

문의 : 한익현 예산결산조사관 hih8105@assembly.go.kr (02-6788-568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128억 3,300만원(△0.4%)이 적은 26조 6,941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194억원(5.6%)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09,214	209,214	203,483	△5,731	224,742	224,742	219,028	△5,714	15,545
기 금	24,493,257	25,206,814	25,071,218	△135,596	26,429,362	26,582,192	26,475,073	△107,119	1,403,855
총지출	24,702,471	25,416,028	25,274,701	△141,327	26,654,104	26,806,934	26,694,101	△112,833	1,419,400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20억 1,600만원으로, 429억 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28억 2,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8%)되고 8,2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42,016	42,016	-	42,016	42,909	42,826	82	2
합 계	42,016	42,016	-	42,016	42,909	42,826	82	2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8,052억 9,600만원으로, 5조 7,995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57억 1,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805,296	5,805,296	-	±154	-	5,805,296	5,799,582	-	5,714
합 계	5,805,296	5,805,296	-	±154	-	5,805,296	5,799,582	-	5,71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1조 3,789억 5,300만원으로, 37조 3,330억 4,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0조 1,489억 1,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6.1%)되고 977억 3,7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6억 2,3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31,378,953	31,378,953	37,333,048	30,148,917	97,737	1,623
합 계	31,378,953	31,378,953	37,333,048	30,148,917	97,737	1,623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1조 3,789억 5,300만원으로, 이 중 30조 1,489억 1,700만원이 지출(집행률 96.1%)되고 1,071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공무원연금기금	31,378,953	31,378,953	-	31,378,953	30,148,917	-	107,118
합 계	31,378,953	31,378,953	-	31,378,953	30,148,917	-	107,118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인사혁신처 자산은 전년 대비 9,919억 6,500만원이 증가한 21조 9,509억 8,5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기타비유동자산이 3,399억 3,3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7,157억 8,200만원 증가하고 투자자산이 6,881억 1,5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72조 8,244억 6,100만원 증가한 1,109조 7,955억 8,1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72조 6,996억 4,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71조 8,324억 9,500만원이 감소한 1,087조 8,445억 9,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8조 6,288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206억 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3조 3,292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48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1,950,985	20,959,020	991,965	4.7
		유동자산	4,761,531	4,045,749	715,782	17.7
		투자자산	9,826,884	9,138,769	688,115	7.5
		일반유형자산	7,131,555	7,200,821	△69,266	△1.0
		무형자산	38,716	41,449	△2,733	△6.6
		기타비유동자산	192,299	532,232	△339,933	△63.9
	부 채		1,109,795,581	1,036,971,120	72,824,461	7.0
		유동부채	1,507,874	1,102,207	405,667	36.8
		장기차입부채	2,118,863	2,169,070	△50,207	△2.3
		장기충당부채	1,105,009,548	1,032,309,907	72,699,641	7.0
		기타비유동부채	1,159,296	1,389,936	△230,640	△16.6
	순자산		△1,087,844,595	△1,016,012,100	△71,832,495	△7.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8,628,896	36,708,203	1,920,693	5.2
	재정운영순원가		38,272,954	36,533,729	1,739,225	4.8
	재정운영결과		33,329,264	32,614,388	714,876	2.2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일반회계 1개 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전출금 5조 5,805억 5,400만원, 전입금 354억 8,800만원으로, 전출금은 공무원 퇴직 급여, 재해보상 급여 등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며, 전입금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융자사업비를 국가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부담하였으나, 잉여액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반환한 금액임.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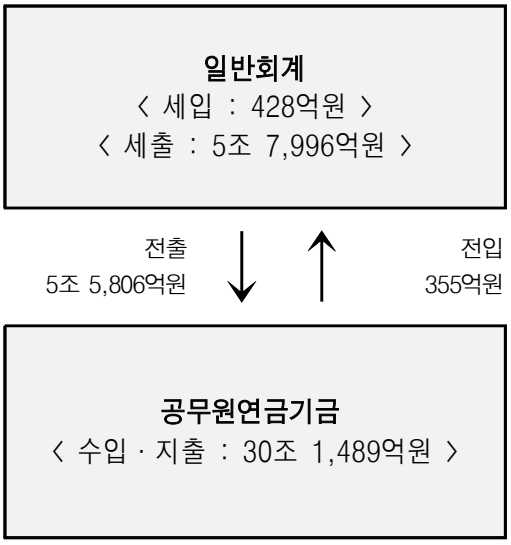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인사혁신처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공무원 선발·육성,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사회 신뢰 제고,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재정 운용 및 기금 운용수익 제고 등을 2024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8개 프로그램과 96개 세부사업에서 국가시험 시행 및 인재개발, 퇴직급여·수당 등의 지급, 전·현직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한 주택 임대·복지시설 운영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에는 평가결과가 미흡하여 사업규모가 축소 조정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인사혁신처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에는 사업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운 사업들(주택사업관리 사업, 대여학자금융자 사업 등)이 일부 포함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업규모가 조정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재정사업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등의 사업에서 수탁금 잉여금 및 관련 이자수익이 계획 대비 과소반환되고 있어 잉여금 등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재해보상급여 사업은 2023년·2024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계획액이 과소계상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요양급여 건수 및 순직유족급여 단가의 추계방식이 추세 대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적정 수립 필요

가. 개 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2] 2021년 제도 변경 이후 부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수행하고, 기획재정부는 지출구조조정 규모 준수 여부 및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음.[3]

이하 2024회계연도에 수행된 재정사업들을 대상으로 2025년에 실시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보면, 총 15개 재정사업(1조 4,354억원 규모)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결과 2개 재정사업(6,618억원, 46.1% 비중)이 "미흡" 등급으로 분류되었음.

[2025년 인사혁신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요약(2024회계연도 사업 대상)]

구분	평가대상사업 수(개)				평가대상사업 2024년 예산 규모(억원)			
	계	우수 (20%이하)	보통 (65%내외)	미흡 (15%이상)	계	우수	보통	미흡 (5%이상)
평가기준	15	3	10	2	14,354	-	-	718
평가결과		3 (20.0%)	10 (66.7%)	2 (13.3%)		477	7,259	6,618 (46.1%)

자료: 인사혁신처

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할 수 있다.**

평가연도 기준 최근 4년간(2022-2025) 인사혁신처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은 이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최근 연도인 2024회계연도 사업에 관한 2025년 평가에서는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사업이 '미흡' 등급으로 분류되어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고, 계획상 예산 조정규모는 전체 평가대상 사업의 예산규모 합계(1조 4,354억원)의 1%인 143억 5,400만원 수준임.

[사업연도 기준 최근 4년간(2021-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

(단위: 백만원)

평가연도 (사업연도)	세부사업명	등급	평가연도 예산(A)	다음연도 요구액(B)	지출구조조정	
					조정규모 (A-B)	조정사유
2022 (2021)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미흡	1,961	1,765	196	미흡사업
	주택사업관리	미흡	444,339	442,150	2,189	미흡사업
	대여학자금융자(융자)	보통	408,258	389,192	19,066	-
	합계		854,558	833,107	21,451	-
2023 (2022)	주택사업관리	미흡	412,371	393,471	18,900	미흡사업
	고객지원사업	미흡	12,988	12,433	555	미흡사업
	합계		425,359	405,904	19,455	-
2024 (2023)	대여학자금융자	미흡	284,065	279,861	4,204	미흡사업
	공무원연금대부	보통	650,000	638,000	12,000	-
	이러닝센터운영	미흡	1,604	1,504	100	미흡사업
	합계		935,669	919,365	16,304	-
2025 (2024)	공무원연금대부(융자)	미흡	530,000	515,646	14,354	미흡사업
	합계		530,000	515,646	14,354	-

주) 계획상 조정규모는 평가대상 재정사업의 예산규모 합계 대비 1% 수준임
자료: 인사혁신처

나. 검토의견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계획에는 평가결과가 미흡하여 사업규모가 축소 조정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인사혁신처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에는 사업수요에 따라 사업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운 사업들(주택사업관리 사업, 대여학자금 융자사업 등)이 일부 포함되고 있으므로, 실제로 사업규모가 조정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재정사업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또는 기금의 집행을 수반하는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거쳐 "미흡" 등급으로 판정되었거나, "보통" 등급으로 판정되었지만 각 부처의 재정적 필요 등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가 요구되는 사업들이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년간(2022-2025) 선정된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들 중 주택사업관리, 대여학자금융자 등 2개 사업은 계획액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더라도 지출소요가 계획액을 초과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변경(증)이 불가피하여 지출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먼저 '주택사업관리' 사업 관련 지출구조조정 계획 현황을 보면, 동 사업은 2022년·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등급으로 분류되어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2022년·2023년 주택관리사업 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

(단위: 백만원)

평가연도 (사업연도)	사업명	평가 등급	평가연도 계획액[1] (A)	구조조정 예정금액 (B)	조정예정 계획액[2] (A+B)	관련 사유
2022 (2021)	주택사업관리	미흡	444,339	△2,189	442,150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감액
2023 (2022)	주택사업관리	미흡	412,371	△18,900	393,471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감액

주 1) 평가연도 기준
2) 평가연도 차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상 금액으로, 실제 계획액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주택사업관리의 사업 계획액 중 임대보증금은 입주자 퇴거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고, 운영경비는 시설유지비·세금 및 공과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획액을 초과하는 지출소요가 발생할 경우 계획변경(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지출구조조정 차원에서 계획액이 전년 대비 감액편성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당초 계획액 대비 248억원, 826억 6,600만원의 계획변경(증)이 이루어졌음.[4] 주된 사유는 임대보증금 초과 지출수요 발생으로, 2023년에 279억 100만원, 2024년에 809억 8,100만원이 각각 증액변경되었음.[5]

[2023·2024회계연도 주택사업관리 사업 계획액 변경·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당초	증감분	수정		당초	증감분	수정		
임대보증금 (A)	379,690	27,901	407,591	406,638	307,475	80,981	388,456	388,452	328,555
운영경비 (B)	32,681	△3,101	29,580	29,242	31,807	1,685	33,492	33,336	29,586
합 계 (A+B)	412,371	24,800	437,171	435,880	339,282	82,666	421,948	421,788	358,141

자료: 인사혁신처

한편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계획 현황을 보면, 2022년·20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최근 3년간(2022-2024) 대여학자금융자 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

(단위: 백만원)

평가연도 (사업연도)	사업명	평가 등급	평가연도 계획액[1] (A)	구조조정 예정금액 (B)	조정예정 계획액[2] (A+B)	관련 사유
2022 (2021)	대여학자금 융자(융자)	보통	408,258	△19,066	389,192	·미흡사업 이외 지출구조조정 감액
2023 (2022)	대여학자금 융자(융자)	보통	316,491	-	316,491	·지출구조조정 대상 미포함
2024 (2023)	대여학자금 융자	미흡	284,065	△4,204	279,861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감액

주 1) 평가연도 기준
2) 평가연도 차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상 금액으로, 실제 계획액과는 다를 수 있음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재구성

4) 특히 2024년 집행액 4,217억 8,800만원은 평가결과 감액조정된 요구액 3,934억 7,100만원 대비 오히려 283억 1,700만원 증액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2024년 지출구조조정 계획상 조정규모(189억원)가 미준수되고 있음.

5) 또한, 2024년에는 당초 318억 700만원의 운영경비가 편성되었으나 초과소요 발생으로 16억 8,500만원이 증액변경되었음.

그런데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계획액은 근거 법령[6]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고 있으므로, 계획액을 초과하는 대부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계획변경(증)에 의한 초과지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출구조조정 차원에서 계획액이 전년 대비 감액편성된 2023년과 2024년[7]에 초과 대부수요가 발생하여, 각각 당초 계획액 대비 787억 1,900만원, 701억 6,400만원이 증액변경되었음. 또한, 2025년 계획액 역시 실적 대비 적은 규모로 편성되고 있음.

[2023·2024회계연도 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액 변경·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당초	증감분	수정		당초	증감분	수정		
대여학자금 융자	316,491	78,719	395,210	376,801	284,065	70,164	354,229	346,551	267,900

자료: 인사혁신처

이상 2개 사업은 최근 4년간(2022-2025)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두 차례 이상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음에도 지출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구조조정 간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이들 사업이 사실상 지출구조조정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관련 지침을 보면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선정 시 '미흡'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준수하면서 사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지출구조조정을 이유로 계획액을 감액 편성하였다가 증액변경하는 일이 반복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상사업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지출구조조정이 실제로 연계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6) 「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7) 2024년의 경우 지출구조조정 계획상 계획액이 조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년 대비 계획액이 감액편성되는 등 자체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이 수행되었음.

【일반회계】

<세 입>

2. 공무원인재개발기관운영수입: 세입예산의 편성내역과 수납내역을 일치시킬 필요

가. 개 요

‘공무원인재개발기관 운영수입’ 은 공무원인재개발원 운영에 따른 기숙사비·교육비 등으로 구성되며, 징수결정액 22억 9,3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8)]

[2024년 공무원인재개발기관 운영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4,029	4,029	4,378	4,378	-	-	100.0	4,020
공무원인재개발기관 운영수입	1,945	1,945	2,293	2,293	-	-	100.0	2,03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 일반회계-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69-691)(인재채용국)

나. 검토의견

'공무원인재개발기관 운영수입' 의 세입예산은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수입만을 고려하여 편성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과정 운영' 사업[9]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입도 같이 수납되고 있어 세입예산의 편성내역과 실제 수납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는 동 세입과목의 세입예산 편성시 실제 수납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 세입과목의 2023·2024회계연도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수납액을 비교하면, 2023년에는 세입예산액 17억 6,5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수납액 20억 6,500만원으로 3억원이 초과수납되었고, 2024년에는 세입예산액 19억 4,5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수납액 22억 9,300만원으로 3억 4,800만원이 초과수납되고 있음.

그러나 같은 기간 동 세입과목 수납액에 상응하는 지출인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지출규모는 '공무원인재개발기관운영수입' 보다 적게 집행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무원인재개발원 수입-지출 차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		수입-지출 차액(A-B)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중 '공무원인재개발기관운영수입'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2131-650)		
	본예산	수납액 (A)	본예산	집행액 (B)	
2023	1,765	2,065	1,765	1,749	**316**
2024	1,945	2,293	1,945	1,831	**462**
2025	2,032	-	2,032	-	-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당초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사업인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세출예산규모를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동 세입과목의 수납내역에는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 외에 당초 반영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교육비·기숙사비 등의 수입이 동 세입과목으로 수납되고 있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설명으로 보임.

9) 일반회계-교육과정 운영(2133-300)(공무원인재개발원)

[2023년·2024년 공무원인재개발기관 운영수입 과목 산출내역-수납실적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편성 시)		수납내역(수납 시)		차이 (A-B)
	항목	금액 (A)	항목	금액 (B)	
2023년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사업 수입	1,765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사업 수입	1,395	370
	-	-	교육과정 운영 사업 교육비·기숙사비 등	670	△670
	합계	1,765	합계	2,065	△300
2024년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사업 수입	1,945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사업 수입	1,535	409
	-	-	교육과정 운영 사업 교육비·기숙사비 등	758	△758
	합계	1,945	합계	2,293	△349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세입예산 편성 시 현재 세입예산의 산출내역에 적정 반영되고 있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사업의 교육비·기숙사비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인재개발기관 운영수입 예산을 보다 정확히 추계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기금】

<수 입>

3. 은퇴설계지원교육수입: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은퇴설계지원교육수입' 사업은 잔여 재직기간 5년 이내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은퇴설계지원교육[10]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4년 징수결정액 39억 8,2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11]

[2024년 은퇴설계지원교육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00,487	200,487	120,307	120,307	-	-	100.0	189,671[1]
고객지원사업	9,557	9,557	6,293	6,293	-	-	100.0	2,420[2]
은퇴설계지원교육수입	7,049	7,049	3,982	3,982	-	-	100.0	5,895[3]

주 1) 2025년 기준 유사과목인 기타잡수입(69-691) 계획액 반영
2) 2025년부터는 기타잡수입(69-691) 과목으로 세목조정
3) 2025년부터는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69-691) 과목으로 세목조정

은퇴설계지원교육 사업 관련 수입·지출은 2025년부터 수입대체경비 예산으로 지정되어 각각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69-691)'과 '은퇴지원교육 수입대체경비(3162-650)'로 계상되었음.

10) 공무원연금기금-고객지원사업(3262-302)(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실)

11) 공무원연금기금-재화 및 용역판매수입(69-691)(공무원연금공단 주택실)

나. 검토의견

'은퇴설계지원수입' 과목은 2022년·2024년 계획액이 실제 수납액 대비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으므로, 수입 계획액 편성 시 지출액 대비 실제 수입액 비율의 추세 등을 보다 면밀하게 고려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은퇴설계지원교육 관련 수입은 교육대상인 퇴직예정공무원이 속한 기관이 지급하는 교육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는 구조임. 그러나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2022년 54.4%, 2024년 56.5% 수준으로 저조하였음.

[최근 4년간(2021-2024) 은퇴설계지원교육수입 징수결정·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당초대비 (C/A)	수정대비 (C/B)
	당초(A)	수정						
2021	7,782	536	536	536	-	-	6.9	100.0
2022	7,003	7,003	3,810	3,810	-	-	54.4	100.0
2023	5,094	5,094	4,801	4,801	-	-	94.2	100.0
2024	7,049	7,049	3,982	3,982	-	-	56.5	100.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는 산출내역상 대면교육의 평균단가가 실제 수입 단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산출내역상 온라인 교육 참여인원이 실제 참여인원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임.

2024년 기준 대면교육 평균단가는 세입예산 산출내역 기준으로는 51만 846원이나 실제로는 그보다 12만 4,233원(24.3%) 적은 38만 6,613원 수준이고, 온라인 교육 참가인원은 산출내역 기준 13,587명이나 실제 참가인원은 1,347명에 불과하여 산출내역 대비 수납실적의 오차율이 90.1%에 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2022-2024) 대면교육 평균단가·온라인교육 참가인원 산출내역-수납실적 비교]

(단위: 원, 명, %)

연도	대면교육 평균단가				온라인 교육 참가인원			
	산출내역 기준(A)	수납실적 기준(B)	오차 (C=A-B)	오차율 (C/A)	산출내역 기준(D)	수납실적 기준(E)	오차 (F=D-E)	오차율 (F/D)
2022	518,305	381,172	137,133	26.5	7,856	3,375	4,481	57.0
2023	462,019	413,074	48,945	10.6	9,640	1,357	8,283	85.9
2024	510,846	386,613	124,233	24.3	13,587	1,347	12,240	90.1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 대면교육을 축소운영하여 평균단가를 낮추는 등(2023년 41만 3,074원→2024년 38만 6,613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면교육 참가인원이 감소(2023년 11,520명 → 2024년 10,202명)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은 수입 계획액이 실제 수납실적에 부합하도록 산출내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토지매각대: 수안보 상록호텔 매각 결정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토지매각대’ 는 공무원연금기금 증식을 목적으로 보유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2024년 징수결정액 4,3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12)]

[2024년 토지매각대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건물매각대・토지매각대	11,377	11,377	1,472	1,472	-	-	100.0	206,183
토지매각대	9,959	9,959	43	43	-	-	100.0	203,302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토지매각대 계획액(99억 5,900만원) 대비 수납액(4,300만원) 비율은 0.4% 수준임.

나. 검토의견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 수안보상록호텔 매각을 전제로 토지매각대 계획액 9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매각에 실패하여 계획액 대부분이 미수납되고 있고, 수안보호텔 영업실적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실시 중에 있으므로, 기금 수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매각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자산효율화 기준에 입각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계획안 수립 당시(2022년 7월) 수안보상록호텔의 수익성・잠재가치가 낮다고 평가하여 해당 자산을 매각 대상에 포함시켰음.

12) 공무원연금기금-건물매각대・토지매각대(71-711)(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실)

[수안보상록호텔 매각결정 사유]

ㅇ (이용인원) 관광 트랜드 변화(온천 비선호)로 일반이용 인원 감소 추세
ㅇ (운영실적) 노후시설 유지보수비, 고정 인건비 등으로 코로나 시기에 급격한 손실 발생

<수안보상록호텔 연간(2017-2021) 영업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용인원	58,887	50,790	59,777	20,163	18,433
영업손익	143	△342	212	△2,068	△4,298

ㅇ (영업환경) 수안보 지역 관광객, 사업장수 감소 등 지역상권 침체 지속
- 관광객수 ('16년) 65만명 → ('18년) 54만명(17%↓) → ('20년) 30만명(44%↓)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 이후 공무원 합숙유치 및 시설운영 정상화 등의 사유로 실적이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봄. 동 자산의 매각결정이 내려질 당시(2022년 7월)에는 2020년·2021년 이용인원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이 문제되었으나, 최근 2년간(2023-2024) 이용인원은 각각 6.2만명, 6.0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영업실적은 2023년 △2.8억원, 2024년 △1.4억원 등으로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동 자산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무원 수혜액이 2023년 31.5억원, 2024년 24.7억원으로 2019년 22.2억원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수혜 제공의 반대급부로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수안보상록호텔 연간 운영실적(2017-2024)]

(단위: 만명,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이용인원		5.9	5.1	6.0	2.0	1.9	5.8	6.2	6.0
	공무원	4.6	4.1	4.7	1.4	1.2	4.5	5.2	4.5
	일반인	1.3	1.0	1.3	0.6	0.7	1.3	1.0	1.5
공무원수혜액		16.7	13.7	22.2	7.0	5.5	20.2	31.5	24.7
영업손익		1.4	△3.4	2.1	△20.7	△43.0	△8.0	△2.8	△1.4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2024년 4월 1일부로 실시한 요금인상 조치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이용인원 및 영업손익을 보면 전년도(2023년) 같은 기간 대비 이용인원 합계는 417명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합계는 9,100만원 증가하고 있어 요금인상 조치가 영업실적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봄.

[수안보상록호텔 요금인상 조치 실시(24.4.1.) 전/후 영업손익 비교]

(단위: 명, 백만원)

2023년 실적 (A)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간 합계
이용인원	6,044	5,414	5,140	5,092	5,558	4,476	5,532	6,237	5,187	48,680
영업손익	45	50	8	△24	72	△18	64	128	84	409

2024년 실적 (B)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간 합계
이용인원	4,656	4,571	4,873	4,806	5,768	5,216	5,837	6,434	6,102	48,263
영업손익	47	29	39	20	71	△8	99	143	60	500

전년동월 대비 2024년 실적 (B-A)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간 합계
이용인원	△1,388	△843	△267	△286	210	740	305	197	915	△417
영업손익	2	△21	31	44	△1	10	35	15	△24	91

주) 감가상각 미반영 실적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한편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 동 자산의 매각에 실패하였음에도, 2025년 매각예정액을 전년 대비 감액조정(230억원→215억 2,400만원)하여 재차 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2025년 5월말 기준)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찰된 이력이 있는 자산을 무리하게 감액조정하여 매각하기보다 영업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절한 매각대상을 새로 선정하여 기금 수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산효율화를 적기에 수행할 필요가 있음.

<지　출>

5.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등: 수탁금 잉여금 및 이자수입의 반환 필요

가. 개　요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및 **'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등 2개 사업에서 대여학자금 융자사업의 수탁금 잉여금을 반환하고 있으며, 2개 사업의 2024년 계획현액 합계 1,219억 6,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3)]

[2024년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등 2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82,498	82,498	-	-	82,498	82,498	-	-	40,500
회계기금간거래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39,469	39,469	-	-	39,469	39,469	-	-	65,696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일반회계)	37,409	37,409	-	-	37,409	37,409	-	-	58,488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특별회계)	2,060	2,060	-	-	2,060	2,060	-	-	7,208
합계	121,967	121,967	-	-	121,967	121,967	-	-	106,196

위 2개 사업을 통해 반환되고 있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대여학자금 융자사업'[14)]에서 발생하고 있음. 대여학자금 융자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하여 부담금에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상환액이 대부액을 3년 이상 연속하여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및 '회계기금간 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등 2개 세부사업을 통해 부담금을 반환하고 있음.

---

13) 공무원연금기금-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공무원연금기금-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8920-895)(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14) 공무원연금기금-대여학자금융자(융자)(3141-321)(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관련 규정]

구분	주요내용
반환대상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금(회수액-융자금) 발생 기관**
반환금액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 **: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다.
반환시기	정산년도 기준 차차년도* 상반기(매년 6월 중)

자료: 인사혁신처,「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잉여금' 은 대여학자금 수탁금에서 당해 연도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부잔액을 차감하여 산출되고 있으며, 2024년 결산 기준 잉여금 규모는 8,621억원임.

[최근 5년간(2020-2024) 대여학자금수탁금 잉여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대여학자금 수탁금	누적 수탁금(A)	40,055	37,467	35,127	32,764	31,347
	반환금(B)	2,589	2,341	2,369	1,422	1,220
	수탁금 잔액 (C=A-B)	37,466	35,126	32,758	31,342	30,127
	대부잔액(D)	29,030	26,638	24,517	22,980	21,506
	잉여금(C-D)	8,436	8,488	8,241	8,362	8,621

주) 당해년도 수탁금・반환금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검토의견

첫째, 국회 시정요구 및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과다 유보되어 2024년 결산 기준 누적된 잉여금 규모가 8,621억원에 달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인사혁신처는 향후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잉여금이 신속하게 반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대여학자금 수탁금 여유분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15]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의 산식을 조정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후속조치를 수행하였다고 보고하였음.[16]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상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금액 산출내역]

주요내용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 :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전년도 상환액의 25%**[주)]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다.

주) 반환금액 산식 중 '± 전년도 상환액의 25%'은 과년도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추가되었음.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25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15)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관련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7) 과도한 수탁금 잉여금 해소 필요	관련 사업명	공무원연금기금 - 대여학자금융자(3141-321),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	주의
	지적 사항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탁금은 대여학자금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수탁금 잉여액이 8,239억원으로 과다한 문제가 있음	
	시정 요구 사항	○ 인사혁신처는 국가 예산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수탁금 잉여금 반환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도한 수탁금 잉여액 해소를 통해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고, 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대여학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분에 대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것	

16)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공통요구자료(Ⅱ-1)」, p.667

그러나 실제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2022년, 이후 '업무처리기준' 산식에 따른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확정되고 있고, 2022년~2024년 사이에는 지자체 대상 반환금만이 감액되고 있어 국가기관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최근 5년간(2021-2025) 업무처리기준상 반환액·당해연도 예산확정액 비교]

(단위: 억원)

연도	반환대상 구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반환금액(A)	당해연도 예산 확정액(B)	차이 (B-A)
2021	국가	761	761	-
	지자체	1,580	1,580	-
	소계	2,341	2,341	-
2022	국가	774	774	-
	지자체	2,594	1,594	△1,000
	소계	3,368	2,368	△1,000
2023	국가	118	118	-
	지자체	2,326	1,304	△1,022
	소계	2,444	1,422	△1,022
2024	국가	395	395	-
	지자체	1,650	825	△825
	소계	2,045	1,220	△825
2025	국가	1,469	657	△812
	지자체	4,062	405	△3,657
	소계	5,531	1,062	△4,46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이하 중장기사업계획 하에 2029년까지 잉여금 규모를 2024년 결산 기준 8,621억원에서 3,699억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금은 대부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수탁금 반환액(2024-2025) 및 중기사업계획 기준 반환 예정액(2026-2029)]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수탁금 반환(예정)액[1]	2,045	5,531	6,053	1,007	1,103	726
당해연도 예산 확정액	1,220	1,062	-	-	-	-
수탁금 잉여금	**8,621**	**9,761**	**4,639**	**4,339**	**3,735**	**3,699**

주) 2024년, 2025년 수탁금 반환(예정)액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반환액 =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전년도 반환예정액-전년도 대부예상액) ± 전년도 상환액의 25%]. 이후 반환(예정)액은 계획상 추정액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최근 시점인 2025년 예산 편성 결과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반환규모가 5,531억원임에도 확정된 예산액은 1,062억원에 불과하여, 수탁금 잉여금 예상액은 9,761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1,140억원(1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중기사업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6,053억원이 반환되어야 하나, 최근 5년간(2021-2025) 예산규모가 1,062억원~3,368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추세 대비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탁금 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탁금 잉여금을 내부에 과도하게 유보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수탁금 잉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반환할 필요가 있음.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액 및 관련 이자수입은 기금 여유자금에 편입되어 운용되고 있음. 2024년부터 관련 이자수입은 공무원연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규칙」 및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별도 산정 및 구분계리되고 있음.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123조(결산정리의 실시) ① 제110조에 따른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계 간 조정계정 및 본·지부계정의 정산
2. 본 · 지부 간 자금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자금이자 및 시설자산, 주택자산, **대여학자금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유입된 자금에 대한 내부자금이자 계상**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
제16조의2(대여학자금 잉여액 운용수익률 산정방법) ① 대부자산 중 대여학자금 잉여액 운용수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대여학자금 잉여액 평균잔액 × 적용 이자율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여학자금 잉여액은 당해 대여학자금 수탁금 일평균 잔액 합계에서 대여학자금(융자보조원가충당금 제외) 일평균 잔액 합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대여학자금 잉여액 운용수익률은 해당연도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금융자산운용수익률이 (-)일 경우 계상하지 않는다.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에 관한 이자수익은 약 326.5억원 규모이며, 잉여금의 평균잔액에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4.0%를 곱하여 산출되고 있음.

[2024년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 운용수익 처리 내역]

(단위: 억원)

수 익 귀속부서	잉여금 연평잔	수익률	내부자금이자
복지운영실	8162.9	4.00%	326.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2024년 결산부터 수탁금 잉여금에 관한 이자수익을 구분계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해당 금액이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고 있지는 않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6. 재해보상급여: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재해보상급여’ 사업은 전·현직 공무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2,185억 6,300만원 중 2,171억 2,800만원을 집행(99.3%)하였음.[17]

[2024년 재해보상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재해보상급여	195,519	218,563	-	23,044	218,563	217,128	-	1,435	204,771

동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는 지급요건 등에 따라 공상급여·순직유족급여 및 부조급여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재해보상급여 유형 구분]

분류	세 분류	지급 요건
공상급여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질병 요양자
	재활급여	공무상 요양 종료 후 재활운동 필요자
	장해급여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장해상태 퇴직자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유족 대상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 종료 후 간병 필요자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급여	공무상 사망자의 유족 대상 연금·보상금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뒤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재난으로 인한 주택 소실·유실·파괴 피해자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배우자·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금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17) 공무원연금기금-재해보상급여(3033-313)(공무원연금공단 재해예방실)

나. 검토의견

재해보상급여 사업은 2023년·2024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계획액이 과소계상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요양급여 건수 및 순직유족급여 단가의 추계방식이 추세 대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2023년 당초 계획액(1,965억 2,900만원) 대비 117억원(5.9%)이 증액변경되고, 2024년 당초 계획액(1,955억 1,900만원) 대비 230억 4,400만원(11.8%)이 증액변경되었음.

[2023·2024년 재해보상급여 세부내역별 계획액 변경·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계획액		증감분 (B-A)	집행액 (C)	불용액 (B-C)
		당초 (A)	수정 (B)			
2023	**합계**	**196,529**	**208,229**	**11,700**	**208,070**	**159**
	공상급여	108,389	112,143	3,754	112,014	1
	순직유족급여	40,234	41,918	1,684	41,917	1
	부조급여	47,906	54,168	6,262	54,139	29
2024	**합계**	**195,519**	**218,563**	**23,044**	**217,128**	**1,435**
	공상급여	104,422	118,771	14,349	118,469	302
	순직유족급여	42,481	47,428	4,947	46,702	726
	부조급여	48,616	52,364	3,748	51,957	407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24년 계획액 산출내역을 보면, 요양급여는 추세가 일정할 것을 가정하여 계획액 편성 시점 기준 전년도(2022년) 실적을 반영하였는데, 계획액은 실제 지급액 대비 93억 5,900만원(31.7%) 적게 반영되었음.

[2024년 재해보상급여 중 공상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계획액 산출내역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A)	산출내역	지급액 (B)	차이 (A-B)
공상 급여	요양 급여	29,525	○ 110,581건(2022년 실적 반영)×26만 7,000원 (2022년 실적 단가)	38,884	△9,359
	장해 급여	74,897	○(연금) 5,095건*×14,410천원**= 73,409백만원 * 2022년 실적 건수(4,704건)에 3년평균 증가율(4.1%)[2] 적용 ** 2022년 실적 단가(14,037천원) × 3년평균 연금인상률(1.3%)[2] ○(일시금) 21건*×70,857원**= 1,488백만원 * 3년 평균건수 적용 ** 3년 평균금액(70,317천원)에 기준소득월액인상률(0.4%)[2] 적용	79,585	△4,688
	합계	104,422		118,469	△14,047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그런데 최근 6년간(2019-2024) 실적을 보면, 2021년과 2022년 요양급여건수가 전후의 다른 연도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해 2021년과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하여 공무상 부상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외부활동이 감소하여 요양급여 지급실적도 따라 감소한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분석하고 있음.

[최근 6년간(2019-2024) 요양급여 지급실적]

(단위: 건, 천원,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요양급여건수	166,094	141,756	113,428	109,597	152,455	164,899
요양급여단가	204	241	271	267	244	236
지급액 합계	33,954	34,217	30,689	29,211	37,253	38,884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과 같이 2024년 계획액 편성시점인 2023년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고 있었으므로, 이상의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과 2022년의 지급실적을 이상치(outlier)로 분류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한편 2024년 순직유족급여 계획액(345억 300만원)은 집행액 대비 59억 1,400만원(17.1%) 적게 반영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순직유족급여의 연금 지급 시 단가를 과소책정한 것으로, 집행실적 기준 평균 단가(3,500만원)에 비해 646만원(18.5%) 과소추계된 데 따른 것임.

[2024년 재해보상급여 중 순직유족급여 계획액 산출내역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A)	산출내역	집행액 (B)	차이 (A-B)
순직	순직유족급여	34,503	○(연금) 903건*×28,547천원= 25,778백만원 * 2022년 실적 건수(684건)에 3년평균 증가율(14.91%)[2] 적용 ○(일시금) 80건*×109.1백만원**= 8,725백만원 * 3년 평균건수 ** 3년 평균금액(108.2백만원) × 기준소득월액인상률(0.4%)[2]	40,417	△5,914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7,978	○(연금) 194건* ×29,588천원**= 5,740백만원 * 2022년 건수(171건)×수급자증가율(1.06422) ** 2022년 단가(27,222천원)×연금인상률(1.051×1.033) ○(일시금) 12건*×186.5백만원**= 2,238백만원 * 3년 평균건수 ** 3년 평균금액(185백만원)×기준소득월액인상률(0.4%)[2]	6,285	1,693
합계		42,481	-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요양급여 및 순직유족급여의 연금 지급 시 평균 단가의 추세를 차년도 계획액의 산출내역에 적정 반영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　타】

7.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인사혁신처에 대해 시정요구 12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2건(중복 1건)・주의 1건・제도개선 10건(중복 1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2(1)	1	10(1)	1	12
예비비	-	-	-	-	-	-	-
합계	-	-	2(1)	1	10(1)	1	12

인사혁신처는 시정요구사항 12건에 대해 1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0%)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2	12	100.0	-
예비비	-	-	-	-
합계	12	12	100.0	-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인사혁신처 관련 부대의견은 없음.

나. 검토의견

인사혁신처는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동일 건 분할 집행 지양 필요’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또다시 제한금액(50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 건을 분할하여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실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동 시정요구에 대해 관서운영경비 한도 내에서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였으며, 향후에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조치완료’로 보고(2024. 12. 31.)하였음.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동일 건 분할 집행 지양 시정요구 조치결과]

구분	내용
시정요구명	(4)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동일건 분할 집행 지양 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수준)	인사혁신처는 관서운영경비 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집행하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조치상황	조치완료
조치결과	ㅇ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한도 내에서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였으며, 향후에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관련 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사업에서 또다시 제한금액(500만원)을 초과하는 659만 4,460원의 지출 건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건이 발생하고 있음.

[2024년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사업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일부)]

(단위: 원)

일자	내용	집행대상	집행액
5. 8.	2024년 몽골 인사행정역량강화과정 통역비 지급요청	ULZIITOGTOKH	4,176,960
	2024년 몽골 인사행정역량강화과정 번역비 지급요청	ULZIITOGTOKH	2,417,500
	합계		6,594,460

자료: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3억 4,600만원(△43.4%)이 적은 56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억원(651.1%)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63	863	871	8	10,017	10,017	5,671	△4,346	4,800
총수입	863	863	871	8	10,017	10,017	5,671	△4,346	4,800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7억 1,100만원(△0.3%)이 적은 8,545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45억 4,900만원(113.6%)이 증가함.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5701)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06,700	406,700	399,967	△6,733	857,227	857,227	854,516	△2,711	454,549
총지출	406,700	406,700	399,967	△6,733	857,227	857,227	854,516	△2,711	454,549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00억 1,700만원으로, 69억 2,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56억 7,100만원이 수납(수납률 81.8%)되었고, 12억 5,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0,017	10,017	-	10,017	6,929	5,671	1,258	-
합 계	10,017	10,017	-	10,017	6,929	5,671	1,258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572억 2,800만원으로, 8,545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2,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26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857,227	857,227	1	-	-	857,228	854,516	26	2,685
합 계	857,227	857,227	1	-	-	857,228	854,516	26	2,68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334억 8,300만원이 증가한 7,859억 3,5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18억 9,2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269억 6,500만원, 무형자산이 15억 7,3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이 30억 5,1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34억 7,000만원 감소한 60억 3,1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 33억 5,8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69억 5,300만원이 증가한 7,799억 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5,341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53억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8,713억 1,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70억 4,6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85,935	752,452	33,483	4.4
		유동자산	5,098	3,206	1,892	59.0
		투자자산	30	27	3	11.1
		일반유형자산	755,010	728,045	26,965	3.7
		무형자산	10,909	9,336	1,573	16.8
		기타비유동자산	14,888	11,837	3,051	25.8
	부 채		6,031	9,501	△3,470	△36.5
		유동부채	3,383	3,495	△112	△3.2
		장기차입부채	2,648	6,006	△3,358	△55.9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779,904	742,951	36,953	5.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534,159	88,851	445,308	501.2
	재정운영순원가		871,315	414,269	457,046	110.3
	재정운영결과		871,315	414,269	457,046	110.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목표로 제시하고 40개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성과수당을 지급하였으나 ① 성과수당 지급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② 선거법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수당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③ 지급기한 등의 미정으로 집행이 일부 지체되었으므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건비의 경우 수검표도입에 따른 개표사무원 추가위촉 등을 위해 연초에 30억 1,300만원을 이용(감)하였으나, 연말 인건비 부족으로 다시 타 사업 예산에서 이・전용(증)하는 등 인건비 예산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경우 관서업무경비의 범위와 상한액(500만원)을 규정한「국고금 관리법」및 관련 하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상한액을 넘어 관서업무경비를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수당 집행 등 개선 필요

가. 개　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공직선거법」제10조의2에 따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2)]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예방활동 및 정황파악·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회계 2개 사업(국회의원선거관리, 위법행위예방활동)을 통해 운영되었고,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을 통해 운영된 공정선거지원단은 국회의원선거를 특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을 통해 운영된 공정선거지원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특정선거가 아닌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와 같은 일반선거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이가 있음.

---

2)「공직선거법」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⑥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2024년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관리’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은 예산현액 194억 3,400만원 중 194억 3,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위법행위예방활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은 예산현액 60억 3,000만원 중 58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4%)되었고, 1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회의원선거관리	280,992	-	△19,184 25,922	287,731	287,613	-	118	-
위법행위 예방·단속	32,617	-	△5,707	26,910	26,907	-	3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23,995	-	△4,561	19,434	19,431	-	3	-
위법행위예방활동	10,947	1	△661	10,286	10,024	-	263	7,439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6,441	-	△411	6,030	5,874	-	156	3,92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검토의견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성과수당을 지급하였으나 ① 성과수당 지급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② 선거법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수당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③ 지급기한 등의 미정으로 집행이 일부 지체되었으므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에서는[3] 공정선거지원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3) 「공직선거법」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⑦ 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 · 활동방법 및 수당 · 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4]은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의 성과 수당 지급을 위해 826명을 대상으로 6,466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680명에게 약 4,503만원의 성과수당을 지급하였음.

[2020~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수당 예산 및 결산]

(단위: 천원,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급 인원	단가	금액	지급 인원	단가	금액	지급 인원	단가	금액	지급 인원	단가	금액	지급 인원	단가	금액
예산	828	73	60,390	80	100	8,040	616	100	61,640	80	100	8,040	826	78	64,665
결산	782	77	60,266	55	86	4,707	588	66	38,894	41	85	3,503	680	66	45,03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과수당의 지급은 공정선거지원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24년 집행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불명확한 성과수당 지급 기준의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선거지원단에게 지급하는 성과수당 지급 기준은 업무별로 ① 예방활동 및 정확파악·정보수집, ② 각종 행사현장 단속활동 보조, ③ 위법행위 정보 및 증거자료 수집, ④ 계도·홍보 지원, ⑤ 우수사례 발표 및 평가 우수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월별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2024년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에서 지급된 공정선거지원단의 성과수당은 건당 2~20만원으로 다양하게 지급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과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일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성과 여부를 판단하고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설명함.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⑨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수당 지급금액별 지급현황]

(단위: 명, 천원)

	2만원 이하	2~5만원	5~10만원	10~30만원
인원	48	388	177	64
금액 합계	825	16,780	15,876	11,3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성과수당 지급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10~30만원의 성과수당을 64명(총 1,130만원)에게 지급하였고, 5~10만원의 성과수당을 177명(총 1,587만 6,000원), 2~5만원의 성과수당을 388명(총 1,678만원), 2만원 이하의 성과수당을 825명(총 82만 5,000원)에게 지급하였음.

다만 성과수당 지급 기준이 구체적인 행위, 성과수준, 인원 및 횟수 등을 규정하지 않고 '기준 금액을 월별 20만원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수당 지급 기준]

업무별	성과내용 예시	기준 금액
예방활동 및 정황파악·정보수집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각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대상 안내 및 예방활동 우수(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이하 같음) • 선거정황 및 정보수집 활동 우수	월별 20만원 이내
각종 행사현장 단속활동 보조	• 각종 행사·모임 현장 안내·단속활동 보조 우수 • 위원회에서 지시한 현장 단속활동에 관한 지시 이행 및 보고 결과 우수 • 팀장업무 등 단속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효과적인 단속활동 성과 우수	
위법행위 정보 및 증거자료 수집	• 불법시설물 적발로 자진철거, 대집행 등 조치 사례 • 비방·허위사실 기재 인쇄물 배포·우송 등을 인지하고 보고하여 차단한 경우(상급위원회 보고 포함) • 금품·향응제공 등 음성적 위법행위 정보를 수집, 보고하여(위법 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사·조치할 수 있는 단서 제공 • 기타 위법행위 정보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한 경우 ☞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성과수당을 주지 아니함.	
계도·홍보 지원	• 공명선거 캠페인 지원활동 우수	
우수사례 발표 및 평가 우수	• 워크숍, 집합·수시 교육시 직전 선거경험 등 사례발표 • 사례예시, 선거법 시험·평가 우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와 같이 성과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일선 선관위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성과수당이 지급되어, 수당 지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적극적인 활동 유도라는 취지를 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수당 지급 기준을 정비하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법규 평가 우수자에 대한 성과수당 지급의 적정성 검토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선거법 시험 등에서 평가 우수를 받은 경우에도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규평가 등에서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이를 사유로 성과수당을 지급하였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평가우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5] 지급하는 수당금액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2024년 전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269개소 중 183개소가 법규평가를 실시하였고, 2,263명이 법규평가에 응시하여 578명이 2,623만원의 성과수당을 수령하였음.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법규평가 실시 현황]

(단위: 개소, 명, 천원)

전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법규평가 실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법규평가 응시 공정선거 지원단원	법규평가 응시자 중 우수 인원	성과수당 수급인원	전체 법규평가 우수인원 성과수당 지급 금액
269	183	2,263	615	578	26,23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평가에 대한 성과수당의 경우, 법규평가가 우수하다는 동일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수당이 2만원 미만 금액이 지급되거나 10만원 이상 금액이 지급된 경우가 있었음.

5)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시·군·구의 법규평가의 채점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법규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군구가 1회 또는 미실시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2024.10.25., p.100)

2024년 법규 평가 우수를 이유로 성과수당을 지급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52명에게 10만원 이상(총 535만원), 181명에게 5~6만원 미만(총 906만원)의 성과수당을 지급하고, 38명에게 1~2만원 미만(총 39만원)의 성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기준이 상당히 상이함.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법규평가 관련 성과수당 금액별 지급내역]

(단위: 명, 천원)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4만원 미만	4~5만원 미만	5~6만원 미만	6~7만원 미만	7~8만원 미만	8~9만원 미만	9~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지급인원	38	83	120	37	181	27	26	10	4	52
지급총액	390	1,720	3,600	1,490	9,060	1,620	1,830	810	360	5,35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법규 평가방법 및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일반적인 지급기준이 없다고 설명하였는데, 동일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성과수당 지급액이 상이한 것은 성과수당 지급체계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선거법에 대한 이해도는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서의 자격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은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성과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선거법 평가 우수가 '활동실적'이나 '근무상황'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7]

(3) 집행지침 미비로 인한 집행 지연 개선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함.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의 성과수당 지급을 월별로 보면,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10월 이후까지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에서 성과수당을 지급하였음.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정선거지원단의 경우 선거법규의 안내가 주요 업무이나 선거법을 기준으로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채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7) 2024년 국정감사 당시 공정선거지원단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잘못 알고 잘못 안내하고 잘못 단속하는 경우가 나타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2024년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2024.10.25., p.100)

구체적으로 6월 6명에게 70만원, 7월 4명에게 24만원, 8월 1명에게 5만원, 10월 이후에도 2명에게 16만원이 지급되었음.

[2024년 공정선거지원단 성과수당 월별 지급내역]

(단위: 명,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후
인원	1	28	250	377	8	6	4	1	-	2
금액 합계	200	2,370	12,865	27,486	550	700	240	50	-	320

위와 같은 집행결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이 활동 당시 자체 인지했던 사건의 선거일 이후 조사·조치 결과에 따라 성과수당을 지급하거나, 성과수당 지급을 선거일 이전에 결정하였음에도 지급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급을 일부 지체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조사·조치 결과에 따라 성과수당을 지급하여 집행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성과수당 지급을 선거일 이전에 결정하였음에도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급을 지체한 것은 체계적인 수당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과수당 지급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성과수당 지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세 출>

2. 인건비: 연도 중 반복적인 이·전용을 통한 예산집행 부적절

가. 개 요

'인건비' 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직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245억 200만원 중 2,241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3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음.[8)]

[2024년도 인건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건비	221,572	221,572	-	△3,606 6,535	224,502	224,138	-	364	225,57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수검표도입에 따른 개표사무원 추가위촉 등을 위해 연초에 30억 1,3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이용(감)하였으나, 연말 인건비 부족으로 다시 다른 사업 예산에서 이·전용(증)하는 등 인건비 예산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심사계수기의 빠른 운용 속도로 인한 참관권 제한, ②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의 형식적인 확인, ③ 진정한 의미의 수(手)개표가 아니라는 비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표과정에 대한 의혹 불식과 투명성 확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2024년 1월 12일 수검표 과정을 국회의원선거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고,

8) 일반회계-인건비(7101-150)(기획조정실)

이를 위해 2024년 4월 인건비에서 총 30억 1,300만원을 이용[9]하여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을 증액하였음.[10]

[2024년도 개표사무원 및 심사계수기 추가 임차를 위한 인건비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이용 ('24.4.2.)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2,357	국회의원선거관리 (1131-301)	일반수용비 (210-01)	수검표도입에 따른 개표사무원 추가위촉등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656	국회의원선거관리 (1131-301)	임차료 (210-07)	수검표도입에 따른 심사계수기 추가임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예산이 편성 완료된 후에 결정된 사안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하였고, 예산변경이 가능한 사업이 인건비 밖에 없어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① 과거에 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규모가 감소하고,[11] ② 202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기본 2.5%외 추가인상, 정근수당가산금 3만원

9)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 · 관 · 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으나, 법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2024년 예산총칙」 제10조는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경비를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 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건비 이・전용을 통해 개표사무원 추가위촉 및 심사계수기 추가임차를 위한 30억 1,3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개표사무원 위촉을 위해 17억 7,197만원(9,627명 위촉), 심사계수기 추가 임차를 위해 10억 5,846만원(2,480대)을 집행해 총 28억 3,043억원을 집행하였음.

11)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원 대비 결원인원은 8명으로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2020~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급별 정원 및 현원>

연도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기타(전문임기제)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결원
2020년	3	3	2,899	2,867	1	1	39	37	2,942	2,908	34
2021년	3	3	2,933	2,901	1	1	41	40	2,978	2,945	33
2022년	3	3	2,957	2,945	1	1	42	35	3,003	2,984	19
2023년	3	3	2,973	2,914	1	1	45	39	3,022	2,957	65
2024년	3	3	2,978	2,974	1	1	45	41	3,027	3,019	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확대 등)이 의결되어 당초 예상 대비 인간비의 추가소요가 발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연도 말에 공무원 대상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보수가 부족하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①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외 13개 사업에서 49억 7,400만원을 이용, ②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외 9개 사업에서 6억 5,000만원 전용, ③ ‘청사관리(7132-354)’ 외 1개 사업에서 3억 1,700만원 자체전용, ④ ‘인건비(7101-150)’ 사업에서 5억 9,300만원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65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음.

[2024년도에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해 이·전용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이용 (’24.12.18.)	국회의원선거관리 외 13개 사업	일용임금 등 (110-04 등)	4,974	인건비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전용 (’24.12.18.)	위원회기본경비 외 9개 사업	사업추진비 등 (240-01 등)	650	인건비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자체전용 (’24.12.18.)	청사관리 외 1개 사업	상용임금 등 (110-03 등)	317	인건비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세목조정 (’24.12.18.)	인건비	기타직보수 등 (110-002 등)	593	인건비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본예산 편성 당시에 수검표 도입 조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확정된 직후인 연초에서야 계획을 변경하고 연도 중 이용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엄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12)]

또한 인건비에서의 이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연도말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어 인건비의 안정적인 집행이 저해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정당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족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예비금을 2024년 1억 9,600만원 편성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액이 크지 않고 도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하였음.

3.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 「국고금 관리법」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 위반 주의 필요 등

가. 개 요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은 국회의원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877억 3,100만원 중 2,876억 1,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음.[13)]

[2024년도 국회의원 선거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회의원 선거관리	280,992	280,992	-	△19,184 25,922	287,731	287,613	-	118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경우 관서업무경비의 범위와 상한액(500만원)을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하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상한액을 넘어 관서업무경비를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 제24조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4)]

---

13) 일반회계-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선거정책실)

14)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15],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16]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17]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서운영경비란 운영비·특수활동비·정보보안비·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등으로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원칙적으로 건당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한해서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금액 500만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에서는 운영비 중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등만을 예외로 하고 있음.

---

15)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 학교운영비 ·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 특수활동비 · 안보비 · 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16)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안보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5. 정보보안비 중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5.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7)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 · 인쇄비용 ·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2. 특수활동비(230)중 정보 · 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③ 영 제31조 및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1호와 같다.
④ 영 제36조 및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함 수송차량에 대한 임차료 지급 1건에 5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국고금 관리법」 및 그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을 위반하였음.

2024년 일부 시군구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함 회송차량 임차비용을 위해 관서운영경비를 500만원 이상 지급한 사례는 5건 확인되었으며, 최대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2024년 관서업무경비의 교통편의제공 및 투표함 회송차량 임차 목적 지급 건 중 규정 위반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	세목	집행단위	수령인명	지급내역	지급액
국회의원 선거관리	임차료 (210-07)	○○군	㈜○○관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사전투표함 회송차량 임차료	6,900,000
국회의원 선거관리	임차료 (210-07)	○○시	○○용달이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관련 물품 운송 차량 임차료 지급	7,271,000
국회의원 선거관리	임차료 (210-07)	○○군	㈜○○관광	제22대 국선 (사전)투표함 회송 및 교통편의 제공차량 임차 대금	8,750,000
국회의원 선거관리	임차료 (210-07)	○○시	(유)○○관광	교통편의제공 및 투표함 등 회송 차량	9,858,000
국회의원 선거관리	임차료 (210-07)	○○군	㈜○○관광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함 회송차량 임차료	11,500,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일부 시군구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시경사로 및 개표소 설치・철거 목적으로 관서운영경비를 500만원 이상 지급한 사례는 3건 확인되었으며, 최대 약 800만원 이상 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2024년 관서업무경비의 임시경사로 및 개표소 설치·철거 목적 지급 건 중 규정 위반 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	세목	집행단위	수령인명	지급내역	지급액
국회의원 선거관리	임차료 (210-07)	○○구	○○ 플러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임시경사로 임차비 지급	8,299,000
국회의원 선거관리	일반수용비 (210-01)	○○군	○○○○ 이벤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관련 개표소 설비 철거 대금 지급	6,655,000
국회의원 선거관리	임차료 (210-07)	○○시	○○ 기획	개표소 설비철거 대금지급	7,045,19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210목의 지출 건(공과금, 위원회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등 제외)은 일반지출로 처리하여야 하나 일부 구・시・군위원회에서 이를 위반하여 집행하였고, '24.5.28. 각급위원회에 「관서운영경비 집행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음.[18]

관련 법과 규정에서 지출 범위를 건당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출관의 승인 없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본경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서운영비 출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하위규정을 위반하여 상한액 500만원을 넘어 관서업무경비를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9]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회계사무편람에 따라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러한 집행은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지급가능경비 범위를 규정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0]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21]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에 따라 당해 읍・면・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간사・서기를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2] 동 규칙 제12조 및 [별표4]에서는 간사・서기 등에 대한 일당 등의 실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유사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

19) 202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운송료 등 전체 계약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함에도 일반지출이 아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여 2개 위원회가 주의조치를 받았음.

20)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사무기구등) ⑯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 각 약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

21)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5조(위촉직원의 위촉)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읍・면・동 소속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간사・서기를 위촉한다. 다만,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상황을 즉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실에서 발행한 「회계사무편람」에 따르면,[24] 사례금 또는 법령상 각종 수당은 예산재배정기준 및 지방선거산출기준에 따라 정당한 수령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수당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에 간사・서기에 대한 교육수당을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2024년 위원회 간사·서기 교육참석 수당 현금지급 주요 내역]

(단위: 원)

지급 일자	세목	집행 단위	수령인명	지급내역	지급액	지급 구분
'24.2.19.	일반수용비 (210-01)	○○시	○○시선거 관리위원회	동위원회 간사・서기 교육 수당 지급	560,000	현금 지급
'24.2.20.	일반수용비 (210-01)	○○시 ○○구	박○○ 외 39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간사・서기 교육참석 수당 지급	1,520,000	현금 지급
'24.2.22.	일반수용비 (210-01)	○○시	○○시선거 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간사・서기 교육 수당 지급	2,080,000	현금 지급
'24.2.21.	일반수용비 (210-01)	○○시	김○○ 외 16명	간사・서기 교육 수당 지급	680,000	현금 지급
'24.2.19.	일반수용비 (210-01)	○○시 ○○구	제22대 국선 현금 지급	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 교육 참석 수당 지급	1,440,000	현금 지급

22)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 · 서기 · 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위촉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 별표 3 및 별표 4의 해당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원에 대하여는 그 본직에서 받는 여비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여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여비액에 의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선거기간중 상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3)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별표4] 수당기준표

구분		지급액
위촉직원	간사・서기	40,000원

24) 사례금 또는 법령상 각종 수당은 예산재배정기준 및 지방선거산출기준에 따라 정당한 수령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수당,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투・개표참관인, 개표소 협조요원 등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사무편람」,p.154)

(단위: 원)

지급 일자	세목	집행 단위	수령인명	지급내역	지급액	지급 구분
’24.2.21.	일반수용비 (210-01)	○○시 ○○구	제22대 국선 간사, 서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동위원회 간사, 서기 교육 수당 지급	800,000	현금 지급
’24.2.20.	일반수용비 (210-01)	○○군	서○○ 외 33인	읍.면위원회 간사·서기 교육 참석자 수당 지급	1,360,000	현금 지급
’24.2.20.	일반수용비 (210-01)	○○군	서○○ 외 33인	읍.면위원회 간사·서기 사례금 지급(2월분)	3,400,000	현금 지급
’24.2.20.	일반수용비 (210-01)	○○시 ○○구	이○○ 외 31명	동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서기 등 교육 수당 지급	1,280,000	현금 지급
’24.2.20.	일반수용비 (210-01)	○○군	배○○ 외 22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읍·면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서기교육(1차) 참석수당	920,000	현금 지급
’24.2.15.	일반수용비 (210-01)	○○군	권○○ 외 22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읍면위원회 간사, 서기, 위원장 등 교육참석 수당 지급	920,000	현금 지급
’24.2.15.	일반수용비 (210-01)	○○군	오○○ 외 38인	읍면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서기 교육 참석 수당 지급	1,560,000	현금 지급
’24.2.14.	일반수용비 (210-01)	○○군	장○○ 외 13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읍·면위원회 간사·서기 등 교육참석 수당 지급	560,000	현금 지급
’24.2.20.	일반수용비 (210-01)	○○시	김○○ 외 25인	간사·서기 교육수당 지급	1,040,000	현금 지급
’24.2.23.	일반수용비 (210-01)	○○시	○○읍선관위 외 22개 면·동선관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 교육참석수당 지급	1,840,000	현금 지급
’24.2.23.	일반수용비 (210-01)	○○시	간사 등	제22대 국선 관련 동위원회 간사·서기 교육 수당 지급	1,560,000	현금 지급
’24.2.23.	일반수용비 (210-01)	○○군	함○○외 40인	제1차 위원장 및 간사·서기 교육 참석 수당 지급	1,640,000	현금 지급
’24.2.21.	일반수용비 (210-01)	○○시	장○○ 등 37명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교육참석 수당(2.20)	1,480,000	현금 지급
’24.2.16.	일반수용비 (210-01)	○○군	○○군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읍면동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서기 교육 참석 수당 지급	1,160,000	현금 지급
’24.2.15.	일반수용비 (210-01)	○○구	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원장, 간사·서기 교육수당 지급	1,360,000	현금 지급
’24.2.16.	일반수용비 (210-01)	○○군	정○○ 외 28인	읍·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서기 교육 참석 수당	1,160,000	현금 지급
’24.2.20.	일반수용비 (210-01)	○○구	○○구 선거추진반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리 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서기 교육참석 수당 지급	1,760,000	현금 지급
’24.2.23.	일반수용비 (210-01)	○○구	○○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간사·서기 교육 수당 지급	1,840,000	현금 지급

(단위: 원)

지급 일자	세목	집행 단위	수령인명	지급내역	지급액	지급 구분
’24.2.20.	일반수용비 (210-01)	○○구	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위원장, 간사・서기 교육수당 (추가)지급	40,000	현금 지급
’24.2.27.	일반수용비 (210-01)	○○군	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읍면위원회 간사・서기 교육 개최	320,000	현금 지급
’24.2.23.	일반수용비 (210-01)	○○시	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읍면동위원회 간사・서기 교육 수당 지급	2,000,000	현금 지급
’24.2.29.	일반수용비 (210-01)	○○군	김○○ 외 15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간사・서기 교육 참석자 교육수당 지급	480,000	현금 지급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읍・면・동 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대한 교육참석수당을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일숙직비, 과운영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25][26][27] 간사・서기에 대한 교육참석 수당의 현금 지급과 그 근거가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편람은 관련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8]

25)「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6조(현금 등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공공요금 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호 및 제4호의 경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급하는 경우
2. 제31조제2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제31조제3호의 경비 중 국내 여비 및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여비
4. 섬 · 외딴곳 · 산간오지 등 관서 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105조제2항에 따른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재교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6)「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④ 영 제36조 및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27)「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별지제2호]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지급가능경비

예산과목	용 도
운영비(210)	일숙직비, 과운영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 · 조의금
	기타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28)「국고금 관리법」의 적용대상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당 집행의 현금 지급 방식을 지양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근거가 되는 회계편람을 관련 법규와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의 일반회계 지출도「국고금 관리법」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음.

【기　타】

4.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8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	6	-	8
예비비	-	-	-	-	-	-	-
합계	-	-	-	2	6	-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8건에 대해 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62.5%)하고 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8	5	62.5	3
예비비	-	-	-	-
합계	8	5	62.5	3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없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9,600만원을 징수하여 총수입은 9,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6,600만원(220%)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	-	-	-	-	-	-
총수입	-	-	30	30	-	-	96	96	66

문의 :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pmh1117@assembly.go.kr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100만원(△0.1%)이 적은 167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200만원(1.7%)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9,077	19,077	16,456	△2,621	16,749	16,749	16,728	△21	272
총지출	19,077	19,077	16,456	△2,621	16,749	16,749	16,728	△21	272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1억 7,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9,600만원이 수납(수납률 53.9%)되고 8,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	-	-	-	178	96	82	-
합 계	-	-	-	-	178	96	82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80억 3,000만원으로, 167억 2,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8%)되고 3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억 9,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6,749	16,749	1,281	-	-	18,030	16,728	309	993
합 계	16,749	16,749	1,281	-	-	18,030	16,728	309	993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8억 9,600만원이 감소한 33억 9,6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8억 4,200만원, 무형자산이 1억 6,900만원 각각 감소하였으나 일반유형자산이 1억 1,5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억 3,200만원 증가한 5억 4,2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4억 3,2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억 2,800만원이 감소한 28억 5,4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6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91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396	4,292	△896	△20.9
		유동자산	672	1,514	△842	△55.6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880	765	115	15.0
		무형자산	259	428	△169	△39.5
		기타비유동자산	1,585	1,585	-	-
	부 채		542	110	432	392.7
		유동부채	-	-	-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542	110	432	392.7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854	4,182	△1,328	△31.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666	3,596	1,070	29.8
	재정운영순원가		19,113	16,615	2,498	15.0
	재정운영결과		19,113	16,615	2,498	15.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총 3개 세부사업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기본경비를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는 예산현액 180억 3,000만원 중 167억 2,800만원 집행(92.8%)을 하였음. 이 중 이월액 3억 9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등으로 발생하였고, 불용액 9억 9,300만원은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음.

2024년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진화위운영 사업 내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사업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고려하여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진실규명 조사 :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사업의 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진실규명 조사' 사업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증인·참고인 면담, 현장 및 실태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진실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1억 4,000만원 중 30억 3,000만원이 집행(집행률 73.2%)되고, 2억 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2)]

[2024년도 진실규명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진화위운영	3,429	3,429	1,260	±99	4,689	3,435	309	945	3,266
진실규명 조사	2,961	2,961	1,179	±22	4,140	3,030	217	893	1,97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진화위운영(1031-300)(기획운영관)

나. 검토의견

진실규명 조사 사업 내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사업은 유골의 유전자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사업 추진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진실규명 조사 사업 내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유해·유가족 유전자 검사'(이하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라 함)사업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한 것으로, 일반 연구비(260-01목) 예산으로 용역발주 방식을 통해 수행됨.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검사 사업은 2023년에 사업이 지연되어 3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4년에도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액 8억 8,400만원 중 4억 9,300만원이 집행(55.8%)되고 2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3년, 2024년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용역사업 계약명	예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용역	1,200	700	308	192
2024년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유가족 유전자 검사 용역	884	493	211	180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용역 계약을 2024년 5월 1일에 공고하여 2024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지연되었음. 이후 2025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월액 2억 1,1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3)]

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70년 이상 오래된 인골에서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따라 다수의 반복실험으로 용역 소요시간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임.

3)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사업은 유해 350건, 유가족 150건에 대하여 이뤄졌으며, 총 5위의 희생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이 완료되었음.

그러나 2023년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사업 시에도 다수의 반복 실험 등을 사유로 사업이 지체되었으므로 2024년도에도 동 사업의 지연 가능성을 일부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2024년에는 용역계약 공고를 5월이 아닌 연초에 수행하는 등의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5년 5월 26일까지 조사를 마쳐야 하며, 2025년 11월 26일까지 존속하게 됨.[4] 2025년에 신규로 계약 체결 예정인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관련 연구용역 사업은 총 2건이며, 유전자 검사 용역 계약의 경우 2025년 7월 21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음.

[2025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 관련 용역사업 현황]

구분	용역 계약명	공고일	계약일
2025년 사업	2025년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유가족의 유전자 검사 용역	2025.6.4.	2025.7.21.
	2025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및 DB화 용역	2025.6.10.	조달청 계약추진 중 (개찰일 7.31.)

주) 2025년 7월 말 기준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5년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사업의 경우에도 과거와 유사하게 반복실험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존속기한(2025.11.26.)을 고려하여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일은 2021년 5월 27일로, 연장을 포함한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까지이며,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한은 2025년 11월 26까지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　타】

2.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 시정요구 2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1건·시정 1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	1	-	-	2
예비비	-	-	-	-	-	-	-
합계	-	-	1	1	-	-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해 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하여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2	2	100.0	-
예비비	-	-	-	-
합계	2	2	100.0	-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 함)는 2024년 9월 13일에 출범하였으며, 별도 세입예산이 없어 202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액도 없음.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순증한 7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순증함.[1)]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	-	-	-	-	-	785	785	785
총지출	-	-	-	-	-	-	785	785	785

문의 :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pmh1117@assembly.go.kr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나. 세입·세출 결산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4년 9월 13일에 출범하였으며, 별도 세입 예산이 없어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도 없음.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억 9,000만원으로, 7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88.2%)되고 1억 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	-	-	±56	890	890	785	-	105
합 계	-	-	-	±56	890	890	785	-	105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산은 조직개편일 대비 2억 1,965만원이 증가한 2억 1,965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1억 5,660만원, 무형자산 5,938만원 및 유동자산 367만원이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조직개편일 대비 1억 300만원 증가한 1억 300만원으로 장기충당부채 1억 100만원 및 유동부채 300만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조직개편일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억 1,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도 6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4.5.21. (조직개편일)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20	-	220	순증
		유동자산	4	-	4	순증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157	-	157	순증
		무형자산	59	-	59	순증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103	-	103	순증
		유동부채	3	-	3	순증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01	-	101	순증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16	-	116	순증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687	-	687	순증
	재정운영순원가		687	-	687	순증
	재정운영결과		687	-	687	순증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예비비가 2024년 9월 3일에 승인되었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4년 9월 13일에 공식 출범하였음.

2024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처 설립 준비를 위한 예비비를 편성 받아 총 1개의 세부사업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집행하였음. 2024년 예산현액 총 8억 9,000만원 중 7억 8,500만원이 집행(88.2%)되었음. 이 중 불용액 1억 500만원은 위원회 운영일정 지연에 따른 공사일정 변경 등으로 발생하였음.